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라북도

제 출 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전북연구원장 이남호

참 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이 주 연 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 이 동 기 원광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 박 신 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공동 연구원 : 최 지 훈 전문연구원

Contents

제1장. 서론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내용 ····· 6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 8

제2장.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13

1. 중앙부처별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 13
2. 타 시도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32
3. 전북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36
4. 요약 및 시사점 ····· 41

제3장. 외국인 정책 해외사례 분석 ····· 45

1. 지역 이민정책 관련 사례 ····· 45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 사례 ····· 51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사례 ····· 52
4. 요약 및 시사점 ····· 57

제4장. 전북 외국인 현황 및 특성 분석 ····· 61

1. 외국인 기본현황 분석 ····· 61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분석 ····· 97
3.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 108

4. 외국국적 동포 현황 분석 ····· 111
5. 기타(불법체류, 국민의 배우자 등) 현황 분석 ····· 119
6. 요약 및 시사점 ····· 128

제5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135
1.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 135
2.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 153
3.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 154

제6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 ····· 165
1.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경제 분야 ····· 165
2.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체류지원 분야 ····· 222
3.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지역통합 분야 ····· 231
4.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인권 분야 ····· 247
5.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협력 / 인프라 분야 ····· 259
6. 세부과제 목록 ····· 274

참고문헌 ····· 281

[표 차 례]

[표 2-1] 각 차수별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주요 내용 ····· 14
[표 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최종 선정 지자체 현황 ····· 17
[표 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별 정착지원 사업 현황 ····· 18
[표 2-4] 숙련기능인력(E74) 관계부처별 및 지자체 추전 등 쿼터 배분 현황 ····· 19
[표 2-5]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 ····· 21
[표 2-6]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 23
[표 2-7]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선정 현황(2021년, 2022년) ····· 27
[표 2-8] 각 부처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용 범위 ····· 29
[표 2-9]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현황('23.6.30 기준) ····· 29
[표 2-10] 외국인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체계 현황 ····· 31
[표 2-1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관제 현황(2022년 기준) ····· 37
[표 2-12]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의 외국인 대상 지원 사업 현황 ····· 40
[표 2-13] 전북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 ····· 41

[표 4-1] 전북의 등록 및 체류 외국인 규모 ····· 61
[표 4-2] 전북 등록 및 체류 외국인 추이 ····· 61
[표 4-3]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 62
[표 4-4]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 63
[표 4-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 65
[표 4-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 66
[표 4-7]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21) ····· 67
[표 4-8]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 TOP10(2021) ····· 69
[표 4-9]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인구 구성 (2023.3.기준) ····· 69
[표 4-10]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추이 ····· 72
[표 4-11]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 73
[표 4-12]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23.3) ····· 74
[표 4-13]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추이 ····· 75
[표 4-14]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 TOP10(2023.3) ····· 76
[표 4-15]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 78
[표 4-16] 전북 외국인주민 현황(시군별 매트릭스) ····· 79
[표 4-17]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추이 ····· 80
[표 4-18]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 82
[표 4-19]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 순위(2021) ····· 83
[표 4-20] 전북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유형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1) ····· 84
[표 4-2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 85

[표 4-22]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21) ····· 86
[표 4-23]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 TOP10(2021) ····· 87
[표 4-24] 전북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주요 7개 국가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1) ····· 88
[표 4-25]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과 추이 ····· 91
[표 4-26]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 92
[표 4-27]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23.3) ····· 93
[표 4-28]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3.3) ····· 94
[표 4-29]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국적 현황(2023.3) ····· 96
[표 4-30]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 순위(2023.3) ····· 96
[표 4-31]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2021) ····· 97
[표 4-32]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추이 ····· 98
[표 4-33]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TOP10(2021) ····· 99
[표 4-34]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산업별 현황(2022) ····· 100
[표 4-35] 전국과 전북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2023.3) ····· 101
[표 4-36]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23.3) ····· 103
[표 4-37]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배정현황 ····· 105
[표 4-38] 2023년 상반기 전북 13개 시군 외국인근로자 배정현황 ····· 106
[표 4-39] 2023년 전북지역 공공형계절근로자 선정 현황 ····· 106
[표 4-40] 2023년 전북지역 공공형계절근로자 선정 현황 (2022.12.31. 기준) ····· 107
[표 4-41] 전북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 109
[표 4-42] 연도별 전국 외국국적동포 추이(2018 ~ 2022) ····· 111
[표 4-43] 2022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자(율) 현황 ····· 111
[표 4-44] 2022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자(율) 현황 ····· 112
[표 4-45] 전국과 전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의 연도별 추이 현황(2016 ~ 2023.3) ····· 113
[표 4-46]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현황(2023.3) ····· 114
[표 4-47] 전북 시군별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현황(2023.3) ····· 116
[표 4-48]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현황(2023.3) ····· 117
[표 4-49] 전북 시군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현황(2023.3) ····· 118
[표 4-50] 전국 불법체류 현황(2023.3) ····· 119
[표 4-51] 전국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현황(2022.12.31.기준) ····· 120
[표 4-52]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국적 현황(2023.3) ····· 121
[표 4-53]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성별*국적별 현황(2023.3) ····· 123
[표 4-54] 전북 시군별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국적 현황(2023.3) ····· 124
[표 4-55]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현황(2023.3) ····· 125
[표 4-56]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23.3) ····· 126
[표 4-57] 전북 시군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현황(2023.3) ····· 128

[표 5-1] 외국인 유형별 참여 자문 전문가 현황 ····· 136
[표 5-2] 중앙부처별 외국인 관련 공모사업과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 과제간 연계 현황 ····· 159
[표 5-3] 유학생·재외동포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단계별(유치-취업·근로-사후관리-정착-사회통합) 지원체계 강화 사업 ····· 161

[표 6-1]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 비교 ····· 166
[표 6-2]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 관련 세부과제(안) ····· 166
[표 6-3] 전라북도 혁신기관 해외우수 연구자 추진 절차 ····· 170
[표 6-4] 정부의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지원내용 ····· 171
[표 6-5]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과제(안) ····· 171
[표 6-6]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172
[표 6-7] 연도별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 ····· 174
[표 6-8] IMO 대학과 UN 대학 사례 ····· 176
[표 6-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세부 과제(안) ····· 179
[표 6-10]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허용 인원 ····· 182
[표 6-11]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 ····· 184
[표 6-12]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쿼터 현황 ····· 186
[표 6-13]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치-취업·근로-사후관리-장기정착 지원체계 강화(안) ····· 187
[표 6-14] 사회통합 교육과정 ····· 188
[표 6-15]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세부 과제(안) ····· 205
[표 6-16] 전북 외국인유학생 단계별(유치-관리·적응-취업-정착) 지원체계 강화사업 ····· 206
[표 6-17] 전국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현황 ····· 212
[표 6-18]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중 고려인 현황 ····· 217
[표 6-19]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2014~ 2022 : 짝수년 기입) ····· 222
[표 6-20] (체류지원)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세부 추진과제(안) ····· 224
[표 6-21]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230
[표 6-2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 현황 ····· 230
[표 6-23] (지역통합)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세부 추진과제(안) ··· 234
[표 6-24] (인권)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한 세부 과제(안) ····· 249
[표 6-25]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총 2개 지역) ····· 258
[표 6-26] (협력/인프라) 정책목표별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 ····· 262
[표 6-27] 전국 시도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현황 ····· 264

[그 림 차 례]

[그림 1-1] 전북 연도별 출생건수와 합계출산율 ····· 3
[그림 1-2] 전북 연도별 출생아수와 사망자 수 ····· 3
[그림 1-3] 전국과 전북 생산가능인구(15-64세) 연도별 추이 ····· 4
[그림 1-4] 전국과 전북 총부양비 연도별 추이 ····· 4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9

[그림 2-1] 제3차와 제4차 기본계획의 비교 ····· 15
[그림 2-2] 경상북도의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및 조직구성 ····· 33
[그림 2-3] 충청북도의 외국인관리팀 신설 및 조직구성 ····· 34
[그림 2-4] 전라북도의 외국인 정책 담당 조직구성 ····· 39

[그림 4-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 63
[그림 4-2]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 64
[그림 4-3]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 65
[그림 4-4]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 66
[그림 4-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21) ····· 67
[그림 4-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국적 대륙별 구성비(2021) ····· 68
[그림 4-7]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국적별 구성비(2021) ····· 68
[그림 4-8]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인구구성(2023.3) ····· 70
[그림 4-9] 전국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2023.3) ····· 70
[그림 4-10]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와 거소신고 외국인 제외)의 거주 지역별 현황 ····· 71
[그림 4-11]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와 거소신고 외국인 제외)의 거주 지역별 현황 ····· 71
[그림 4-12] 전북 연도별 등록외국인 추이 ····· 72
[그림 4-13]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 73
[그림 4-14]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구성비(2023.3) ····· 74
[그림 4-15]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추이 ····· 75
[그림 4-16] ‘13년 대비 ‘23년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증감률 ····· 76
[그림 4-17]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별 구성비(2023.3) ····· 77
[그림 4-18]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TOP10)의 성별 구성비 ····· 77
[그림 4-19] 전북 전체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구성비 ····· 79
[그림 4-20] 전북 전체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구성비 추이 ····· 81
[그림 4-2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2021) ····· 81
[그림 4-22]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2021) ····· 83
[그림 4-23]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 85
[그림 4-24]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체류기간 현황(2021) ····· 86
[그림 4-25]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2023.3) ····· 90

[그림 4-26]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증감 현황('19년vs'23년) ····· 91
[그림 4-27]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 92
[그림 4-28] 전북 시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비(2023.3) ····· 93
[그림 4-29]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에 대한 시군별 비중 ····· 95
[그림 4-30]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2021) ····· 98
[그림 4-31] 전북 외국인근로자 추이 ····· 99
[그림 4-32]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비중(2021) ····· 99
[그림 4-33] 광역자치도별 외국인근로자 산업별 현황(2022) ····· 101
[그림 4-34] 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23.3) ····· 102
[그림 4-35]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유형별 현황(2023.3) ····· 102
[그림 4-36] 업무유형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시도별 점유율(2023.3) ····· 103
[그림 4-37]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구성비(2023.3) ····· 104
[그림 4-38] 전국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03~2022) ····· 108
[그림 4-39] 전북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 108
[그림 4-40] 전북 대학 교육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 110
[그림 4-41] 전북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학위과정별*전공별 현황(2022) ····· 110
[그림 4-42]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현황 ····· 112
[그림 4-43]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 ····· 112
[그림 4-44]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시도별 구성비(2023.3) ····· 113
[그림 4-45]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구성비(2023.3) ····· 115
[그림 4-46]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시군별 구성비(2023.3) ····· 115
[그림 4-47]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시군 구성비 ····· 116
[그림 4-48]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구성비(2023.3) ····· 118
[그림 4-49]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시군 구성비 ····· 119
[그림 4-50] 전국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 현황(2022) ····· 120
[그림 4-51] 전국 국민의 배우자의 시도별 구성비(2023.3) ····· 121
[그림 4-52]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국적별 구성비(2023.3) ····· 122
[그림 4-53]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시군별 구성비(2023.3) ····· 123
[그림 4-54] 전북 국민의 배우자 주요 국적별 시군 구성비 ····· 124
[그림 4-55] 전국 및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 ····· 125
[그림 4-56]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구성비(2023.3) ····· 126
[그림 4-57]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성별*연령별 분포(2023.3) ····· 127
[그림 4-58] 전북 국민의 배우자 연령대별 시군 구성비 ····· 127

[그림 5-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여건 진단 결과 ····· 147
[그림 5-2]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 전략 도출 ····· 152
[그림 5-3]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안) ····· 158
[그림 5-4]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 방향 ····· 160

[그림 6-1] 전라북도 재외동포 연수원 조감도 ····· 173
[그림 6-2] KDI 세종글로벌리더센터 건축설계 ····· 176
[그림 6-3] 세계농업대학의 대한민국 유치와 전북 입지의 종합여건 ····· 177
[그림 6-4] 세계농업대학 배치구상도(안) ····· 177
[그림 6-5] 산학융합특구 내용 ····· 183
[그림 6-6]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안내 내용 ····· 185
[그림 6-7]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사례 ····· 190
[그림 6-8] 공공형 공유 기숙사 건립·운영사례 _인천 송도의 라이크홈 ····· 196
[그림 6-9] 뿌리산업의 정의 ····· 211
[그림 6-1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 217
[그림 6-11] 김제시와 인근지역 근접성 ····· 218
[그림 6-12] 김제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위치 ····· 218
[그림 6-13] 지역활력타운 부처별 주요 역할 및 개념도 ····· 219
[그림 6-14]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현황 ····· 243
[그림 6-15]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2안) ····· 265
[그림 6-16]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3안) ····· 265
[그림 6-17]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지원추진단(TF) 구성 ····· 265
[그림 6-18]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의 이민자 통합거버넌스의 구조 ····· 271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전라북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 지속적인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감소, '16년부터 인구데드크로스 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 전북 출생아 수는 '93년 25,737명에서 '05년 15,745명까지 감소, '22년은 '93년 대비 약 73%가 감소한 7,000명으로 나타남
- 전북 '22년 합계출산율 0.82명.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59), 부산(0.72), 인천(0.75), 대구(0.76) 다음으로(다섯 번째) 저조, 광역 도 단위 중에서는 최하위
- 전국보다 4년 빠른 전북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은 매년 심화, 인구 170만 명 붕괴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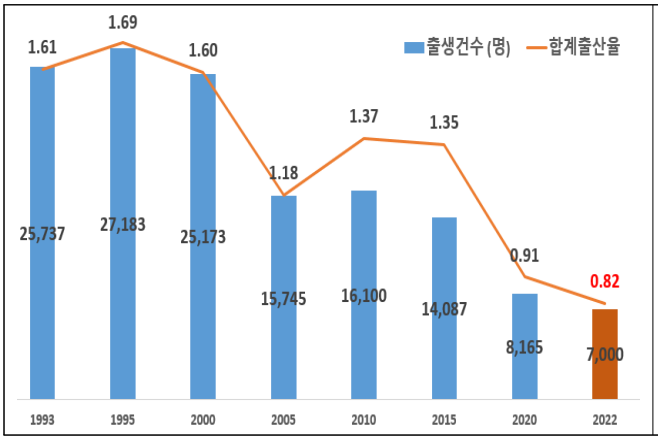

[그림 1-1] 전북 연도별 출생건수와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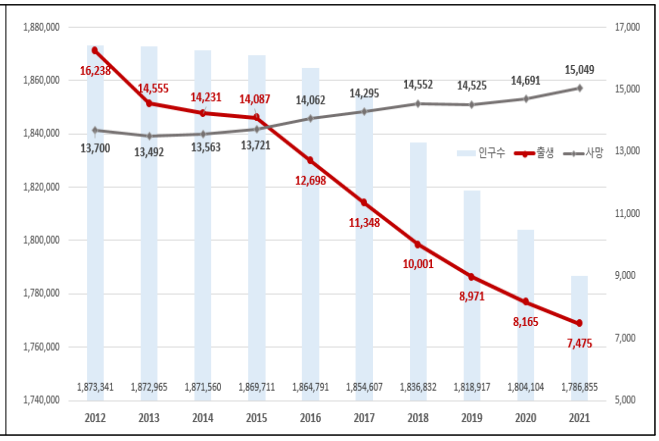

[그림 1-2] 전북 연도별 출생아수와 사망자 수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주요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지속 감소세, 향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며,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

- 전북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년 약 128만 명에서 '20년 120만명(-8만명)으로 감소, '30년 약 100만명('20년 대비 -20만명)으로 감소, '40년에는 100명대가 무너진 82만명, '50년 67만명('20년 대비 약 50만명 감소)까지 감소 예측
  - 전북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년 66.9%에서 '30년 61.2%('20년 대비 -5.7%p), '40년

51.2%('30년 대비 -10%p) 등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율 감소 폭은 더 급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평균 생산가능인구 비율보다 평균 약 5%p 낮게 나타남

- 전북 주요 생산가능인구(25~49세) 감소율은 생산가능인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급감할 것임
- 한편, 총부양비는 2023년 51.3명(생산연령인구 1백명당)에서 2030년 63.4명, 2040년 95.4명, 2050년 119.7명으로 지속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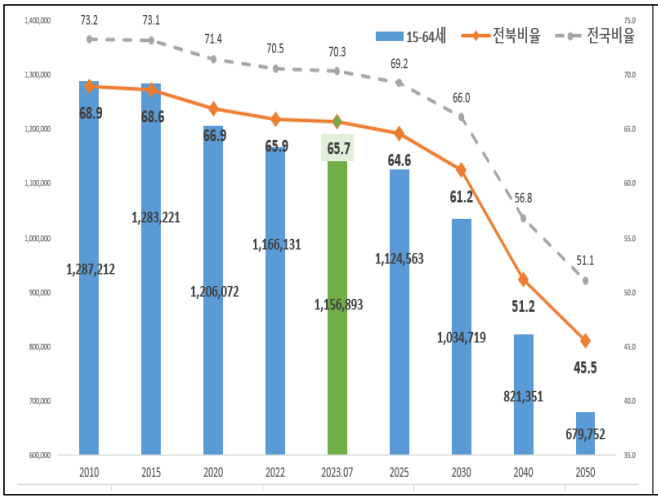

[그림 1-3] 전국과 전북 생산가능인구(15-64세)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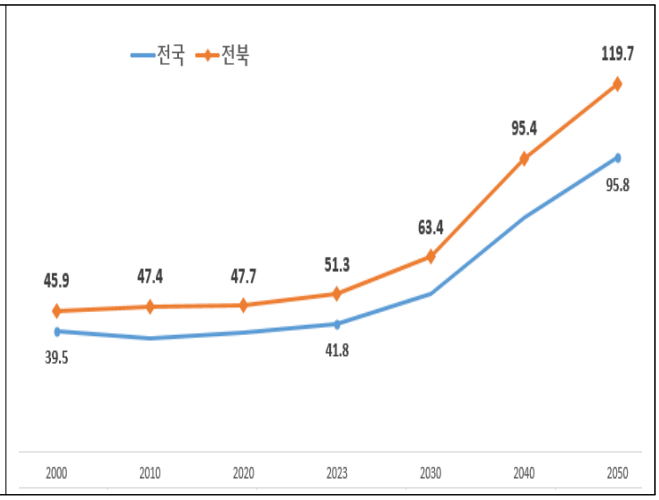

[그림 1-4] 전국과 전북 총부양비 연도별 추이

❍ 또한, 전북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 발생 등 지방소멸 위기 봉착

- 전북의 약 71.4%인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행안부, '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선정)이고, 향후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
- 전북 인구 수도권으로 유출 심화,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20·30대 청년층, 대학·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인구가 수도권·대도시 이동으로 지역간 인구규모 불균형 및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위기 집중
  - 수도권 인구 비율 50.2%('20년 기준), 비수도권 인구 50년간 33.1% 감소 전망
    * 수도권 인구집중도(%): ('90) 42.8 → ('00) 46.3 → ('10) 49.3 → ('20) 50.1 (국토연구원, '22)
- 전북 '22년 기준 학령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0.6%(87,796명)이며, 2000년 대비 43%(142,343명) 감소, 농어촌지역의 학령기 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역사회 해체 우려
  - 전북 2023학년 신입생 0명인 학교 총 23개교(초 20개교, 중 3개교), 신입생 10명 미만인 학교 또한 총 27개교(초 13개교, 중 13개교, 고 1개교), 전북 읍면동 지역 중 초등학교 없는 지역 37.8%, 중학교 없는 지역 58%, 고등학교 없는 지역 76.7%

▮ 인구·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 산업현장별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저출산 정책에서 외국인 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 전환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최근까지 추진해온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인력난 해소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제4차 인구정책 TF 추진과제의 방향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이민 유입 확대로 일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 제시

- (제1기 인구정책 TF, 2019)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우수 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 통합, 현장 수요 부합 외국인력 도입·배정 방안 마련, 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고학력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신설 등
- (제4기 인구정책 TF. 2022)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방안, 코로나19로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와 미래수요 대비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 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과 유치 방안 등 제시

❍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조업과 더불어 농어촌분야 등 각 분야별 산업현장에서 노동 인력난 심화 및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 증가

- 매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력 유입 중단 등 전북지역 각 산업 분야별 노동 인력난 심화
  -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현장의 노동 인력 부족 인원을 약 20만명 후반('10년)에서 '22년 6월 64.2만명 수준으로 증가 발표

▌지역사회의 증가하는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수요 맞춤의 다양한 신규 외국인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 필요

❍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

- 총 50개 과제 중 42개 과제가 결혼이민자(자녀)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8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위임 및 공동사업, 4개 과제만 자체 과제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 통합 분야 이외 안전 분야의 사업과 예산은 부재하고, 협력과 인권 분야 사업과 예산도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한편,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 지속 증가 대비 전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대상별·분야별 신규 정책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

-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재외동포) 등 대상별 지원정책,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 외국인 유입 및 정착·정주를 위한 단계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 등

나. 연구 목적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지역사회 내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양적 수요 증가 대비 전북 차원의 외국인 정책 유형별 및 분야별 신규 정책 대응에 미흡한 상황. 무엇보다 급변하는 외국인 정책 환경과 여건 및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로드맵 마련 필요

❍ 이에 전북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증가하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에 부합한 전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지역의 환경·여건과 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토대로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정책 목표·내용과 연계하여 중앙과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연속성·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시·군

❍ 기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4년, 목표연도 2028년

-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2023년 ~ 2027년) 기간 연계

❍ 외국인 정책의 정책 대상 범위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외국인주민) 정의에 의거 전라북도 관내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 함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근거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하므로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며, 취업·유학 등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기타 외국인 등이 있음

나. 연구 내용

(1)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 중앙부처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법무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방향·내용, 최근 정책 동향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TF 등 외국인 정책 동향

❍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전북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내용 검토, 관련 인프라 현황

(2) 외국인 정책 해외사례 분석

❍ 지역 이민정책 관련 사례 분석 (캐나다, 호주)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관련 사례 분석 (싱가포르)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사례 분석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3) 전라북도 외국인 현황 및 특성 분석

❍ 전라북도 외국인 기본현황 분석

- 전북 외국인 규모(행정안전부, 법무부 기준)
- 국적별·유형별(체류자격별)·14개 시군별·연도별 외국인 현황
- 14개 시군의 외국인 유형별 분포

❍ 외국인근로자 현황 분석

- 연도별·국적별 현황
- 산업별·취업자격체류 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 외국국적 동포 현황 분석

- 외국국적 동포 현황
- 외국인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현황

❍ 기타(불법체류, 국민의 배우자 등) 현황 분석

(4)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현장·학계 전문가 자문

❍ SWOT 분석 및 기본전략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 추진체계

(5)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분야별 세부 과제(안)

❍ 분야별 세부 과제, 핵심사업, 단·중·장기과제 분류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중앙부처별(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및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관련 행정자료, 현황보고서, 자료집, 단행본 등 검토
- 외국인 정책 관련 학술논문, 정책연구 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

❍ 각종 통계자료 및 2차 자료 재분석

- 중앙 각 부처별 발표 통계자료 분석, 도내 부서별 행정자료 분석
- 이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 분석(2021, 2022)

❍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현장·학계 전문가 자문

- 현장·학계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관점에서 (1) 전북지역의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주요 실태와 현안 및 민·관 서비스 현황 파악, (2) 기존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3) 국내외 사례 중 전북에 도입해야 할 우수사례 추천, (4) 전북도 지역만의 특성, 주요 현안을 반영한 종합계획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 발굴 등을 위해 27명의 현장·학계 전문가 대상 자문실시

나. 연구 추진 절차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 추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고, [그림1-1]과 같이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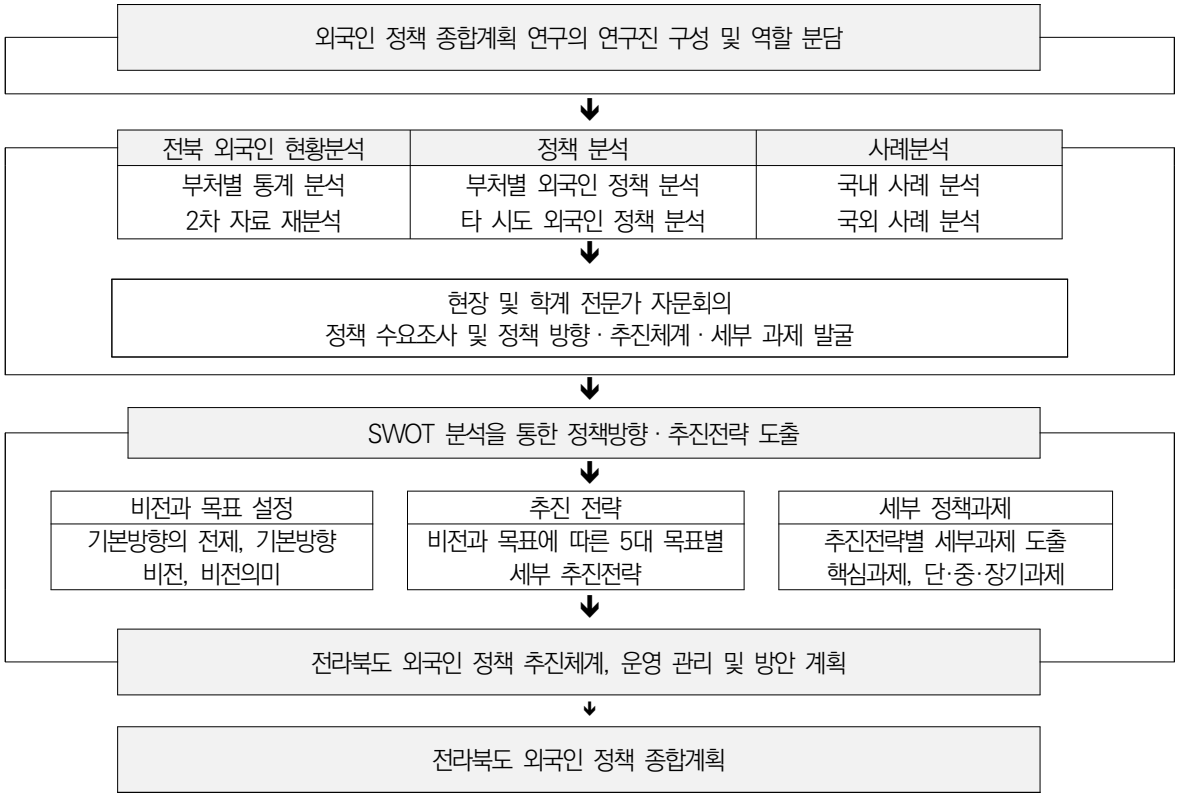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제2장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1. 중앙부처별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2. 타 시도별 외국인 정책 및 동향 분석
3. 전북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1. 중앙부처별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가.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 (법적근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2007년 7월 18일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임. 통제중심의 출입국관리 행정에서 국민과 외국인(이주민)이 서로 이해·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과 외국인(이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도모 및 개인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내용을 확정함

-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08 ~ '12), 제2차 기본계획('13~'17), 제3차 기본계획('18~'22)까지 발표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계획이면서, 향후 5년 단위로 한국의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및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을 담아 실행하고자 하는 기본 설계도라 볼 수 있음

❍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08~'12)에서는 4대 정책목표별 169개의 세부과제가 선정되어 약 1조 3,364억원 규모의 세부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중앙부처별 추진 과제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과제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행정기관 6,406억원, 지방자치단체 6,958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별 전체 예산 중 54% 정도가 사회통합 분야였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개방 분야로 나타남

❍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신규과제 발굴과 관계부처의 검토회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5대 정책목표별 146개 세부과제가 선정되어 약 3조 3,10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실행됨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정부 2조 1,770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 1,337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과제 수는 289개 ~ 207개 사이로 증감을 반복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과제 수 또한 948개 ~ 1065개로 증감을 반복함

-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분야를 보면, 경제활성화지원과 인재유치분야의 재정 투입이 6억 2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6%를 차지함. 다음으로 사회통합 분야가 5,465억원으로 36.3%를 차지함

❍ 제3차 기본계획 또한, 이민정책연구원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세미나, 관계부처 간담회, 부처별 의견수렴, 외국인 정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5대 정책목표별, 18개 중점과제, 166여개의 세부과제와 2조 6,077억원의 재정규모의 사업을 실행함

[표 2-1] 각 차수별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정책방향 및 주요 내용

구분	제1차 기본계획(2008 ~ 2012)	제2차 기본계획 (2013 ~ 2017)	제3차 기본계획 (2018 ~ 2022)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인류국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목표	◦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질 높은 사회통합 ◦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인권옹호	◦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사회통합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국민과 외국인 안전한 사회구현 ◦ 국제사회화의 공동발전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국민/이민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협력 바탕의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4대 정책목표, 169개 세부과제, 1조 3,364억 원	5대 정책목표, 146개 세부 과제 3조 3,107억 원	5대 정책목표, 166여개의 세부과제 2조 6,077억
중점과제	◦ 우수인재 유치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 다문화 이해 증진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 보호과정 외국인 인권 보장	◦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위한 유학생 유치 ◦ 국적과 영주제도 개선 ◦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민자 사회통합 위한 인프라 구축 ◦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 글로벌 환경 조성 ◦ 질서유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성장동력 확보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유입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 지역사회 참여 활대 ◦ 체류 외국인 관리체계 선진화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특징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 조성 인권·다문화·민원편의 제공 등 가치 강조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 최대한 반영,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	질적 고도화 및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체계와 체류·영주 연계강화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 정책 추진

❍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향후 급감할 것으로 예견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연시키는 보완책으로 활용하고자 함

○ 외국인 유입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주·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을 강화시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의 외국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다양한 인재 육성·유인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체류외국인 활용 정주 경로 구축 및 확대 검토로 인력난 대비

○ 안전 분야는 제1차~3차까지의 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제4차에서는 안전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마련과 불법체류 환경 억제 및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간 쌍방의 상호교류 및 이해제고의 사회통합 정책 강화와 외국인 차별·혐오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의 내용 강화함

○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란 비전을 토대로 5개 영역별 정책목표 하에 18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됨

- 정책목표 '경제'분야 중점과제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 연계한 경제성장 등 4개
- '안전'분야의 중점과제는 이민 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등 3개
- '통합'분야 중점과제는 질적 향상된 체계적인 사회통합 실현,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역사적 유대에 기반 한 공생 성장 등 4개
- '인권'분야는 실질적·다각적인 이민자 인권보호, 사각지대 없는 세밀한 안전망 확보,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등 3개
- '협력/인프라'는 범정부가 협력하는 이민행정 추진체계 구축, 정책 수요자와 소통하는 이민행정 수립,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행정 서비스 과학화, 선진국격에 부응하는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 4개

○ 2023년~2027년까지의 재원규모는 약 1조 2,735억원, 사회통합분야 비율이 59.7%로 가장 높고, 이민 활용 경제화 지역발전 분야는 28.5%로 추계되고 있음

구 분	비전	정책목표	목표별 분포	지표	특징
제3차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①[개방] **②[통합]** ③[안전] ④[인권] ⑤[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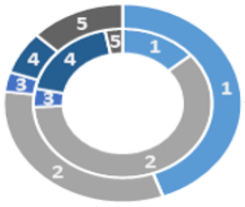	과제: 166개 예산: 2조 6,077억 계획 달성률: 72.0%	5개 정책목표 체계 유지 [안전]이 [인권]영역보다 우선순위를 차지
제4차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①[경제]** ②[안전] **③[통합]** ④[인권] ⑤[협력/인프라]		과제: 통합 분야에 집중 **예산: 경제/개방 분야에 집중** 계획 달성률: 78.4%(평균)	중심과제: [통합] 영역 **예산집중: [개방] 영역** 환경에 따라 정책목표별 우선순위가 변화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 분과위원회 확대

*안쪽: 정책목표 영역별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수** 비율 *바깥쪽: 정책목표 영역별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비율

[그림 2-1] 제3차와 제4차 기본계획의 비교

▌ 법무부의 외국인 정책 동향[1)]

○ 외국인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각 부처별로 각기 시행되는 개별정책을 통합하고 통일된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법무부의 역점사업으로 신설하고 이민정책연구원의 역할·기능·규모 확대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을 위해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대상 '5개년 불법체류 감축계획('23~'27)' 수립 및 추진. 향후 5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23년 기준 41만명의 절반 수준인 '27년까지 20만명대로 감축 방침. 이를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경철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과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 정책 시행을 위해 국제기준 맞춤 외국인 인적정보 표준화, 외국인 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마련,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등 관광과 소비 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 타 부처와 민간 정책 지원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미래 우수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 추진, 인구감소지역 정착 장려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및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 이공계 특성화 기관 핫라인을 구축함

-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저숙련비자) 11만명 신규도입, 고용허가제 개선 및 보완
- 안정된 숙련인력 공급을 위해 E-7-4(숙련기능비자) 2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 조선업 외국인력 별도 쿼터(400명) 신설하여 조선분야 유학생 실무능력 검증 면제
- 외국인근로자 유입 규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하반기 시행 등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비자발급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정식 운영에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인구감소지역(행안부, '21년 지정한 89개 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운영('22.10.4 ~ '23.10.3)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로 정착화시킬 계획임

1) 법무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자료 참고 작성

-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고, 경제활동 촉진 및 인구 유입과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심화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외국인(동포와 동포가족) 유입정책 추진
  - 외국국적 동포의 80% 이상도 수도권에 집중·밀집 거주
- 시범사업은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조건으로 거주비자(F2)와 동포비자(F4)를 선 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 취소하는 조건임
  - 유형1(지역우수인재)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정이 가능한 지역거주비자(F-2)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외국인 확보
  - 유형2(동포가족)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동포와 가족자녀와 배우자) 자격변경 대상 :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가족), 특별시/광역시/시에 거주하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가족, 한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은 1차(‘22.9.5)와 2차(‘22.12.5)로 이루어졌으며 1차 때 15개 지역, 2차 때 13개 지역이 선정되어 최종 28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전북은 6개 지역이 선정됨. 유형1(지역우수인재) 시범지역은 26개, 유형2 (동포가족)는 27개임

[표 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최종 선정 지자체 현황

구분	지자체명	시범사업 지역	배정 쿼터
1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동구	110
2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170
3	충청남도	보령시(유형1만), 예산군	150
4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400
5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6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군,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290
7	대구광역시	남구	
8	경기도	연천군, 가평균	80
9	경상남도	고성군	80

자료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별 정착지원방안 자료 참고

[표 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별 정착지원 사업 현황

구분	지자체명	정착지원 사업 현황
1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종합상담(임금·고용·산재·기타 생활 상담_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국제교류재단) ▸통·번역서비스 ▸긴급지원(질병·사망·경제적 어려움 시 의료비·생활비 지원) ▸외국인주민 교육지원(한국어, 노동법, 안전, 건강, 운전면허 교실) ▸취업박람회 개최(취업 정보 및 상담)·취업 상담과 일자리 매칭_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
2	충청북도	(제천) ▸ 일자리 및 한국어·문화적응 지원 _ 일자리종합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 (단양)▸ 취업지원 : 취업상담·일자리 매칭 _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직자 지원: 취업준비교육, 취업상담 등 ▸한국어교육 지원(기초 및 심화과정, 토픽대비) ▸안전보험(폭발, 화재, 붕괴, 강력범죄상해 등 19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코딩, SW자격증 3급, 컴활자격과정, 이미용 교육 등) 제공
3	충청남도	(보령)▸외국인 청년동아리 구성 운영지원 ▸유학생 취업 기초 소양교육 ▸대학-시-기업간 취업 MOU체결로 외국인근로자 일자리 지원 (예산) ▸우수기업 취업(취업상담, 동행면접,기업연계 등), ▸한국어교육
4	전라북도	(정읍) ▸한국어교육, 문화탐방, 동아리 (남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기업의 노동자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 지원) (김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1인당 100만원, ▸한국어교육,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상담회 ▸유학생 취업 및 지역정착 지원 교육(지역정보, 한국문화이해 등) 및 정기간담회 (순창) ▸기숙사 임차비 지원(월세 일부지원),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한국어교육, 문화탐방, 동아리)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고창) ▸나눔바자회, 힐링문화체험, 취미활동 육성지원 등 (부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월세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한국어교육, 국적취득반, 직업훈련교육 운영 등)
5	전라남도	(공통)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법률상담지원 ▸ 의료비 지원사업 ▸도민 안전 공제 보험 (장흥) ▸한국어교육 (강진) ▸외국인쉼터 운영 (해남) ▸현장맞춤형 자격취득 교육 지원 (영암)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자격취득 교육 지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상담, 소통공간, 북카페 운영, 회의 위한 미디어실 제공)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역량강화실, 세탁소, 안전교육 체험관 등)
6	경상북도	(공통) ▸대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주거·교육정보 제공
7	대구광역시	(남구) ▸한국어기초교육, 기초생활질서 교실
8	경기도	(가평) ▸취업상담, 구인구직매칭, 일자리 박람회 취업연계 등, ▸주거·교육 정보제공(한국어교육, 문화소통, 자조모임 등) ▸기숙사 임차료 지원(월 30만, 연 최대 10개월) (연천) ▸제조업 내 기숙사 제공, 지역현황 교육 및 정착지원 교육
9	경상남도	(고성) ▸한국어기초교육, 기초생활질서 교실, 한국문화이해교육,

자료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별 정착지원방안 자료 참고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 산업현장별로 수요 대비 외국인숙련기능근로자 공급 부족으로 인력난 및 생산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이에 최근('23.7)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인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함

-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기존 5천명에서 3만 5천명 확보를 보고함 ('23.6.28)

❍ (추진방법) 기존 숙련기능점수제(E-7-4)를 현장 수요에 맞게 간소화하여 '23년까지 한시적 운영.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수-심사 등은 100%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관별 업종별 인력 부족 상황을 검토한 후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여 결정
- '23.8.1.부터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접수 및 심사 추진

❍ (대상) 산업현장에서 적응력과 기술·기능숙련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숙련기능인력으로 선발하고자 하며, 동일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한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보다 우대

❍ (주요 특징) 과거 적용하던 연간 쿼터 배정 비율을 지속 반영하여 관계 부처추천 쿼터를 배정하되 기존 추천제도가 없던 건설업·광역지자체에도 추천 쿼터를 배정함. 그리고 우수인재의 경우 추천 없이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고, 상황에 따른 재배정 및 신규 영역 배정 목적의 탄력배정분 쿼터도 별도 설정

- 관계부처는 소관 업종별 배정된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 광역지자체는 업종에 상관없이 쿼터 범위 내에서 추천

[표 2-4] 숙련기능인력(E74) 관계부처별 및 지자체 추천 등 쿼터 배분 현황

구분	전체	우수 인재 (비추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추천							탄력배정쿼터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광역 지자체	
			제조업	뿌리산업	농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건설업		
K-point	30,000	6,000	3,900	3,000	3,000	3,000	1,500	1,500	5,100	3,000
비율(%)	100	20	13	10	10	10	5	5	17	10

자료 :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관계기관 회의 보조자료

나. 제4기 인구정책 TF의 외국인 관련 정책 기본방향

❍ 출산율의 하락폭의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또한 기존 전망보다 심각하며 학령인구 감소 확대 등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확보 필요

❍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방안 제시

- 코로나19로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와 미래 수요 대비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과 유치 방안 제시(비자, 세제, 정주여건 등)

-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방안 제시

〈제1기 ~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대책〉

(1기) 우수인재 특별 비자 신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한기간(3개월→1개월) 단축 등

(2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운영, 이공계 학부 유학생 비전문인력(E-9) 취업 허용, 범정부 외국인 통계 DB구축 등

(3기) 외국인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원격 근무자 비자 신설 등

- 유망산업 분야 취업비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장기근속 숙련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변경 확대
- 전문 자격 보유 외국인력 활용 체계(사전등록제 등) 구축 검토

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 (법적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고용법)

❍ 2004년 8월 14일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과 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외국인근로자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며,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됨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과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 사업,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 사업,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함

- 그 외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제22조(차별금지)와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유형별(제도업·농축산업 등) 현장에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도(외국인근로자 E9, 동포방문취업제 H2)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 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력 대상 사업주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그리고 자진 귀국 유도 및 영세기업의 숙련인력 지속 사용 지원 등을 위한 특별한국어시험재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 대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인력상담센터 운영,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사용자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을 위한 방문 통역 지원), 종합체류지원 서비스(영세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외 고용허가제와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사업주 교육,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갈등해소와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권익보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표 2-5]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

정책/사업	주요 내용
고용허가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일반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E9), 동포고용 : 방문취업제(H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외국인근로자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제조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일 업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도	재고용 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 높여, 자진 귀국 유도 및 영세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 (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 체류만료 이전 자발적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체류자격 합산 국내 체류기간 5년 미만),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방문취업동포(H2), 대상 고충상담, 한국어와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사업장내 애로해소, 종합 체류지원서비스, 사업주교육,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문화 차이, 언어소통 한계로 어려움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5개 소지역센터) ※ 전북 전주/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성요셉근로자의집 등 2개소 운영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대상 고용과 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1577-0071) 설치·운영,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외국인노동자위한 16개국 언어 지원 서비스를 연중무휴(09:00~18:00)로 실시

자료 : 고용노동부 외국인 대상 지원정책(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do)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

❍ (기존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한계) 특정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도입되어 현장에서 정착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 공급과 활용의 한계가 큼. 또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3년+1년 10개월 이후 출국하면 1회 재입국 가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기근무한 숙련인력의 활용이 어렵고, 장기간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불법체류 유인으로 작용함

-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E-9 → E-7-4로 전환)가 현장의 필요 숙련인력의 수요 공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전환 규모와 엄격한 전환 요건으로 적극 활용의 한계가 큼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조업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 결정하고 인력 배분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도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 또한 농축산업 등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 및 개별 사업장의 고용관리 특성 등을 고려한 외국인력의 탄력적 대응에 한계 발생

❍ 지속 증가하는 외국인력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인권 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강화가 더욱 중요하게 됨.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22년 40개소) 등을 통해 고충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력 효율적 체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 외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통계 및 분석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전체적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수급 분석에도 한계가 크며 산업현장의 필요 적정 인력 운용을 위해 내·외국인의 노동시장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또한 필요한 상황

❍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외국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란 비전과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란 목표 하에 4개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19개의 사업을 개편함

- 기본방향 외국인력숙련체계 구축을 위해 숙련도 높은 준숙련인력 체계적 양성, 장기근속 특례 통한 준숙련인력 양성 사업장 외국인력 배정 시 선발 가점 등 우대하고, 준숙련인력 활용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숙련 활용 강화,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사업장변경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폴리텍대학 내 준숙련 외국인근로자 전용 직업교육과정 신설 검토 등 직업 훈련 우대 등을 실시함

-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력 허용 시 업중 외 직종도 함께 고려하여 활용 다양화로 인력난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력 필요 부문과 적정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 강화, 원활한 인력의 이동과 활용의 여건 조성(사업장 고용한도 상향, 신규한도 폐지 등)

- 외국인력의 사회통합을 위해 근로여건개선, 체류지원, 사업장 내 갈등 완화 등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다각적인 지원 강화(공공기숙사 확충 지원, 임차료·통근 지원, 숙소정보 제공 강화,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통역원 확충,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예방조치 책임과 의무 강화,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사업장 우대 및 안전교육 강화

-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자문기구 설치를 통해 상시 분석체계 구축, 인력부족 업·직종 리스트 작성, 외국인력 수급 현황의 전문적 분석을 위한 인력부복 업종 주기적 심층 분석 등

❍ 특히 개편된 고용허가제 내용 중 외국인력 체류 지속 유지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입국초기 외국인력 대상 방문 취업 적응 지원 사업 등을 확대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이나 주거환경 개선 시 외국인력 배정에 우대 및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강행
- 2023년부터 즉시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한시적 상향(20%) 등이 있음

[표 2-6]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

기본 방향	추진과제	주요 내용
산업현장 수요 부응의 외국인력 숙련형성 강화	준숙련인력 양성	◇준숙련인력 활용 시스템 신규 도입 ◇장기근속 특례 인력 체류기간, 사업장변경 등 연계 인센티브
	외국인력 직업훈련 강화	◇산업현장 연계 훈련지원 ◇재직자직업훈련 직종 단계적 확대 및 참여사업장 인센티브 ◇산업부-중기부 등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 연계 강화 ◇숭출국 현지에서의 직업훈련 강화, 국내 직업훈련 연계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인력 활용방식 다양화	◇업종기준 외 직종 기준 활용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도입 허용 ◇일시적·간헐적·비공식 일자리 외국인력 탄력적 활용 방식 검토 ◇유학생 E-9 전환 특례 신설 인력 활용 ◇H-2 허용업종 확대
	인력수요 파악 체계화	◇허용 업종 결정 체계화 ◇지역·산업 인력 수용 대응 - 지역 수용 반영 체계확 ◇고용부-광역지자체 협의회 정례화(반기별)
	외국인력 활용 상 애로 해소	◇인력부족 업종 밀집지역, 친환경 산업단지 등에 고용허용인원 상향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별 총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H-2 건설업 취업한도 폐지
외국인력 사회통합 위한 체류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	◇공공기숙사 등 확충 지원, 임차료·통근지원, 숙소정보 제공 강화 등
	체류지원 강화	◇외국인력 특성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통역원 확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현행 40개소) 확대 운영 - 입국 초기 취업적응 지원 강화, 사업주 대상 고용·노무관리 상담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근로여건과 주거환경 개선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허용 사유 확대
	산재 시 책임 강화 및 안전사업장 우대	◇외국인력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받은 사업당 외국인력 고용 제한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사업장 우대

	안전교육 강화	◇ 교육영상 16개 송출국 현지어 제작, 현지 문화 특성 고려 국가별 특화 콘텐츠/사례집 제작 보급, 가상체험 활용 ◇산업단지/협·단체 등과 연계 찾아가는 외국인교육 확대
	합법적 고용환경 조성	◇외국인력 도입규모 불법체류율과의 연계 강화하여 송출국의 자발적 귀국지원 노력 유도 ◇반복·상습적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과태료 상향, 고용장려금 수급제한 ◇불법고용 단속 전담인력(현 302명) 확충 추진
외국인력 적재적소 활용 위한 인프라 확충	상시 노동자 분석 시스템 구축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 설치로 상시 분석시스템 구축 - 인력부족 업·직종 리스트 작성
	통계조사 고도화	◇주기적 인력수요 심층 분석 : 인력수급 현황의 전문적 분석 ◇전담조직 확충 : 노동시장 관점의 체계적·전문적 인력 도입·관리

자료 : 산업현장과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022.12.29.) 참고

라.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정책 현황 및 동향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스터디 코리아 3.0) 발표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특히 지방대학 유기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 약화로 국가별 유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기획조정실 글로벌교육기획관 산하에 해외인재 유치 지원 담당관을 구성하여 최대 1년간 한시적 운영

○ 해외 인재 전략적 유입과 국내 정착형 인력 육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서 교육 및 국내 취업과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스터디 코리아 3.0)' 수립·발표 예정

Study Korea 3.0 주요 방향

❖ **(유치·교육)** 유학수요 및 출신국가 다변화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정부초청장학생(GKS) 확대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취업·정주)** 법무부, 산업부,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비자제도 개선 및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정착 지원
❖ **(기반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 근거 법령 마련, 국립국제교육원 등 전문기관 기능 내실화

▮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23.7.3) 시행

○ 법무부는 교육부와 대학 연계 우수 유학생 유치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23.7.3. 시행)'을 마련함

-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 내용 중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됨
  -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면 됨
  -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은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함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이 가능해짐. E-9(비전문취업)과 E-10(선원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접적 전문성 확보 및 개발해 E-7-4(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 시 도움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이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증빙의 선택권을 확대함
-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함. 전문학사와 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 및 학업성적과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 근무 허용
- 방학 중 아르바이트 분야를 단순노무 분야에서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할 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의무로 규정된 현상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

▮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점검

❍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실시로 매년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점검

❍ 법무부와 교육부 및 대학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체계화 및 관리에 미흡한 대학 대상 강력한 행정적 조치 실시

- (인증제)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학업·생활 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 평가
- (실태조사) 유학생 있는 모든 대학 대상 불법체류율과 한국어 능력 평가 등

마.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정책 현황 및 동향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23.2.10)

❍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자체 참여 확대,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확대

❍ E-9 외국인근로자 수요관련 지방-중앙간 협의회 정례화로 지역별 인력 수요공급이 지역 실정에 맞춰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됨

○ E-7-4의 경우 연간계획 수립 시 광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마련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 맞춤의 실질적인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23.4.4)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기는 등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시대 맞춤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 수를 행정 수요 반영 필요

- 지자체 기구와 인력 운영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 설치 인구 기준에 기존 인구수에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 포함

- 기구 설치 기준 인구에 외국인 포함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2023년 4월 4일 행안부 개정령 입법예고

▌ 외국인주민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 맞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안전·생활·복지·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행안부가 1차 전문가 사전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와 현장 발표 및 전문가 심사와 외국인 주민들의 실시간 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

○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공모)은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약 14개소 내외의 총 사업비 5,600백만원 상당으로 1개소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등의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시설,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공간,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의 집중 거주지역 대상 기초 생활인프라 조성 및 확충

▮ 행정안전부_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시설 개선 등을 위해 '21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국비 28억원 규모의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자체(시도, 시군구) 공모로 추진하고 있음

- '22년 공모 통해 14개소 사업비 5,600백만원(국비 2,800, 지방비 2,800), 1개소 당 최대 3억 지원
- 사업 내용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보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공간, 안전시설, 임시생활시설 및 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확충

[표 2-7] 외국인·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선정 현황(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지역	선정 사업명 (예산)	지역	선정 사업명 (예산)
인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 (95.5)	서울	(구로)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 시설 개선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리모델링(12.5)	부산	(사상) 다문화나눔터 개선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하나공감센터' 설치 (25)	광주	(광산) 세계문화 플랫폼 광장 조성
경기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서비스 공간개선 (35)	대전	폐쇄지하보도를 소공연장, 회의실 등 변경 조성
	(안성)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조성 (200)	경기	(안산) 미디어센터 설립(소통·교류공간 마련)
전북	(전주)외국인주민 소통교류 공간조성 (45)		(시흥) 학교적응과 성장지원위한 서비스 공간 확충
	(고창)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배움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200)	충남	(논산) 인도(보도블럭) 개선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전남	(강진)북한이탈주민 착한스테이 조성 (200)	전북	(군산) 거주 지역 안심거리 조성
	(영암)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200)		(임실) 이주여성의 소통·교류공간, 실내놀이터
대전	서로 다름으로 함께하는 소통·공유공간 '늘(neul)'(200)	전남	(해남) 폐교이용 외국인기숙사 주변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보안카메라 등 설치
울산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보행환경 개선 (200)	경남	(창원) 쉼터 개선(놀이터, 편의공간, 북카페 설치),
강원	(철원) 국경없는 양지마을 조성 (187)		(김해) 외국인주민 어울림소통센터 구축
충북	(청주)외국인주민 안정정착지원센터 구축 (200)	경북	(의성) 무지개 꿈터 신축
충남	(아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분원 조성 (200)		(고령) 커뮤니티 공간 쉼터·배움터로 탈바꿈
계	14개 사업 국비 총 2,000 백만원	계	14개 사업, 국비 총 2,800백만원

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현황 및 동향

▮ (법적근거) 재외동포기본법(2023.5.9.제정)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국가의 책무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평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제2조(정의)의 2 : 재외동포 정책이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 교류·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과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재외동포 거주국 및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재외동포 관련 조사와 연구에 관한 정책,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 등을 말함

-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재외동포의 한인으로 정체성 함양과 한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
  - (재외동포협력센터 역할과 기능) 재외동포 대상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 추진

- 제14조(실태조사)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재외동포청('23.6.5) 신설 및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설치

❍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및 분야별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를 위해 인천에 재외동포청('23.6.5)이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

❍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750만명의 재외동포 대상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을 서울 광화문에 설치함으로써 외교부는 동포대상 연중 24시간 콜센터(02-6747-0404) 운영과 함께 국적, 사증, 병역, 세무, 연금, 보훈 등 행정서비스를 온·오프라인 형식의 원스톱으로 제공

▮ (법무부의 법적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 재외동포법)

❍ 1999년에 법무부에서 제정한 재외동포법(제2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자 혹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을 말하고, '외국국적동포'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혹은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조선족, 고려인, 미국 시민권 획득 한민족, 귀화한 재일 한민족 등)을 말함

❍ (제5조1항) 근거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사회적 적응 및 체류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기능) 출입국 및 체류관련 제도 안내와 관련 동포정책 홍보, 취업·저구·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수행,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동포체류지원센터(지정기간 '21.7.1 ~ '23.6.30) 지정 현황, 총 11개

[표 2-8] 각 부처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용 범위

구분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법령	재외동포법 제2조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외국인고용법 제2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
목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한국 안에서의 지위 보장	재외동포의 민족적 유대감과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지원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범위	F-4, H-2, 한국계 중국인, 고려인 등 국내 체류 동포	한민족 혈통의 해외거주자, 국적 관계 없이 모두 동포	특례고용허가제(H-2)를 외국인근로자라고 함	F-4중 국내 거소신고자 (H-2는 외국인근로자로 분류)

자료 : 진현경(2022).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5(1), 115-146

[표 2-9]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현황('23.6.30 기준)

센터명	주소	지원 업무
경상북도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경상북도 경주	근로·취업 상담, 통역 지원, 행정업무 지원(출입국행정업무.각종기관 동포관련교육 및 기타 온라인업무지원), 생활 안내(주거 및 기초생활안내. 교육·통신·보험·의료·세무 등) 한국어교실 성인반, 어린이 방과후 돌봄교실, 조기적응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인마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입국·취업·법률 상담, 한국어교육, 고려인 등 동포를 위한 자원봉사 실시
너머 (사단법인)	경기도 안산시	노무·체류·건강보험·각종 생활정보 상담, 통번역, 한국어교육, 고려인청소년봉사단, 어머니봉사단 등
다문화마을(사단법인)	경기도 안산시	한국어교육, 쉼터 제공, 체류 상담 등

센터명	주소	지원 업무
대전 다문화센터	대전시 유성구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동포자녀 포함) 한국어교육 및 상담, 직업교육 및 상담, 사회통합/조기적응 프로그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메리크리스마스 축제, 다문화자녀장학금 지급, 체류/국적 상담 찾아가는 다문화시민교육 등
초특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당진시	체류 상담, 한국어교육 등
한국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한국어·컴퓨터·산업안전·법률·귀국·정신 건강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조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동포 전담 체류 상담, 행정 신청 지원, 무료진료사업, 문화행사 지원 등
한민족 연합회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어·스피치 교육, 사진·영상 교육, 미디어교육, 체류 상담, 문화·체육 활동, 한민족신문·KCNTV 한중 방송 운영 등
한중교류협회	서울시 서초구	임금 체불, 체류, 국적 신청 등 각종 사건사고 변호사 상담, 외국인 정책 사항 한중동포신문 게재 및 홍보
한중사랑교회 (사단법인)	서울시 구로구	한국어교육, 주말 쉼터 제공,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취업·생활·건강보험·법률·노무·출입국 상담 등
서남권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통합·조기적응 프로그램, 생활·법률·노무 상담, 한국어·컴퓨터·미디어(영상제작·촬영)교육, 민주시민교육, 문화프로그램, 지역공동체활동 지원(공간 대관), 지역현안 토론회, 다국회 정보번역 등

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7/562262/artclView.do) 자료 참고

바.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현황 및 동향

▮ 법무부+농림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23. 5. 30)

❍ 농어촌지역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심화 및 농어업 노동인력 구조 변화로 농어촌지역 인력 부족에 대한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 이에 외국인력 유입 및 증가

❍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의 파종과 수확시기 등 계절성이 있고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인력 부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5개월이라는 체류기간이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 허용하기로 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분야 : 농작물·수산물의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의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또한, 2022년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124개 지자체, 26,788명)에 추가적으로 107개 지자체에 12,869명 배정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줌

❍ 한편,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지도 강화를 위해 (1)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 농어업분야 외

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추진,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3)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및 합법적·안정적 체류를 위한 (4) 거주환경 개선 지원 추진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가 지속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장 이탈 및 불법체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어촌지역의 수확·출하 시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이에 최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관련 이탈률 가장 높은 국가 대상 국내 모든 지자체에서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2023년부터 3년 동안 제한, 반면 송충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정 방식,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및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 부족 문제 최소화함

❍ 향후 계절근로 도입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해외지사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MOU 및 근로자 유치·관리 등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 모색

[표 2-10] 외국인 유형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체계 현황

중앙	대상	주요 추진체계	추진 내용
법무부	재한 외국인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청·사무소·출장소(52곳)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40곳) -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141곳) - 동포체류지원센터(11곳) - 재한외국인 지원 사이트(3곳)	· (고유업무)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체류 허가 등 · 외국인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 지원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 국내체류 동포의 사화적 적응 및 체류 지원 · 행정 및 생활안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 평가 안내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 고용노동청·지청·출장소(48곳) - 고용복지플러스센터(171곳) - 고용정보사이트(2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곳) - 직업교육훈련기관(103곳)	· 특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보험가입 등 국내 고용 총괄 · 취업 정보 제공 및 고용 관리 -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 외국국적 동포 적응과 입국 직후 직업 교육 지원
교육부	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 학교 · 다문화교육지원 센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 · 시·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 외국인지원센터	·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생활정보 안내와 상담 등
여성가족부	외국인주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230개)	·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적응교육·취업교육 지원 · 한국어교육, 통역·번역,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자료 : 진현경(2022).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다문화사회연구, 15(1), 115-146 참고 재구성

2. 타 시도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가.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 정책 방향

○ 모범적 다문화사회 조성 및 존경받는 대한민국 선도란 비전을 토대로, 떠나는 인력은 잡고, 직접 해외에서 우수 대학원생과 동남아와 CIS 지역의 고등학생 및 가족을 유입하여 대학과 기업 연계 교육, 경북형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조기적응을 통해 경북 도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정착 지원, 사회통합과 인권 지원 등을 가족센터와 비자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입국 단계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초청 장학생제도를 통해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해주고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치된 외국인 대상 초기 조기적응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과 경북지역 탐방, 그리고 법 관련 교육 등을 경북 도립대학교 내 4주과정으로 실시
- 반도체, 이차전지, 세포배양, 전기차, 철강 등 지역 주력 사업과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 양성하고 취업 지원
- 경북 비자센터 운영으로 비자발급지원, 법률 상담 등 정착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경북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통역서비스, 이주민 멘토링 서비스, 생활안정 콜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자녀 학습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 주요 정책 현황

○ ‘고등학생 유학생(부모 동반) 유치 프로젝트’는 직업계고 유학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는 동남아·CIS지역의 외국인학생 대상 경북 직업계고(55개)에 고등학생 유학생을 부모(2명)와 함께 동반 유치 기업과 고등학교 연계교육 및 졸업과 동시에 취업 지원, 특히 고등학생 유학생과 부모 2명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여 학비와 체류비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정책은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3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

○ ‘경북형 초청장학생’은 경북 지역 기업에 5년간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학비와 체류비 지원과 기업-대학 연계교육을 하는 경북 자체의 초청장학생 제도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하여 추진

▮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23.1.1.)과 외국인공동체 지원단(TF)단 구성

❍ 외국인공동체과 3개의 팀, 12명으로 구성하여 신설

- 각 부서별로 나눠져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국 산하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정책팀(5명), 외국인지원팀(3명), 다문화팀(3명) 등 3개 팀, 총 12명으로 구성함
- 외국인 정책팀은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제도(조례) 개선, 외국인공동체 지원단(TF)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및 경북형 비자센터 운영, 외국인유치 정착 모델 발굴 등
- 외국인지원팀은 외국인 지원·협력체계 구축과 관리, 정착 주거지원, 인프라 조성, 가족행사 및 사회통합과 인권 향상 관련 사항 지원
- 다문화팀은 다문화가족정책 기획 및 사회통합 지원

[그림 2-2] 경상북도의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및 조직구성

❍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 지원단(TF) 구성·운영'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경북도 17개 부서와 시군 및 주요 연구기관등과 함께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부서별 외국인 정책 조정과 사업발굴 및 추진 상황을 관리함

- 외국인공동체 지원단 TF 구성 : 경북도의 17개 부서는 외국인 정책반, 외국인유치반, 정착지원반, 사회통합반으로 구성되며, 그 외 이민정책연구원·경북연구원, 교육청·대학, 가족센터,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 등으로 구성

  - 외국인 정책반 : 외국인공동체과, 인구정책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외국인유치반 : 외국인공동체과, 투자유치실, 외교통상과, 교육협력과, 관광마케팅과, 농촌활력과
  - 정착지원반 : 외국인공동체과, 여성아동정책과, 청년정책과, 경제정책노동과, 기업지원과, 보건정책과 등
  - 사회통합반 : 외국인공동체과, 지방시대정책과, 자치행정과

나. 충청북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 외국인관리팀 신설('23.1.1.)과 외국인 정책 자문단 운영

○ 인구정책담당관 산하에 외국인 정책 선제적 대응과 부서별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외국인 정책 통합·조율·연계를 위해 외국인관리팀 신설

○ 외국인관리팀은 팀장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외동포 조례제정 및 외국인주민실태조사 등을 실시함

○ 충북도는 전문가로 외국인 정책자문단 구성 및 충북도, 시·군, 유관기관 등의 실무협의체 고 구성 등 외국인 정책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민선8기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

[그림 2-3] 충청북도의 외국인관리팀 신설 및 조직구성

▮ 주요 정책과 사업 현황

○ 외국인 실태조사 실시로 산업별 특성과 지역차원의 수용 가능한 외국인 규모 조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외국인 정책의 기초 자료 제공

-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외국인력 규모 분석, 충북의 중장기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마련

다. 외국국적 동포 이주·정착 지원 지자체

▮ 충북 제천시 : '재외동포(고려인 등) 이주정책 지원 사업 본격 추진('23.6)'

○ 민선 8기의 역점사업으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4.7)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중 고려인 이주·정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외 협력관(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각 1명) 위촉과 해외(현지) 고려인협회 협력체계 구축,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센터 운영,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이외 고려인 등 이주·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고려인 실태조사 연구 추진, 재외동포 입국·정착지원을 위한 법무부에 제도 개선 건의, 통·번역 전문인력 채용, 고려인 구인 수요조사 등을 실시함

○ 또한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 추진, 관계기관·단체 다자간 업무협약식, 고려인 청소년 초청 문화행사 개최,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 홍보물 제작과 국내외 고려인 이주 희망자 모집 등을 계획함. 그리고 지역사회 멘토링 서비스 지원,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사업, 영주권 취득 및 생활지원 계획과 동포사회 커뮤니티 시설 조정과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 지원대상 : 고려인 등 재외동포(C-3-8, H-2, F-4, F-5 비자로 입국 및 체류하는 자
- 주요내용 :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 재외동포지원센터(총괄) 운영 : 정착프로그램(문화행사, 위탁수수료 지원 등), 단기·체류 시설 운영(버스 임차료, 체험·재료비, 식비 등 지원) 등

▮ 경북 영천시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유형 2(동포가족)의 성과

○ 경북 영천시로 경주 고려인 40여 가족이 이주했고, 경기도 거주 고려인 동포 다섯 가정 14명도 영천으로 이주하는 등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약 50여명 이상의 동포 가족이 기존 영천 거주 119명의 고려인 동포와 합류하여 생활하고 있음

○ 경북 영천시는 이에 영천에 정착하려는 고려인동포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고려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비자변경, 주거마련, 한국어 교육, 일자리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음

3. 전북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정책 환경

▮ 외국인 관련 조례 현황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는 전북도청 교육소통협력국의 대외협력과에서 2023. 3. 31일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16.8.12.)를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함

- 본 조례는 전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이란 전북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일컬음
- 전북도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원내용으로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및 응급구호,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주민과 가정의 보육·교육,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외국인주민의 권익·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등임

❍ 2022년 10월 21일 제정된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전북 관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국내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이란 전북도에 거주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하며, 어학연수생이란 전북도내 거주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의 정규과정」연구과정 이외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일컬음
- 사업으로 도내 생활적응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행사 개최,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등이 있고, 관련 사업 수행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음

▮ 전북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2022년) 내용 분석

❍ 전라북도의 2022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50개의 과제 중 5대

정책목표별 과제수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통합관련 과제수가 39개로 전체 과제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인권 관련 과제 6개, 개방관련 과제 4개, 협력관련 거버넌스 과제 1개로 나타난 반면 안전분야 관련 과제는 부재하였음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시행 과제는 주로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2022년 시행계획의 예산을 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통합분야의 예산이 25,510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개방 분야가 '21년 대비 약 39.7%가 감소한 964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2-1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관제 현황(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1년	2022년	증감률
합 계	50	100%	27,685	26,987	2.5%
1. 개 방	4	8%	1,599	964	39.7%
2. 통 합	39	78%	25,574	25,510	0.3%
3. 안 전	-	-	-	-	-
4. 인 권	6	12%	512	513	0.2%
5. 협 력	1	2%	0	0	0

자료 : 법무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2

▮ 외국인 정책 주요 과제 현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법무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북 6개(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음. 지역우수 인재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E-9) 대상의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정읍 55명, 남원 35명, 김제 130명, 순창 50명, 고창 65명, 부안 65명 등 총 400명
- 추천서 대상 선발 결과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고, 요건 별로는 소득충족 외국인근로자와 도내 대학 유학생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식료품 제조업 취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비자 유형별로는 대부분이 유형 1(거주지+취업지 동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형 4(도내 거주+인구감소지역 취업)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사업은 도내 외국인 주민이 일상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정보부족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은 전주와 익산 2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법률·행정·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 전주와 익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예산은 개소 당 1,500만원씩 총 3천만원(도비 9,000천원, 시비 21,000천원) 임

❍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한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 추진

- 도내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일정금액의 예산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예산을 지원받은 도내 대학은 해외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도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공모사업은 도내 대학 10개, 대학 당 100백만원을 지원하며, 유학설명회, 유학생 워크숍, 한국어교육, 유학생 네트워킹 지원 등에 활용

❍ (외국인주민 지역 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도내 외국인근로자와 사업고용주 대상 한국어 교육, 통역서비스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자문관 활동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와 국외거주 국제교류자문관을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 도정홍보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은 국제교류자문관 33개국의 80명과 26개국의 71개 단체의 해외 호남 향우회임
- 사업내용으로 국제교류자문관과 해외 호남 향우회를 통해 전라북도 해외 홍보와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임. 1995년 처음으로 1개국 3명 대상의 전라북도 해외 자문관을 위촉·운영하여 2019년 33개국 80여명 위촉 운영 중. 소요 예산은 총 64백원임

❍ (공무원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도·시군 공무원 대상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을 통해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 및 기타 과정에 대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 운영

▮ 전북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_ 조직 및 인력 구성

❍ (전라북도청) 교육소통협력국 내 대외협력과의 국제외국인 정책팀에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외국인 정책팀 내에서 전라북도 외국인 정

책을 주로 전담하는 담당 주무관은 1명으로 나타남

[그림 2-4] 전라북도의 외국인 정책 담당 조직구성

○ (14개 시·군 지자체)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는 11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군산과 익산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있었음

○ 고창군은 사회복지과에서 외국인 정책을 다른 사업들과 함께 겸하고 있었고, 나머지 8개의 기초단체에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등 관련 해당 업무와 함께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을 기타 사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음

- 14개 시·군 기초단체는 외국인 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서·팀·주무관이 부재하였고, 다문화정책·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 기타 사업들과 병행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업무 조정 등이 구분되어 있는 않는 상태로 향후 전북도에서 시군과의 외국인 정책 매칭 사업을 추진 시 부서간 혼란과 갈등 발생이 우려됨

▮ 전북 도내 외국인 관련 인프라 현황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은 2015년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간 소통 및 공동체를 조성하여 전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전문 기관임

- 활성화 크게 4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 1개 사업이 프렌들리 전북사업으로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도내 거주 외국인이며, 사업 내용을 외국인근로자 화합마당 개최, 외국인 동호회 지원 사업,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 외국인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함

  -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게차운영기능사, 용접기능사 학교교육 등 2개 교육 프로그램을 5개(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125명 대상 5주~8주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자격증 취득은 체류비자 E-9에서 E-7(가족동반 거주 가능한 체류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호응이 높음

[표 2-12]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의 외국인 대상 지원 사업 현황

주요사업	세부 내용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 국외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거점지역(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미얀마)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 도내 초중고대학생 대상, 청소년모의유엔회의 개최, 국제기구 견학 프로그램, 찾아가는 국제교류 이해교실 운영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도민 및 도내 외국인 대상, 국제어울림 라운지 운영, 세계문화의 날 운영, 한-아세안 교류진흥 사업 운영 (KOICA 영프로페셔널 운영) 도내 청년인턴 1명(7개월) 대상 영프로페셔널의 ODA 사업 실무 참여 기회 제공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전라북도 테마 답사)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계절/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전북 모습 보여주는 테마 답사
프랜들리 전북사업	(전라북도 영문 홍보잡지 제작) (전북 친화 외국인 지원사업) 외국인 동호회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화합마당,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 사업, 외국인 유학생 협의회 공동프로그램
(도 위탁) 고려인 아시아 교류지역 문화 지원 사업	

자료 : 전북 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jbcia.or.kr/) 참고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 35개소 중 전북지역에는 소지역센터 2개소가 전주와 익산에 위치해 있음

○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사업장 변경, 산업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시간 머물곳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전주와 익산에 각각 위치해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 연계 인프라를 살펴보면,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가 있고, 다문화거점센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전주와 익산에 위치해 있음

○ 이외 전북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을 보면 대략 7개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음

[표 2-13] 전북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교기관 및 민간단체 현황

지역	단체명	설립년도	운영주체	주요활동
전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1998 (2002)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전주노회)	ㅇ1996년 6월부터 중국인 노동자 대상 활동 ㅇ노동, 인권 상담 ㅇ의료서비스 지원
	(사) 착한벗들	2012	불교 (참좋은우리절)	ㅇ결혼이주민 사회정착 지원 ㅇ다문화이해사업, 한국어 교육 ㅇ2021년 9월부터 전주시에서 외국인노동자쉼터 위탁 운영
군산	새만금이주민센터	2011	새만금명성교회	ㅇ한국어교육 ㅇ새만금이주민센터 해외지부 운영 ㅇ이주노동자 방법대원 활동, 쉼터운영
	군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쉼터	2012	종교 외	ㅇ상담 및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 ㅇ운전면허 취득 지원, 문화활동지원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	2012	기쁨나눔교회	ㅇ한국어교육 ㅇ상담, 의료지원, 쉼터운영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	1983	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국	(2008년 이주노동자지원활동 본격화) ㅇ공동체 지원 ㅇ노동자 인권 상담 및 행정 소송 ㅇ이주민 쉼터 운영
김제	전북이주민통합센터	2023	개인(협동조합)	ㅇ외국인근로자 지원 ㅇ외국국적 동포(고려인, 조선족 등) 지원

4. 요약 및 시사점

▮ 중앙 부처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 세계화 시대이면서 국제 이주의 시대로 국가간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에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국가간 외국인 인재와 근로자 유치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증가정책을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지속 커지고 있음

❍ 중앙 부처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력과 예산 및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타 시도별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지방소멸 및 산업체의 인력난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경상북도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과 더불어 동남아 및 CIS국의 재외동포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무엇보다 경상북도의 외국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확대시키기 위해 외국인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시키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우도 외국인 정책 확대를 위해 외국인관리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입에 대한 관심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자하고 있음

○ 많은 타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의 대안책으로 외국인을 유입하고 유입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원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전북 외국인 정책 현황 및 동향

○ 최근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방대학, 지역별 산업체 등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 증가 대비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정책 대상별·분야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전북도와 14개 시군 기초단체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인력과 예산 등)이 여전히 명확하게 확충 및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 매년 전북 도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수와 외국인주민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정책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규모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으로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과 사업 대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의 종교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타 시도 대비 인구감소의 속도가 빠르고 이에 생산연령인구 감소폭도 크기에 산업분야별 인력난 심화 문제와 지방대학의 정원충족 등을 위해 외국인의 유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로 유입된 외국인이 전북 도내에 정착·정주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한 상황임

○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추진의 성공은 전달체계 구축과 유관기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적 관계이기에 전달체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체류유형별·생애주기별 수요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이 추진될 필요 있음

- 외국인 정책의 전담 인력과 예산 및 정책대상자들이 어느 한 체류 유형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사업이 아닌 단계별 사업들간 연계로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제3장 외국인 정책 해외사례 분석

1. 지역 이민정책 관련 사례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 사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외국인 정책 해외사례 분석

1. 지역 이민정책(지역특화비자 관련 내용) 관련 사례

가. 캐나다의 사례

▮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 PNP)

❍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선발된 영주경제이민자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의 인구 과밀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필요한 지역에는 정착하지 않자 이민자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도입됨

- 영주경제이민자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
-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정부가 영주경제이민자를 연방정부에 추천하는 내용

❍ (특징) 연방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경제이민자를 선정하고 연방정부는 심각한 안보 등의 문제가 없다면 승인해주는 절차로 주정부의 특별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의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음. 이에 주정부는 주정부별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해 필요한 영주이민을 연방정부에 추천받아 승인함

- 각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이민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이민프로그램
- 취업이민, 유학 후 이민, 사업 이민 등으로 유형 구분

❍ 인구감소지역 주정부는 이민인구의 유입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 이외는 보다 완화된 조건 기준으로 이민자를 판단하여 추천하고 있음

▮ 애틀랜틱 이민 시범 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 : AIP)

❍ (배경 및 목적) 애틀랜틱 캐나다란 대서양 부근에 유치한 4개의 주정부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를 통칭하며, 이 지역은 인구감소가 심하고 경제성장이 더디다는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 4개의 주정부 또한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NP)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 이민자의 상당수가

유입되기는 하나 4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영주이민자의 정주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즉 PNP로 신규 이민자를 주정부에서 지속 유입했지만, 지역적 취약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열악하여 지역 상황으로 유입된 신규 이민자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해 간다는 특성이 있음

- 애틀랜틱 캐나다 이외 지역의 신규 이민자들 지역 정착율은 80% 이상이나 애틀랜틱 4개 주정부의 지역 정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신규 이민자들의 지역 정착 정주율이 27.2%로 가장 저조했고,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56.7%, 뉴 브런즈윅 주 59%, 노바스코샤주 65.1%로 나타남

○ PNP와 AIP간 차이는 주정부 내 사업주가 신규 이민자 선발과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신규 이민자 관점에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지역적 여건도 성장 발전된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함

- 애틀랜틱 시범사업 프로그램은 사업주 주도의 프로그램, 사업주로부터 시작되는 이민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시 신규 이민자들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해 간다는 현상에 집중함

- AIP 실시 이후 캐나다 애틀랜틱 지역으로 신규 영주이민은 113% 증가, 반면 나머지 지역 이민은 12.4% 증가에 그침

○ (절차)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체(사업주)는 신규 이민자 채용(유치) 준비, 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이민희망자를 정착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 이민자 정착지원 및 환대적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3년간 연방정부에 의무적 보고

- 주정부의 이민관련 부서(이민다문화과, 이민과, 이민정착과 등)는 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이민자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함. 즉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할 만큼 건실한지, 이민자 채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 검토

- 사업주의 역할은 이민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수단의 정보 지원과 공식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애틀랜틱 이민 시범사업 또한 주정부가 추천하는 대상에 따라 유학생, 전문직·기술자, 숙련직 등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됨

- 유학생 추천 프로그램 : 일자리 최소 1년 유지, 관리직/전문직(학사)/기숙직/숙련직 전일제

- 전문직·기술직 프로그램 : 일자리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관리직, 전문직(학사), 기술직(전문학사/직업훈련), 전일제, 비계절성
- 숙련직 프로그램 : 정규직, 관리직, 전문직(학사), 기술직(전문학사/직업훈련), 숙련직(고졸, 직무훈련), 전일제, 비계절성

▮ 농촌 외곽지역 이민 시범사업(Rural and Nothem Immigration Pilot : RNIP)

❍ (배경 및 목적) 애틀랜틱 이민사업(AIP) 모델의 새로운 형식의 시범 사업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소규모 도서 지역(주로 북쪽지역)이자 경제자립도가 매우 저조한 지역에 신규 이민자들을 한시적으로 유치하여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특징) 영주권 취득이 가장 쉬운 프로그램. 직종의 제한이 없어 취업이 쉽고, 캐나다에서의 경력도 필요치 않으며, 이민의 기본 자격조건도 대폭 완화하였고, 이민 취득 경쟁률도 낮아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 반면 지역으로의 이민자 유치 목적에 맞게 지역 정착의 의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 가족이민을 계획하거나 조용하고 소도시로 이민을 원하면서 쉽고 빠른 이민을 기대하는 경우 신청
- 지역 내 고용주와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와 신규 이민자가 지자체에 영주이민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면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제출

▮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의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 증가 성공사례[2)]

❍ (지역 특성)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는 농촌지역 중에서도 도서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경제성장도 저조하여 지역소멸 위기가 높음

❍ (성공요인 1) 노바스코샤주의 이민자 유입정책에 의한 인구 증가 성공 요인을 보면,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 등 지역적 위기 문제 해결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소통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었다는 선제적 과정이 있었음

❍ (성공요인 2) 노바스코샤주로의 이민을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 방문하는 잠재적 신규 이민자 대상 주정부(콜체스터 지역개발청) 차원에서 지역 고용주, 학교 당국, 부동산중개인 등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지지체계 연결 등이 이민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줌. 또한 신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입주 안내, 동일국적의 이웃소개,

2) 신선미, 이동휘, 이정우(2022). 지역이민정책의 이해와 실행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일자리 안내와 연결 등을 제공함. 이러한 주정부 차원의 이민하고자 하는 외국인 대상 세밀한 정착 지원체계는 신규 이민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민하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즉 이민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정책이 필요함

❍ (성공요인 3) 노바스코샤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가족 동반을 유도함. 가족 단위의 이민 유치와 이민자 가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및 다른 동일 국적의 가족 단위 이민자가 올 수 있도록 동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이민 유치와 지역 내 정착 유지에 도움을 줌

- 외국인 가족 단위의 유치 전략은 향후 지역 내로의 이민자 유치와 타지역으로의 유출 방지에 도움 됨

❍ (성공요인 4) 노바스코샤 주의 이민정책 전담업무는 노동·기술·이민부란 부서에 인력 500명이 수행하고 있고, 특히 신규 이민자 유치와 인구 증가 관련 업무를 하는 이민·인구증가 전담부서에는 약 50여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함. 이 부서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유치와 모집, 이민을 원하는 이민자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신규 이민자의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 지원, 이민 관련 이민정책 수립·계획 및 정책연구·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호주의 사례

▮ SSRM(주특정지역 이민 프로그램)

❍ (배경 및 목적) 이민의 연방정부화에서 지방화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 이민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인정되는 첫 선정 제도를 SSRM(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으로 통칭. 호주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1990년대부터 이민 확대 및 지속 증가시켜 왔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착하고 대도시 이외의 소규모 지역에는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률이 저조함

❍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동 인력 부족 심화 문제 해결 및 신규 이민자 유입·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주특정지역 이민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즉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서 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경제 저성장지역으로 신규이민자를 유도 및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 이민프로그램

- 호주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민프로그램.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비도시지역이나 낙후지역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실시

❍ (특징) SSRM은 연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담당하던 이민비자 권한을 주와 준주(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한 이민프로그램. 즉 이민자 가족의 이민점수제 평가제도가 요구하는 점수를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비수도권 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저성장 및 낙후된 지역의 고용주와 주/준주 등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민이 가능하도록 함

- (SSRM의 핵심)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이민점수가 부족한 이민자(근로자, 유학생, 사업가 등) 대상 지정된 비도시(낙후)지역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시 점수의 가산점 부여받아 영주권 취득 가능. SSRM 비자 취득자는 3년이란 기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짐

- SSRM 비자 취득 지역은 인구가 200,000명 미만이거나 인구 증가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50% 미만인 지역 포함

❍ SSRM은 초기에 주로 영주이민제도로 운영되었지만 2003년 이후부터는 영주이민과 더불어 한시취업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시 취업이민자들이 영주이민자들에 비해 이민자 집중지역으로 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임

- 호주의 경제이민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 개선되고 있음. 영주이민과 한시취업 이민제도 등으로 구분하거나 지역 수요와 요구를 고려한 특별경로 등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신규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 유입하고 지속 거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유도하여 지역 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음

▌SESR(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

❍ 최근 호주의 주요 이민정책 중 하나가 주정부가 추천하는 취업이민제도이며 주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 2019년 11월 시작된 SESR(494) 비자는 주지역에서 추천하는 한시취업비자로 지정지역에서 더 많은 직종의 기술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 즉 주정부지역으로 이민자를 유입하여 주정부지역에 정착 유도

❍ SESR(494) 비자는 사업주의 추천 및 노동 협정 등 두 가지 경로로 구성되며 두 경로 모두 사업주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사업주의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추천 이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중단 이후로부터 90일 안에 추천해줄 새로운 사업주를 찾아야 함

- 5년 임시 비자이지만 3년 후에 자격이 갖춰지면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494비자 승인 시에는 의료보험 등록도 가능

- 주정부가 지역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직종을 선정하고, 고용계약을 전제로 비자 발급

- 기본적으로 만 45세 미만이여야 하고 적어도 3년 이상 전일제 근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
- 고용주 추천이므로 고용주의 사업체에서만 근무 가능

▮ SESR(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 주정부지역 임시 기술비자로 주정부의 추천을 받거나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척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주정부가 지역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직종 리스트 선정하고 지역 거주 지인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이 있어야 함

- 최대 5년간 취업 가능, 3년 취업하면 영주이민 신청가능함
- 주정부 추천을 받거나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척의 추천 받을 경우 10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 기술 점수 10점,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특정 STEM학위자에게도 10점의 가산점이 있음.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가 영어 실력을 갖추었으면 5점의 가산점, 미혼인 신청자의 경우 10점의 가산점이 주어짐

▮ 최근 호주 이민정책

❍ 최근 호주는 인구 고령화로 숙련 외국인력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해외 숙련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한 선발시험을 수정, 비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성 제고, 유학생 유치 조건도 완화함

- 인력난을 겪는 기업 지원을 우해 영주이민자 수용 인원을 3만5000명 증가한 19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비자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
- 또한 호주정부는 2013년 이후 동결했던 임시취업비자의 숙련노동자 연봉 한도도 인상하겠다고 발표(약 4780만원(5만3900호주 달러) → 약 6200만원(7만호주달러)

2.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 사례

▮ 싱가포르 사례

❍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3] 싱가포르가 국제간 글로벌경쟁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1990년대에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도시 프로젝트'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표·추진. 주요 내용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 고급인력에 영주권을 발급하여 외국 고급인력 유입과 정주 유도를 도모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함

- 싱가포르는 노동 인구의 30% 이상이 외국인, 2020년 6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8%가 외국인. 국제사회에서 이민자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로 대두
- 싱가포르가 말하는 외국 고급인력은 고용패스(Employment Pass: EP) 계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금수준에 의해 고급 인력의 여부를 결정함.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학력이든, 경력이든, 기술이든, 고용주로부터 높은 임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

❍ 싱가포르에 온 외국 고급 인력은 고용주로부터 높은 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생활 적응에 많은 배려를 받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동반가족 허용 범위가 넓으며 현지에서 체류 연장이 수월하고, 영주비자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기간도 짧다는 혜택이 있음

- (가족동반 허용범위) 외국 고급인력의 직계가족에게 부양가족패스(Depemdants Pass; DP), 장기방문패스(Long-Term Visit Pass:LTVP)를 발급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LTVP는 직계가족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21세 이상의 자녀, 의붓자식,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등 친인척 등도 생활하도록 허용
- (현지 체류 연장) 처음에 최대 2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나 고용기간이 지속되면 현지에서 수월하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 고용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고급 인력은 개별고용패스 비자(Personalised Emplpyment Pass: PEP)를 발급받게 되면 취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간 싱가포르에 머물며 구직활동 가능
-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에게만 영주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고급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비자 취득 시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형 공공공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제도인 중앙적립기금에도 가입 가능

3) 오정은(202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민족연구 78호 특집. p95-114. 참고하여 재구성

○ 싱가포르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장기비자(ONE)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추진함. 외국의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 취업 비자 '해외 네트워크 전문지식 (ONE·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제도를 도입했고, 2023년부터는 월 소득 3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900만 원) 이상 외국인은 5년 체류비자인 ONE 패스(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 신청 가능

○ ONE 비자 발급 소득 기준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Employment Pass(EP)' 소지자의 소득 상위 5%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높으나 급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스포츠, 예술,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고급 인재도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싱가포르는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ONE 패스 소지 외국인이 복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고, ONE 비자 취득 시 동반 가족도 취업하는 것이 가능함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사례

○ 농업 분야가 특히 발달 되었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계절 근로자제도를 먼저 도입·추진하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전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음

- 주요 국가별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 외국인력 선정과 채용,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인권 및 불법체류·이탈 방지 방안 등을 살펴봄

○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몇 개월이라는 단기기간 동안 계절적 특성을 지닌 노동 수행을 위해 본국에서 다른 국가로 임시 이주하여 근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음

가. 캐나다의 사례

▮ 계절 농업근로자 프로그램(SAWP)

○ 캐나다는 미국과 호주와 함께 전통 이민 국가로 이민을 통해 국가가 조성됨. 캐나다 연방정부는 경제적 필요와 인구 증가의 필요에 의해 영주이민을 지속 유입해 왔지만, 영주이민의 대부분이 대도시지역 중심의 관련 일자리와 함께 정착하여 농업지역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기간제 외국인력을 도입하게 됨

❍ 캐나다의 경우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외국인력 유입 규모는 연간 쿼터를 정하지 않고 농업경영인의 필요 수요에 의해 결정하고 있음

❍ 계절농업근로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 : SAWP)은 1966년부터 실시하였고, 외국인력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SAWP 관리기관은 연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부(HRSDC)와 대민행정서비스청(Service Canada)이나 실제적인 운영기관은 민간 기관들임
- SAWP는 캐나다와 협약을 체결한 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SAWP 기간 : 최소 5주에서 최장 8개월임
- 농축산업종 : 원예업, 양봉업, 과일·채소·버섯 재배업, 낙농업, 축산업, 담배제조업 등 16개 분야

❍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농업경영인은 SAWP를 통해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정한 국가간 양자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캐나다 대행기관(농업경영인 단체인 FARMS, FERME)을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음. SAWP 외국인력은 송출국 정부에서 실질적인 채용 행정업무를 담당·관할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력 선발 과정의 개입이 거의 없음. 대부분의 농업경영인은 기존에 고용했던 외국인력을 지명하여 재고용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행정적 부담을 적은 편임

-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는 송출국 정부는 캐나다 농업경영인들의 수요 요청이 있을 시 자격요건에 맞는 자국민을 선발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관련 인력풀도 유지함

❍ 캐나다의 농가 및 농업경영인들은 SAWP를 통해 외국인력을 안정적 공급받을 수 있지만 고용주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계약 종료 후 캐나다에서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전 고용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은 SAWP 외국인력은 SAWP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있게 됨. 이에 SAWP 외국인력은 지속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어려운 상황

- 농업경영인은 계절근로자의 왕복 교통비 지급, 계절근로자 임금의 25%를 의료보험·행정비용·강제저축 명목으로 해당국 정부에 지급
- 프로그램 운영은 농업경영인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캐나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의 해고와 본국 송환에 대한 구제 절차가 부재하여 농업경영인들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큼
- 계절근로자들의 70~80%가 기존 고용주에 의해 재고용. 계절근로자는 근로조건이나 생활환경에 대해 보고해야 하지만 재취업 시 시간적 지체를 우려해 부정적인 취업 경험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SAWP 외국인력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복귀해야 함. SAWP 외국인력은 지역 내 농가와 농업경영인의 수요에 따라 쿼터의 제한 없이 유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SAWP 외국인력은 건강보험 의무가입, 의료보험과 숙소를 제공받으며, 이탈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을 한 명으로 제한·지정하고, 농장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농업경영인으로부터 해고 시 바로 추방됨

나. 뉴질랜드의 사례

▮ 계절근로자제(Recognized Seasonal Employer : RSE)

○ 계절근로자제도가 2007년 공식적으로 운영 시작. 뉴질랜드는 자국민의 노동인력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 선발 전 자국에서 근로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만 한정하여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함

○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태평양의 7개 국가의 근로자들에게 시장에서 제시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숙박시설 제공, 귀국 항공료의 50%, 복지보장 등을 해야 함

○ 계절근로자 선발은 송출국에서 이미 선별한 인력풀(마을위원회 및 지역사회지도자들이 사전 선정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짐)에서 인터뷰한 후 모집하고, 뉴질랜드의 공식 업체가 외국인력 채용 신청 전 자국에서의 구인 노력을 했음을 증명한 후 외국인력 선발과 지원계획을 뉴질랜드의 교육고용노동관계부와 시민이민부에 제출하고 책임지고 선발함

○ 공식업체는 농업·농장에서 작업할 계절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형태와 농업경영인들을 대신해서 채용하는 고용중개업체 형태로 운영됨

- 농업경영인(사업주)은 시장 임금과 동일 임금 지급, 240시간 근로 보장, 생활서비스 지원, 강제퇴거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함을 근로계약과 고용주 의무 이행사항으로 고지받게 됨. 또한, 외국인력 입국 시 공항 픽업, 숙식 제공, 적응 프로그램 제공, 모국으로의 송금 방법 설명, 생활과 건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계절근로자는 최대 7개월까지 체류 가능, 이후 다른 체류유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함. 조합 참여 허용 및 국내 노동자와 동일 조건의 근로여건 제공, 농업경영인은 본인이 고용한 계절근로자가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면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때 드는 비용인 불법체류자 1인당 3,000달러를 지급해야 함.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경영인은 재입국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을 만한 근로자를 선택하고 불법체류를 미연에 방지고자 인센티브도 제공함

다. 호주의 사례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

❍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호주는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1975년부터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함. 이후 2012년 호주 정부는 단순기능의 외국인력을 계절 근로자제도(Seasonal Worker Program : SWP)를 통해 유입하면서 이민정책이 빠르게 발전함

❍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는 호주 전역의 원예업, 일부 지역의 숙박업과 사탕수수, 목화, 수경재배업 등으로 한정됨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태평양 연안 도서지역 농가에서 주로 참여할 수 있고, 외국인력은 최소 14주에서 최대 6개월간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음

❍ 호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공인업체(Approved Employer : AE)를 통해 외국인력 모집과 채용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면 농가 및 농업경영인은 공인업체(AE)에 연락하여 외국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또한 외국인력의 입국과 체류관리 책임도 공인업체가 수행하며, 계절근로자로 유입된 외국인력들도 호주 입국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인업체(AE) 역할 : 계절근로자의 근로와 생활환경 관리·감독, 외국인력에게 적절한 숙박시설과 출퇴근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첫 급여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생활비용 보조, 계절근로자에게 6개월간 주당 최저 30시간의 근로 시간 보장, 호주 노동관계법 근거 호주 근로자들과 동일 권리로 인정된 적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

- 노후연금이 가능하며, 공인업체(AE)의 계절근로자의 입국·체류관리, 모니터링이 의무이며, 체류기간 초과 시 재입국 금지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큰 매력은 일회성 외국인력이 아닌 재입국 허용으로 농가 및 농업경영인들은 기존 외국인력을 지속 재고용하여 숙련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라. 일본의 사례

▮ 기능실습제도(장기고용 형태)

○ 외국근로자 대상 기능실습 제도는 '기업단독형'과 '단체감리형'이 있고, 단체감리형은 농협·중소기업 조합을 통해 외국근로자를 유입하고 조합원인 농가·농업법인 등에서 외국근로자가 기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실습제도의 주요 핵심부처는 법무부,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외국인 기능실습기구와 전국 농업회의소에서 관리·감독

○ 단체감리형의 경우, 각 농가에서 기능실습생 1명 고용 시 소요 되는 비용 부담(약 250~280만엔) 크기 때문에 개별농가들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농협 등이 실습실시자가 되어 농작업하는 청부방식을 도입하게 됨

○ 농협 농작업 청부방식은 외국근로 실습생이 농협의 파견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각 농가에 파견되어 농작업을 하는 방식임. 농가들과 농협이 작업일정을 조율하여 농가 농작업과 농협 시설의 농축산물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기능실습생을 연간 고용하고 있음

▮ 특정기능제도(장·단기 고용 형태)

○ 지역단위에서 자국민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특정 분야 대상 인력난 해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 목적으로 외국근로자를 유입하는 목적으로 특정기능제도가 출발함

○ 특정기능제도는 지역 특정의 산업 분야에 일정 정도의 기술기능과 일어수준을 갖춘 외국인이 특정분야의 산업체(사업주)와 고용계약 후 기관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임

- 인력확보가 어려움 특정분야로 요양, 건물 청소, 기계 가공업, 산업기계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건설업, 정기·전자·정보 관련업, 조선 선박업, 항공업, 농어업, 제조업, 외식업 등이 해당
- 서비스 산업에 외국근로자를 유입하고자 이 특정기능제도를 신설함

○ 체류자격별로 특정기능1호와 특정기능2호 등 두 종류가 있으며, 특정기능1호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되고, 제2호는 특정분야에 숙련된 기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여

- 농업분야는 특정기능1호에 허용되며, 가족동반은 허용하지 않기에 체류기간동안 동일 업종에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게 됨

4. 요약 및 시사점

▮ 지역특화 비자 관련 사례의 시사점

❍ 전북지역의 산업 특성과 필요 인력 수요를 반영한 우수외국인력 유입과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음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지역의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기본적인 전제로 지역 내 외국인 유입과 유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캐나다의 주정부추천 이민프로그램을 연방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주정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 내 양질의 좋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은 신규 이민자들의 지속 정주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노동 환경 여건 변화와 산업적 특성 및 일자리 수요 등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에서 지역별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유입 규모와 필요 직종/업종의 인력 분야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함

❍ 전북도 수요 맞춤의 지역특성화 비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특성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법무부, 전북도, 시군 기초단체, 대학, 사업체/사업주, 정착지원 서비스기관 등)간 연계 및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각의 기관들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정부는 지역특화 비자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므로 지역 사업체별 작업환경 등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체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추진하고, 유입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계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함

▮ 해외 우수인재 유치 관련 사례의 시사점

❍ 전북지역으로의 유입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비전문외국인근로자로 농축산업, 제조업 등에 제한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지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외국인의 수요 대비 공급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에 숙련외국인 인력, 즉 우수인재, 고급인재의 외국인을 전북지역으로 유입해 올 수 있는 전략과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싱가포르와 같이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별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

해야 하고, 해외 인재의 국제 여비, 수당, 거주 비용, 의료비용 및 연구비 등 다양한 지원 사항과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유형 개발을 고민해야 함

▮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관련 사례의 시사점

❍ 최근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체류 전반의 관리를 전담해 줄 수 있는 중간의 공인업체 개입이 필요함. 이 공인업체를 통해 농가와 행정간의 행정업무를 지원받고, 계절근로자의 근로와 생활환경 모니터링, 적절한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을 제공받고, 건강권과 인권 문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농가와 계절근로자간 서로간의 가장 큰 이득은 계절근로자가 일회성 유입이 아닌 재입국과 재고용 허용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 인력 고용으로 농가에서는 숙련인력 활용을 계절근로자 근로자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방안 모색이 필요함

제 4장

전북 외국인 현황 및 특성 분석

1. 외국인 기본현황 분석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분석
3.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4. 외국국적 동포 현황 분석
5. 기타(불법체류, 국민의배우자 등) 현황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북 외국인 현황 및 특성 분석

1. 외국인 기본현황 분석

가. 전북 외국인 규모

1) 등록외국인(행정안전부, 2022)과 체류 외국인(법무부, 2023.3.) 규모 및 추이

▮ 전북 등록 및 체류 외국인 규모

❍ 전북의 행정안전부의 등록외국인과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외국인은 2021년 기준 60,684명이고, 체류 등록외국인은 2023년 3월 기준 35,449명이고, 외국인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3,801명을 포함하면 39,250명임

- (행안부) 전북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북 총인구의 3.4%(전국평균 등록외국인 비율 4.1%), 전국 등록외국인 수의 2.8%
- (법무부) 전북 체류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북 총인구의 4.1%(전국평균 체류등록외국인 비율 5.1%),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의 2.9% 차지

[표 4-1] 전북의 등록 및 체류 외국인 규모

(단위 : 명)

구분	총계	장기체류 / 국적미취득						국적취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소계	국적 취득	외국인주 민자녀
(행안부)	60,684	41,047	9,464	5,903	8,593	2,543	14,544	19,637	6,272	13,365
(법무부)	39,250	29,129	10,915	4,824	9,589	3,801				

▮ 전북 등록 및 체류 외국인 추이

❍ 전북 등록 및 체류(등록)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지속 증가하고 있음. 행안부 기준 '15년부터 '21년까지 약 37.3%(16,500명) 증가했고, 법무부(거소자 포함) 기준 '15년부터 '23.3월까지 약 34.3%(10,036명) 증가함

[표 4-2] 전북 등록 및 체류 외국인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3.
행안부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61,316	60,684	
법무부	29,231	30,596	32,001	34,874	36,638	34,790	33,843	39,270
(등록)	26,194	27,320	28,588	31,347	33,074	31,288	30,331	35,469
(거소)	3,037	3,276	3,413	3,527	3,564	3,502	3,512	3,801

2) 행정안전부(2022)의 등록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현황

❍ 2021년 11월 기준 전국 외국인주민은 2,134,569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함.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충남이 5.7%로 가장 높았고, 경기(5.2%), 제주(4.8%), 인천(4.6%) 등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 외국인주민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2.1%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주민은 60,684명으로 전북 전체인구 1,787,053명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4.1%) 평균보다는 0.7%p 낮았음

[표 4-3]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단위 : 명, %)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738,071	2,134,569	4.1	100.0
서울특별시	9,472,127	426,743	4.5	20.0
부산광역시	3,324,335	72,361	2.2	3.4
대구광역시	2,387,911	51,140	2.1	2.4
인천광역시	2,957,044	134,714	4.6	6.3
광주광역시	1,475,262	41,181	2.8	1.9
대전광역시	1,479,740	33,078	2.2	1.5
울산광역시	1,120,753	34,800	3.1	1.6
세종특별자치시	366,227	9,335	2.5	0.4
경기도	13,652,529	714,497	5.2	33.5
강원도	1,521,890	37,230	2.4	1.7
충청북도	1,624,764	73,529	4.5	3.4
충청남도	2,175,960	124,492	5.7	5.8
전라북도	1,787,053	60,684	3.4	2.8
전라남도	1,778,124	66,871	3.8	3.1
경상북도	2,635,314	98,197	3.7	4.6
경상남도	3,305,931	123,074	3.7	5.8
제주특별자치도	673,107	32,643	4.8	1.5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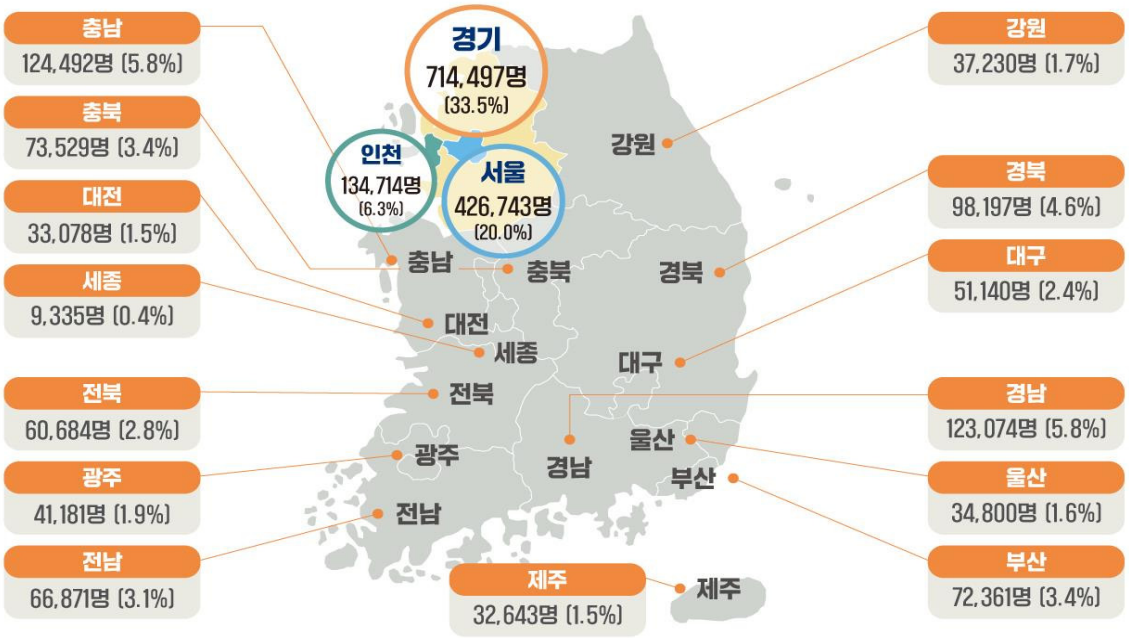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그림 4-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 외국인주민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외국인주민 수는 2010년 1,139,283명에서 2021년 2,134,569명으로 약 1.9배 증가하였고, 전북의 경우 2010년 28,450명에서 2021년 60,684명으로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외국인주민 수는 감소하나 전북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7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외국인주민	722,686	1,139,283	1,711,013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2,156,417	2,134,569
	비중	1.5	2.3	3.4	3.4	3.6	4.0	4.3	4.2	4.1
	증감률	-	*57.6*	*50.2*	*3.1*	*5.5*	*10.4*	*7.9*	*-2.7*	*-1.0*
전북	외국인주민	14,903	28,450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61,316	60,684
	비중	0.8	1.5	2.4	2.5	2.7	3.1	3.4	3.4	3.4
	증감률	-	*90.9*	*55.3*	*3.7*	*8.7*	*12.2*	*11.1*	*-1.3*	*-1.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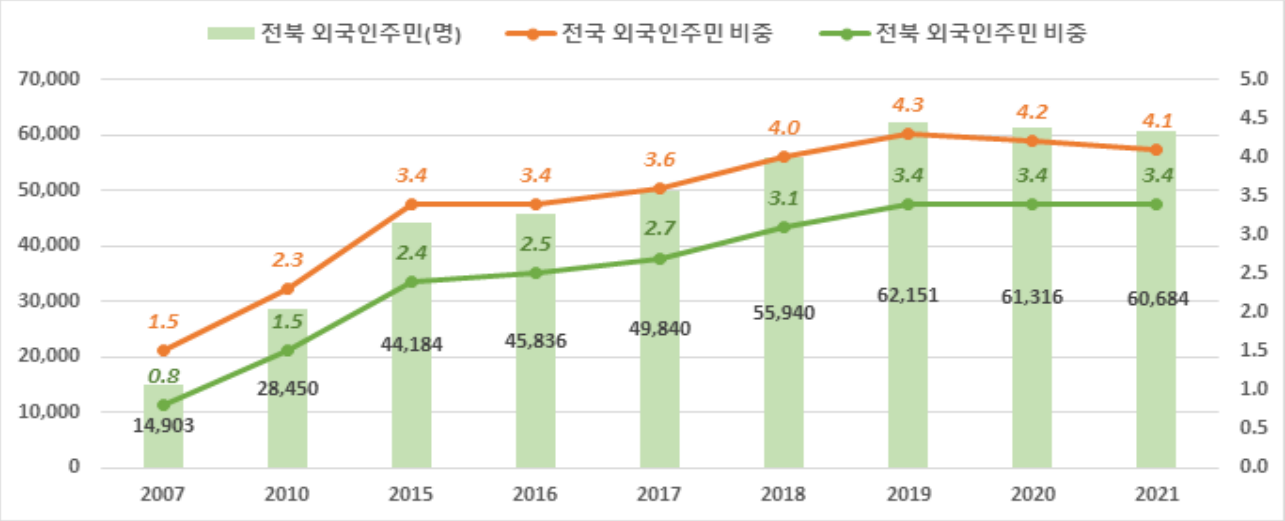

[그림 4-2]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추이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전국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134,569명 중 국적 미취득자 비율은 77.3%, 국적 취득자는 22.7%로 나타남. 한편, 세부유형별로는 기타 외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근로자'가 1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17.3%), 외국인주민자녀(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는 60,684명 중 국적 미취득자 비율은 67.6%, 국적 취득자는 32.4%로 나타남. 세부유형별로는 '외국인주민자녀' 비율이 2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15.6%), 유학생(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을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의 국적 취득률은 25.3%, 여성은 38.8%임. 여성 외국인주민의 경우 결혼이주민 비율이 매우 높고, 남성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유학생 비중 역시 남성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전국과 전북의 국적 취득률은 전북이 전국평균보다 약 10%p 가량 높았음. 외국인주민 유형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전북이 낮게 나타난 반면,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은 전북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특히, 유학생 비중은 전국평균의 2배에 가까운 비중으로 높게 나타남

- 국적 미취득자 수를 기준으로 구성비를 보면, 전북의 유학생 비중은 20.9%이며, 전국 평균 9.5%에 비해 11.4%p 더 높은 비중임

[표 4-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소계	국적취득	외국인주민자녀
전국	전체	2,134,569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484,602	210,880	273,722
		100.0	77.3	18.5	8.2	7.3	17.3	26.0	22.7	9.9	12.8
전북	전체	60,684	41,047	9,464	5,903	8,593	2,543	14,544	19,637	6,272	13,365
		100.0	67.6	15.6	9.7	14.2	4.2	24.0	32.4	10.3	22.0
	남성	29,026	21,681	7,956	561	5,129	1,314	6,721	7,345	370	6,975
		100.0	74.7	27.4	1.9	17.7	4.5	23.2	25.3	1.3	24.0
	여성	31,658	19,366	1,508	5,342	3,464	1,229	7,823	12,292	5,902	6,390
		100.0	61.2	4.8	16.9	10.9	3.9	24.7	38.8	18.6	20.2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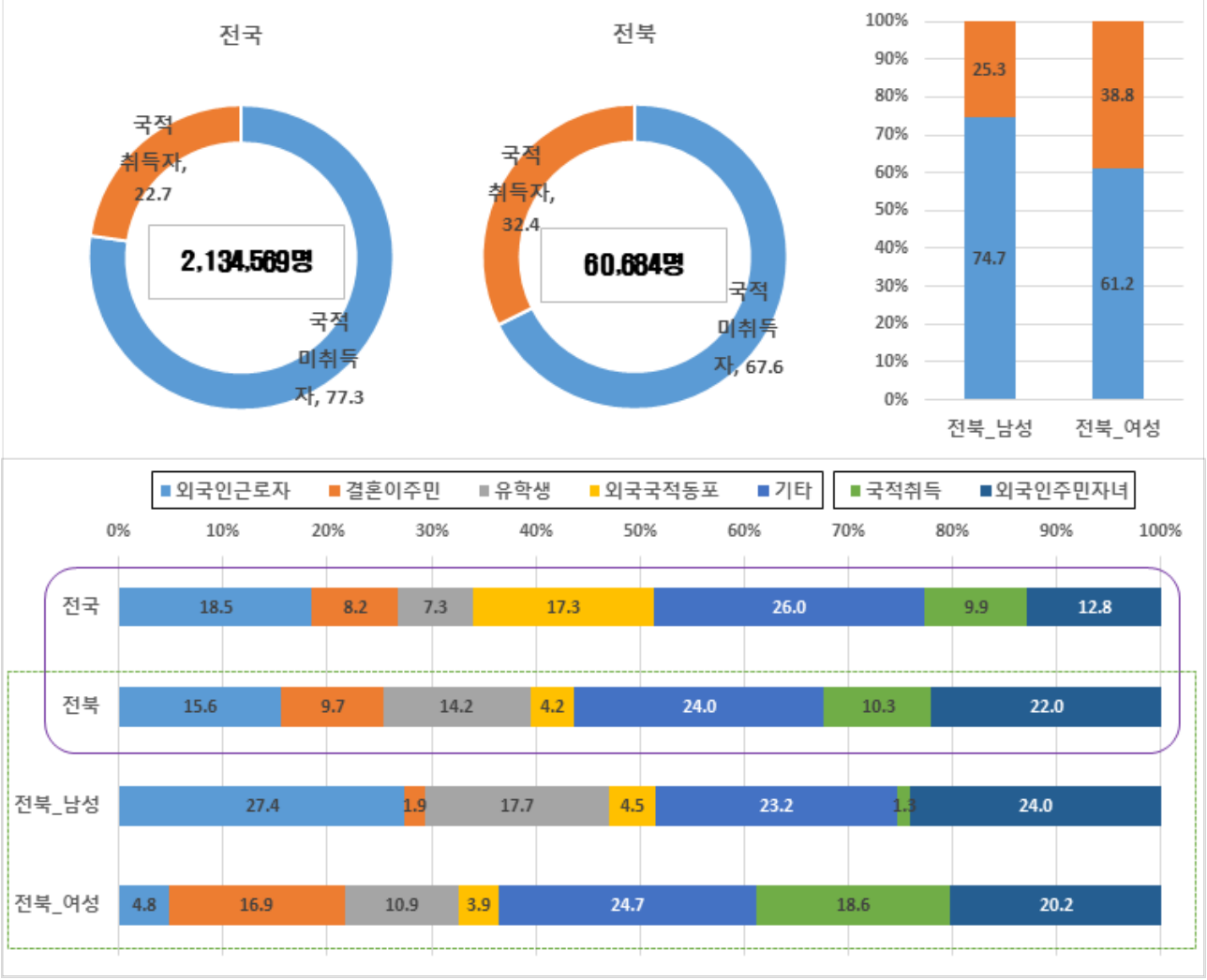

[그림 4-3]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

❍ 전국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2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3.1%로 2030대가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29.0%로 2030대가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보다 전북 외국인주민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임

- 전북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2030대 남성 외국인 비중은 70.2%, 여성은 61.7%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남성 외국인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국	전체	1,649,967	66,209	42,980	381,171	465,707	274,595	248,515	134,997	35,793
		100.0	4.0	2.6	23.1	28.2	16.6	15.1	8.2	2.2
전북	전체	41,047	678	917	15,268	11,895	6,030	4,021	1,702	536
		100.0	1.7	2.2	37.2	29.0	14.7	9.8	4.1	1.3
	남성	21,681	377	488	8,647	6,574	2,935	1,734	733	193
		100.0	1.7	2.3	39.9	30.3	13.5	8.0	3.4	0.9
	여성	19,366	301	429	6,621	5,321	3,095	2,287	969	343
		100.0	1.6	2.2	34.2	27.5	16.0	11.8	5.0	1.8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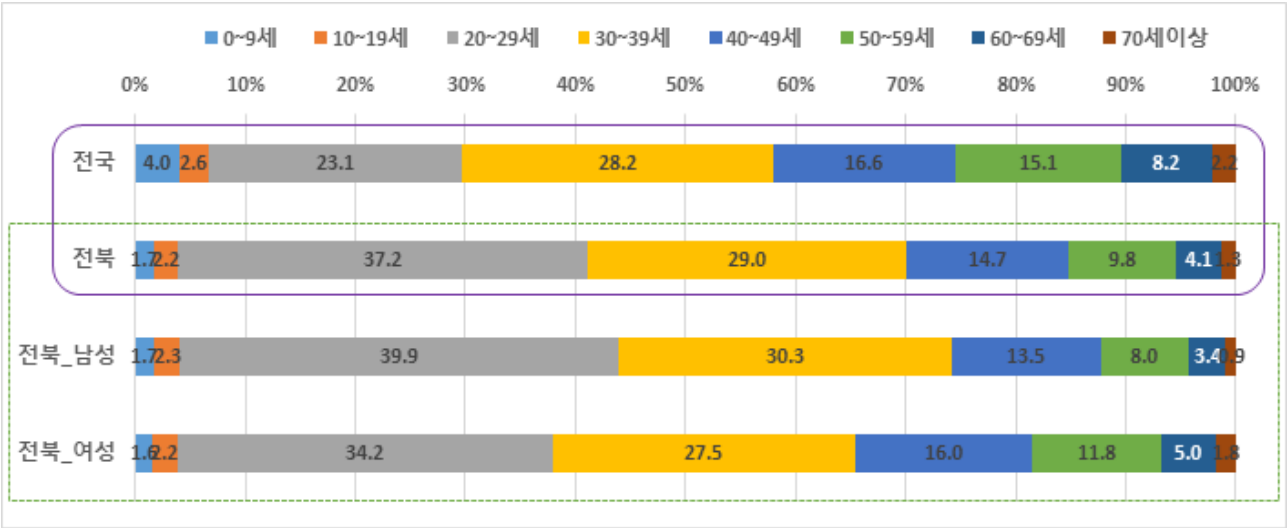

[그림 4-4]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

○ 전국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10년 미만 체류자가 2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년 미만 17.0%, 2~3년 미만 16.0%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3~4년 미만 체류자가 2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년미만 19.9%, 5~10년 미만 17.7% 등의 순으로 많았음. 전국보다 전북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고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주민의 체류기간별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외국인의 경우 2~4년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은 4년 이상 거주 비중이 높았음. 남성은 외국인근로자, 여성은 결혼이주민의 비중이 높은데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표 4-7]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전국	전체	1,649,967	159,326	125,753	263,278	280,220	183,140	386,049	251,739	462
		100.0	9.7	7.6	16.0	17.0	11.1	23.4	15.3	0.0
전북	전체	41,047	3,827	3,806	8,185	8,412	5,307	7,270	4,237	3
		100.0	9.3	9.3	19.9	20.5	12.9	17.7	10.3	0.0
	남성	21,681	1,954	1,902	4,634	4,810	3,117	3,753	1,510	1
		100.0	9.0	8.8	21.4	22.2	14.4	17.3	7.0	0.0
	여성	19,366	1,873	1,904	3,551	3,602	2,190	3,517	2,727	2
		100.0	9.7	9.8	18.3	18.6	11.3	18.2	14.1	0.0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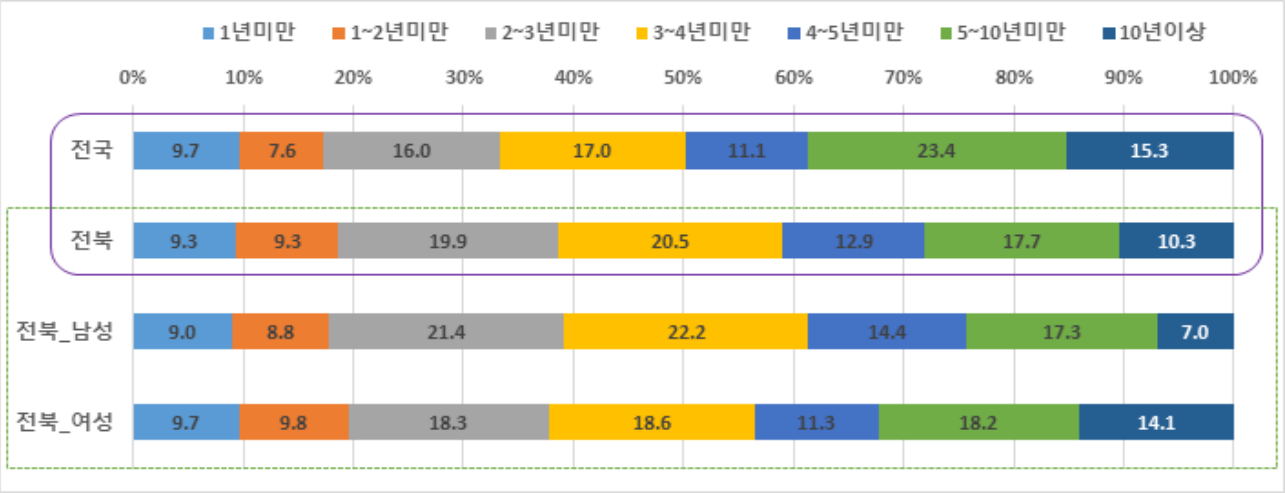

[그림 4-5]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2021)

▌외국인주민 국적별 현황

○ 전국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권역 국가가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30.6% 등의 순으로 아시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과 달리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가 5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동북아시아 2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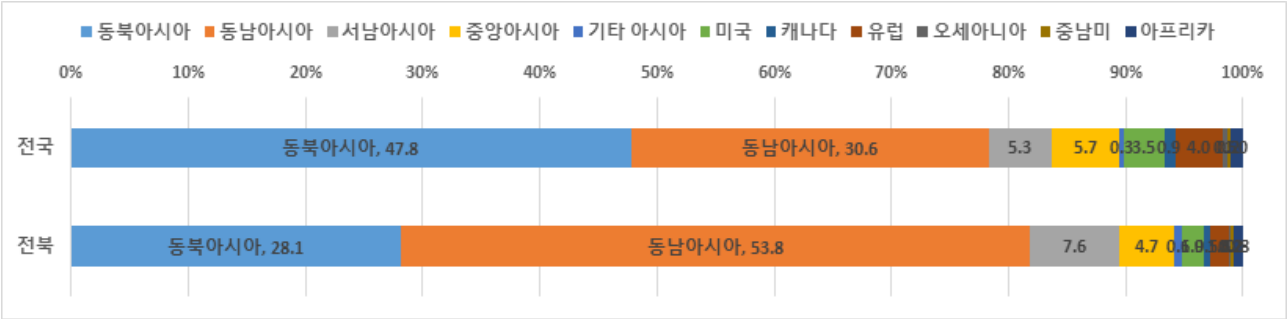

[그림 4-6]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국적 대륙별 구성비(2021)

- 전국 외국인주민의 출신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31.7%, 베트남 12.1%, 중국 11.7%, 태국 9.6%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의 경우, 베트남 26.1%, 태국 15.4%, 중국 14.5%, 중국(한국계) 8.4%로 전국 외국인 국적 구성비와는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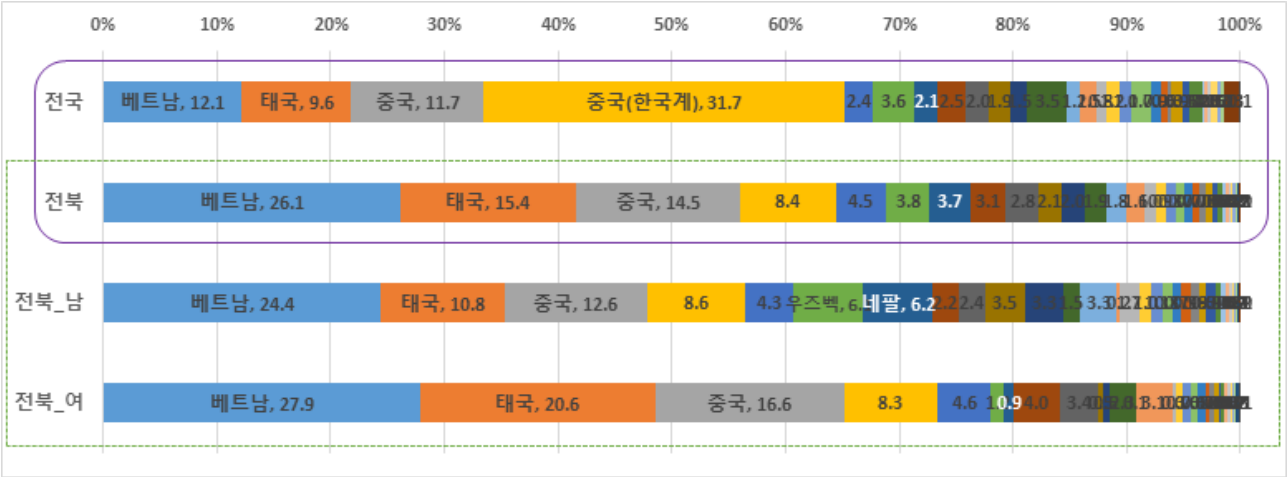

[그림 4-7]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국적별 구성비(2021)

- 전북 외국인주민의 주요 국적 순위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베트남, 태국, 중국 국적의 경우 여성 결혼이주민의 영향으로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반대로 네팔, 우즈벡,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의 국적은 남성 외국인근로자의 영향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표 4-8] 전국 및 전북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 TOP10(202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벡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전북	베트남	태국	중국	중국(한국계)	캄보디아	우즈벡	네팔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전북_남성	베트남 5,299명	중국 2,721명	태국 2,340명	중국(한국계) 1,860명	네팔 1,339명	우즈벡 1,318명	캄보디아 941명	인도네시아 754명	미얀마 725명	스리랑카 718명
전북_여성	베트남 5,403명	태국 3,992명	중국 3,218명	중국(한국계) 1,600명	캄보디아 895명	필리핀 780명	몽골 653명	일본 607명	미국 449명	우즈벡 228명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3) 법무부(2023.3기준)의 등록 체류외국인[4] 현황

▮ 체류 외국인 인구 구성

❍ 전국 외국인 인구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유입형 이민자' 비율이 38.2%, '정주형 이민자' 50.1%로 나타남

[표 4-9]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인구 구성 (2023.3.기준)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전국 외국인(등록외국인+재외동포)			1,724,809	100.0
유입형 이민자 (38.2%)	취업이민 (25.5%)	전문인력(E-1~E7)	50,206	2.9
		계절근로(E-8)	3,350	0.2
		비전문취업(E-9)	263,256	15.3
		선원취업(E-10)	19,614	1.1
		관광취업(H-1)	2,626	0.2
		방문취업(H-2)	100,303	5.8
	투자 등 (0.5%)	기업투자(D-8)	6,963	0.4
		무역경영(D-9)	2,145	0.1
	예비인재 (12.2%)	유학(D-2)	140,671	8.2
		어학연수(D-4-1,-7)	56,064	3.3
		구직(D-10)	13,805	0.8
정주형 이민자 (50.1%)	정주형이민 (50.1%)	거주(F-2)	45,562	2.6
		재외동포(F-4)*	503,124	29.2
		영주(F-5)	179,376	10.4
		결혼이민(F-6)	136,404	7.9
기타 (11.7%)	기타 (11.7%)	방문동거(F-1)	102,360	5.9
		동반(F-3)	24,946	1.4
		기타	74,034	4.3

구분			인원	비율
전라북도 외국인(등록외국인+재외동포)			39,270	100.0
유입형 이민자 (57.9%)	취업이민 (31.3%) (12,272명)	전문인력	1,042	2.7
		계절근로	434	1.1
		비전문취업	9,785	24.9
		선원취업	357	0.9
		관광취업	7	0.0
		방문취업	647	1.6
	투자 등 (0.3%/105명)	기업투자	83	0.2
		무역경영	22	0.1
	예비인재 (26.3%) (10,340명)	유학	6,125	15.6
		어학연수	3,432	8.7
		구직	783	2.0
정주형 이민자 (28.6%)	정주형이민 (28.6%) (11,232명)	거주	497	1.3
		재외동포*	3,801	9.7
		영주	2,110	5.4
		결혼이민	4,824	12.3
기타 (13.5%)	기타 (13.5% (5,321명)	방문동거	2,902	7.4
		동반	664	1.7
		기타	1,755	4.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재구성, 202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지역별 현황, 2023.3

4)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법무부, 2022).

○ 전북 외국인 인구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유입형 이민자’ 비율이 57.9%, ‘정주형 이민자’ 비율 28.6%로 나타나 전국과 차이를 보임

○ 세부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북은 비전문취업(E-9), 유학(D-2), 대학부설어학연수(D-4-1), 결혼이민(F-6) 비중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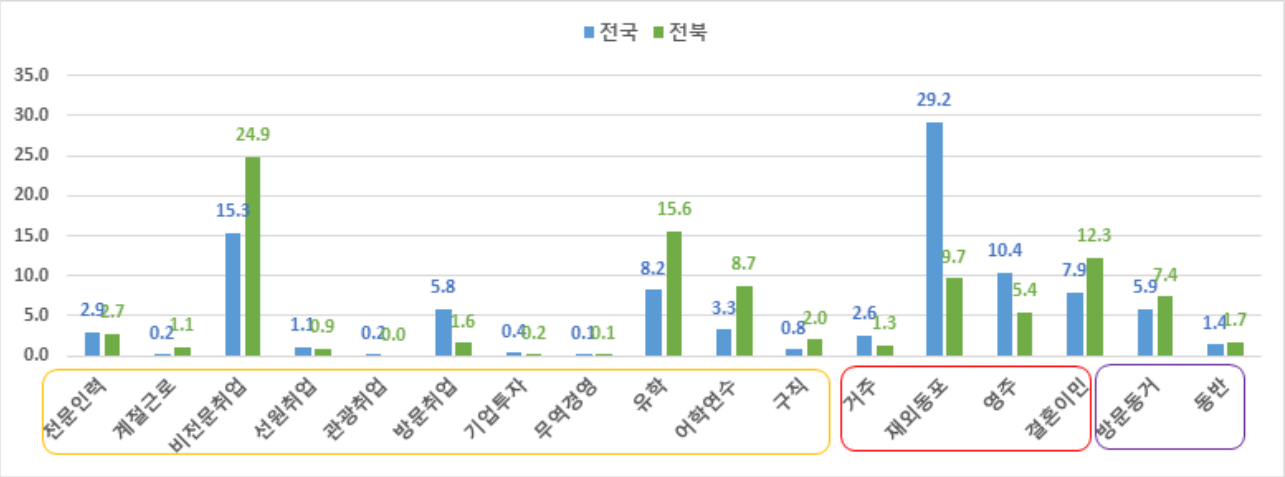

[그림 4-8] 전국 및 전북 외국인 인구구성(2023.3)

▮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 및 추이

○ 2023년 3월 기준 전국 등록외국인은 총 1,221,685명이며, 이 중 경기도 391,910명, 서울 241,604명, 충남 79,271명 순으로 많았음. 이 중 전라북도 등록외국인은 35,469명이며 전체 등록외국인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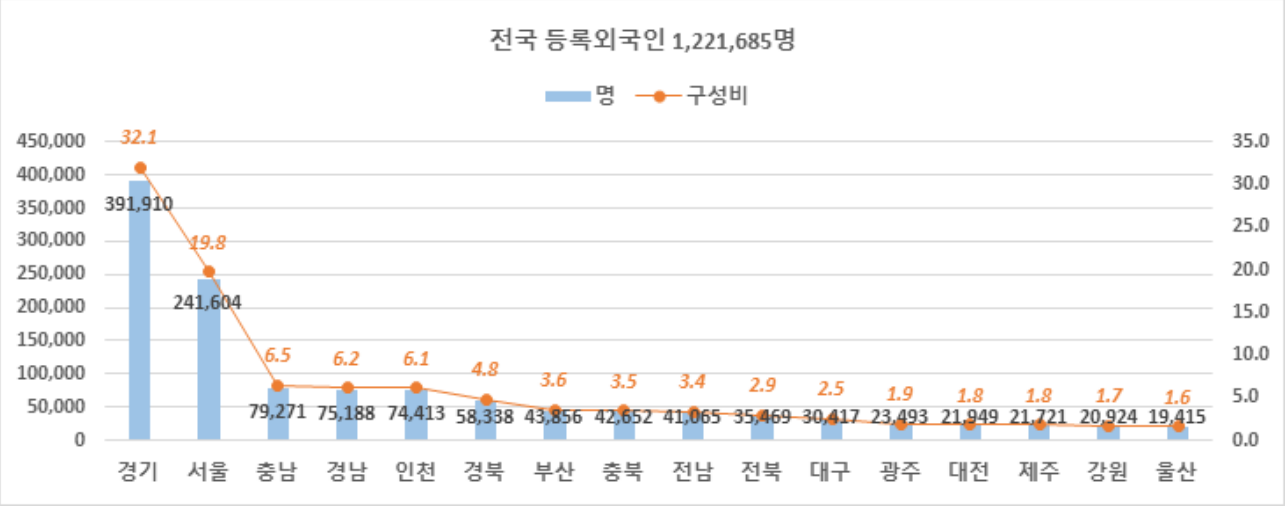

[그림 4-9] 전국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2023.3)

❍ 2023년 3월 기준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의 거주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1,211,685명 중 57.9%(707,927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남지역에 18.6%(227,214명), 충청지역에 11.8%(143,872명), 그리고 호남지역에는 8.2%에 해당되는 약 100,027명이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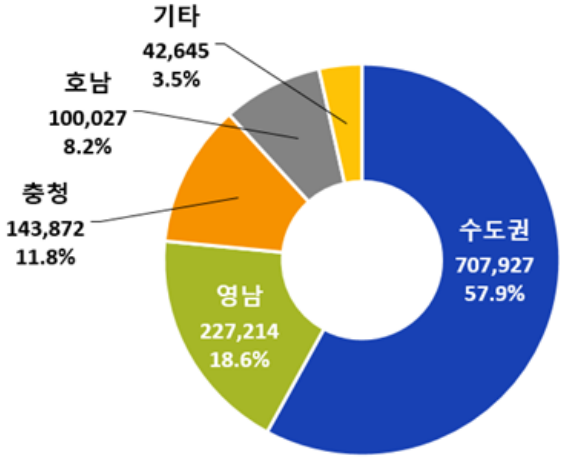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그림 4-10]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와 거소신고 외국인 제외)의 거주 지역별 현황

❍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13년 985,923명에서 매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년도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까지 감소하였으며 '2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2013년 대비 2023년은 1,221,685명으로 235,762명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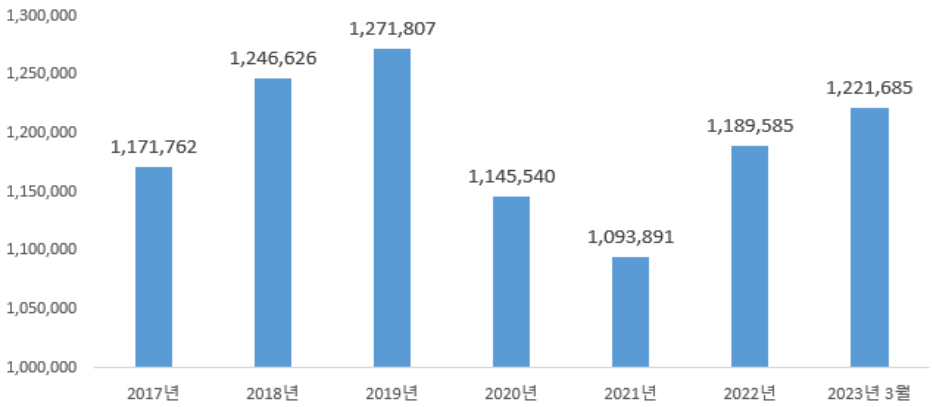

자료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3년 3월호

[그림 4-11] 전국 체류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와 거소신고 외국인 제외)의 거주 지역별 현황

❍ 전북의 경우 '13년 23,067명에서 매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마찬가지로 '19년도 말 코로나로 인해 급감하였음. '22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 대비 2023년 35,469명으로 12,402명 증가함

○ 전북의 등록외국인 증가율은 2015년 이후부터 줄곧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21-'22년 사이 15.2%(4,610명)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였음. 이는 남성 등록외국인의 증가율(19.9%/3,311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
전국	전체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221,685
			105,608	51,556	18,590	10,085	74,864	25,181	-126,267	-51,649	95,694	32,100
전북	전체	23,067	25,086	26,194	27,320	28,588	31,347	33,074	31,288	30,331	34,941	35,469
			2,019	1,108	1,126	1,268	2,759	1,727	-1,786	-957	4,610	528
	남성	11,912	13,198	13,785	14,392	15,100	16,992	18,300	17,294	16,678	19,989	20,293
			1,286	587	607	708	1,892	1,308	-1,006	-616	3,311	304
	여성	11,155	11,888	12,409	12,928	13,488	14,355	14,774	13,994	13,653	14,952	15,176
			733	521	519	560	867	419	-780	-341	1,299	22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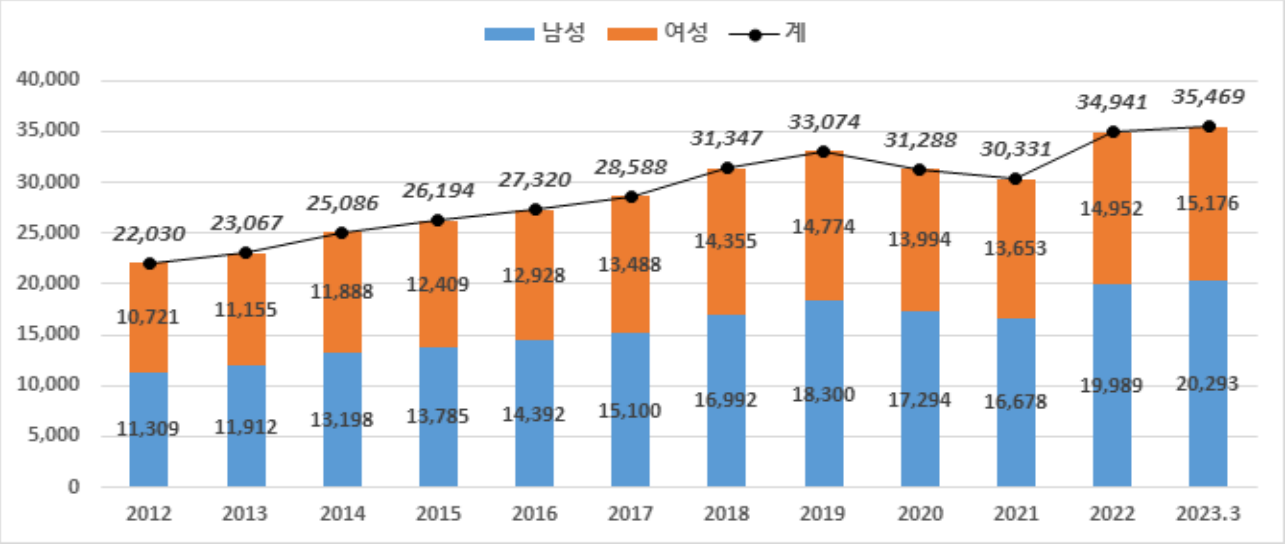

[그림 4-12] 전북 연도별 등록외국인 추이

▮ 연령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

○ 전국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가 29.3%(357,73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8.5%(348,134명)로 2030대가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었음

○ 전북의 경우, 20대가 41.6%(14,76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30.4%(10,788명)로 2030대가 전북 전체 등록외국인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에 비해 전북 등록외국인의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 등록외국인의 연령대가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 결혼이주민의 한국 정착 기간이 증가함과 남성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4-11]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국	전체	1,221,685	56,492	38,959	348,134	357,736	188,233	151,423	80,708
		100.0	4.6	3.2	28.5	29.3	15.4	12.4	6.6
전북	전체	35,469	673	639	14,762	10,788	4,207	2,955	1,445
		100.0	1.9	1.8	41.6	30.4	11.9	8.3	4.1
	남성	20,293	364	316	8,850	6,865	2,192	1,122	584
		100.0	1.8	1.6	43.6	33.8	10.8	5.5	2.9
	여성	15,176	309	323	5,912	3,923	2,015	1,833	861
		100.0	2.0	2.1	39.0	25.9	13.3	12.1	5.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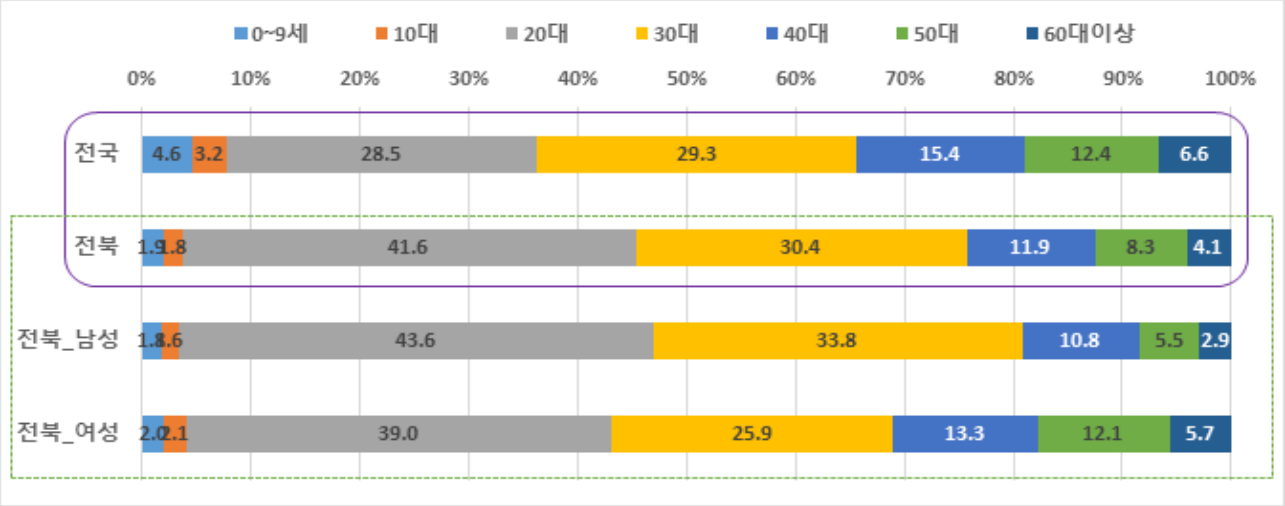

[그림 4-13]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 전국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유형이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주(F-5) 14.7%, 유학(D-2) 11.5%, 결혼이민(F-6) 11.2%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의 경우 역시 비전문취업(E-9) 유형이 2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학(D-2) 17.3%, 결혼이민(F-6) 13.6%, 일반연수(D-4) 9.8%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국 비중과는 상대적 차이를 보이며, 주된 체류자격 역시 차이가 나타남

- 전북은 전국보다 비전문취업(E-9) +6.1%p, 유학(D-2) +5.8%p, 일반연수(D-4) +5.1%p 높은 반면, 영주(F-5) -8.8%p, 거주(F-2) -2.3%p, 방문취업(H-2) -6.4%p 더 낮았음

- 전북의 첨단 신산업 등과 직결되는 특정활동(E-7) 유형은 전년(1.1%/382명)보다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1.2%(425명)에 불과하였음

[표 4-12]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23.3)

(단위 : 명, %)

전국	문화예술 (D-1)	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1,221,685	31	140,671	1,090	57,959	137	1,401	1,096	6,963	2,145	13,805
	교수 (E-1)	회화강사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1,991	13,590	3,966	212	238	3,721	26,488	3,350	263,256	19,614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G-1)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기타 (Others)	-
	102,360	45,562	24,946	179,376	136,404	38,462	2,626	100,303	29,922	

전북	문화예술 (D-1)	**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구직 (D-10)
35,469	0	**6,125**	43	3,464	0	45	1	83	22	783
	교수 (E-1)	회화강사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41	348	195	0	0	33	**425**	434	**9,785**	357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G-1)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기타 (Others)	-
	2,902	497	664	2,110	4,824	1,122	7	**647**	512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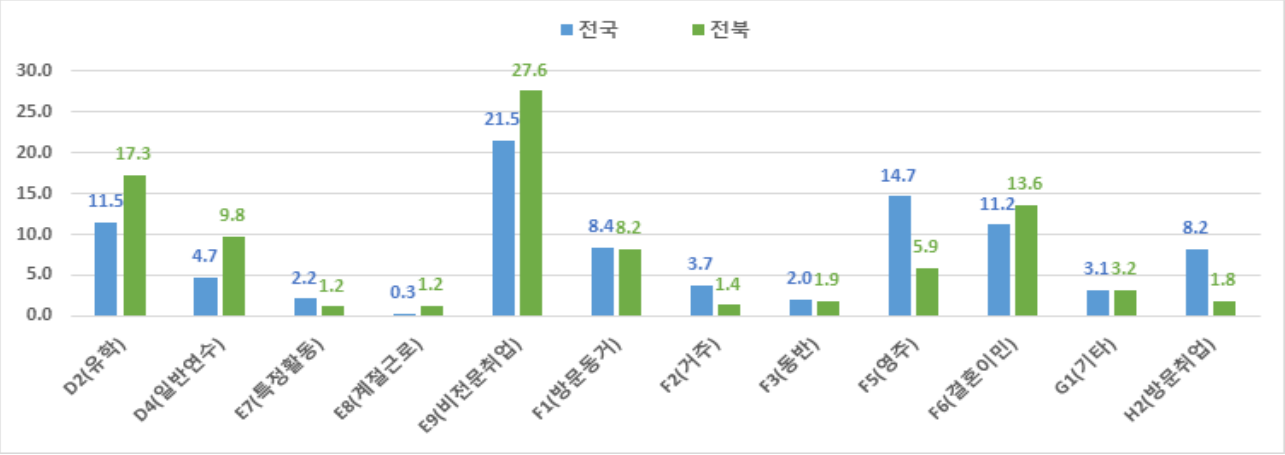

[그림 4-14]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구성비(2023.3)

❍ 한편, 전북 등록외국인의 주요 체류자격 추이를 살펴보면, 유학(D-2)의 경우 3,586명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 +2,797명, 일반연수(D-4) +2,708명 순이었음. 반면, 방문취업(H-2)은 -1,026명 감소함

- '13년 vs '23년 증감률은 일반연수(D-4) +358%, 구직(D-10) +330%, 유학(D-2) +141%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방문취업(-61%), 회화강사(-41%), 거주(-37%) 등은 감소함

[표 4-13]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추이

체류자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학(D-2)	2,539	2,475	2,359	2,729	3,437	4,470	5,587	5,481	5,767	6,028	6,125
기술연수(D-3)	98	115	93	90	90	86	73	63	56	58	43
일반연수(D-4)	756	751	757	1,181	2,117	3,291	3,520	3,009	2,957	3,713	3,464
기업투자(D-8)	25	34	40	52	33	39	46	60	62	76	83
구직(D-10)	182	151	173	152	126	141	118	201	311	548	783
교수(E-1)	66	58	55	52	47	50	36	52	41	44	41
회화강사(E-2)	587	568	530	479	467	467	475	413	405	388	348
연구(E-3)	72	107	130	112	145	134	164	144	175	193	195
예술흥행(E-6)	112	97	118	137	71	52	61	41	37	32	33
특정활동(E-7)	196	185	183	178	185	187	211	228	276	382	425
계절근로(E-8)	0	0	0	0	0	0	0	0	24	447	434
비전문취업(E-9)	6,988	7,812	8,193	8,456	8,427	8,810	8,983	8,028	7,302	9,396	9,785
선원취업(E-10)	215	277	293	319	348	335	344	334	328	352	357
방문동거(F-1)	2,160	2,775	3,333	3,662	3,635	3,523	3,508	2,827	2,337	2,877	2,902
거주(F-2)	784	621	566	485	451	484	511	515	495	499	497
동반(F-3)	348	371	444	483	540	543	567	523	513	642	664
영주(F-5)	1,569	1,741	1,793	1,850	1,895	1,926	1,948	2,017	2,030	2,079	2,110
결혼이민(F-6)	4,567	4,602	4,753	4,811	4,797	4,816	4,845	4,922	4,847	4,815	4,824
방문취업(H-2)	1,673	2,170	2,093	1,664	1,308	1,383	1,279	981	816	673	64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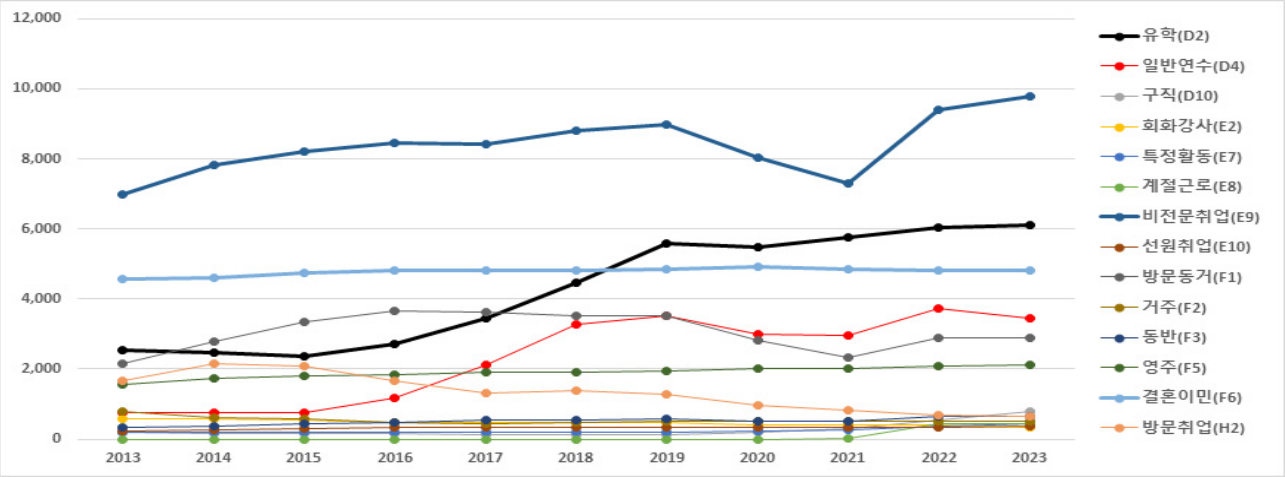

[그림 4-15]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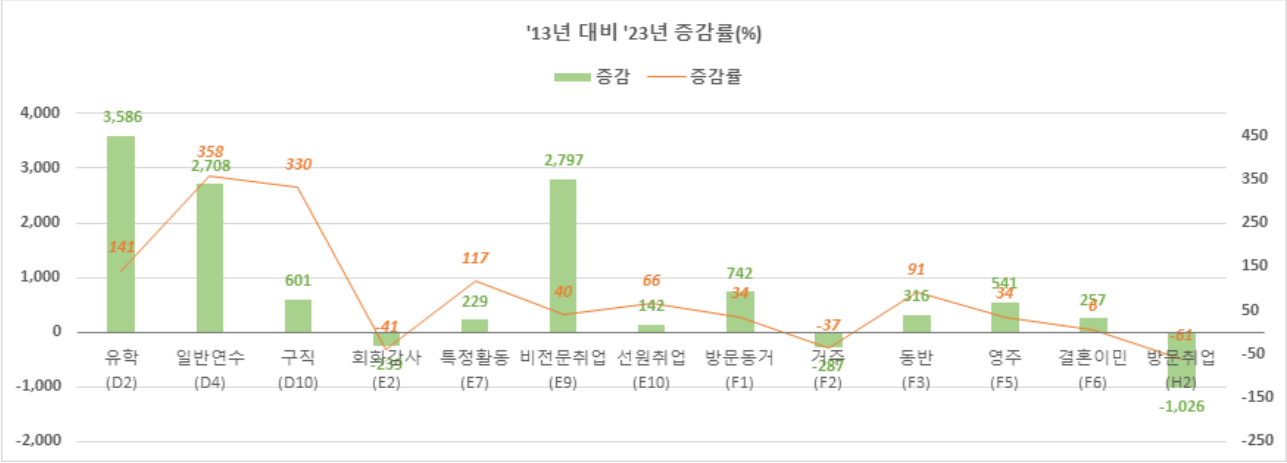

[그림 4-16] '13년 대비 '23년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별 증감률

▮ 국적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

❍ 전국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중국인 국적이 1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16.5%), 중국(15.3%), 우즈백(4.1%), 캄보디아(3.9%) 등의 순임

❍ 전북의 경우 베트남 국적이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14.4%), 캄보디아(6.7%), 네팔(6.6%), 우즈벡(4.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 남성 등록외국인(20,293명)의 경우 베트남(27.1%), 중국(10.1%), 네팔(10.0%), 우즈벡(7.2%), 캄보디아(5.8%)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 여성 등록외국인(15,176명)의 경우 베트남(37.1%), 중국(20.2%), 캄보디아(7.9%), 필리핀(5.1%), 한국계중국인(4.6%), 일본(4.2%)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 4-14]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 TOP10(2023.3)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전북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네팔	우즈벡	중국(한국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전북_남성	베트남 5,496명	중국 2,046명	네팔 2,022명	우즈벡 1,462명	캄보디아 1,182명	인도네시아 1,052명	스리랑카 954명	미얀마 885명	중국(한국계) 811명	필리핀 595명
전북_여성	베트남 5,625명	중국 3,066명	캄보디아 1,202명	필리핀 777명	중국(한국계) 704명	일본 634명	몽골 493명	태국 446명	네팔 317명	우즈벡 265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 전북 등록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전국 비중과는 차이를 보임. 전국의 국가별 비중은 완만한 형태를 보이나, 전북은 특정 국가, 특히 베트남 국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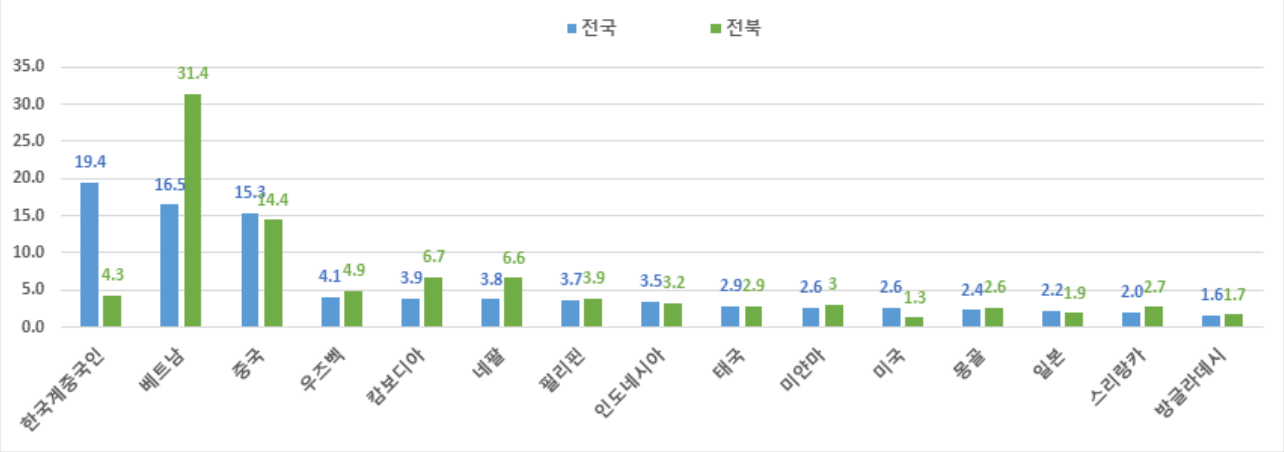

[그림 4-17] 전국 및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별 구성비(2023.3)

○ 한편, 전북 등록외국인의 주요 국적으로 나타난 베트남(1위)~태국(10위) 국가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가별 등록외국인의 성별 비중 편차가 나타남. 특히, 네팔, 우즈벡,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국가는 남성(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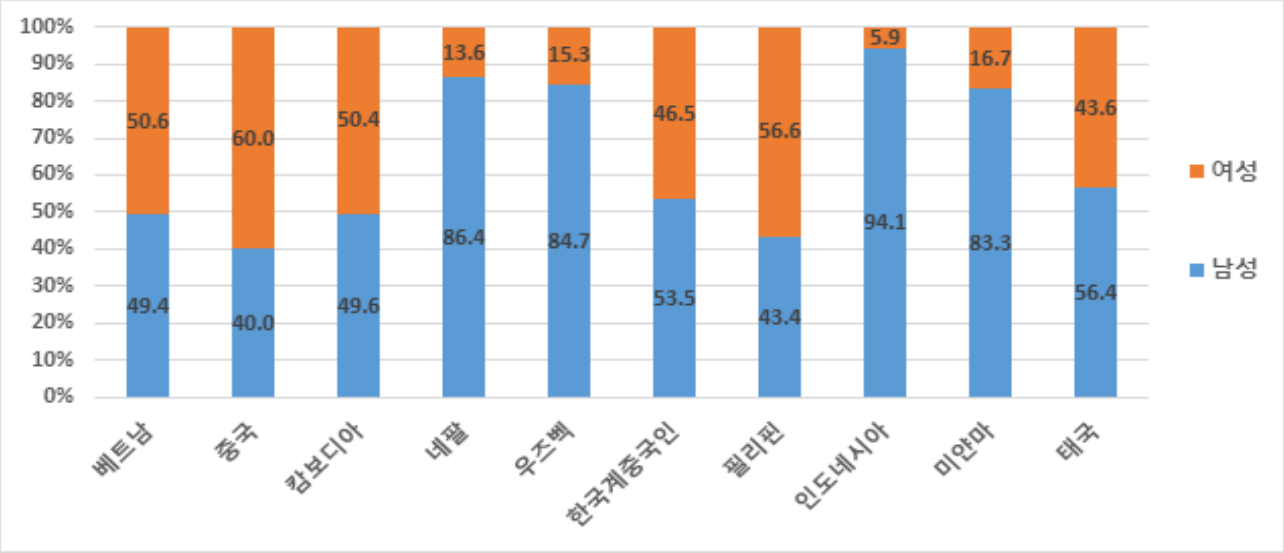

[그림 4-18]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TOP10)의 성별 구성비

나. 전북 시·군별 외국인 규모

1) 행정안전부(2022)의 전북 등록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현황

❍ 2021년 11월 기준 전북 외국인주민은 60,684명으로 총인구의 3.4%를 차지함. 시군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완주군이 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읍시(4.9%), 장수군(4.7%), 김제시(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는 전주시가 15,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산시(10,427명), 익산시(9,281명), 완주군(5,587명), 정읍시(5,127명) 등의 순이었으며 각 5천명 이상 거주하고 있음. 전북 주요 도시인 전주/군산/익산 3개 시에 전북 외국인주민의 58.4%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21)

(단위 : 명, %)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1,787,053	60,684	3.4	100.0
전주시	670,411	15,728	2.3	25.9
군산시	267,635	10,427	3.9	17.2
익산시	280,150	9,281	3.3	15.3
정읍시	104,463	5,127	4.9	8.4
남원시	76,551	2,431	3.2	4.0
김제시	77,998	3,618	4.6	6.0
완주군	95,029	5,587	5.9	9.2
진안군	22,760	940	4.1	1.5
무주군	22,305	687	3.1	1.1
장수군	20,335	954	4.7	1.6
임실군	24,997	938	3.8	1.5
순창군	25,483	990	3.9	1.6
고창군	51,180	2,109	4.1	3.5
부안군	47,756	1,867	3.9	3.1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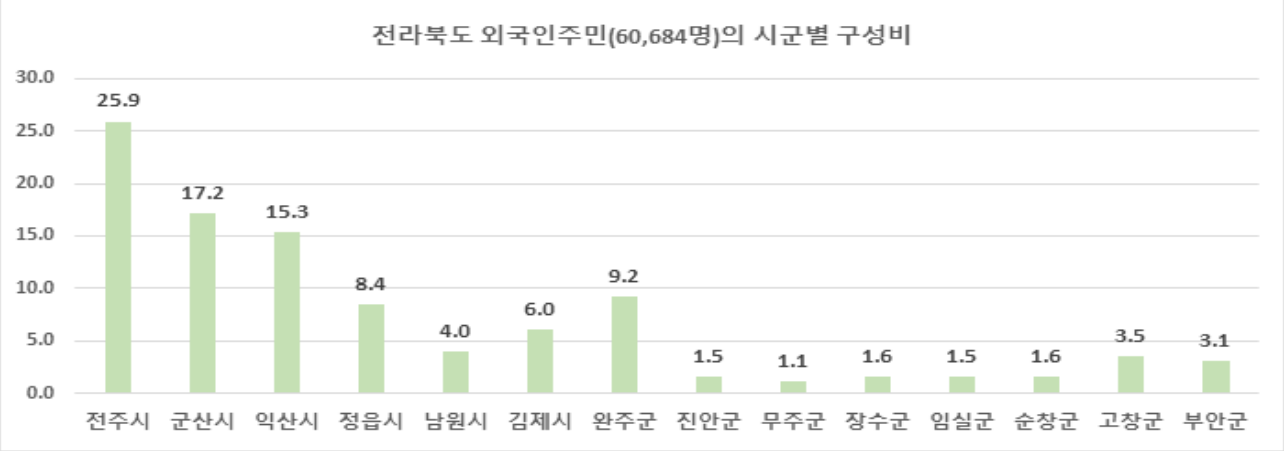

[그림 4-19] 전북 전체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구성비

❍ 한편,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약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약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5곳임

- 외국인주민 수 약 1만명 이상: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 외국인주민 비중 약 5% 이상: 완주군, (정읍시)

[표 4-16] 전북 외국인주민 현황(시군별 매트릭스)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만명 이상			군산시 (10,427/3.9)	전주시 (15,728/2.3)
외국인주민수 5천명 이상	완주군 (5,587/5.9)	정읍시 (5,127/4.9)	익산시 (9,281/3.3)	
외국인주민수 3천명 이상		김제시 (3,618/4.6)		
외국인주민수 2천명 이상		고창군 (2,109/4.1)	남원시 (2,431/3.2)	
외국인주민수 1천명 이상			부안군 (1,867/3.9)	
외국인주민수 1천명 미만		진안군(940/4.1) 장수군(954/4.7)	무주군(687/3.1) 임실군(938/3.8) 순창군(99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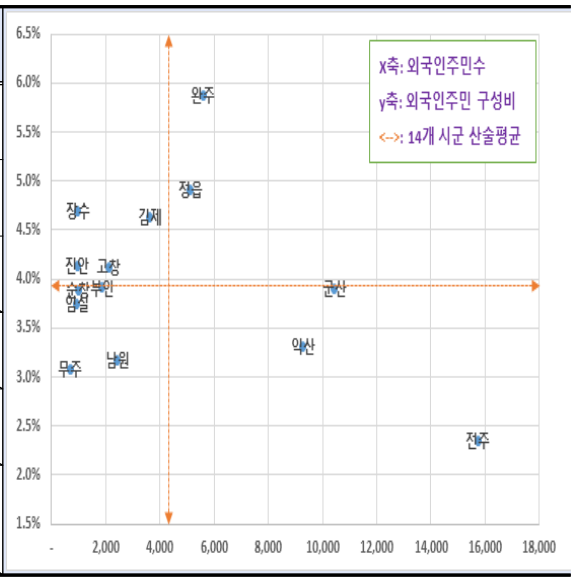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기준).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전주시가 '15년 9,496명에서 '21년까지 6,232명 증가하였으며, 총인구 중 외국인주민 비중이 '15년 1.4%에 불과하였으나 '21년 2.3%로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익산시가 ‘15년 대비 ‘21년 2,237명 증가, ‘15년 구성비 2.3%에서 ‘21년 3.3%
- 군산시 ‘15년 대비 ‘21년 2,218명 증가, ‘15년 구성비 3.0%에서 ‘21년 3.9%
- 완주군 ‘15년 대비 ‘21년 2,140명 증가, ‘15년 구성비 3.6%에서 ‘21년 5.9%
- 정읍시 ‘15년 대비 ‘21년 1,278명 증가, ‘15년 구성비 3.5%에서 ‘21년 4.9%

[표 4-17]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5 대비 '21*
전라북도		44,184	45,836	49,840	55,940	62,151	61,316	60,684	*16,500*
전주시	외국인주민 수	9,496	10,179	11,457	12,934	14,733	15,462	15,728	*6,232*
	인구대비%	1.4	1.5	1.7	2.0	2.2	2.3	2.3	*0.9*
군산시	외국인주민 수	8,209	8,498	8,454	9,391	10,539	10,436	10,427	*2,218*
	인구대비%	3.0	3.1	3.1	3.4	3.9	3.9	3.9	*0.9*
익산시	외국인주민 수	7,044	7,500	8,518	9,290	9,874	9,553	9,281	*2,237*
	인구대비%	2.3	2.5	2.8	3.2	3.4	3.3	3.3	*1.0*
정읍시	외국인주민 수	3,849	3,760	4,055	4,662	5,354	5,318	5,127	*1,278*
	인구대비%	3.5	3.4	3.7	4.3	5.0	5.0	4.9	*1.4*
남원시	외국인주민 수	1,949	1,969	2,135	2,321	2,573	2,461	2,431	*482*
	인구대비%	2.4	2.5	2.7	3.0	3.3	3.2	3.2	*0.8*
김제시	외국인주민 수	2,993	3,095	3,281	3,602	3,942	3,783	3,618	*625*
	인구대비%	3.6	3.7	4.0	4.4	4.9	4.7	4.6	*1.1*
완주군	외국인주민 수	3,447	3,605	4,100	5,392	6,101	5,709	5,587	*2,140*
	인구대비%	3.6	3.7	4.2	5.5	6.3	6.0	5.9	*2.3*
진안군	외국인주민 수	791	775	901	919	1,012	947	940	*149*
	인구대비%	3.5	3.4	3.9	3.9	4.4	4.1	4.1	*0.7*
무주군	외국인주민 수	584	579	649	683	709	686	687	*103*
	인구대비%	2.5	2.5	2.8	3.0	3.1	3.0	3.1	*0.6*
장수군	외국인주민 수	888	860	913	965	1,003	987	954	*66*
	인구대비%	4.1	4.0	4.3	4.5	4.7	4.7	4.7	*0.6*
임실군	외국인주민 수	832	861	998	1,024	1,032	949	938	*106*
	인구대비%	3.2	3.3	3.8	3.9	3.9	3.6	3.8	*0.5*
순창군	외국인주민 수	849	831	916	959	1,055	1,031	990	*141*
	인구대비%	3.2	3.1	3.4	3.5	4.0	3.9	3.9	*0.7*
고창군	외국인주민 수	1,737	1,789	1,923	2,108	2,252	2,154	2,109	*372*
	인구대비%	3.1	3.2	3.5	3.9	4.2	4.1	4.1	*1.0*
부안군	외국인주민 수	1,516	1,535	1,540	1,690	1,972	1,840	1,867	*351*
	인구대비%	2.9	3.0	3.0	3.3	4.0	3.7	3.9	*1.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각년도)」.

○ 한편, 전북의 전체적인 내국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하여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구성비는 증가추세를 보임

○ 전북 외국인주민 수는 ‘19년을 정점으로 소폭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로의 인구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북 전체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구성비율 및 외국인주민 수는 전주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20년부터 정체 혹은 소폭 감소추세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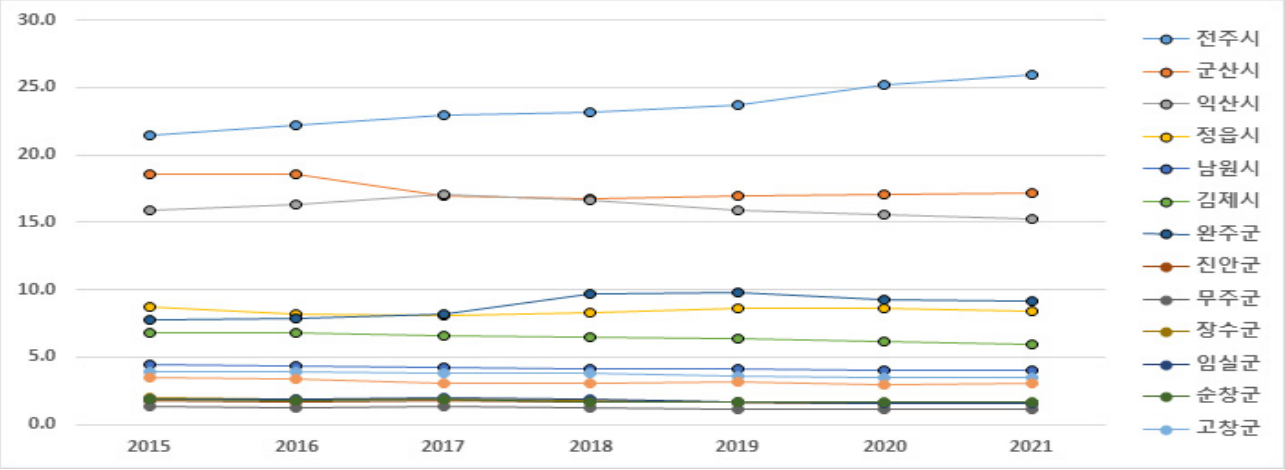

[그림 4-20] 전북 전체 외국인주민의 시군별 구성비 추이

▮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을 크게 국적 취득자 대 미취득자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북 외국인주민의 국적취득률은 32.4%로 나타난 가운데 시군별로는 무주군이 59.5%, 임실군, 58.2%로 가장 높은 반면, 군산시(25.4%), 완주군(26.0%), 전주시(26.8%)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현황은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지역과 도농/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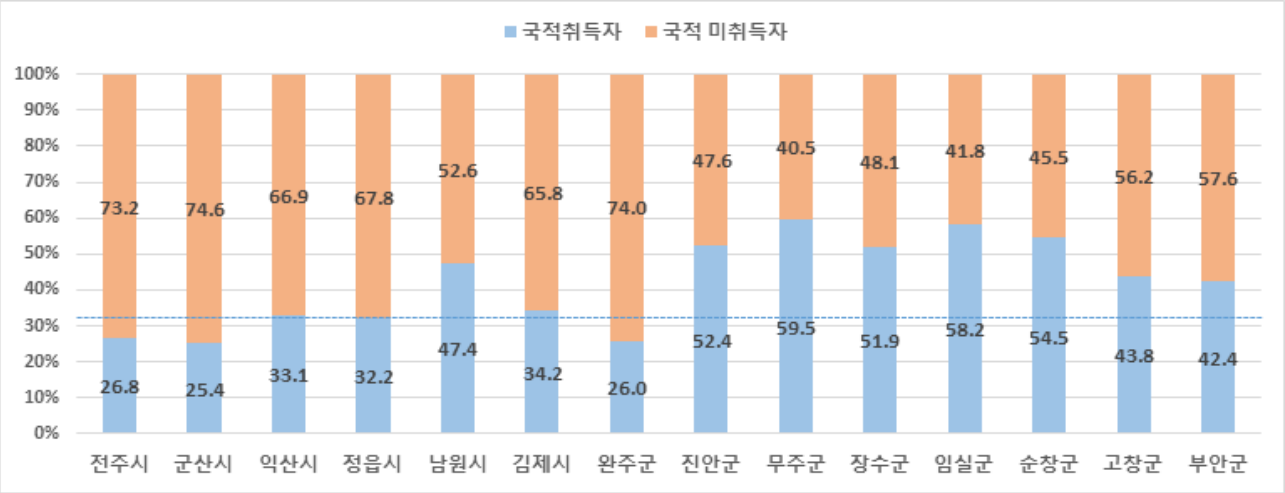

[그림 4-2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2021)

[표 4-18]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21)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소계	국적취득	외국인주 민자녀
전라북도	60,684	41,047	9,464	5,903	8,593	2,543	14,544	19,637	6,272	13,365
	100.0	*67.6*	*15.6*	*9.7*	*14.2*	*4.2*	*24.0*	*32.4*	*10.3*	*22.0*
전주시	15,728	11,509	1,051	1,442	4,502	577	3,937	4,219	1,375	2,844
	100.0	*73.2*	*6.7*	*9.2*	*28.6*	*3.7*	*25.0*	*26.8*	*8.7*	*18.1*
군산시	10,427	7,774	2,321	1,038	1,168	715	2,532	2,653	894	1,759
	100.0	*74.6*	*22.3*	*10.0*	*11.2*	*6.9*	*24.3*	*25.4*	*8.6*	*16.9*
익산시	9,281	6,205	1,437	943	963	352	2,510	3,076	1,064	2,012
	100.0	*66.9*	*15.5*	*10.2*	*10.4*	*3.8*	*27.0*	*33.1*	*11.5*	*21.7*
정읍시	5,127	3,475	930	435	599	247	1,264	1,652	549	1,103
	100.0	*67.8*	*18.1*	*8.5*	*11.7*	*4.8*	*24.7*	*32.2*	*10.7*	*21.5*
남원시	2,431	1,278	297	358	1	133	489	1,153	319	834
	100.0	*52.6*	*12.2*	*14.7*	*0.0*	*5.5*	*20.1*	*47.4*	*13.1*	*34.3*
김제시	3,618	2,382	1,133	327	5	102	815	1,236	394	842
	100.0	*65.8*	*31.3*	*9.0*	*0.1*	*2.8*	*22.5*	*34.2*	*10.9*	*23.3*
완주군	5,587	4,137	948	361	1,352	166	1,310	1,450	456	994
	100.0	*74.0*	*17.0*	*6.5*	*24.2*	*3.0*	*23.4*	*26.0*	*8.2*	*17.8*
진안군	940	447	122	129	0	19	177	493	139	354
	100.0	*47.6*	*13.0*	*13.7*	*0.0*	*2.0*	*18.8*	*52.4*	*14.8*	*37.7*
무주군	687	278	41	94	0	11	132	409	110	299
	100.0	*40.5*	*6.0*	*13.7*	*0.0*	*1.6*	*19.2*	*59.5*	*16.0*	*43.5*
장수군	954	459	148	112	0	25	174	495	151	344
	100.0	*48.1*	*15.5*	*11.7*	*0.0*	*2.6*	*18.2*	*51.9*	*15.8*	*36.1*
임실군	938	392	93	107	0	18	174	546	151	395
	100.0	*41.8*	*9.9*	*11.4*	*0.0*	*1.9*	*18.6*	*58.2*	*16.1*	*42.1*
순창군	990	450	117	130	0	26	177	540	152	388
	100.0	*45.5*	*11.8*	*13.1*	*0.0*	*2.6*	*17.9*	*54.5*	*15.4*	*39.2*
고창군	2,109	1,186	437	221	1	106	421	923	269	654
	100.0	*56.2*	*20.7*	*10.5*	*0.0*	*5.0*	*20.0*	*43.8*	*12.8*	*31.0*
부안군	1,867	1,075	389	206	2	46	432	792	249	543
	100.0	*57.6*	*20.8*	*11.0*	*0.1*	*2.5*	*23.1*	*42.4*	*13.3*	*29.1*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 도시지역인 전주시와 인접 지역인 완주군의 경우 유학생이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았고,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의 경우 외국인주민자녀 비중이 4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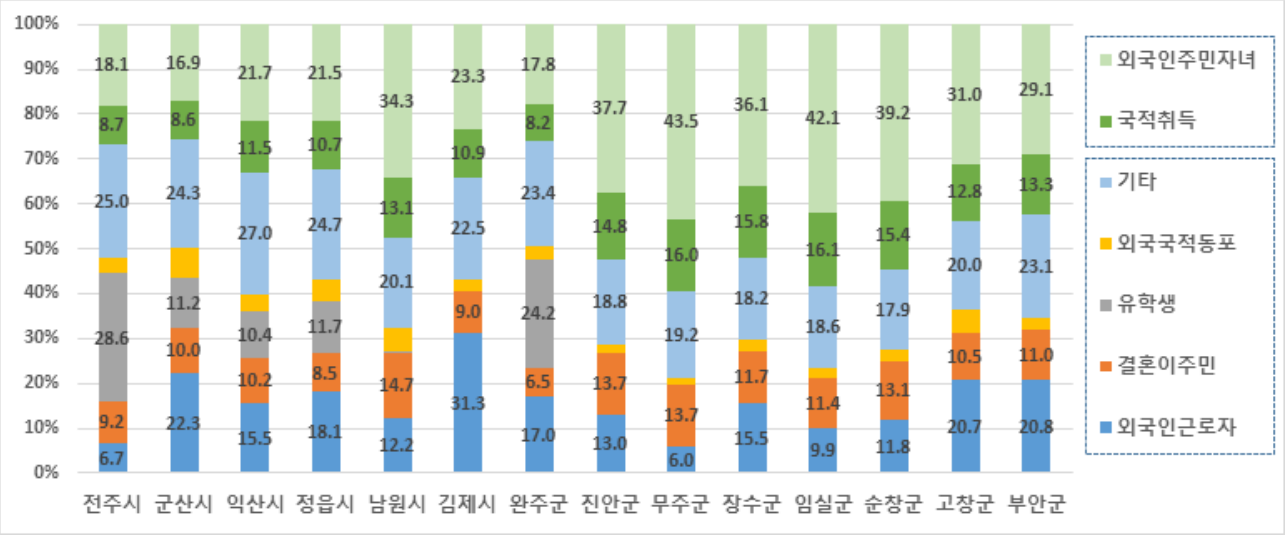

[그림 4-22]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2021)

[표 4-19]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유형 순위(202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전주시	유학생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결혼이주민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군산시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자녀	유학생	결혼이주민	귀화자
익산시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귀화자	유학생	결혼이주민
정읍시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귀화자	결혼이주민
남원시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결혼이주민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동포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동포
완주군	유학생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귀화자	결혼이주민
진안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동포
무주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동포
장수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동포
임실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동포
순창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동포
고창군	외국인주민자녀	외국인근로자	기타외국인	귀화자	결혼이주민	동포
부안군	외국인주민자녀	기타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귀화자	결혼이주민	동포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 한편,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는 군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결혼이주민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지역, 유학생은 전주에 집중되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군산, 기타외국인은 전주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외국인근로자는 9,464명이며 이 중 군산 지역에 24.5%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익산(15.2%), 김제(12.0%), 전주(11.1%), 완주(10.0%) 순으로 많았음

- 전북 결혼이주민 5,903명의 24.4%가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군산(17.6%), 익산(16.0%) 등의 순이었음

- 전북 유학생 8,593명의 52.4%가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완주(15.7%), 군산(13.6%), 익산(11.2%) 등의 순이었음
- 전북 외국국적동포 2,543명의 28.1%가 군산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주(22.7%), 익산(13.8%) 등의 순이었음
- 기타외국인 14,544명의 27.1%가 전주에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군산(17.4%) 및 익산(17.3%)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0] 전북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유형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1)

(단위 :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외국인근로자 (9,464명)	11.1	24.5	15.2	9.8	3.1	12.0	10.0	1.3	0.4	1.6	1.0	1.2	4.6	4.1
결혼이주민 (5,903명)	24.4	17.6	16.0	7.4	6.1	5.5	6.1	2.2	1.6	1.9	1.8	2.2	3.7	3.5
유학생 (8,593명)	52.4	13.6	11.2	7.0	0.0	0.1	15.7	0.0	0.0	0.0	0.0	0.0	0.0	0.0
외국국적동포 (2,543명)	22.7	28.1	13.8	9.7	5.2	4.0	6.5	0.7	0.4	1.0	0.7	1.0	4.2	1.8
기타외국인 (14,544명)	27.1	17.4	17.3	8.7	3.4	5.6	9.0	1.2	0.9	1.2	1.2	1.2	2.9	3.0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30대의 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40% 중후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학생의 비중이 전주시와 완주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함. 마찬가지로 익산시와 정읍시 역시 지역 내 대학의 영향으로 20대의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유형 비중이 낮았던 남원시를 비롯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50대 이상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

[표 4-21]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단위 : 명)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라북도	41,047	678	917	15,268	11,895	6,030	4,021	1,702	536
전주시	11,509	328	414	5,353	2,694	1,337	914	356	113
군산시	7,774	108	216	2,316	2,496	1,288	867	349	134
익산시	6,205	101	91	2,240	1,794	964	664	266	85
정읍시	3,475	40	38	1,319	1,014	496	316	204	48
남원시	1,278	18	20	291	377	262	186	103	21
김제시	2,382	13	8	672	947	431	210	79	22
완주군	4,137	44	97	1,975	1,080	506	296	107	32
진안군	447	3	11	116	146	64	75	22	10
무주군	278	*	*	67	83	66	39	19	3
장수군	459	*	*	123	150	75	68	26	13
임실군	392	*	*	114	134	63	51	20	9
순창군	450	5	0	118	155	69	70	25	8
고창군	1,186	9	13	282	417	215	151	73	26
부안군	1,075	5	7	282	408	194	114	53	12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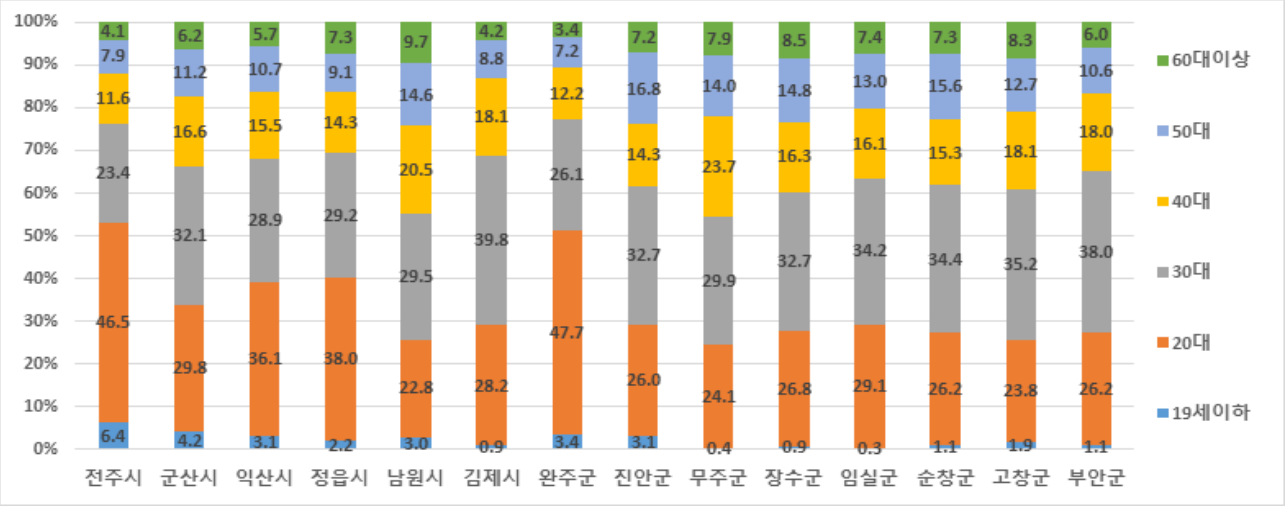

[그림 4-23]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연령별 현황(2021)

▮ 외국인주민 체류기간별 현황

○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2년~4년미만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완주군이 체류기간이 가장 짧은 분포를 보였고, 남원시가 가장 긴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의 경우 '5년이하' 구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외 나머지 9개 시군에서는 '5년이상' 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5년이하' 비중이 각 76.8%, 79.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대/유학생의 비중이 전주시와 완주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함

- 한편, 상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유형 비중이 낮고, 50대 이상 비중이 높았던 남원시를 비롯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5년이상'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음

[표 4-22] 전북 시군별 외국인 주민 체류기간 현황(2021)

(단위 : 명)

구분	전체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4년미만	4~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미상
전라북도	41,047	3,827	3,806	8,185	8,412	5,307	7,270	4,237	3
전주시	11,509	1,727	1,470	2,294	2,155	1,196	1,718	948	1
군산시	7,774	720	688	1,565	1,441	837	1,634	888	1
익산시	6,205	407	459	1,125	1,207	1,132	1,112	763	0
정읍시	3,475	107	306	792	827	451	620	372	0
남원시	1,278	68	86	222	244	146	300	212	0
김제시	2,382	110	149	509	582	359	416	256	1
완주군	4,137	453	313	839	1,044	649	615	224	0
진안군	447	19	28	82	87	69	94	68	0
무주군	278	16	21	55	53	32	51	50	0
장수군	459	27	35	99	94	45	87	72	0
임실군	392	27	31	62	87	51	79	55	0
순창군	450	21	35	84	80	61	82	87	0
고창군	1,186	85	112	225	239	138	247	140	0
부안군	1,075	40	73	232	272	141	215	102	0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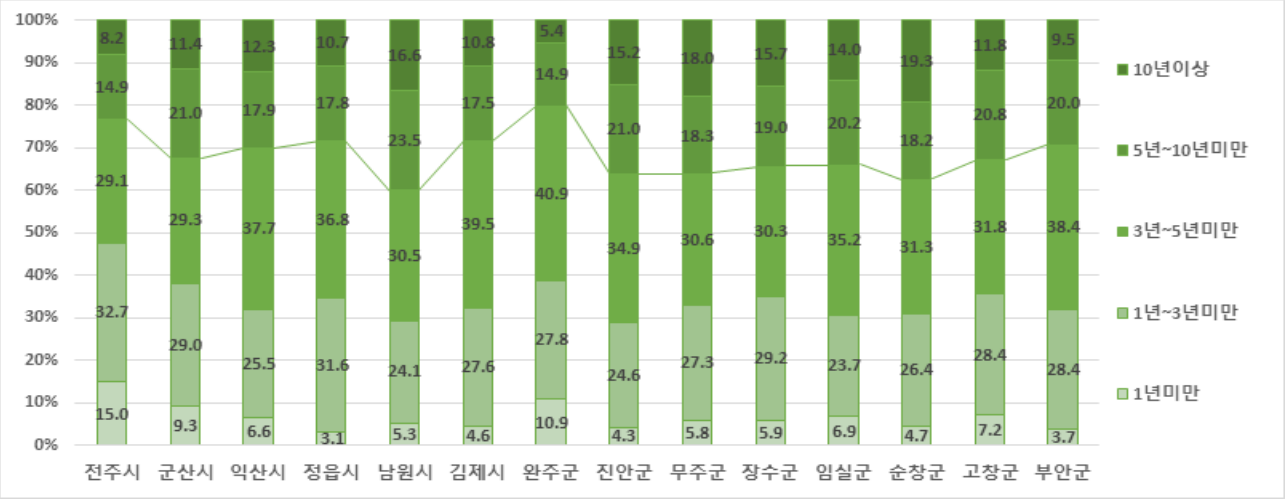

[그림 4-24]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체류기간 현황(2021)

▌외국인주민 국적별 현황

○ 전북 외국인주민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26.1%), 태국(15.4%), 중국(14.5%), 중국(한국계) 8.4%, 캄보디아(4.5%)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시군별로는 모든 시군에서 베트남 및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김제시/장수군/고창군 3개 시군은 태국 국적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시군은 베트남 국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북 평균 순위와 달리 김제시와 진안군은 네팔 국적이 상위권에 분포하였고, 순창군은 일본 국적이 상위권에 분포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음

[표 4-23] 전북 시군별 외국인주민 주요 국적 TOP10(202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라북도	베트남	태국	중국	중국(한국계)	캄보디아	우즈벡	네팔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전주시	베트남	중국	태국	몽골	중국(한국계)	우즈벡	캄보디아	미국	미얀마	필리핀
군산시	베트남	중국	태국	중국(한국계)	인도네시아	우즈벡	필리핀	미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익산시	베트남	태국	중국	중국(한국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몽골	우즈벡	미얀마
정읍시	베트남	태국	중국(한국계)	네팔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남원시	베트남	태국	중국(한국계)	중국	캄보디아	네팔	일본	필리핀	미국	미얀마
김제시	태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한국계)	스리랑카	우즈벡	방글라데시	중국
완주군	베트남	태국	중국	우즈벡	중국(한국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진안군	베트남	태국	네팔	일본	중국(한국계)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미국
무주군	베트남	태국	중국(한국계)	필리핀	네팔	중국	일본	캄보디아	-	-
장수군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중국(한국계)	중국	일본	미얀마	필리핀	우즈벡
임실군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중국	중국(한국계)	필리핀	미국	일본	몽골
순창군	베트남	태국	일본	캄보디아	중국(한국계)	네팔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고창군	태국	베트남	중국(한국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필리핀	미얀마
부안군	베트남	태국	중국	미얀마	중국(한국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 한편, 전북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1,500명 이상 되는 국가의 시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주로 베트남/태국/중국 국적은 전주시, 중국(한국계) 국적은 군산시, 캄보디아 국적은 익산시, 우즈벡 국적은 완주군, 네팔 국적은 정읍시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음

- 전북 베트남 외국인주민(10,702명)의 29.3%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군산(18.2%), 익산(14.6%), 정읍(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태국(6,332명)의 경우 전주(18.7%), 익산(17.0%), 군산(16.3%), 정읍(10.8%), 완주(10.4%)

- 중국(5,939명)의 경우 전주(45.8%), 군산(21.7%), 익산(12.5%), 완주(9.4%)
- 중국한국계(3,460명)의 경우 군산(29.1%), 전주(19.3%), 익산(12.9%), 정읍(11.1%)
- 캄보디아(1,836명)의 경우 익산(23.0%), 전주(17.5%), 완주(13.8%), 김제(9.6%)
- 우즈벡(1,546명)의 경우 완주(33.4%), 전주(25.0%), 군산(16.4%), 익산(10.5%)
- 네팔(1,508명)의 경우 정읍(17.9%), 익산(15.8%), 김제(14.8%), 완주(9.8%)

[표 4-24] 전북 국적 미취득 외국인주민 주요 7개 국가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1)

(단위 :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베트남 (10,702명)	29.3	18.2	14.6	10.6	2.8	4.2	10.2	1.4	0.8	0.9	1.0	1.1	2.1	2.7
태국 (6,332명)	18.7	16.3	17.0	10.8	3.7	8.1	10.4	1.4	1.2	1.8	1.5	1.4	3.7	4.0
중국 (5,939명)	45.8	21.7	12.5	3.1	1.7	1.6	9.4	0.4	0.3	0.5	0.6	0.4	0.9	1.1
중국(한국계) (3,460명)	19.3	29.1	12.9	11.1	5.8	4.1	7.7	0.8	0.6	1.0	0.7	1.0	4.0	1.8
캄보디아 (1,836명)	17.5	8.5	23.0	8.3	4.5	9.6	13.8	1.0	0.2	3.2	2.5	2.0	4.3	1.5
우즈벡 (1,546명)	25.0	16.4	10.5	2.7	1.0	6.7	33.4	0.7	*	0.6	*	0.3	1.2	1.2
네팔 (1,508명)	6.2	8.8	15.8	17.9	4.6	14.8	9.8	2.7	1.3	2.7	2.5	2.0	7.1	3.7

주 : 국적취득자와 외국인주민자녀 수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 등록외국인 전북 14개 시·군별 분포 현황(행안부, 2022. 11. 기준)

○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외국인 분포 현황을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 주민은 전주시 25.9%(15,728명), 군산시 17.2%(10,427명), 익산시 15.3%(9,281명) 순으로 거주하고 있고, 시 단위 지역에 외국인들이 집중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이 유학생 전체의 52.4%가 전주시(4,502명)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주군 15.7%(1,352명), 군산시 13.6%(1,168명), 익산시 11.2%(963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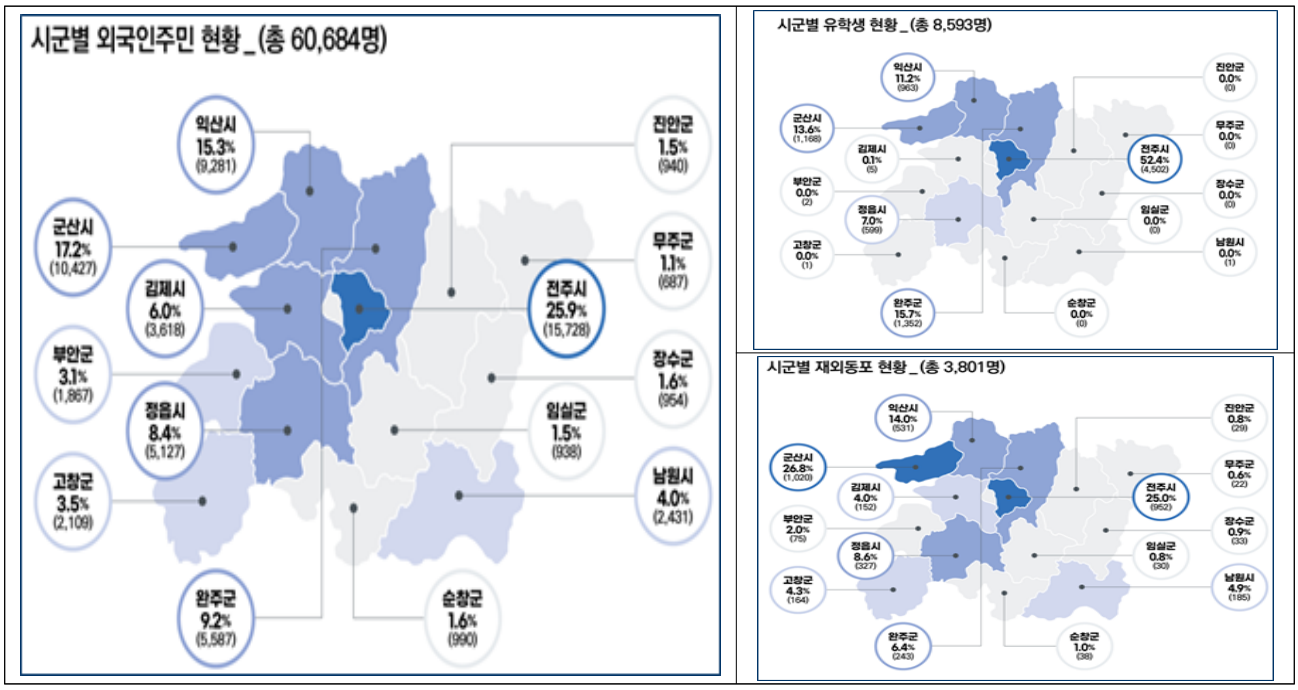

○ 재외동포의 경우 군산시에 26.8%(1,020명), 전주시 25%(962명), 익산시 14%(531명)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전주시 24.4%(1,442명), 군산시 17.6%(1,038명), 익산시 16%(943명)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군산시에 24.5%(2,321명)로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비전문취업(E9)근로자도 군산시 21.4%, 익산시 16.8%, 김제시 15.1%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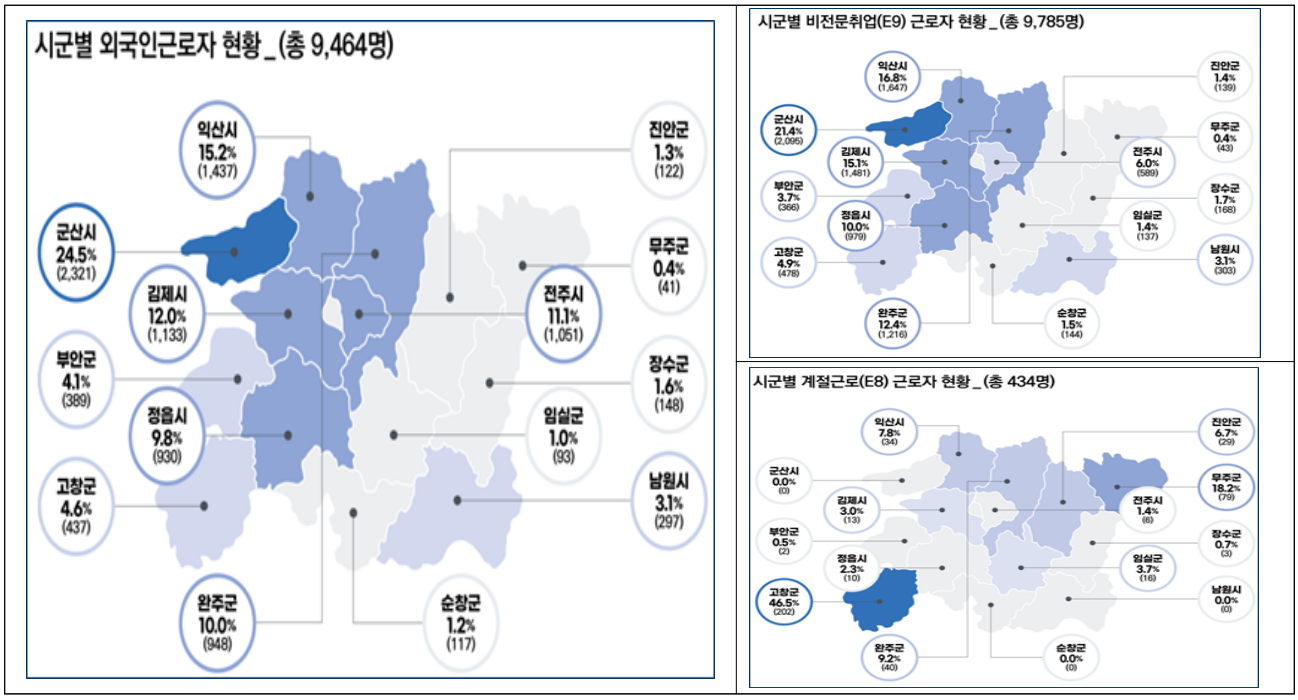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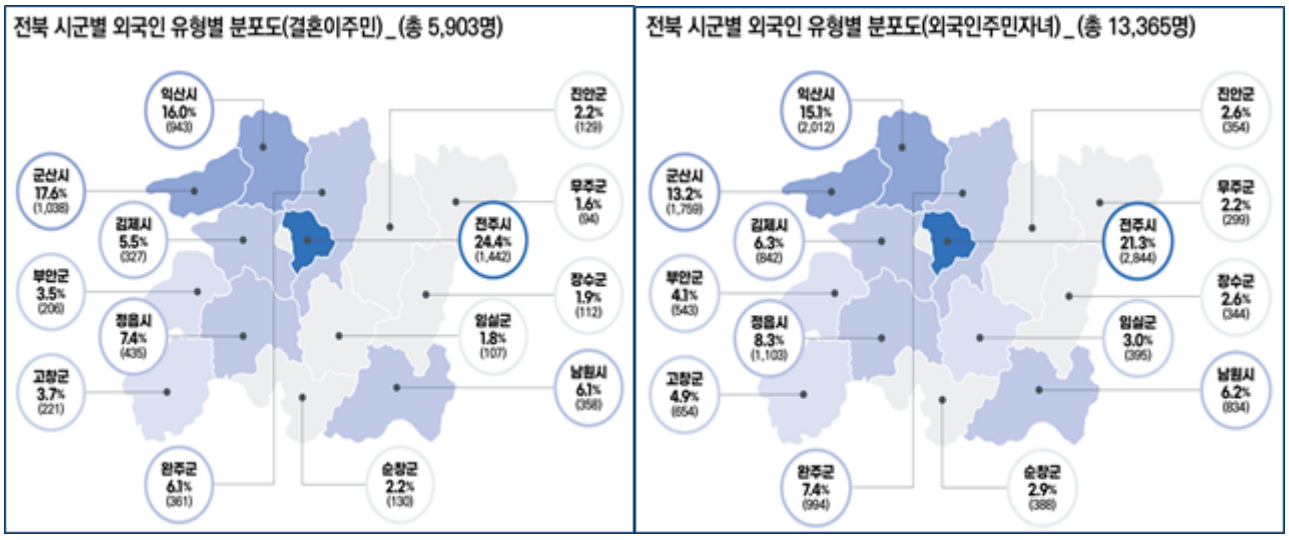

2) 법무부(2023.3), 등록외국인 현황

▮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

○ 법무부의 2023년 3월 기준 전북 체류 등록외국인은 총 35,469명이며, 이 중 전주시 9,693명, 군산시 7,020명, 익산 5,379명, 완주군 3,703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북의 등록외국인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년~'21년을 제외하고 줄곧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코로나19 전 정점을 기록한 2019년 대비 2023년 시군별 증감 현황을 보면, 전주/군산/익산/김제 지역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전북의 등록외국인 수는 증가추세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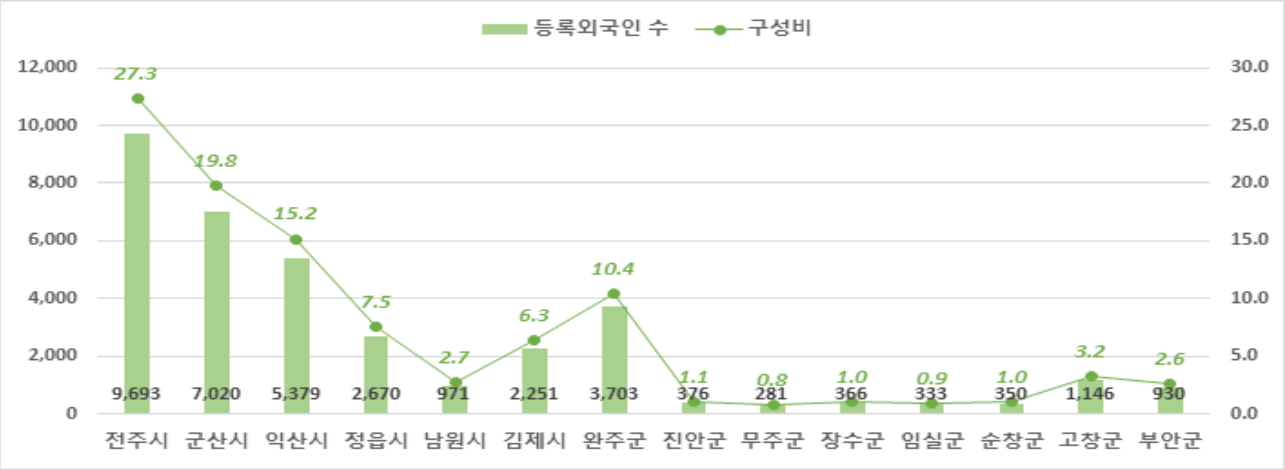

[그림 4-25]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2023.3)

[표 4-25]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
전라북도		27,320	28,588	31,347	33,074	31,288	30,331	34,941	35,469
전주시	외국인주민 수	6,625	7,153	7,961	8,704	8,745	8,901	9,764	9,693
	구성비	*24.2*	*25.0*	*25.4*	*26.3*	*28.0*	*29.3*	*27.9*	*27.3*
군산시	외국인주민 수	5,490	5,266	5,700	6,101	5,792	5,822	6,803	7,020
	구성비	*20.1*	*18.4*	*18.2*	*18.4*	*18.5*	*19.2*	*19.5*	*19.8*
익산시	외국인주민 수	4,552	5,167	5,279	5,145	4,714	4,459	5,118	5,379
	구성비	*16.7*	*18.1*	*16.8*	*15.6*	*15.1*	*14.7*	*14.6*	*15.2*
정읍시	외국인주민 수	2,145	2,230	2,614	2,874	2,731	2,480	2,700	2,670
	구성비	*7.9*	*7.8*	*8.3*	*8.7*	*8.7*	*8.2*	*7.7*	*7.5*
남원시	외국인주민 수	952	976	1,012	1,022	953	888	962	971
	구성비	*3.5*	*3.4*	*3.2*	*3.1*	*3.0*	*2.9*	*2.8*	*2.7*
김제시	외국인주민 수	1,965	1,952	1,998	2,029	1,876	1,742	2,173	2,251
	구성비	*7.2*	*6.8*	*6.4*	*6.1*	*6.0*	*5.7*	*6.2*	*6.3*
완주군	외국인주민 수	2,287	2,507	3,419	3,661	3,226	3,009	3,589	3,703
	구성비	*8.4*	*8.8*	*10.9*	*11.1*	*10.3*	*9.9*	*10.3*	*10.4*
진안군	외국인주민 수	329	340	349	373	336	322	408	376
	구성비	*1.2*	*1.2*	*1.1*	*1.1*	*1.1*	*1.1*	*1.2*	*1.1*
무주군	외국인주민 수	259	250	238	233	216	192	292	281
	구성비	*0.9*	*0.9*	*0.8*	*0.7*	*0.7*	*0.6*	*0.8*	*0.8*
장수군	외국인주민 수	388	381	381	377	351	324	373	366
	구성비	*1.4*	*1.3*	*1.2*	*1.1*	*1.1*	*1.1*	*1.1*	*1.0*
임실군	외국인주민 수	375	413	370	342	290	273	341	333
	구성비	*1.4*	*1.4*	*1.2*	*1.0*	*0.9*	*0.9*	*1.0*	*0.9*
순창군	외국인주민 수	365	361	353	395	354	313	360	350
	구성비	*1.3*	*1.3*	*1.1*	*1.2*	*1.1*	*1.0*	*1.0*	*1.0*
고창군	외국인주민 수	911	934	976	963	895	814	1,102	1,146
	구성비	*3.3*	*3.3*	*3.1*	*2.9*	*2.9*	*2.7*	*3.2*	*3.2*
부안군	외국인주민 수	677	658	697	855	809	792	956	930
	구성비	*2.5*	*2.3*	*2.2*	*2.6*	*2.6*	*2.6*	*2.7*	*2.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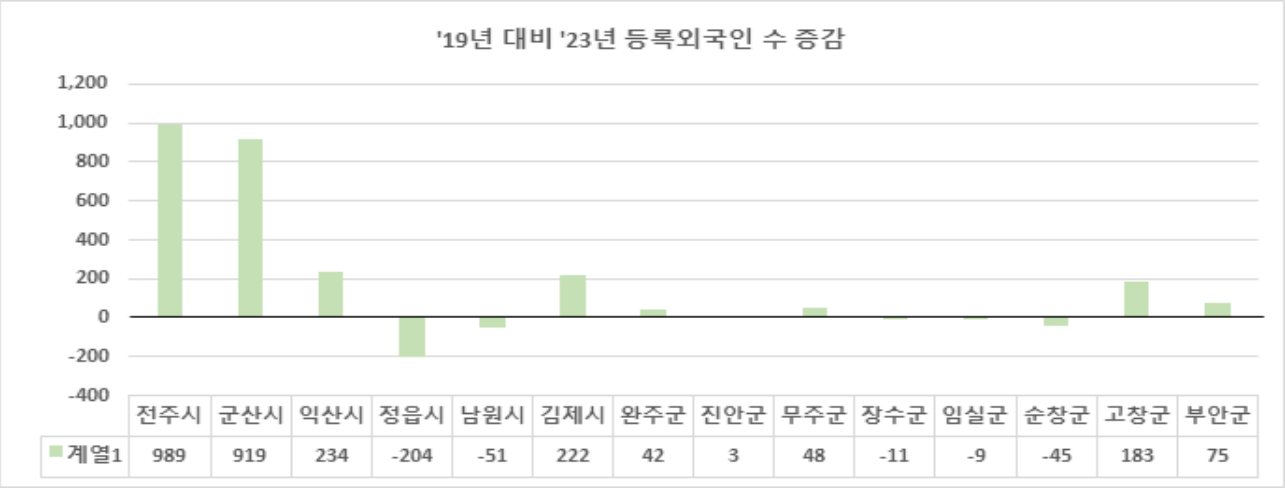

[그림 4-26] 전북 시군별 체류 등록외국인 증감 현황('19년 vs '23년)

▮ 연령별 체류 등록외국인 현황

○ 전북 체류 등록외국인의 주된 연령층은 2030대가 7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시군별로는 전주/익산/정읍/완주 4개 지역은 2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외 10개 시군에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2030대 비중은 완주군이 8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주시(76.1%), 김제시(73.3%), 익산시(71.9%), 정읍시(71.2%) 순으로 높은 반면, 무주군(52.3%) 및 남원시(54.0%)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6]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

구분	전체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30(%)*
전라북도	35,469	673	639	14,762	10,788	4,207	2,955	1,445	*72.0*
전주시	9,693	297	212	5,267	2,107	819	673	318	*76.1*
군산시	7,020	119	199	2,392	2,412	977	626	295	*68.4*
익산시	5,379	80	111	2,383	1,484	603	445	273	*71.9*
정읍시	2,670	48	33	1,089	813	328	229	130	*71.2*
남원시	971	21	16	240	284	160	180	70	*54.0*
김제시	2,251	25	15	661	995	333	156	66	*73.6*
완주군	3,703	46	26	1,864	1,122	375	198	72	*80.6*
진안군	376	2	3	101	139	56	49	26	*63.8*
무주군	281	0	3	41	106	76	36	19	*52.3*
장수군	366	4	3	98	138	40	52	31	*64.5*
임실군	333	3	0	96	125	47	44	18	*66.4*
순창군	350	8	0	86	130	46	56	24	*61.7*
고창군	1,146	9	12	213	546	207	109	50	*66.2*
부안군	930	11	6	231	387	140	102	53	*66.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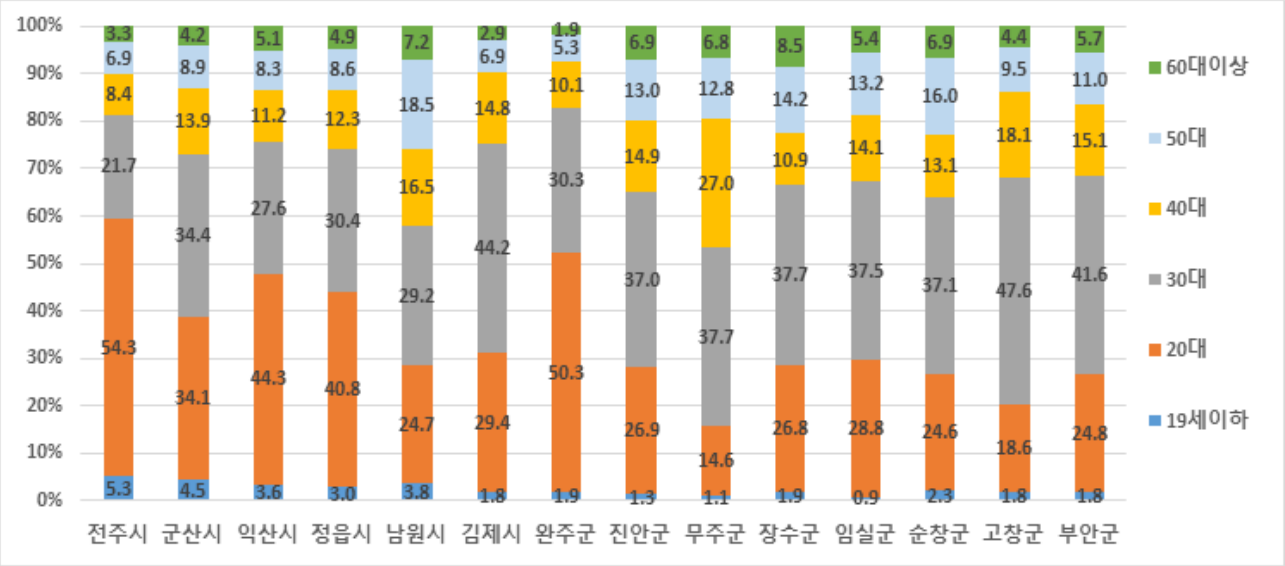

[그림 4-27]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연령별 현황(2023.3)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D2(유학) 유형이 가장 많았고, 무주군은 E8(계절근로) 유형이 가장 많았음. 이외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E9(비전문취업) 유형이 가장 많았음

- 특히, 김제시의 경우 E9(비전문취업) 유형이 65.8%를 차지함. 남원/무주/임실/장수 지역은 F1(방문동거)의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하였음
-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D4(일반연수) 비중이 높았고, 반대로 F6(결혼이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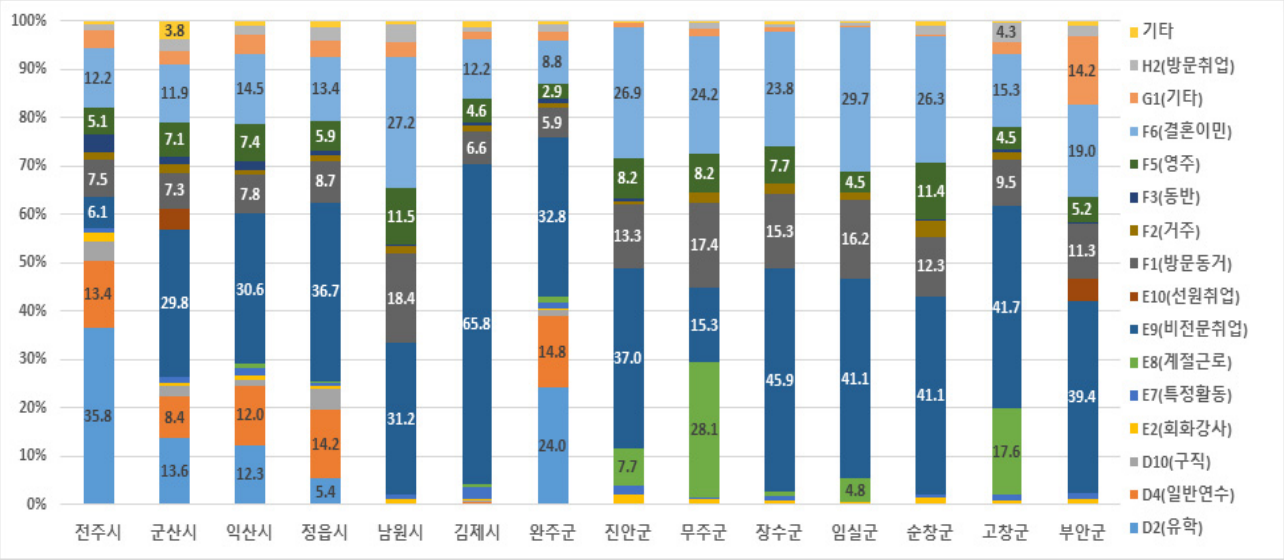

[그림 4-28] 전북 시군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비(2023.3)

[표 4-27]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합계	9,693	7,020	5,379	2,670	971	2,251	3,703	376	281	366	333	350	1,146	930
D2(유학)	3,469	954	659	143	0	9	890	0	0	0	0	0	0	1
D3(기술연수)	5	7	17	3	0	8	1	1	0	0	1	0	0	0
D4(일반연수)	1,295	588	643	379	0	4	549	1	0	0	0	0	4	1
D6(종교)	31	2	6	3	0	0	0	0	0	1	0	0	2	0
D8(기업투자)	19	47	12	2	0	1	1	0	0	0	0	0	0	1
D9(무역경영)	6	6	3	1	0	6	0	0	0	0	0	0	0	0
D10(구직)	391	147	69	116	3	6	48	0	0	0	0	1	1	1
E1(교수)	24	4	7	0	0	0	6	0	0	0	0	0	0	0

E2(회화강사)	173	51	50	13	10	7	10	7	3	3	2	4	7	8
E3(연구)	127	27	30	2	0	0	9	0	0	0	0	0	0	0
E6(예술흥행)	8	21	1	0	0	0	3	0	0	0	0	0	0	0
E7(특정활동)	89	84	85	20	8	54	46	7	1	4	0	2	14	11
E8(계절근로)	6	0	34	10	0	13	40	29	79	3	16	0	202	2
E9(비전문취업)	589	2,095	1,647	979	303	1,481	1,216	139	43	168	137	144	478	366
E10(선원취업)	0	312	0	0	0	0	0	0	0	0	0	0	0	45
F1(방문동거)	728	510	421	232	179	148	218	50	49	56	54	43	109	105
F2(거주)	146	129	60	31	15	28	38	2	6	8	5	11	18	0
F3(동반)	376	87	97	25	5	19	40	3	0	0	0	2	7	3
F5(영주)	498	495	398	158	112	104	108	31	23	28	15	40	52	48
F6(결혼이민)	1,187	837	778	357	264	275	327	101	68	87	99	92	175	177
G1(기타)	330	194	201	90	28	38	72	3	4	3	1	1	25	132
H2(방문취업)	127	152	104	71	37	22	50	1	4	2	2	6	49	20
기타	66	270	53	35	7	28	31	1	1	3	1	4	3	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 한편, 전북 등록외국인의 주요 체류자격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D2/D4/D10/E2/E7/F1/F2/F3/F6/G1 비자 외국인은 전주시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F5 유형은 전주 및 군산에 집중되어 있음. E8 비자는 무주, E9/E10/H2 비자는 군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등록외국인 중 가장 많은 유형인 E9(비전문취업)의 경우, 총 9,785명 중 21.4%가 전주시에 거주하고, 익산(16.8%), 김제(15.1%), 완주(12.4%), 정읍(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D2(유학)는 총 6,125명이 대학의 위치와 관련하여 전주(56.6%), 군산(15.6%), 완주(14.5%), 익산(10.8%)에 집중됨
- F1(방문동거)는 총 2,902명이 전주(25.1%), 군산(17.6%), 익산(14.5%)에 집중됨

[표 4-28]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체류자격에 대한 시군별 구성비(2023.3)

(단위 : 명, %)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D2(유학)	6,125	56.6	15.6	10.8	2.3	0.0	0.1	14.5	0.0	0.0	0.0	0.0	0.0	0.0	0.0
D4(일반연수)	3,464	37.4	17.0	18.6	10.9	0.0	0.1	15.8	0.0	0.0	0.0	0.0	0.0	0.1	0.0
D10(구직)	783	49.9	18.8	8.8	14.8	0.4	0.8	6.1	0.0	0.0	0.0	0.0	0.1	0.1	0.1
E2(회화강사)	348	49.7	14.7	14.4	3.7	2.9	2.0	2.9	2.0	0.9	0.9	0.6	1.1	2.0	2.3

E7(특정활동)	425	20.9	19.8	20.0	4.7	1.9	12.7	10.8	1.6	0.2	0.9	0.0	0.5	3.3	2.6
E8(계절근로)	434	1.4	0.0	7.8	2.3	0.0	3.0	9.2	6.7	18.2	0.7	3.7	0.0	46.5	0.5
E9(비전문취업)	9,785	6.0	21.4	16.8	10.0	3.1	15.1	12.4	1.4	0.4	1.7	1.4	1.5	4.9	3.7
E10(선원취업)	357	0.0	8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6
F1(방문동거)	2,902	25.1	17.6	14.5	8.0	6.2	5.1	7.5	1.7	1.7	1.9	1.9	1.5	3.8	3.6
F2(거주)	497	29.4	26.0	12.1	6.2	3.0	5.6	7.6	0.4	1.2	1.6	1.0	2.2	3.6	0.0
F3(동반)	664	56.6	13.1	14.6	3.8	0.8	2.9	6.0	0.5	0.0	0.0	0.0	0.3	1.1	0.5
F5(영주)	2,110	23.6	23.5	18.9	7.5	5.3	4.9	5.1	1.5	1.1	1.3	0.7	1.9	2.5	2.3
F6(결혼이민)	4,824	24.6	17.4	16.1	7.4	5.5	5.7	6.8	2.1	1.4	1.8	2.1	1.9	3.6	3.7
G1(기타)	1,122	29.4	17.3	17.9	8.0	2.5	3.4	6.4	0.3	0.4	0.3	0.1	0.1	2.2	11.8
H2(방문취업)	647	19.6	23.5	16.1	11.0	5.7	3.4	7.7	0.2	0.6	0.3	0.3	0.9	7.6	3.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35,469명)의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11,121명), 중국(5,112명), 캄보디아(2,384명), 네팔(2,339명), 우즈벡(1,727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시군별로는 고창군(네팔)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각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적은 전주/군산/완주 지역은 중국, 나머지 시군은 네팔 국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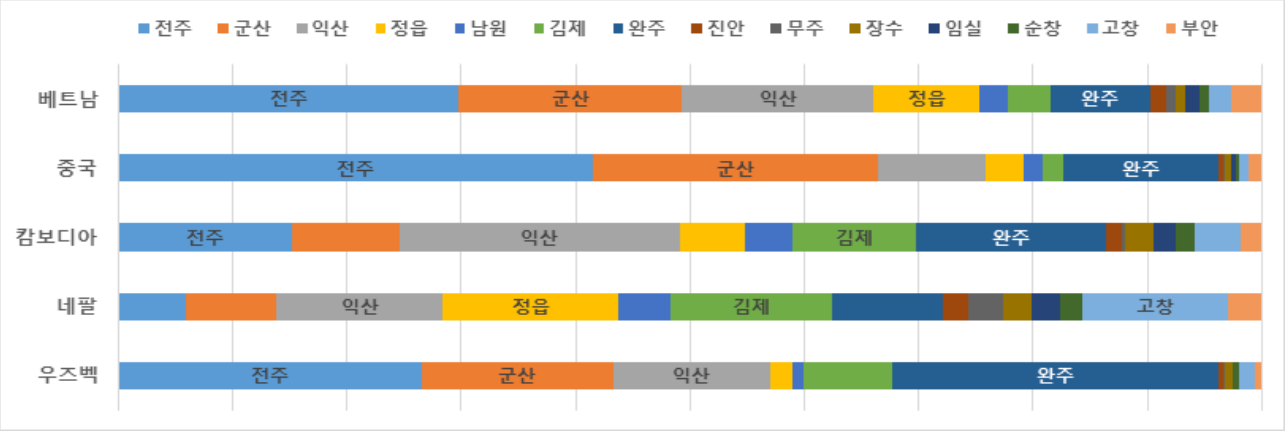

[그림 4-29] 전북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에 대한 시군별 비중

[표 4-29]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국적 현황(2023.3)

구분	총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총 합계	35,469	9,693	7,020	5,379	2,670	971	2,251	3,703	376	281	366	333	350	1,146	930
한국계중국	1,515	299	424	217	164	85	68	121	8	9	12	6	8	59	35
베트남	11,121	3,306	2,175	1,863	1,034	273	412	976	155	86	102	129	97	217	296
중국	5,112	2,120	1,275	486	165	88	89	698	17	12	24	21	16	45	56
우즈벡	1,727	458	290	236	33	17	136	492	7	2	12	1	9	23	11
캄보디아	2,384	362	223	585	136	101	257	395	34	6	60	44	40	98	43
네팔	2,339	139	184	341	358	106	331	229	51	71	58	60	43	300	68
필리핀	1,372	184	267	239	110	56	187	158	25	39	13	12	24	29	29
인도네시아	1,118	79	579	114	86	1	76	87	0	2	0	5	16	13	60
태국	1,024	126	135	138	120	47	164	83	13	25	23	24	5	72	49
미얀마	1,062	316	111	154	118	20	107	94	11	0	12	5	12	41	61
미국	451	123	238	37	11	6	6	10	3	3	2	1	1	4	6
몽골	907	630	74	103	7	13	38	21	3	2	4	0	1	9	2
일본	688	183	45	111	46	60	31	31	28	13	24	6	40	44	26
스리랑카	972	36	240	150	83	20	148	138	9	1	6	1	2	107	31
방글라데시	610	145	122	95	42	10	126	31	1	3	0	3	16	14	2
키르기즈	103	27	19	7	4	0	2	4	1	0	2	0	0	36	1
튀르키예	197	35	8	43	8	0	1	23	0	0	0	0	0	0	79
기타	2,767	1,125	611	460	145	68	72	112	10	7	12	15	20	35	7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표 4-30] 전북 시군별 등록외국인 주요 국적 순위(2023.3)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라북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네팔	우즈벡	한국계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전주시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미얀마	한국계중국	인도	필리핀	일본
군산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계중국	우즈벡	필리핀	스리랑카	미국	캄보디아	네팔
익산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네팔	필리핀	우즈벡	한국계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정읍시	베트남	네팔	중국	한국계중국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남원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중국	한국계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김제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우즈벡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완주군	베트남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한국계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진안군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계중국
무주군	베트남	네팔	필리핀	태국	일본	중국	한국계중국	캄보디아	미국	방글라데시
장수군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계중국	우즈벡	미얀마
임실군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태국	중국	필리핀	한국계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창군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즈벡
고창군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한국계중국	중국	일본	미얀마	키르기즈
부안군	베트남	튀르키예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한국계중국	스리랑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2. 외국인근로자 현황 분석

▮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외국인근로자는 395,17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근로자의 여성 비중은 21.1%로 외국인근로자의 약 80%가 남성 외국인근로자였음

❍ 전북의 외국인근로자는 9,464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외국인근로자 수의 2.4%에 불과하였음. 광역 자치도 가운데 강원도(1.4%) 및 제주도(2.1%)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음

- 전북 외국인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84.1%가 남성, 여성은 15.9%임. 여성 외국인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21.1%에 비해 -5.2%p 더 낮은 수준이었음

[표 4-31]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2021)

(단위 : 명, %)

시·도	외국인주민 수(A)	외국인근로자 수(B)				전체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 (B/A)	전체 외국인근로자 대비 구성비
			남성	여성	*F(%)*		
계	2,134,569	395,175	311,651	83,524	*21.1*	18.5	100.0
서울	426,743	49,668	29,786	19,882	*40.0*	11.6	12.6
부산	72,361	11,811	10,408	1,403	*11.9*	16.3	3.0
대구	51,140	7,273	6,000	1,273	*17.5*	14.2	1.8
인천	134,714	19,718	15,929	3,789	*19.2*	14.6	5.0
광주	41,181	5,498	4,525	973	*17.7*	13.4	1.4
대전	33,078	2,624	1,861	763	*29.1*	7.9	0.7
울산	34,800	6,041	5,204	837	*13.9*	17.4	1.5
세종	9,335	1,908	1,587	321	*16.8*	20.4	0.5
경기	714,497	151,037	117,437	33,600	*22.2*	21.1	38.2
강원	37,230	5,398	4,409	989	*18.3*	14.5	1.4
충북	73,529	16,392	13,626	2,766	*16.9*	22.3	4.1
충남	124,492	28,266	22,847	5,419	*19.2*	22.7	7.2
전북	**60,684**	**9,464**	**7,956**	**1,508**	***15.9***	**15.6**	**2.4**
전남	66,871	17,007	15,512	1,495	*8.8*	25.4	4.3
경북	98,197	21,253	18,516	2,737	*12.9*	21.6	5.4
경남	123,074	33,341	29,562	3,779	*11.3*	27.1	8.4
제주	32,643	8,476	6,486	1,990	*23.5*	26.0	2.1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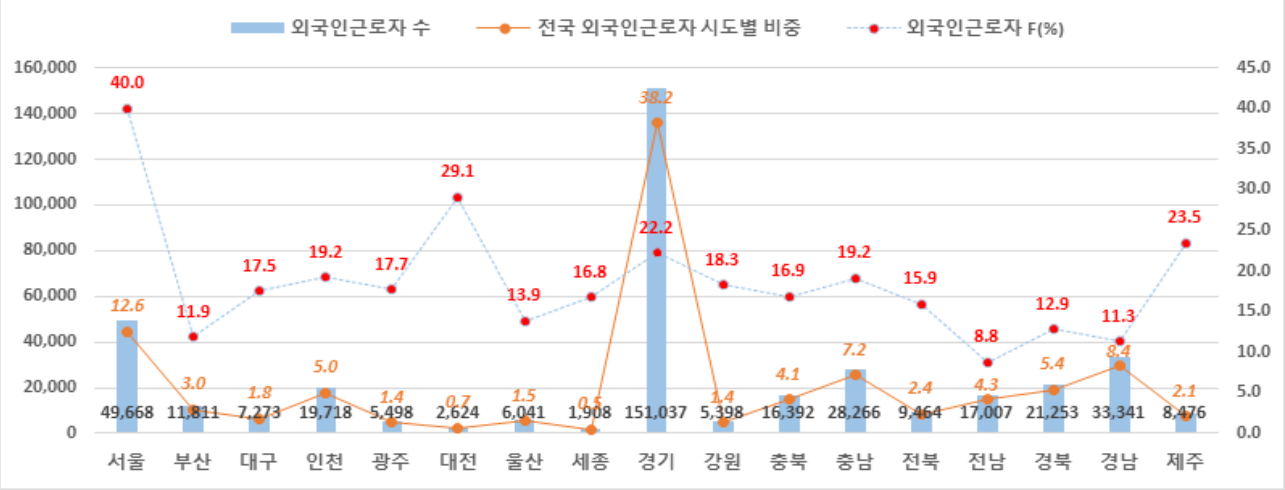

[그림 4-30]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2021)

▮ 전국 및 전북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전국 연도별 외국인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7~2015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9년말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음

- 2015년 573,378명에서 2021년 395,175명으로 -178,203명 감소함(-31% 감소)

○ 전북의 외국인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1,16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뒤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가로 돌아섬.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추세와는 달리 2020년부터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정점이었던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약 1,600여명 감소함

[표 4-32]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7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외국인근로자	259,805	558,538	573,378	541,673	495,792	528,063	515,051	455,287	395,175
	증감	-	*298,733*	*14,840*	*-31,705*	*-45,881*	*32,271*	*-13,012*	*-59,764*	*-60,112*
	비중	35.9	49.0	33.5	30.7	26.6	25.7	23.2	21.1	18.5
전북	외국인근로자	2,726	7,585	11,168	11,045	10,419	10,863	11,096	10,475	9,464
	증감	-	*4,859*	*3,583*	*-123*	*-626*	*444*	*233*	*-621*	*-1,011*
	비중	18.3	26.7	25.3	24.1	20.9	19.4	17.9	17.1	15.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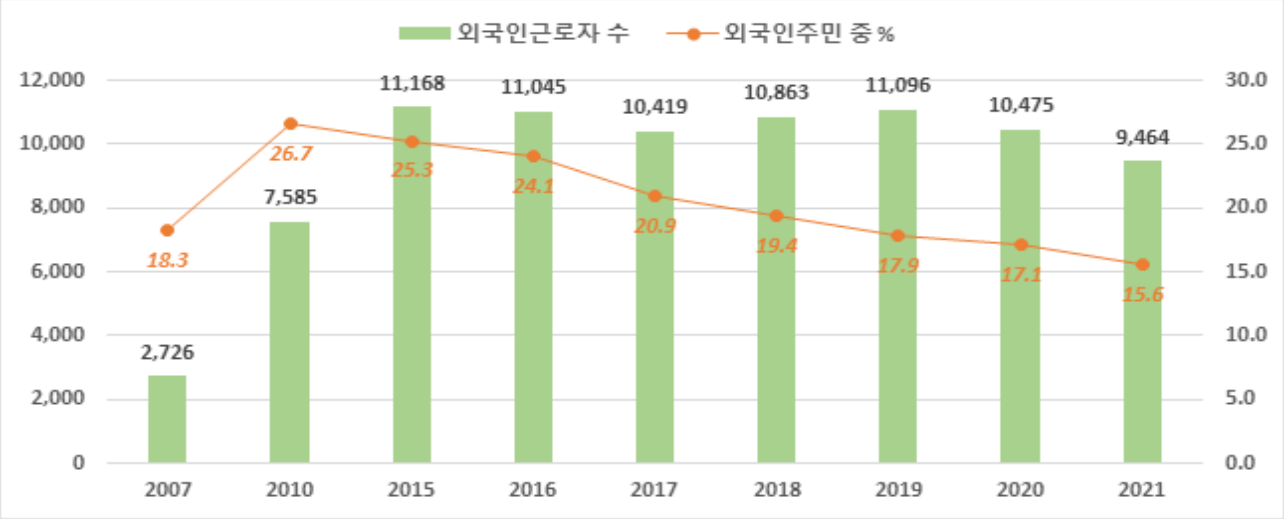

[그림 4-31] 전북 외국인근로자 추이

▮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전국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한국계) 비중이 25.8%(102,01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10.4%), 캄보디아(8.3%), 네팔(7.4%) 등의 순이었음

○ 전북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캄보디아(14.6%) 및 네팔(14.5%) 국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13.8%) 순으로 나타남. 전국에 비해 캄보디아 및 네팔 국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4-33]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TOP10(2021)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전국	중국(한국계) 102,012	베트남 41,014	캄보디아 32,916	네팔 29,341	인도네시아 26,491	태국 22,507	필리핀 21,448	미얀마 21,165	우즈벡 20,281	스리랑카 17,115
전북	캄보디아 1,384	네팔 1,372	베트남 1,309	인도네시아 693	중국(한국계) 687	스리랑카 681	미얀마 616	태국 497	우즈벡 443	필리핀 431

자료: 행정안전부(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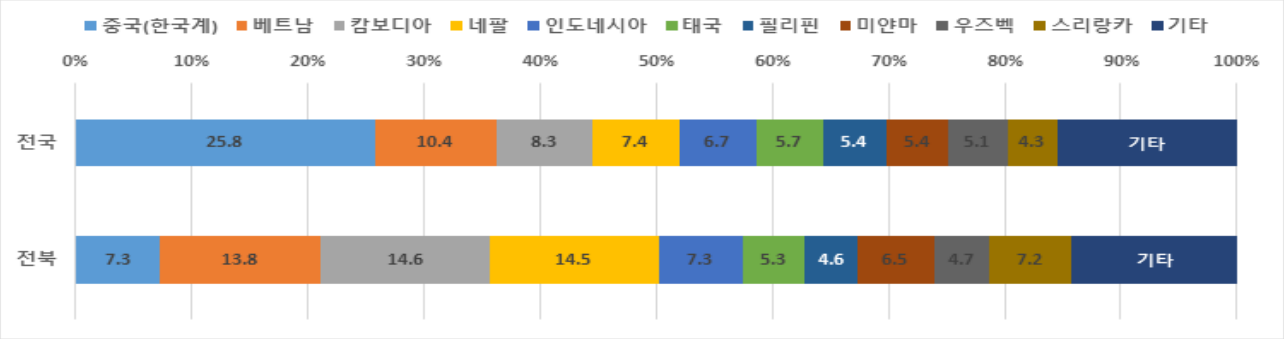

[그림 4-32] 전국 및 전북 외국인근로자 주요 국적 비중(2021)

▌ 산업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 분야가 7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농축산업(11.0%), 서비스업(4.2%) 등의 순이었음. 전북의 경우 제조업이 5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농축산업 29.9%, 어업 7.4% 등의 순이었음

❍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음. 강원,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서울의 경우 전체의 72.5%가 서비스업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특·광역시, 경기도 및 충북 지역은 제조업 분야가 8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치도의 대부분은 농축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강원도(36.2%)와 제주(34.9%), 전북(29.9%) 등은 농축산업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남
- 제주(34.8%)와 전남(31.3%) 지역은 어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34] 전국 시도별 외국인근로자 산업별 현황(2022)

(단위 : 명, %)

구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총계	220,294	78.0	2.8	11.0	4.2	4.0
서울	5,312	12.7	14.4	0.5	72.5	0.0
부산	5,785	93.0	2.5	1.2	1.0	2.2
대구	3,900	98.7	0.6	0.2	0.5	0.0
인천	11,190	89.6	3.8	0.4	3.3	3.0
광주	2,903	85.2	8.2	5.3	1.3	0.0
대전	777	92.9	0.6	1.5	4.9	0.0
울산	3,575	92.3	0.4	0.9	2.0	4.4
세종	1,058	80.3	4.7	11.2	3.8	0.0
경기	91,803	86.1	2.3	7.0	4.3	0.2
강원	3,159	51.4	0.9	36.2	2.3	9.2
충북	14,083	87.1	1.3	10.5	1.1	0.0
충남	19,825	69.3	3.1	22.6	1.5	3.4
전북	**7,455**	**57.3**	**4.8**	**29.9**	**0.6**	**7.4**
전남	11,039	45.7	3.4	19.1	0.4	31.3
경북	13,124	77.5	2.2	15.3	0.4	4.6
경남	22,410	78.8	2.2	12.5	0.5	5.9
제주	2,896	28.7	0.2	34.9	1.4	34.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2022년 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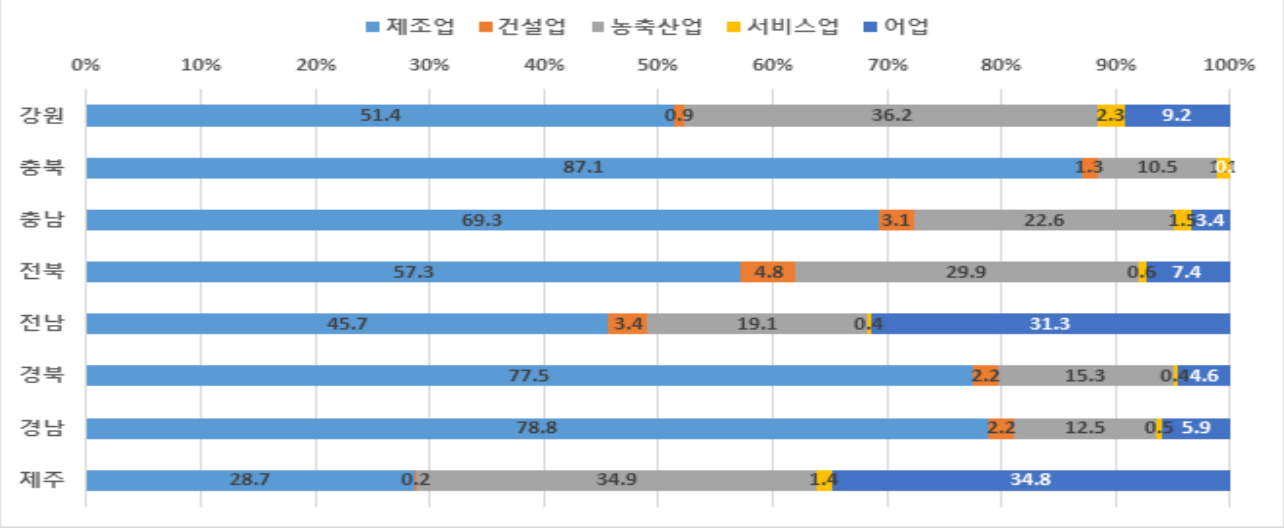

[그림 4-33] 광역자치도별 외국인근로자 산업별 현황(2022)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유형별 현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업무유형에 따라 크게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인력으로 구분이 가능함

- ‘전문인력’은 C4, E1~7까지로 구분되고, ‘단순기능인력’은 E8~10, H2, ‘기타’ 인력은 H1으로 구분됨

❍ 전국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총 468,018명으로 이 중 전문인력 54,420명(11.6%), 단순기능인력 410,442명(87.7%), 기타 3,156명(0.7%)으로 나타남

[표 4-35] 전국과 전북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2023.3)

구 분	총 계	전문 인력 C4, E1~7	단순기능인력 E8~10, H2	기타 H1
전국	468,018	54,420	410,442	3,156
	100.0	11.6	87.7	0.7
전북	12,272	1,042	11,223	7
	100.0	8.5	91.4	0.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3월호).

- 한편, 전국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자격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이 5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방문취업(H2) 22.4%, 특정활동(E7) 5.8% 등의 순으로 많았음

[그림 4-34] 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2023.3)

○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비중은 대전이 49.7%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였고, 다음으로 제주(31.2%), 서울(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취업자격 체류 등록외국인은 12,272명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8.5%(1,042명)로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 6번째, 9개 자치도 중에서는 4번째 수준임. 한편, ‘단순기능인력’ 비중은 특광역시보다는 자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북의 비중은 91.5%로 전국 평균(87.7%) 보다 3.8%p 높았음

- 업무유형별 취업자격 체류 등록외국인의 시도별 점유율을 보면, ‘전문인력’의 경우 서울(27.2%)과 경기도(21.9%) 지역에 49.1%가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었고, ‘단순기능인력’은 경기도에 전체의 38%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관광취업)의 경우 서울에 78.5%가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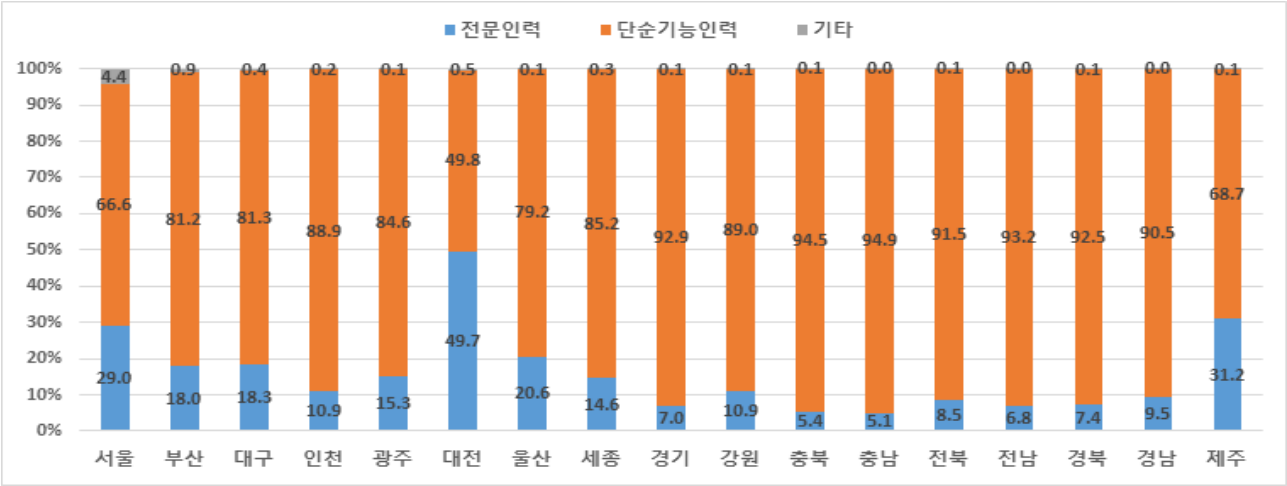

[그림 4-35]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유형별 현황(2023.3)

[표 4-36]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23.3)

(단위 : 명, %)

지역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H1)
		계	E-1	E-2	E-3	E-4	E-5	E-6	E-7	계	E-8	E-9	E-10	H-2	
서울	47,042	13,651	583	3,800	930	55	214	1,456	6,613	31,330	0	2,722	2	28,606	2,061
부산	13,445	2,414	122	882	233	7	2	237	931	10,912	0	7,160	3,163	589	119
대구	7,754	1,421	105	633	127	1	0	141	414	6,303	0	5,703	1	599	30
인천	21,041	2,285	142	585	160	115	17	73	1,193	18,705	0	12,510	277	5,918	51
광주	5,977	915	45	357	169	0	0	25	319	5,055	2	3,940	0	1,113	7
대전	2,887	1,435	198	425	413	0	0	33	366	1,437	0	959	0	478	15
울산	7,809	1,612	32	237	197	8	0	60	1,078	6,186	0	4,682	416	1,088	11
세종	1,977	288	15	181	20	1	0	2	69	1,684	2	1,358	0	324	5
경기	158,002	10,983	302	3,045	777	9	3	966	5,881	146,810	64	100,207	19	46,520	209
강원	7,036	765	27	384	90	0	0	50	214	6,262	582	4,247	991	442	9
충북	20,267	1,092	24	321	87	0	0	29	631	19,159	63	16,115	0	2,981	16
충남	33,234	1,691	67	550	92	3	1	38	940	31,531	349	23,286	1,740	6,156	12
전북	**12,272**	**1,042**	**41**	**348**	**195**	**0**	**0**	**33**	**425**	**11,223**	**434**	**9,785**	**357**	**647**	**7**
전남	23,284	1,579	15	440	79	0	0	35	1,010	21,700	840	16,781	3,508	571	5
경북	25,263	1,867	238	446	247	4	0	124	808	23,359	348	17,903	3,172	1,936	37
경남	41,849	3,976	30	685	112	9	1	237	2,902	37,853	596	31,897	3,366	1,994	20
제주	10,216	3,190	5	271	38	0	0	182	2,694	7,014	70	4,001	2,602	341	12

주: '전문인력'의 자격 중 단기취업(C4)의 경우, 90일 이내로 체류지역 신고 규정이 없으므로 시도별 구분 불가.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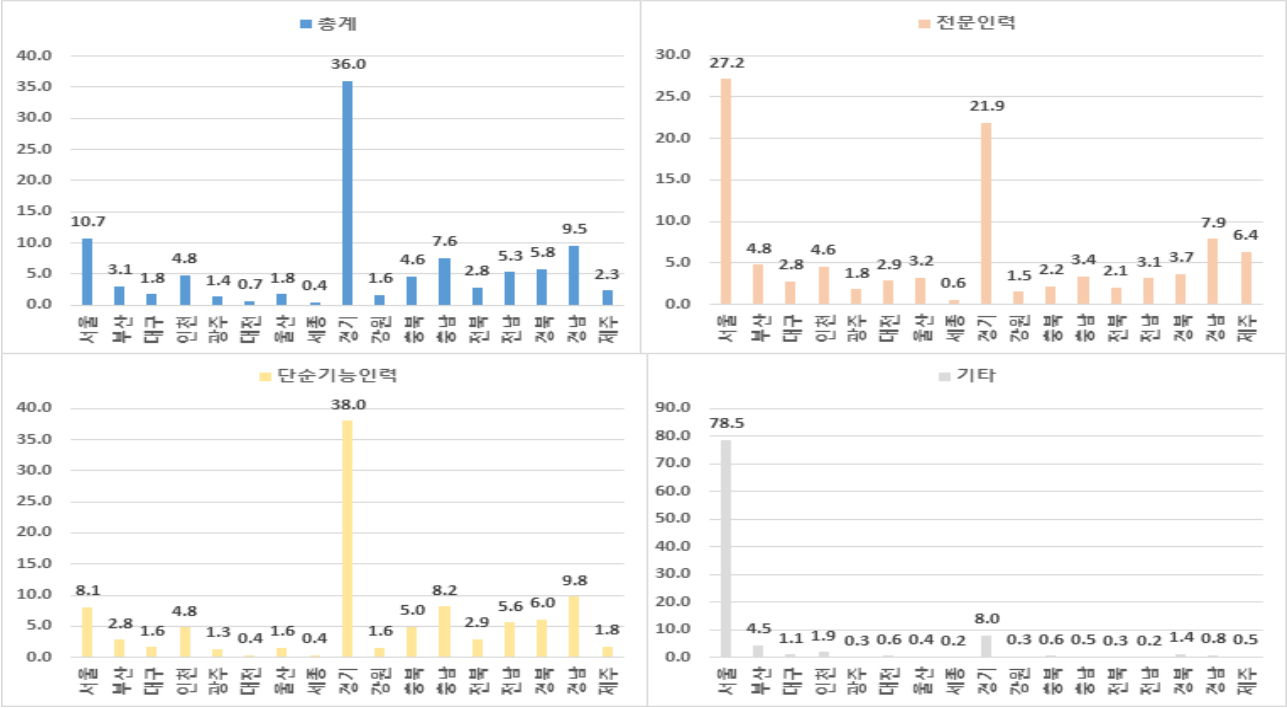

[그림 4-36] 업무유형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의 시도별 점유율(2023.3)

❍ 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의 구성비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79.7%고 가장 높았고, 서울이 5.8%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특정활동(E7) 자격비중은 제주(26.4%), 서울(14.1%), 울산(13.8%), 대전(12.7%) 지역에서만 10%를 상회하였음

- 전북의 경우 취업자격 및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 체류외국인의 79.7%가 비전문취업(E9)이었고, 다음으로 방문취업(H2) 5.3%, 계절근로(E8) 및 특정활동(E7) 3.5%를 차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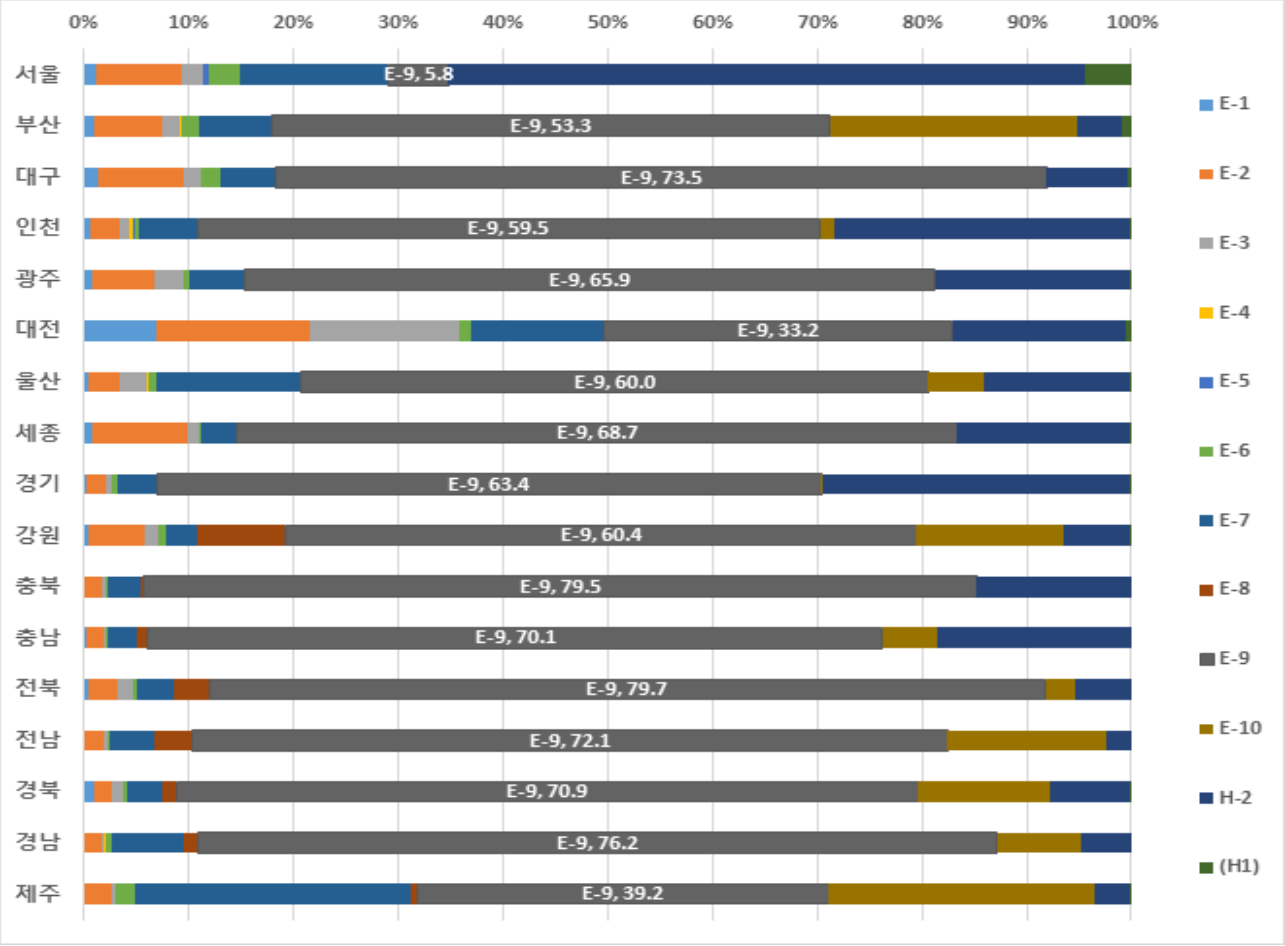

[그림 4-37] 전국 시도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구성비(2023.3)

▮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농번기와 계절성 작물 재배를 위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함. 매년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

- 전북지역으로 E-9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2023년 6월 기준 8,314명이고, 이중 농축산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2,473명으로 전체의 27.3%에 해당

❍ 2022년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 19,718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 98개 지자체, 11,342명이 농어촌지역에서 농번기와 계절성 작물 재배 일손을 지원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은 2021년 48개 지자체, 1,850명에서 2022년에는 약 6배가 증가한 114개 지자체, 19,718명으로 크게 증가

❍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북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농업분야로 791개 고용주에게 2,660명을 배정받음. 이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26,788명의 약 9.9%를 차지하는 비율임

- 전북 13개 시군 중 고창군이 77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배정받았고, 다음으로 진안군 395명, 무주군 321명이며, 익산시도 119명을 배정받음. 이는 전년 상반기(1,741명) 대비 919명(52.8%) 증가

[표 4-37]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배정현황

(단위 : 명)

지자체		농 업		어 업		합 계	
광 역	시군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11개 광역	124개 시군	7,154	24,418	620	2,370	7,774	26,788
강원도	14개 시군	1,767	6,425			1,767	6,425
경기도	16개 시군	346	1,211			346	1,211
경상남도	15개 시군	599	1,686	20	146	619	1,834
경상북도	18개 시군	1,465	5,314			1,465	5,314
부산광역	1개 군			23	62	23	62
세종특별	1개 시	13	24			13	24
전라남도	19개 시군	640	2,274	471	1,499	1,111	3,773
전라북도	13개 시군	791	2,660			791	2,660
충청남도	14개 시군	701	2,403	106	663	807	3,066
충청북도	11개 시군	730	2,152			730	2,152
제주도	2개 시	102	267			102	26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2022.12.14.), 보도자료(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표 4-38] 2023년 상반기 전북 13개 시군 외국인근로자 배정현황

(단위 : 명)

시 군	농 업		어 업		합 계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창군	150	776			150	776
군산시	6	11			6	11
김제시	27	79			27	79
남원시	100	250			100	250
무주군	87	321			87	321
부안군	17	60			17	60
순창군	16	36			16	36
완주군	64	156			64	156
익산시	35	119			35	119
임실군	48	133			48	133
장수군	82	174			82	174
정읍시	40	150			40	150
진안군	119	395			119	395
소계	791	2,660	0	0	791	2,66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관리과(2022.12.14.), 보도자료(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

❍ 2023년 공공형계절근로자는 총 7개 지역에서 신청했으나 최종 4개소가 선정됨

- 공공형계절근로자 4개소는 무주군의 무주농협(필리핀 50명, 1,500농가), 임실군의 오수관촌농협(베트남 40명, 1,000농가), 진안군의 진안군농협조공법인(라오스 50명, 360농가), 장수군은 2023년 신규로 장수농협(베트남 30명, 173농가)임

[표 4-39] 2023년 전북지역 공공형계절근로자 선정 현황

구분	운영주체	외국인도입계획 (송출국)	참여농가수
4개소		170명(3개국)	3,033농가
무주군	무주농협	50명(필리핀)	1,500농가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40명(베트남)	1,000농가
진안군	진안군농협조공법인	50명(라오스)	360농가
장수군	장수농협 ('23년 신규)	30명(베트남)	173농가

자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북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중 MOU 방식 490여명, 결혼이민자 가족 445명, 그 외 국내체류 외국인 71명으로 구성됨

- 2022년 기준 전북지역은 법무부로부터 2,053명을 배정받았으나 실질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1,006명으로 약 50%의 도입률을 보임.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이 411명으로 가장 많았음. 이탈자 또한 321명으로 이탈률이 약 32%에 달함

- 무단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이탈자 321명은 고창 213명, 무주 69명, 완주 17명, 진안 16명, 익산 4명, 장수 1명, 부안 1명으로 MOU 방식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한 고창과 무주(네팔 국적 282명), 완주와 진안(필리핀 국적 33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방식의 개선과 계절근로자로 결혼이민자 가족 도입 및 공공형계절근로 확대 추진 필요

[표 4-40] 2023년 전북지역 공공형계절근로자 선정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 명)

법무부 배 정	도입실적(누계)				국가별 도입(누계)					현 원		
	계	MOU	결혼 이민자	국내 체류	네팔	베트남	필리핀	몽골	기타	근무	출국	이탈
2,053	1,006	490	445	71	309	411	108	54	124	250	435	321

자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내부자료, * 기타국가 : 중국, 컴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3.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

❍ 전국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2,314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66,892명으로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20년과 '21년은 감소하였다가 '22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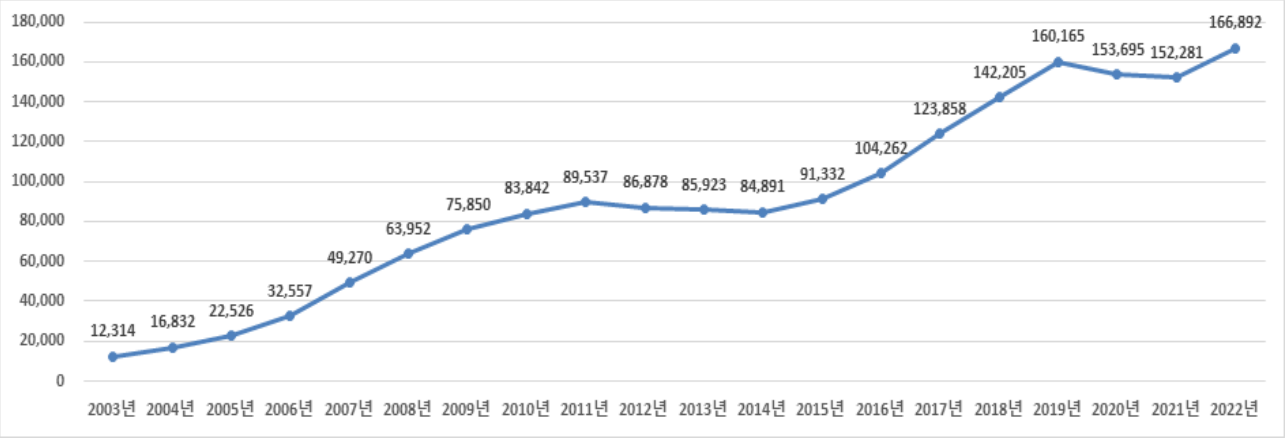

[그림 4-38] 전국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2003~2022)

❍ 전북지역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총 7,781명 중 전북대학교 1,861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석대학교 1,322명(17.0%), 전주대학교 1,263명(16.2%), 예원예술대학교 692명(8.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전문대학(산업대 포함)은 1,720명(22.1%), 4년제 대학교는 6,007명(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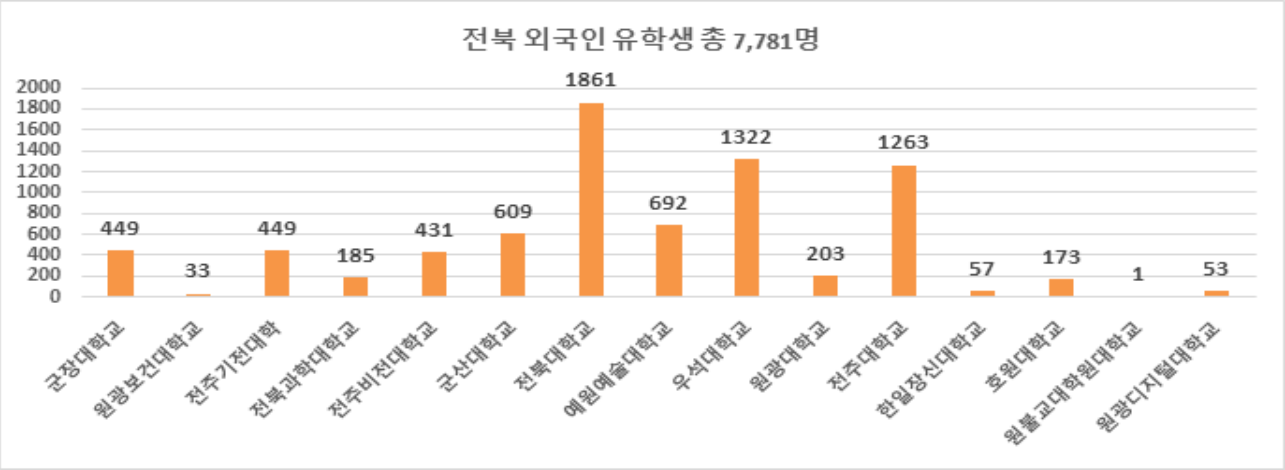

[그림 4-39] 전북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표 4-41] 전북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단위 : 명)

학제	학교명	어학 연수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기타 연수	합계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의학	계		
전라북도		1,121	2,296	750	311	739	4	4,100	577	115	78	145	11	926	590	242	125	356	25	1,338	296	7,781
전문대학	군장대학교	292	56	76	25	0	0	157	0	0	0	0	0	0	0	0	0	0	0	0	0	449
	원광보건대학교	8	3	0	12	1	0	16	0	0	0	0	0	0	0	0	0	0	0	0	9	33
	전주기전대학	336	67	45	1	0	0	113	0	0	0	0	0	0	0	0	0	0	0	0	0	449
	전북과학대학교	0	151	0	29	5	0	185	0	0	0	0	0	0	0	0	0	0	0	0	0	185
	전주비전대학교	147	3	230	51	0	0	284	0	0	0	0	0	0	0	0	0	0	0	0	0	431
대학교	군산대학교	4	163	56	2	62	0	283	21	16	2	18	0	57	45	31	6	162	0	244	21	609
	전북대학교	167	501	138	43	21	1	704	229	69	46	33	11	388	108	139	66	80	22	415	187	1,861
	예원예술대학교	0	0	0	0	520	0	520	117	0	0	55	0	172	0	0	0	0	0	0	0	692
	우석대학교	49	514	53	69	6	0	642	98	16	3	18	0	135	319	65	3	79	0	466	30	1,322
	원광대학교	0	78	17	8	7	3	113	30	2	1	5	0	38	23	2	3	17	3	48	4	203
	전주대학교	42	616	105	60	97	0	878	81	12	25	16	0	134	95	5	47	17	0	164	45	1,263
	한일장신대학교	0	56	0	0	0	0	56	0	0	0	0	0	0	0	0	0	1	0	1	0	57
산업대학	호원대학교	76	55	30	1	11	0	97	0	0	0	0	0	0	0	0	0	0	0	0	0	173
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1
사이버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0	33	0	10	9	0	52	0	0	1	0	0	1	0	0	0	0	0	0	0	5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국내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의 52.7%가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이며, 다음으로 대학원 29.1%, 어학연수 14.4% 등의 순이었음

- 대학원생 2,264명(100.0%)의 59.1%는 박사과정, 40.9%는 석사과정으로 나타남

교육과정		학생수	구성비
어학연수		1,121	14.4
대학교(전문)		4,100	52.7
대학원	석사	926	11.9
	박사	1,338	17.2
기타연수		296	3.8
계		7,7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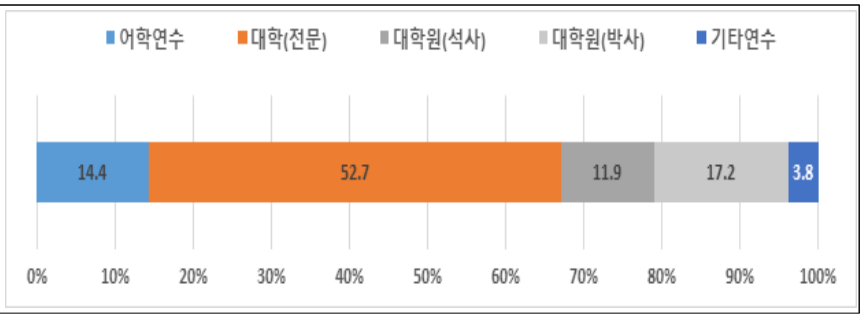

[그림 4-40] 전북 대학 교육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2)

○ 학위과정별로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인문사회' 전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음. 박사과정의 경우 '예체능' 전공 비중이 26.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학' 전공 비중은 대학과 박사과정에서 18%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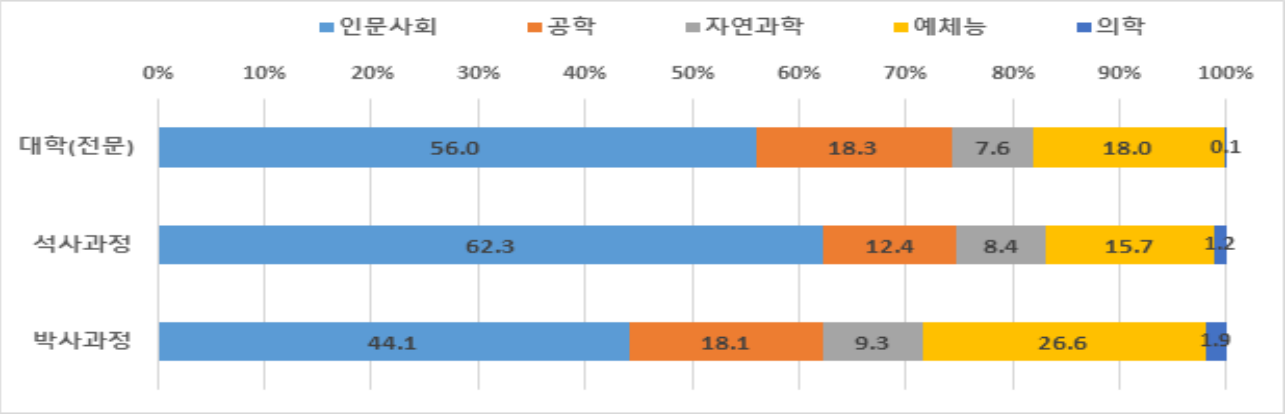

[그림 4-41] 전북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학위과정별*전공별 현황(2022)

4. 외국국적 동포 현황 분석

가. 외국국적 동포 현황

❍ 재외동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 국내 체류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국외로 이민간 동포들이 한국으로의 방문취업이나 재외동포 자격을 확대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는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외국국적동포의 규모

❍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80만명이 약간 윗도는 804,976명임. 2018년 코로나19 이전 878,439명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국적동포도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2022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 4-42] 연도별 전국 외국국적동포 추이(2018 ~ 2022)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국국적동포	878,665	878,439	811,211	778,670	804,976
전년대비 증감률	4.4%	-0.02%	-7.7%	-4.0%	3.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2) 통계연보

▮ 외국국적별 현황 및 불법체류 현황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중국이 77.9%(626,729명)로 대부분이며, 미국 5.7%(45,752명), 우즈베키스탄 5.1%(40,706명), 러시아 4.2%(34,220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804,976명 중 불법체류자는 13,172명으로 불법체류율 1.6%였음

[표 4-43] 2022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자(율) 현황

구분	전체	합법체류	불법체류(율)
외국국적 동포	804,976	791,804	13,172 (1.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2)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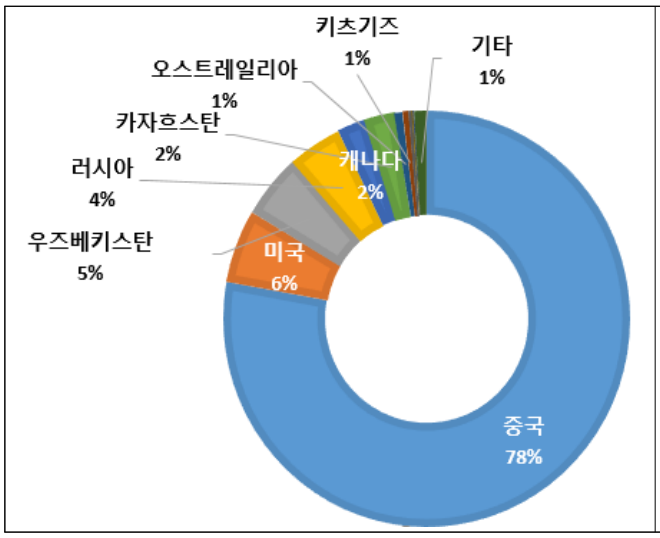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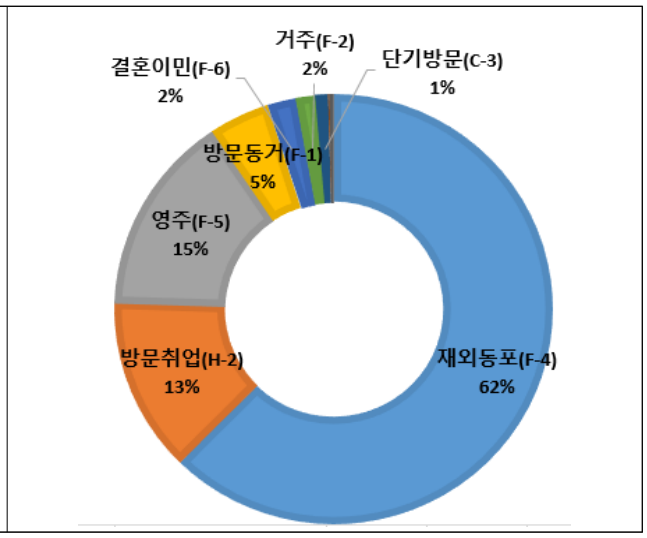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2) 통계연보

[그림 4-42]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현황

[그림 4-43]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비율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가 6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다음으로 방문취업(H-2) 13.1%, 영주(F-5) 15.1%, 방문동거(F-1) 4.5%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모든 체류자격별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2022년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4-44] 2022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동포 불법체류자(율)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878,665	878,439	811,211	778,670	804,976
단기종합(C-3)	25,672	19,271	5,311	3,740	7,323
유학(D-2)	711	1,555	937	763	548
기술연수(D-3)	23	230	224	217	209
일반연수(D-4)	232	264	109	52	38
특정활동(E-7)	30	27	13	13	10
비전문취업(E-9)	653	611	588	567	533
방문동거(F-1)	35,421	37,001	31,517	25,871	36,587
거주(F-2)	10,488	10,959	11,454	11,771	12,095
동반(F-3)	62	60	50	47	42
재외동포(F-4)	444,880	464,152	466,682	478,442	502,451
영주(F-5)	92,245	100,375	107,337	113,718	121,285
결혼이민(F-6)	17,161	17,487	17,433	17,233	16,971
방문취업(H-2)	250,381	226,322	154,533	124,691	105,567
기타(G-1)	257	235	254	248	177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2) 통계연보

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현황

▮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규모

○ 2023년 3월 기준 전국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는 총 503,124명으로 전년 대비 약 4.9%(3,854명)가 증가한 것임. 또한 2016년 대비 약 36.4%(134,262명) 증가한 것이고, 전북의 경우 총 3,801명은 전년 대비 약 1.8%(70명) 증가하였고, 2016년 대비 약 13.94%(455명) 증가한 것임

[표 4-45] 전국과 전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의 연도별 추이 현황(2016 ~ 2023.3)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전국	인 원	368,862	411,337	441,107	459,996	464,783	475,945	499,270	503,124
	증감률	13.6%	11.5%	7.2%	4.3%	1.0%	2.4%	4.9%	4.8%
전북	인 원	3,276	3,413	3,527	3,564	3,502	3,512	3,731	3,801
	증감률	7.9%	4.2	4.2%	1.0%	-1.7	0.3%	6.2%	1.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 전국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전체 503,124명 중 42.8%(215,521명)가 경기도에 집중 거주하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서울 27.6%(138,895명), 인천 7.3%(36,788명), 충남 6.0%(30,429명) 등의 순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전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77.8%(391,204명)가 거주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3,801명으로 전체 외국국적동포의 0.8%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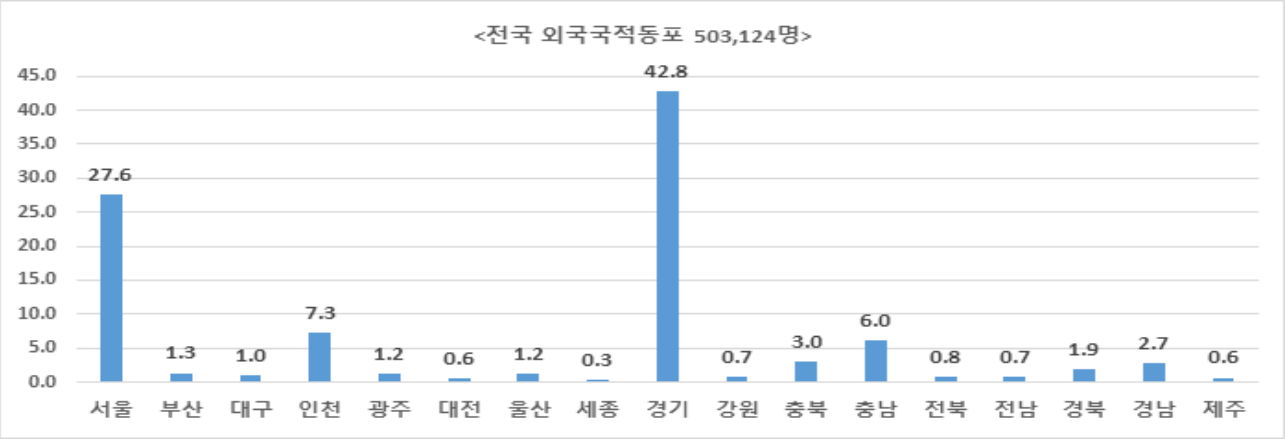

[그림 4-44]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시도별 구성비(2023.3)

[표 4-46]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현황(2023.3)

(단위 : 명)

지역	총합계	한국계 중국인	미국	한국계 러시아인	캐나다	우즈벡	카자흐스탄	호주	뉴질랜드	키르기즈	기타
총계	503,124	356,519	45,107	30,523	17,603	25,313	11,667	4,862	2,448	2,284	6,798
서울	138,895	105,604	18,823	926	7,376	788	325	1,877	1,023	104	2,049
부산	6,671	2,574	1,560	1,068	609	206	73	247	80	28	226
대구	5,058	2,266	890	589	317	511	226	85	35	21	118
인천	36,788	24,554	2,093	3,972	863	2,720	1,480	243	132	225	506
광주	6,002	1,580	388	1,049	165	1,659	676	49	14	161	261
대전	3,052	1,594	830	48	305	44	29	92	34	7	69
울산	6,212	5,470	197	181	87	133	68	21	8	6	41
세종	1,378	789	254	62	106	78	32	21	11	8	17
경기	215,521	164,737	13,939	12,135	5,780	10,130	3,752	1,594	827	677	1,950
강원	3,709	1,711	1,115	168	315	101	64	97	35	4	99
충북	15,263	8,841	519	2,492	222	1,972	612	73	28	187	317
충남	30,429	17,700	999	4,231	314	3,725	2,353	113	44	534	416
전북	**3,801**	**2,358**	**750**	**65**	**253**	**117**	**67**	**55**	**47**	**14**	**75**
전남	3,745	2,652	521	120	170	120	33	51	16	8	54
경북	9,714	4,591	747	1,330	228	1,290	1,053	64	33	156	222
경남	13,784	7,380	930	2,042	319	1,698	814	107	50	144	300
제주	3,102	2,118	552	45	174	21	10	73	31	0	7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3,124명 중 한국계중국인 비중이 70.9%(356,519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미국(9.0%), 한국계러시아인(6.1%), 우즈벡(5.0%) 등의 순이었음

- 17개 시도별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큰 틀에서 서울과 지방, 광역시와 자치도,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외국적동포의 국적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3,801명 중 한국계중국인 비중이 62.0%(2,35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19.7%(750명), 캐나다 6.7%(253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경기도를 제외한 자치도의 권역별 비교를 해보면, 충청권 및 경상권은 한국계러시아인, 우즈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전라권의 경우 한국계중국인,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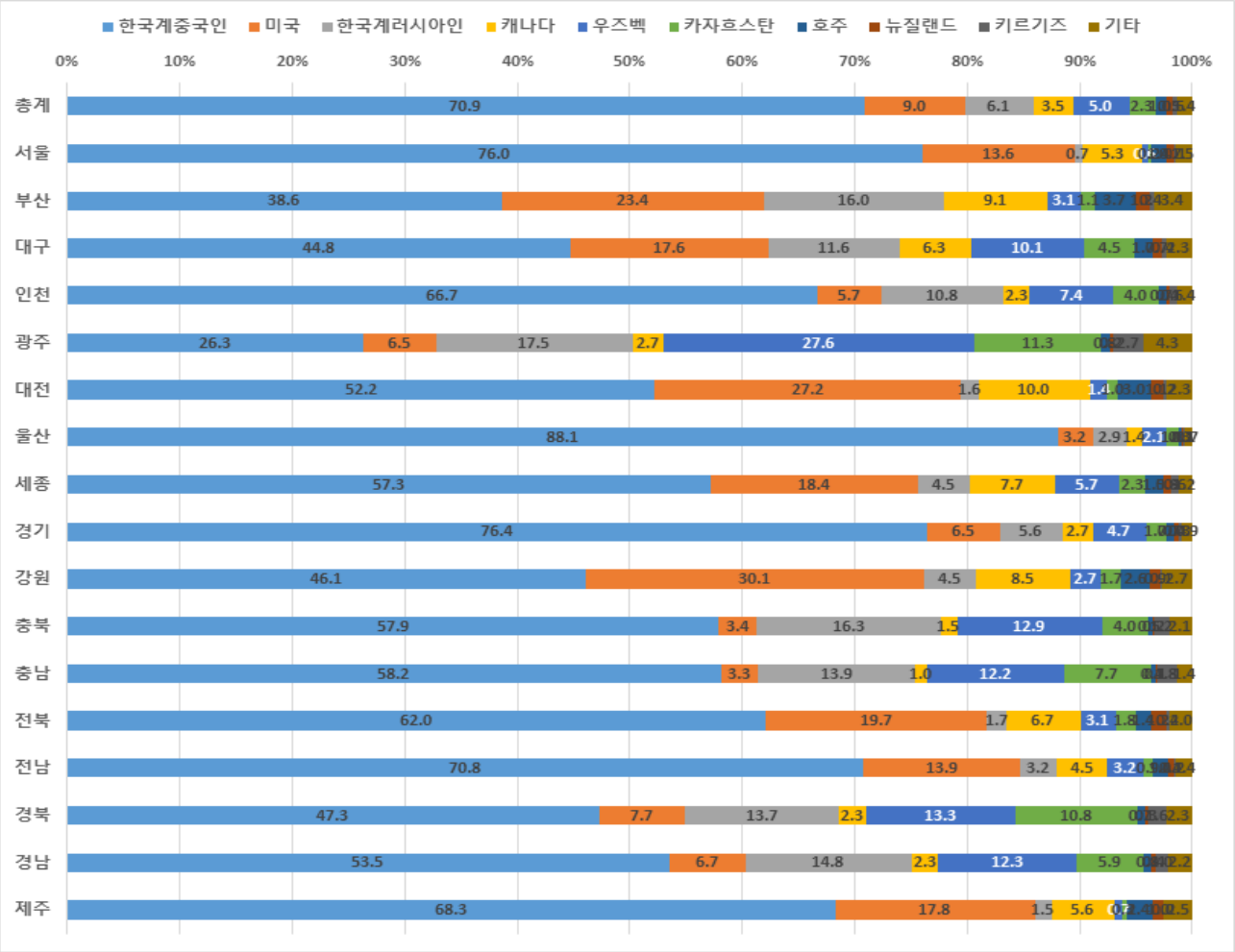

[그림 4-45]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구성비(2023.3)

○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시군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3,801명의 절반 가량이 군산(26.8%)과 전주(25.0%)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시 단위에 거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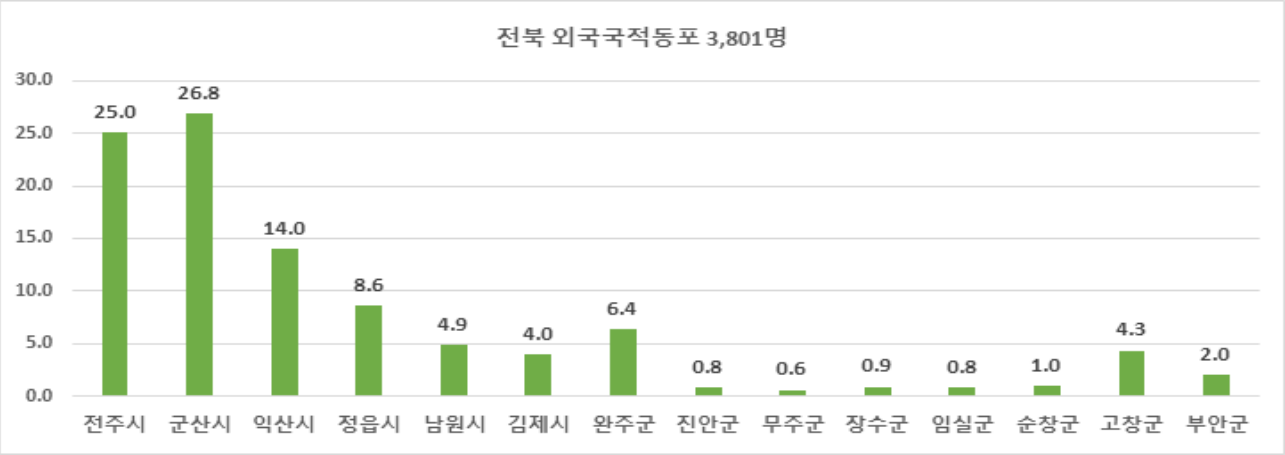

[그림 4-46]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시군별 구성비(2023.3)

[표 4-47] 전북 시군별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현황(2023.3)

(단위 : 명)

지역	총합계	한국계 중국인	미국	한국계 러시아인	캐나다	우즈벡	카자흐스탄	호주	뉴질랜드	기타
전라북도	3,801	2,358	750	65	253	117	67	55	47	
전주시	952	450	250	20	132	24	2	24	20	30
군산시	1,020	704	184	15	31	30	20	11	7	18
익산시	531	301	86	22	27	32	40	7	6	10
정읍시	327	261	31	3	12	7	1	1	4	7
남원시	185	137	26	0	8	5	1	1	2	5
김제시	152	94	31	0	18	6	0	1	1	1
완주군	243	169	47	0	8	5	0	3	5	6
진안군	29	18	7	1	2	0	0	0	0	1
무주군	22	16	4	0	1	0	0	0	0	1
장수군	33	26	3	0	2	0	0	0	0	2
임실군	30	20	8	0	1	0	0	0	0	1
순창군	38	23	8	0	3	2	0	0	0	2
고창군	164	92	41	4	7	6	2	7	0	5
부안군	75	47	24	0	1	0	1	0	2	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별 시군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장 많았던 한국계중국인(2,358명)의 약 30%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미국(50명) 국적 동포의 33.3%는 전주, 한국계 러시아인(65명)은 익산(33.8%), 캐나다(253명) 국적의 52.2%가 전주, 우즈벡(117명) 국적 익산(27.4%), 카자흐스탄(67명) 국적의 59.7%가 익산, 호주와 뉴질랜드 국적은 전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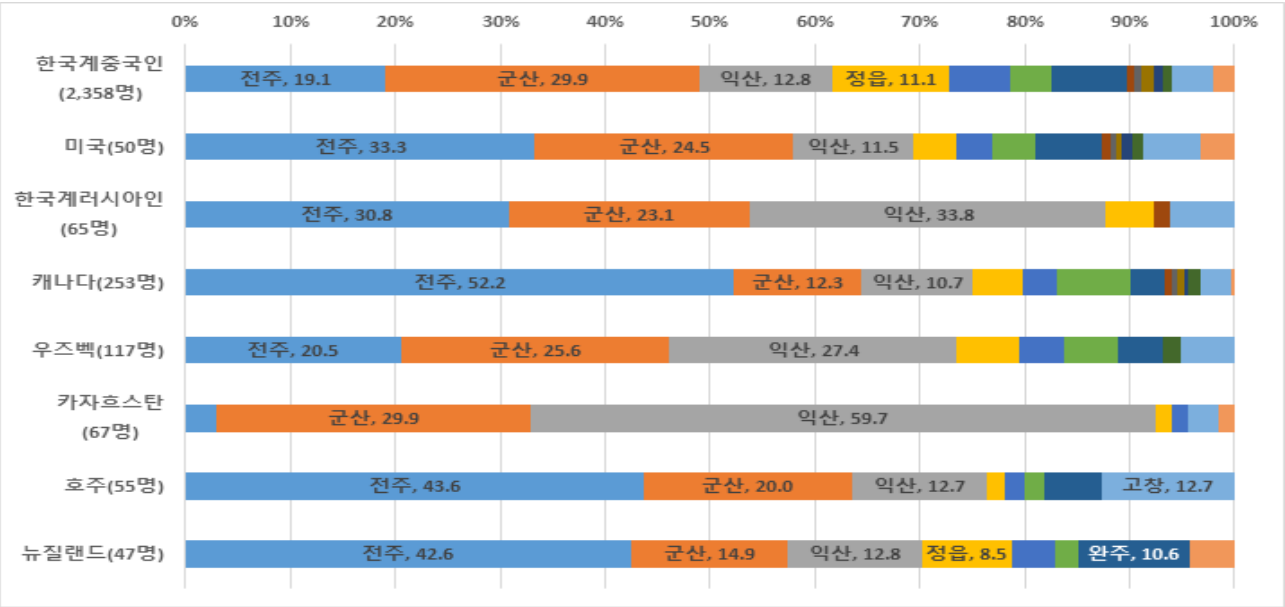

[그림 4-47]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주요 국적별 시군 구성비

▌ 연령별 동포 현황

❍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26.3%(132,5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50대 20.0%(100,647명), 30대 18.4%(92,508명) 순으로 높았음

❍ 전북의 경우, 60대가 33.1%(1,260명), 50대 20.7%(785명), 70대이상 16.5%(628명), 40대 12.7%(483명), 30대 12.0%(4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 비율은 전국 평균 37.0%로 나타난 가운데, 강원도(51.1%) 및 전북(49.7%)의 경우 외국국적동포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광주(25.2%) 및 충남(26.6%)의 경우는 가장 낮인 비율이었음

❍ 2040 연령층 비율은 전국 평균 40.2%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53.2%), 충남(49.4%), 경북(45.9%), 인천(45.4%) 등의 순으로 높았고, 반대로 강원(26.1%), 전남(27.3%), 전북(27.8%), 대전(33.9%)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4-48]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총계	503,124	14282	29,021	92,508	80,624	100,647	132,542	53,500
서울	138,895	2575	7,790	22,042	18,456	29,098	42,809	16,125
부산	6,671	305	399	1,015	1,105	1,346	1,671	830
대구	5,058	203	344	870	903	1,083	1,090	565
인천	36,788	1564	2,512	8,322	5,850	5,878	8,675	3,987
광주	6,002	350	672	1,381	1,140	946	1,043	470
대전	3,052	48	178	423	434	600	925	444
울산	6,212	151	233	836	1,053	1,824	1,474	641
세종	1,378	30	65	207	244	308	381	143
경기	215,521	5637	11,618	42,509	35,844	42,035	55,677	22,201
강원	3,709	80	128	413	427	766	1,248	647
충북	15,263	631	1,062	2,596	2,669	3,384	3,651	1,270
충남	30,429	1357	2,127	6,483	6,429	5,926	5,707	2,400
전북	3,801	70	118	457	483	785	1,260	628
전남	3,745	67	119	395	509	954	1,157	544
경북	9,714	518	711	1,815	1,928	1,879	1,932	931
경남	13,784	617	845	2,268	2,664	3,196	2,939	1,255
제주	3,102	79	100	476	486	639	903	41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연령별·지역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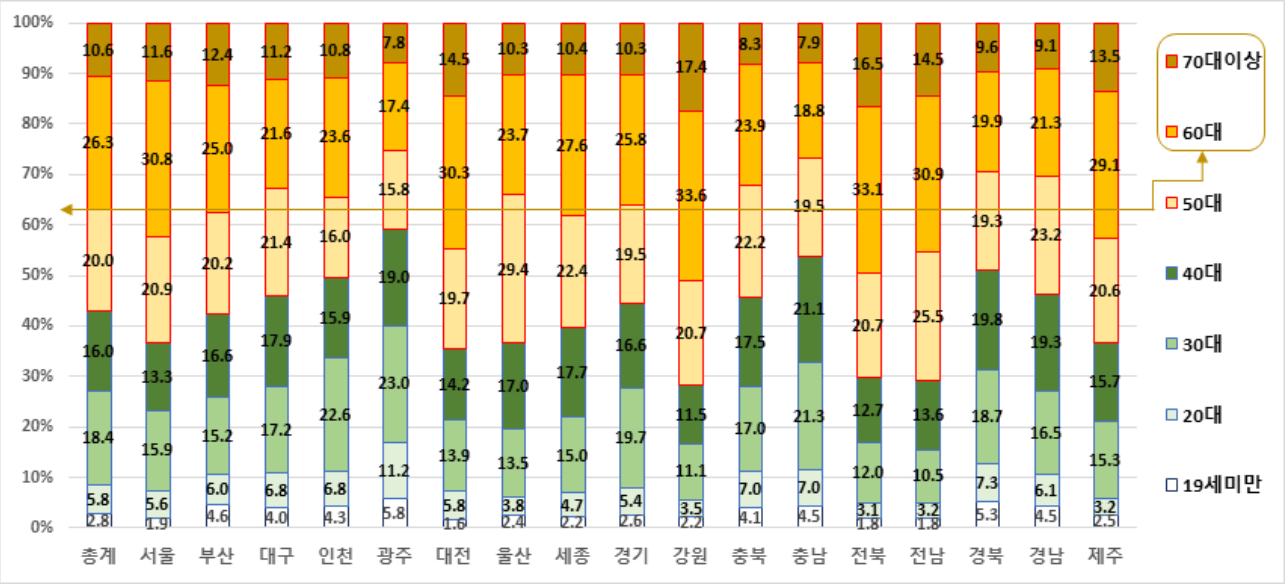

[그림 4-48] 전국 시도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구성비(2023.3)

○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시군 구성비를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시(전주/군산/익산) 단위 거주 비중이 증가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군 단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9세이하 연령층은 전주/군산/익산 지역에 80%가 거주하고 있었고, 60대 이상 비중은 19.4%가 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9] 전북 시군별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라북도	3,801	70	118	457	483	785	1,260	628
전주시	952	20	39	163	119	183	275	153
군산시	1,020	20	28	106	159	233	325	149
익산시	531	16	23	64	79	113	175	61
정읍시	327	3	2	33	30	61	130	68
남원시	185	4	9	17	19	34	68	34
김제시	152	1	2	15	17	33	57	27
완주군	243	1	10	28	24	60	77	43
진안군	29	0	0	4	1	5	9	10
무주군	22	0	0	3	4	6	3	6
장수군	33	0	0	5	6	4	9	9
임실군	30	0	1	1	1	6	13	8
순창군	38	1	0	4	2	10	14	7
고창군	164	3	2	9	14	25	71	40
부안군	75	1	2	5	8	12	34	13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연령별·지역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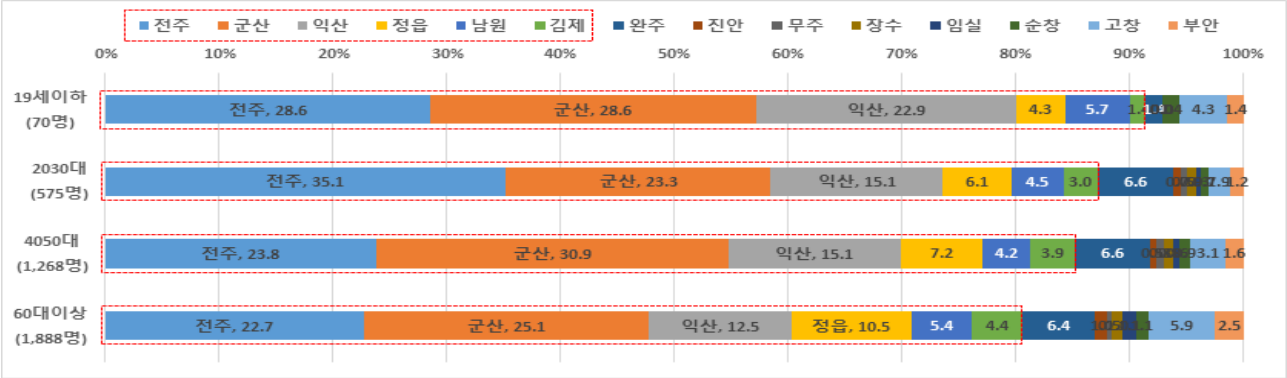

[그림 4-49]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연령별 시군 구성비

5. 기타(불법체류, 국민의 배우자 등) 현황 분석

가. 불법체류 현황

❍ 전국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 기준 총 체류외국인 2,335,596명 중 414,045명이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체류율 17.7%를 기록하였음.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전년(392,247명) 대비 21,798명(↑5.6%) 증가한 수치임. 불법체류율은 '13년 10% 초반대에서 '18년 15%대로 증가, '20년 10% 후반대로 증가 추세임

- '23년 3월 기준 전체 불법체류외국인 2,335,596명 중 66%(273,348명)는 단기체류자격 외국인이었고, 33.5%(138,886명)는 등록외국인으로 나타남

[표 4-50] 전국 불법체류 현황(2023.3)

(단위 : 명)

연 도	총 체류 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불 법 체류율
		소 계	등 록	거 소	단 기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2019년	2,524,656	390,281	95,815	1,316	293,150	15.5%
2020년	2,036,075	392,196	108,665	1,674	281,857	19.3%
2021년	1,956,781	388,700	125,022	1,427	262,251	19.9%
2022년	2,245,912	411,270	138,013	3,725	269,532	18.3%
2022년 3월	1,966,276	392,247	129,969	2,620	259,658	**19.9%**
2023년 3월	2,335,596	414,045	138,886	1,811	273,348	**17.7%**
전년대비 증감률	18.8%	5.6%	6.9%	-30.9%	5.3%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3월호).

○ 한편,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규 발생 월별 현황을 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의 겨울 기간 동안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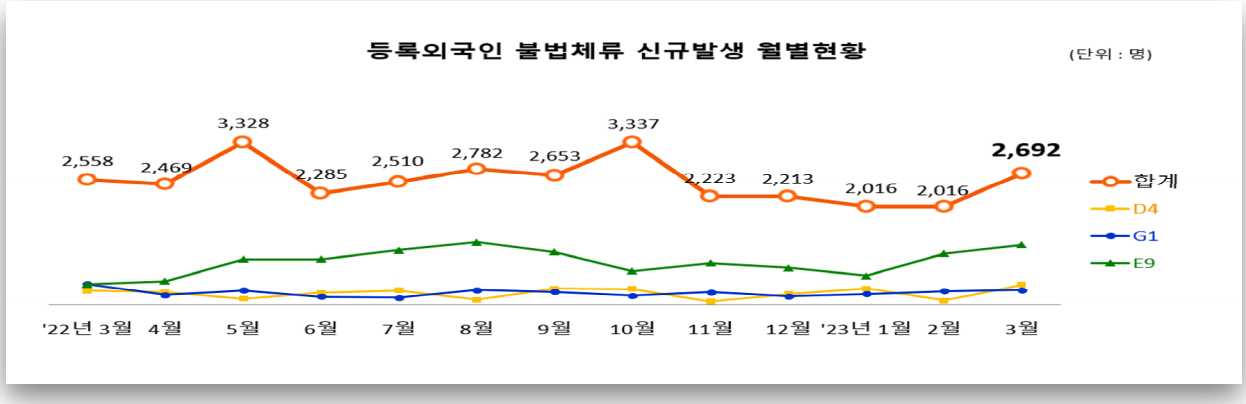

[그림 4-50] 전국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신규발생 월별 현황(2022)

[표 4-51] 전국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현황(2022.12.31.기준)

(단위 : 명, %)

구분	총 체류 외국인	합법체류	불법체류	불법체류율
합 계	2,245,912	1,834,642	411,270	18.3%
사증면제(B-1)	224,817	60,294	164,523	73.2%
관광통과(B-2)	100,793	81,660	19,133	19.0%
단기방문(C-3)	137,642	57,965	79,677	57.9%
단기취업(C-4)	1,985	1,602	383	19.3%
유 학(D-2)	134,062	124,654	9,408	7.0%
기술연수(D-3)	1,719	490	1,229	71.5%
일반연구(D-4)	65,204	38,352	26,852	41.2%
종 교(D-6)	1,471	1,425	46	3.1%
상사주재(D-7)	1,148	1,134	14	1.2%
기업투자(D-8)	6,822	6,668	154	2.3%
무역경영(D-9)	2,148	2,092	56	2.6%
교 수(E-1)	2,012	2,009	3	0.1%
회화지도(E-2)	14,251	14,212	39	0.3%
연 구(E-3)	4,009	4,004	5	0.1%
기술지도(E-4)	214	213	1	0.5%
예술흥행(E-6)	3,989	2,614	1,375	34.5%
특정활동(E-7)	24,083	21,144	2,939	12,2%
계절근로(E-8)	4,767	3,394	1,373	28.8%
비전문취업(E-9)	268,413	213,242	55,171	20.6%
선원취업(E-10)	19,874	11,142	8,732	43.9%
방문동거(F-1)	105,293	100,640	4,653	4.4%
거 주(F-2)	44,561	42,714	1,847	4.1%
동 반(F-3)	24,917	24,300	617	2.5%
재외동포(F-4)	502,451	498,541	3,910	0.8%
영 주(F-5)	176,107	176,107	0	0
결혼이민(F-6)	136,266	132,144	4,122	3.0%
방문취업(H-2)	105,567	102,139	3,428	3.2%
기 타	131,327	109,747	21,580	16.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3월호).

나. 국민의 배우자 현황[5)]

▮ 국적별 국민의 배우자 현황

❍ 2023년 3월 기준 전국 국민의 배우자 수는 총 169,611명이며, 이 중 31.1%(52,721명)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서울 16.2%(27,520명), 인천 7.1%(12,089명), 경남 6.3%(10,731명)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전북의 경우 5,934명으로 전체 국민의 배우자 수의 3.5%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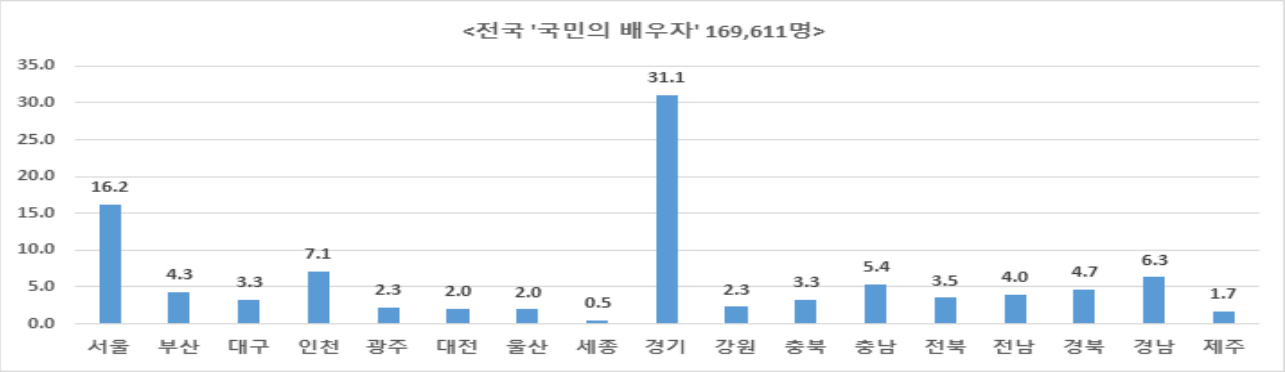

[그림 4-51] 전국 국민의 배우자의 시도별 구성비(2023.3)

[표 4-52]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국적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베트남	중국(한국계)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우즈벡	몽골	러시아	기타
총계	169,611	38,851	59,523	15,378	12,012	7,759	4,883	4,604	2,652	2,516	2,115	19,318
서울	27,520	2,828	11,755	3,221	1,196	803	1,596	227	286	456	442	4,710
부산	7,355	1,846	1,939	815	559	252	276	182	92	45	202	1,147
대구	5,571	1,822	1,303	381	511	273	168	260	99	35	69	650
인천	12,089	2,242	5,331	866	678	519	227	145	220	213	198	1,450
광주	3,823	1,236	941	318	294	186	83	273	81	44	32	335
대전	3,417	895	996	257	319	160	150	112	59	41	34	394
울산	3,368	996	1,067	223	309	206	44	88	58	44	32	301
세종	855	211	250	86	64	31	36	18	13	7	11	128
경기	52,721	9,187	22,726	4,445	3,203	2,562	1,459	988	808	930	619	5,794
강원	3,911	991	874	504	413	313	114	148	88	51	66	349
충북	5,599	1,667	1,582	445	531	334	64	194	98	143	47	494
충남	9,077	2,637	2,915	737	781	507	136	366	166	131	79	622
전북	5,934	1,998	1,506	623	512	256	74	291	104	69	63	438
전남	6,705	2,390	1,323	763	760	402	73	360	82	96	42	414
경북	8,001	3,114	1,706	515	761	470	133	401	129	87	62	623
경남	10,731	4,082	2,333	972	837	439	149	484	236	101	73	1,025
제주	2,934	709	976	207	284	46	101	67	33	23	44	444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5)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 중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현황임(미등록자 제외). F-2-1, F-5-2, F-6.

○ 전국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9,611명 중 중국(한국계포함) 비중이 35.1%(59,523명)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베트남(22.9%), 일본(9.1%), 필리핀(7.1%) 등의 순이었음. 중국(한국계포함) 및 베트남 국적 비율이 전체의 58.0%를 차지함

- 17개 시도별로 국민의 배우자의 국적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자치도,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적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 전북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 5,934명 중 베트남 국적 비중이 33.7%(1,99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 25.4%(1,506명), 일본 10.5%(623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베트남 국적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고, 중국(한국계포함)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충청권은 중국과 베트남 비중이 유사하였고, 전라권의 경우 베트남 국적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비중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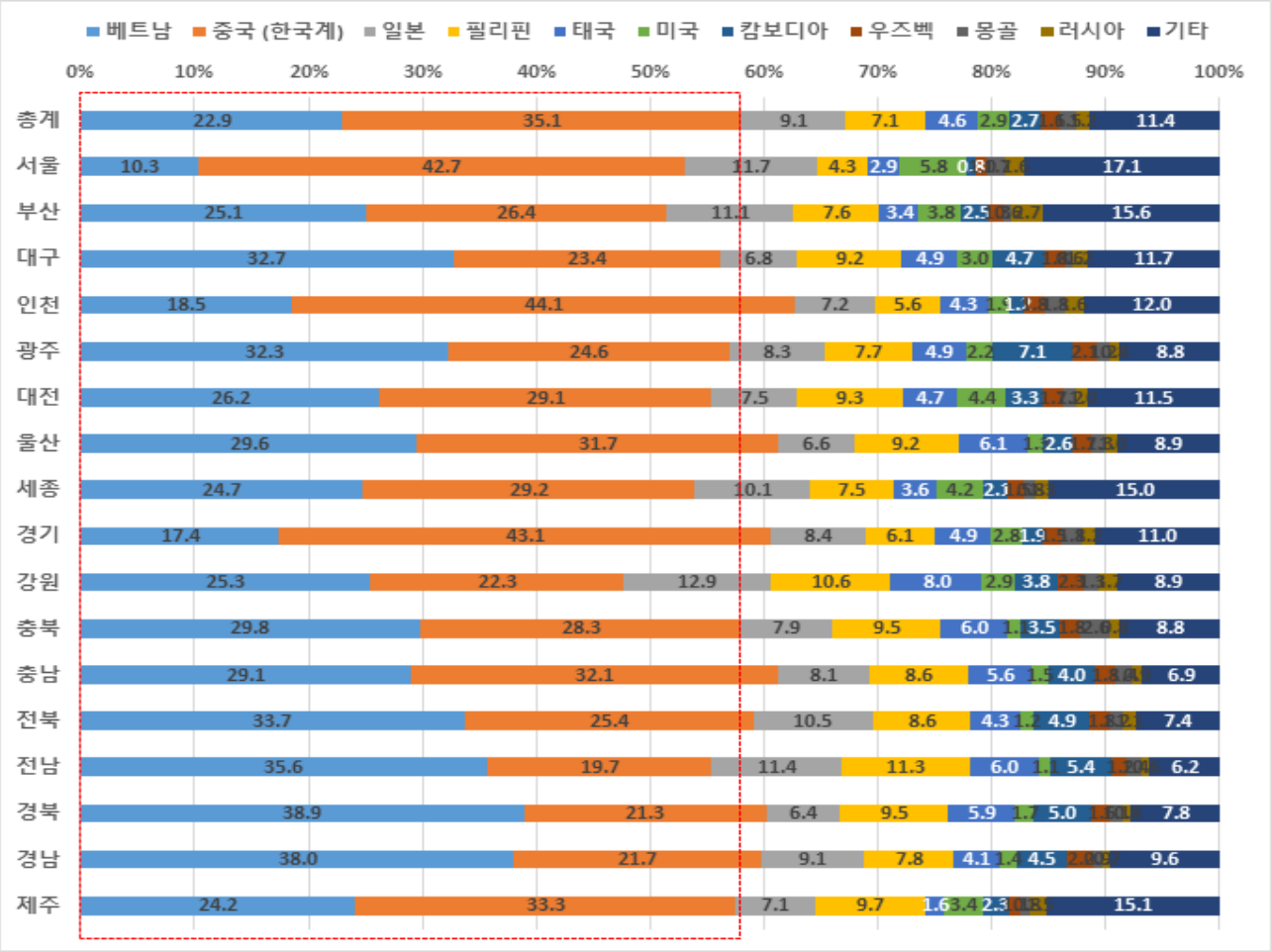

[그림 4-52]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국적별 구성비(2023.3)

○ 한편, 전북 국민의 배우자 5,934명의 국적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 5,334명(89.9%)이고, 남성 600명(9.1%)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여성 배우자 5,334명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34.9%), 중국(22.0%), 일본(11.3%), 필리핀(9.1%) 등의 순임
- 남성 배우자 600명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22.8%), 중국(15.3%), 한국계중국인(10.3%), 미국(8.7%) 등의 순임

[표 4-53]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성별*국적별 현황(2023.3)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여성 (5,334명)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한국계중국인	우즈벡	몽골	러시아
남성 (600명)	베트남	중국	한국계중국인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캐나다	영국	파키스탄	일본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 전북 국민의 배우자 수의 시군별 구성비를 보면, 전체 5,934명의 절반 이상(58.3%)이 전주(24.4%), 군산(17.6%), 익산(16.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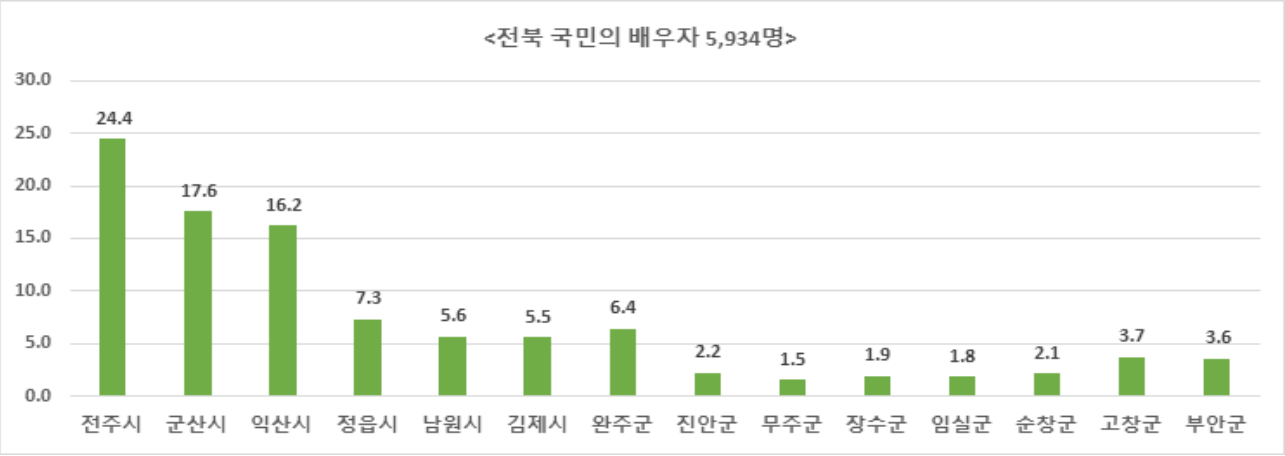

[그림 4-53]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시군별 구성비(2023.3)

[표 4-54] 전북 시군별 국민의 배우자의 주요 국적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베트남	중국(한국계)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우즈벡	몽골	러시아	기타
전라북도	5,934	1,998	1,506	623	512	256	74	291	104	69	63	438
전주시	1,450	447	397	154	99	40	36	65	28	25	13	146
군산시	1,043	288	386	35	94	42	15	25	31	9	32	86
익산시	964	320	264	94	97	35	12	57	11	3	4	67
정읍시	432	152	97	44	41	27	3	20	5	4	2	37
남원시	335	118	67	59	27	23	1	13	4	10	0	13
김제시	329	111	56	31	62	12	2	30	3	6	0	16
완주군	382	165	86	28	20	21	2	19	13	6	2	20
진안군	129	64	17	28	8	4	0	3	0	1	1	3
무주군	91	35	12	13	13	10	0	2	0	2	1	3
장수군	111	41	16	24	7	5	1	10	2	0	1	4
임실군	107	55	13	6	5	6	0	18	0	0	0	4
순창군	127	41	10	40	9	4	0	11	1	1	1	9
고창군	221	75	38	41	12	19	0	14	4	2	5	11
부안군	213	86	47	26	18	8	2	4	2	0	1	19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국적별·지역별 현황, 2023.3

○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국적별 시군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본과 태국 국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적은 '도시지역(전주/군산/익산)'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한국계포함)은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군 단위 비중이 높은 국적은 일본(33.1%)과 태국(30.1%) 국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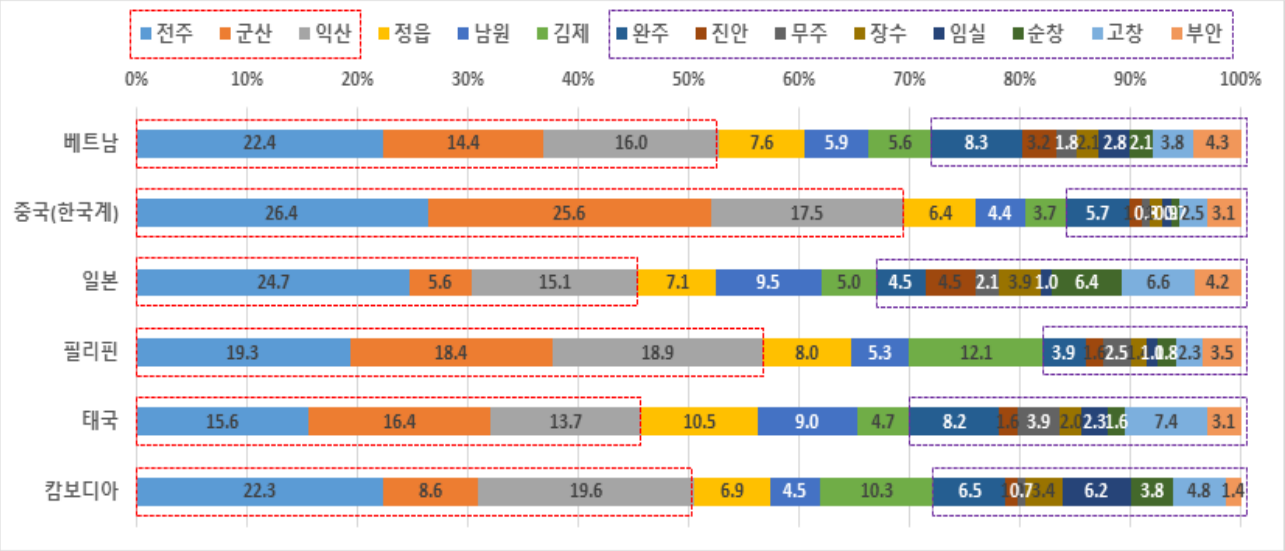

[그림 4-54] 전북 국민의 배우자 주요 국적별 시군 구성비

▌ 연령별 국민의 배우자 현황

○ 전국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5~44세가 34.8%(59,05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5~34세 29.7%(50,334명), 45~54세 18.6%(31,621명)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전북의 경우, 25~34세가 34.1%(2,0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5~44세 33.0%(1,956명), 45~54세 16.3%(968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분포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북의 연령분포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젊은 연령층 비중이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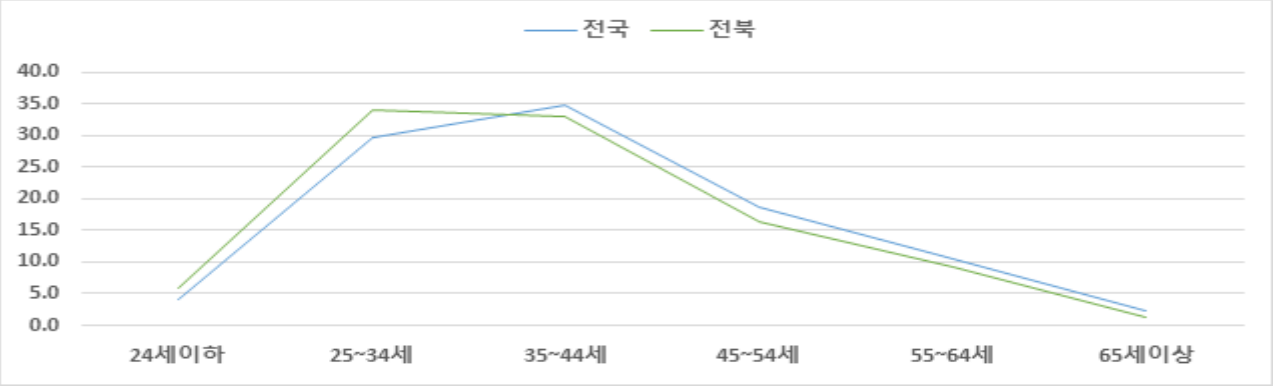

[그림 4-55] 전국 및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

[표 4-55]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24세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국	169,611	6,818	50,334	59,050	31,621	17,798	3,990
서울	27,520	674	6,838	8,738	5,995	4,169	1,106
부산	7,355	308	2,401	2,634	1,316	535	161
대구	5,571	292	1,987	2,099	834	299	60
인천	12,089	405	3,396	4,399	2,334	1,288	267
광주	3,823	238	1,366	1,309	595	281	34
대전	3,417	177	1,161	1,178	593	263	45
울산	3,368	158	1,126	1,235	544	257	48
세종	855	44	257	353	130	55	16
경기	52,721	1,718	14,084	18,621	10,840	6,047	1,411
강원	3,911	233	1,248	1,217	693	453	67
충북	5,599	295	1,852	1,858	974	544	76
충남	9,077	436	2,803	3,162	1,596	918	162
전북	5,934	355	2,026	1,956	968	548	81
전남	6,705	391	2,319	2,167	1,077	650	101
경북	8,001	457	2,877	2,927	1,108	520	112
경남	10,731	489	3,598	4,095	1,567	807	175
제주	2,934	148	995	1,102	457	164	6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연령별·지역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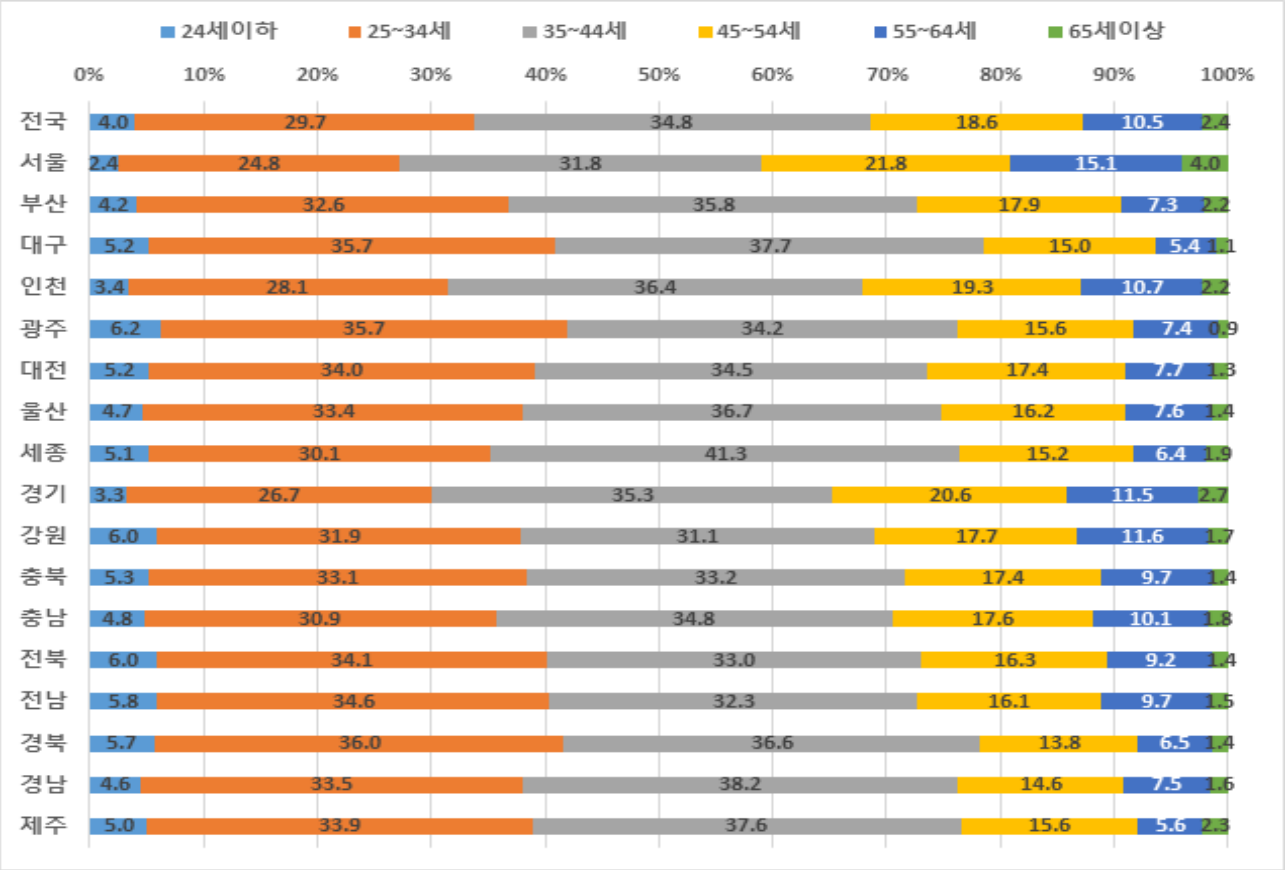

[그림 4-56] 전국 시도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구성비(2023.3)

❍ 한편, 전북 국민의 배우자 5,934명의 연령분포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의 연령분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젊은 연령층 비중이 더 높았음

- 여성 배우자 5,334명의 35.1%(1,873명)는 35~44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5~54세(32.0%), 55~64세(16.0%) 등의 순임

- 남성 배우자 600명의 41.5%(249명)는 45~54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5~44세(25.5%), 55~64세(18.7%) 등의 순임

[표 4-56]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

구분	24세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여성	5,334	353	1,873	1,707	856	494
(5,334명)	100.0	6.6	35.1	32.0	16.0	9.3
남성	600	2	153	249	112	54
(600명)	100.0	0.3	25.5	41.5	18.7	9.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연령별·지역별 현황, 2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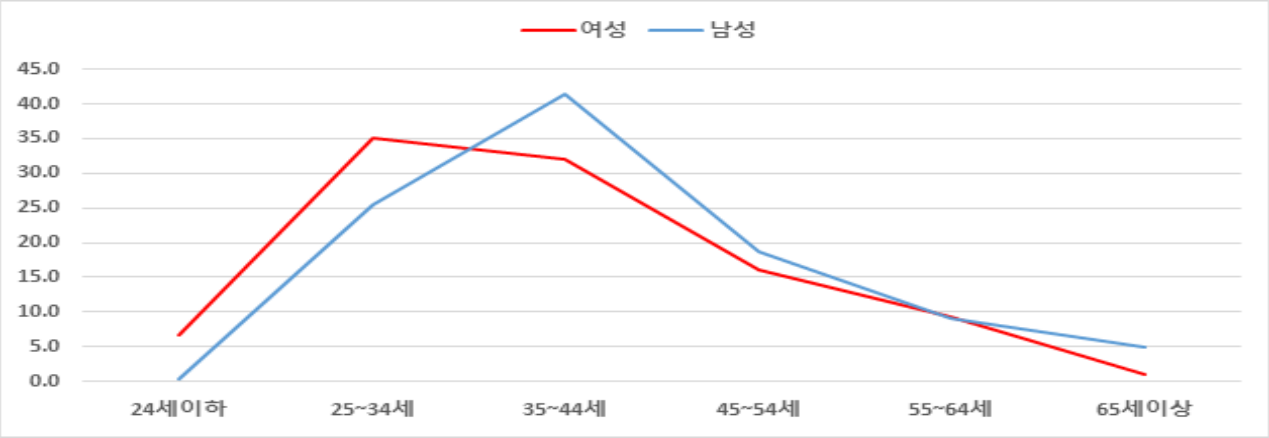

[그림 4-57]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성별*연령별 분포(2023.3)

❍ 전북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대별 시군 구성비를 살펴보면, 물리적 인구수로 인해 모든 연령구간이 전주, 군산, 익산 등의 시 단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군 단위의 경우 'U-curve' 형태를 보임

- 24세 이하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25~34세, 35~44세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며, 45~54세, 55~64세로 갈수록 다시 비중이 높아지는 분포를 보임. 55~64세 구간에서 군 단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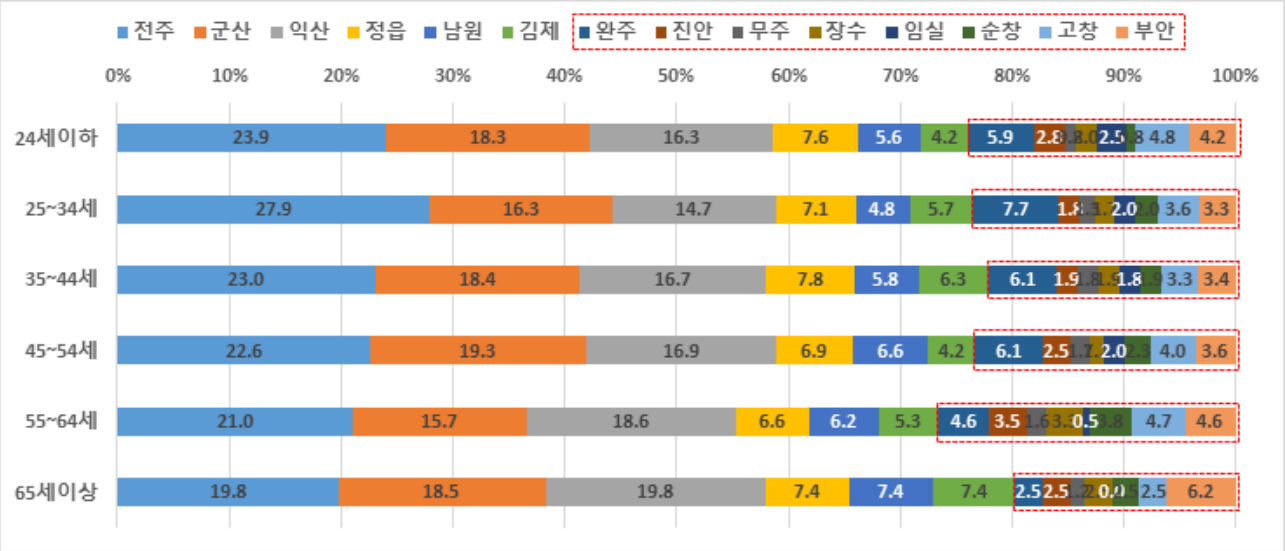

[그림 4-58] 전북 국민의 배우자 연령대별 시군 구성비

[표 4-57] 전북 시군별 국민의 배우자의 연령별 현황(2023.3)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24세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라북도	5,934	355	2,026	1,956	968	548	81
전주시	1,450	85	565	450	219	115	16
군산시	1,043	65	331	359	187	86	15
익산시	964	58	298	326	164	102	16
정읍시	432	27	143	153	67	36	6
남원시	335	20	98	113	64	34	6
김제시	329	15	115	123	41	29	6
완주군	382	21	156	119	59	25	2
진안군	129	10	37	37	24	19	2
무주군	91	3	27	35	16	9	1
장수군	111	7	35	37	12	18	2
임실군	107	9	40	36	19	3	0
순창군	127	3	41	38	22	21	2
고창군	221	17	73	64	39	26	2
부안군	213	15	67	66	35	25	5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23), 국민의 배우자 연령별·지역별 현황, 2023.3

6. 요약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외국인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2022)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기준)」과 법무부(2023)의 「등록외국인 현황(2023.3.31.기준)」 자료를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전북 외국인 현황을 전국 시도별, 전북 시군별, 외국인 유형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또한, 본 연구의 주된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음. 그 결과 전라북도 외국인 현황의 주목할만 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소결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외국민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전국 평균 외국인 주민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북의 외국인 주민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전북의 등록외국인은 전국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였지만, 등록외국인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줄곧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을 넘어 외국인까지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유입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한편, 중앙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 속에 전라북도는 역시 생활인구 감소와 지역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례를 통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전라북도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기반 마련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순히 유입을 위한 정책 설계보다는 '유입 → 정착 →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다시 말해, 전북에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안전, 사회통합, 외국인의 인권 등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전북 외국인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 외국인은 전국평균 보다 체류기간이 짧고, 연령대가 어린 특성을 보임. 이는 전국에 비해 전북 외국인의 유형이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또한, 외국인의 연령분포도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유학생 비중이 높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전북의 '유입형' 외국인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고, '정주형' 비중은 크게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전북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쿼터를 400개로 전국에서 매우 많이 확보하였고, 해당 비자의 대상 역시 유학생(D-2)에서 외국인근로자(E-9)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북 외국인의 유입을 위한 1차적 교두보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이 유입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정주형 이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또한, 전북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매우 높고, 유학생 특성상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전북 내 우수인재 유치가 용이하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성화, 생활인구 증가 등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전북 외국인 구성 특성상 결혼이민자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전북의 산업구조 특성상 군 단위 농산어업 분야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시군 외국인 유형 중 군 단위의 경우 계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를 종합해 볼 때 계절근로자(E-8) 확보를 위해 기존 전북 내 결혼이민자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전북 외국인주민의 국적은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임. 전북은 전국과 달리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가 5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베트남 국적이 매우 높게 나타남.

한편, 성별로 구분할 시 남성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여성외국인은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적 편중 특성을 사회통합 방안 마련 시 세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여성외국인 주민의 국적은 베트남, 태국, 중국 국적이 70%를 상회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그 외 네팔, 우즈벡,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국적을 이루고 있음

❍ 외국인 수는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도 마찬가지 특성을 보임.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편중되어있고, 군 단위 지역은 매우 적은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군 단위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전북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국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국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 비중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 전북지역의 산업구조(농·축산업 분야 비중 높음) 특성 상 해당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특정 국적의 비중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대한 통역, 사회통합, 특정국가의 민족성 등을 고려한 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임

❍ 현재는 전북의 외국인근로자 자격 비중이 단순기능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문인력 비중은 자치도 중 낮은 수준이며 E9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 앞으로는 E-7(특정활동) 등의 전문인력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기 위한 방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전북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마련되었으나, 이들을 어떻게 산업현장으로 오게 하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북 대학 학위과정별 외국인유학생 현황을 보면,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이 5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산업구조 특성상 외국인 필요인력은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데 대학을 전라북도에서 나와도 일자리와 매칭되기는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학이나 자연과학 등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 국립농수산대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 뿌리산업학과 지원 및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불법체류외국인과 관련해서는 매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얼마 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대폭 축소되었다가 갑자기 확대

되면서 미등록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더욱이 불법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기체류 유형은 농수산물 관련 분야 취업이 많은데, 전북의 경우 계절근로 등의 비중이 높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군 단위 지자체의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원이 요구될 것임

❍ 전북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그 수가 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임. 물리적 숫자도 적을뿐더러 연령분포는 높게(동포의 50%가 60대이상) 나타나고 있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그들의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주형' 이주민으로 분류되는 외국국적동포의 적극적인 유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음. 가족으로 확대해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포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같은 동포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특정 지역에 집중), 예를 들어 '동포인 마을'과 같은 것을 조성해주거나 또는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제5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2. 전북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3.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제5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법무부가 2023년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안)과 연동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안)를 도출함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전북의 외국인 정책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을 찾아내고,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함.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외국인 정책 분야별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발굴함

가.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목적과 방법 및 참여 대상

○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이유는 현장과 학계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관점에서 (1) 전북지역의 외국인 유형별 주요 실태와 현안 및 민·관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2) 기존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며, (3) 해외 및 타 지자체 사례 중 전북에 도입·적용 가능한 우수사례 추천 및 (4) 전북도의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방향과 세부 사업발굴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성하고자 함

○ 자문방식은 사전에 전화 통화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하고, 외국인 유형별 자문받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3~4일 전 이메일을 통해 미리 전달하여 전문가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린 뒤 전문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인터뷰, 이메일, (ZOOM)화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함

○ 자문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하였고,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형과 사업 분야별로 의미 있는 내용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도출함

○ 자문 참여대상자는 도내 외국인근로자 채용 기업의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의 사업 담당자,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문)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 담당 공무원 이외 외국인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 단체 실무자 등임

○ 자문의 주요 내용은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전북지역의 주요 실태·(통계)현황·(서비스)지원 현황 및 현안(이슈), 기존 정책·사업의 한계, 문제점, 개선 및 필요 지원사항, 해외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중 전북에 도입·적용이 필요한 사례 추천, 외국인 유형별 유입-정착- 정주를 위한 방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전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 발굴 등 임

[표 5-1] 외국인 유형별 참여 자문 전문가 현황

구분	외국인 유형	참여대상	비고
1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민간단체 종사자(3명), 기업의 사업주(2명)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추진체계 사업담당자(2명)	
2	유학생	직업훈련중심 대학(1명), 2년제 전문대학(4명), 4년제 대학(2명), 직업전문학교(1명)	
3	계절근로자	관련 담당업무 공무원(1명), 민간지원단체(2명)	
5	재외동포	민간지원단체(2명), 관련 학계 연구자(1명)	
6	외국인 전반	학계 연구자(2명), 민간지원단체(1명), 관련 담당 공무원(1명), 법무부 공무원(2명)	
합계	총 27명		

2) 전문가 자문회의 분석 결과

▮ 외국인 유학생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외국인 정책 중 핵심 현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부각 되고 있음. 유학생 유입 중심 정책에서 유치한 유학생 지도·관리와 취업 연계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
  - 유학생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과 지역 내에서의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 필요
  - 특히 4년제 대학(대학원) 졸업 이후 전공과 일자리 매칭, 처우와 취업 규제 등의 문제로 유학생의 지역정착의 걸림돌 발생
- (교통사고) 지역 특성상 이동 접근성 제한으로 원동기(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자동차 운전의 경우 무면허, 무보험 관련 신고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건처리의 어려움 큼
- 유학생 불법체류 및 이탈 문제의 심각성 큼

- (유학생 관리의 어려움) 대학에서 국내 학생 관리부서(학사운영처, 총무처 등) 인력은 풍부한 반면, 유학생 관리 국제부서 인력은 현저하게 소수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유학생의 학사 및 비자·행사 전반의 일을 관리하고 지원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적 한계 큼
  - 유학생 업무는 교육부, 법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련 업무가 많고, 법과 관련 민감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때문에 고강도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심함
  - 한편, 대학 내 유학생 담당 국제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은 계약직 또는 순환보직으로 업무가 미숙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문제가 나타남
- (언어와 문화 차이) 유학생과 언어소통이 어려워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해야 하고 직접 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함. 나라마다 문화도 각기 상이해 서로간에 이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식사 메뉴와 식당 예약 및 숙식 등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 번의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상황
- (교내 프로그램 편성의 어려움) 대학 생활 6개월 이상이 된 유학생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시간 조율하기가 쉽지 않고, 유학생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부족 및 비용·이동거리·식사 및 유학생의 수요 파악 등이 쉽지 않으며, 관련 업무도 많아 대학 내 국제부서 직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음
- (유학생 특징) 대학 학과 공부보다 직업 활동(아르바이트)이 유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고, 졸업 후 전공 연계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 활동이 주목적인 경우도 많음. 적당히 벌고, 쓰고, 놀자 등의 인식도 강함

❍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대학 내 유학생을 촘촘하게 관리·지원하기 위해 대학별 유학생 담당 국제부서 인력과 예산 추가·확대 필요함. 또한, 평생교육사처럼 대학 내 국제부서 담당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필요
  - 대학 내 유학생 규모에 따라 국제부서의 인력 감축이나 예산 삭감 또는 관련 부서 폐쇄 등이 발생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응시료 지원 및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 지역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시, 서버문제로 인터넷 접속이 어렵고, 유학생이 개인 정보 입력 오류 시 응시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국립국제교육원의 적극적인 개선 필요
- 국제교류 및 유학생 유치 관련 규모와 사업추진에 있어 일반대(4년제)와 전문대 간 차이 발생. 현재 대학 유학생 관련 사업과 정책은 4년제 일반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대가 함께 동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에 전문대와 일반(4년제)대를 구분하여 지원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전문대는 일반대와 달리 고등학교 졸업한 유학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와의 협약 및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지역 전문대학교 유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필요로함
- 대학 내 학사과정을 밟는 것 만큼 전북지역 관광 및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필요, 유학생 당사자가 직접 문화 체험과 관광 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관련 바우처 지원도 성적 우수자로 한정하여 지급할 필요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지역특화형비자 F-2R 확대 및 활성화로 비전문취업근로자(E-9) 대상인 고용허가제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간 접점이 정비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 많음. E-9, E-7-4, F-2R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체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커졌고, 기능 수준·임금 수준 및 체류자격 간 불일치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중장기적으로 이 3개의 체류자격 조건을 정리할 필요 있음
  - 현행 비전문취업근로자(E-9)가 F-2자격을 취득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됨.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인 F-2R 체류자격은 기본 요건과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창업·거주하는 조건 등만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
  - 뿌리산업 학과(군장대, 비전대) 외국인 유학생은 2년 이상 대학에서 교육·훈련받고 기량 검증 시험과 졸업을 통해 E-74 비자를 어렵게 취득하는 반면, F-2R 비자는 기본 요건(토픽 3급, 학사학위 소지자, 국민총소득의 70% 이상의 소득, 인구감소지역 5년 이상 취업·창업·거주) 충족만으로 취득할 수 있음. 이에 뿌리산업 학과 유학생은 비전문취업근로자(E-9)와 F-2R 체류자격자 보다 기능 수준은 더 우수하나 임금수준은 동일하고 체류자격은 보다 안 좋은 조건인 상황
- 지역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인 국제교류부서의 내부 인력은 가장 적은 소규모로 최소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에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사업체 면접 지원 등)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인 졸업한 유학생까지 대학에서 포괄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가 큼
-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통해 유학생과 기업 간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으나 일자리 매칭의 어려움은 여전히 큼
  - 유학생들의 대학내 전공비율을 살펴보면, 인문 사회 전공 비율이 학사과정 56%, 석사과정 62.3%, 박사과정 44.1%로 지역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분야와 유학생의 전공간 불일치로 일자리 매칭이 어려운 상황
-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전북 도내에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수요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체별 직업 환경과 기숙사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음
- 전북 외국인 현황 특성상 특정 국가, 즉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별 배정 인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때문에 지역별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에 한계가 크고 특정 국적을 제한하면서 신청자 모집에 어려움도 큼
  - 지역별 산업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특정국가를 선호하며, 기숙사 제공 등을 고려하여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이용할 경우 관리와 지원·정착에도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이 향후 유학생 비율보다 비전문취업근로자(E9)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센티브 자체가 너무 큰 제도이기에 브로커의 창궐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별도 신고 없이 근무처 변경이 가능함. 이에 체류 기간 연장 시 최초 자격 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계속 취업하고 있었는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였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퇴직 신고, 근무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업무의 혼선이 발생 될 가능성 높음
- (경제통상진흥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기숙사가 과포화되어 있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

해 신규 채용된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대상 기숙사 제공에 어려움이 큼. 별도 지역에 기숙사를 시급하게 찾아보려 해도 촉박한 시간 여건상 임차비 및 부지 구입 비용 등 비용적 한계로 어려움이 큼

❍ 지원 및 개선 방향

- 유학생들의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취업박람회와 별도로 유사 직종별 사업체가 대학교를 방문하여 유학생 면접실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지역별 사업주들의 관심도 지속 높아지고 있음. 이에 사업체별 사업주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확대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사업체 채용 현황 실시간 업데이트 필요
- 산업체는 보다 숙련된 E-74를 선호하고 있음. 이에 E-74(숙련인력) 활성화를 위한 처우개선 이 필요하고, E-74와 F-2R간의 연계 방안 및 F-2R을 활용한 E-74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의 혜택이 많은 만큼 다방면으로 발생하는 브로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보다 확대될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전환 한 외국인을 관리·감독·지원해 줄 부서 혹은 기관(민간 단체 공모 위탁 등) 운영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의 성과 평가 체계 마련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한 외국인 유입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확대, 사업장과 작업장 등 근로 환경과 기숙사 환경 질적 개선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로 인해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의 동반 가족(정착형)이 지역에 정착·정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현실화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로 신규 채용된 외국인 대상 안정적인 기숙사 제공을 위해 지자체-다수 기업 등이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유 기숙사 신설 방안 검토 필요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제도이나, 이를 악용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주소만 옮겨두고 실거주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경제통상진흥원) 지역특화비자 추천서 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민원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3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방문 신청 민원 지원과 전화 문의·방문 상담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 추가 배치 필요

▮ 외국인근로자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지역별 산업체 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비전문취업인근로자(E-9)로 숙련기능인력의 필요성 높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어려운 상황

- 지역별 사업장 및 작업장 근로환경 취약한 부분 많음
- 타 지자체 대비 통·번역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부족,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지원 서비스 부족
- 사업체의 근무시간을 배려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간 편성 필요

❍ 지원 및 개선 방향

- 숙련기능외국인력 유치 및 양성 확대 필요
- 사업장 및 작업장 내 근로 환경 개선 필요, 산업 안전 강화 및 인권 침해와 구제방안 구체화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건강검진 지원 혜택 필요
- 통·번역 및 상담 지원 서비스 확대와 관련 지원인력 추가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거점센터 유치 및 지자체 예산 추가지원 필요
- 근로환경 개선, 시내권 중심의 기숙사(아파트형) 마련 등 거주환경 개선 필요
- 접근성을 고려한 긴급 외국인 쉼터 운영 필요
-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 유치와 동반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체계와 사업 마련 필요
- 직업훈련 교육 및 기술자격 기회 확대(중장비 자격증 등) 필요
- 국적별 커뮤니티 운영과 활성화로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모임과 활동, 외국인 정책 관련 정보 공유 확대 필요. 외국인 커뮤니티별로 묶어서 필요 수요 맞춤 지원사업 강화 필요

▌외국국적 동포(재외동포)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전북 도내 중국 동포 약 2.500명, 고려인 동포 약 300명 등 자세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전북 지역 내 외국국적의 동포는 수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 전북 재외동포(고려인 중심) 적극적인 유치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인프라, 예산 투입) 부재

❍ 지원 및 개선 방향

- 지역특화형비자 유형2(동포가족) 추진 및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필요
  -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의 대상자는 대략 80만 중국동포와 10만 고려인동포라 할 수 있음. 중국동포(방문동거) 가족 유입은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유치할 수 있음
- 전북도가 동포마을 조성 의미와 유입·정착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면 동포가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김제 고려인(동포)마을 비전에 대한 설명회/토론회를 전북도와 김제시가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고려인 동포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고려인 마을에 집중 모여 살고 있으며, 이주 시 가족단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재외동포 정책 방향과 사업 발굴 모색 필요.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동포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연계 지원사업 다양하게 추진 필요
  - 인구감소지역에 특성화 및 종합고등학교 조사를 토대로 고려인 학생 유치 방안 논의 필요
  - 고려인 영유아 대상 보육비 지원(안산시, 화성시, 대구 달성군, 충남 아산시 등 보육료 지원) 필요
  - 전북도 특성을 반영한 식품산업과 농축산업 및 어업 등에서도 고려인 동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필요
  - 자녀교육(어린이집, 중·고등학교 입학) 여건이 갖춰지고, 정기적으로 전북도의 문화·예술·여가 등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수립되면 외국국적 동포(고려인, 조선족 등)들에게 적극적 사업 홍보 필요
- 한국어 소통이 다소 가능한 중장년 여성 동포 중 간병인으로 진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업 취업 대신 고려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적극적 발굴로 외국국적 동포 유치 전략 모색 필요
-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인 등) 해외에서 유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계절근로자

❍ 주요 현안과 문제점

- 기초단체의 농업분야 행정과 담당 주무관의 기본 역량 미흡 등으로 계절근로자제도 업무 수행의 어려움 큼
- 계절근로자 관리 및 운영상의 한계로 민간 브로커 및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등 관리의 문제점 지속 발생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률 증가 문제 심각
- 고령층의 농가 사업주의 외국인 대상 행정자료 취합 및 신청의 어려움과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행정 업무의 어려움 큼

❍ 지원 및 개선 방향

- 무단이탈과 불법체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한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필요
- 무단이탈 방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계절근로자 SNS 대화방 등을 적극 운영·활용하여 계절근로자와의 상담창구 활성화 및 고용농가와의 갈등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센터 구축 필요, 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농가 등 현장 점검과 민원관리 체계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속 재고용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농협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
- 계절근로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신축 등 필요

나.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SWOT 분석

1) 강점(Strengths)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및 권한 이양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란 2024년 1월 18일 0시 기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 이에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 격상,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게 되고,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됨. 또한, 각종 시책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어 예산과 경제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될 전망임. 특히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아 전북만의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신속성 또한 증대될 것임

▮ 전북 도지사 이민비자 발급 권한이양 건의, 전북인구의 10% 외국인 유입에 강한 의지

○ 전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간 지역 현안 논의 시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건의. 이는 전북 도지사의 이민 및 외국인 유입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전라북도 도지사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 정책으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및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10% 범위 내까지 외국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민선 8기의 역점 추진 시책에 상응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전북지역 400쿼터 최다 기초지자체 공모선정

○ 전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400쿼터란 최다 기초지자체 공모 선정과 외국인 유입에 있어 기관장의 높은 관심 및 지방 권한 강화 등으로 지역의 외국인 유입과 정주화의 기반 마련에 상대적으로 유리함. 이에 전북 지역 주도와 수요 맞춤의 외국인 유입 및 다양한 지역 정주화 지원 정책 추진 가능성 높음

2) 약점(Weaknesses)

▮ 타 시도 대비 외국인 규모 절대적 부족(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

○ 전라북도 외국인의 규모는 행정안정부 통계 상 60,684명('21.11),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상 38,658명('22.12)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 9개 광역도 중 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전북 도내 외국인의 수와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적고 부족한 상황. 이에 중앙부처별 외국인 관련 정책 지원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 사업 추진에 있어 논리적 구축의 한계가 큼

▮ 도내 지역별 외국인 쏠림과 집중화, 외국인관련 인프라 불균형과 부족

○ 전북지역 체류 등록외국인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법무부의 2023년 3월 기준 전북 등록 체류외국인 총 35,469명 중 약 72% 이상이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해 있는 전주지역에 약 57% 가량이 집중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도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이 전주 및 주요 시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외국인 인프라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 이에 전주 및 주요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한국어교육·사회통합교육·커뮤니티 및 기타 지원 사업 등을 수강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주와 주요 시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하고 해당 거주 지역 인근에서는 이러한 교육 기회와 혜택이 부족한 상황

▮ 전북 도내 체류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의 비율 상대적 높음

○ 법무부의 2023년 3월 기준 전북 등록 체류외국인 총 35,469명 중 베트남(11,121명) 국적이 전북도와 14개 시·군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무엇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경우 법무부는 기본요건으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것 적용하고 있어서, 전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은 이 기본요건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외국인 대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및 지역 사업체의 작업·기숙사 환경 열악

○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경제 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은 오래전부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면서 주력사업들의 침체와 노후화 및 대규모 기업이 부족한 상황

○ 한편, 전북 도내 학부과정 유학생들의 전공학과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국어국문학·한국학 및 경영·경제학 등)이 전체의 약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공학과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서 외국인 대상의 일자리 수급과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음

○ 무엇보다 전북 도내에는 소규모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구조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위험 요인들도 많아 외국인력 개개인의 욕구와 산업장의 요구간의 불일치 등이 자주 발생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요구도 지속되면서 전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북도 외국인업무 부서별 파편화(업무의 사각지대 발생) 및 기획·총괄·조정 부서 부재

○ 현재 전라북도는 중앙부처별 외국인 정책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많음. 즉 외국인 정책 및 지역특화형 비자는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국제외국인 정책팀이 담당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협력추진단의 대학협력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력 도입과 고용허가제 등 도내 기업과 연계한 외국인근로자 전반에 대한 업무는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임에도 전북도 차원의 일자리민생경제과와 대외협력과간의 주요 업무담당을 서로간의 부서에 넘기는 등 부서간 대립과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외국인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통합·총괄 및 조정을 하고 적절한 사무 배분과 위임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 관련 필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무엇보다 향후 전북 도내 외국인 구성의 다변화,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입·유치 확대 및 사회통합까지 다양하고 많은 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더 중요해짐

○ 또한,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외국인 정책 업무를 기존 다문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겸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장과 더불어 1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정책 업무 배분과 사무 이임이 필요함

3) 기회(Opportunities)

▮ 중앙부처 차원의 외국인 정책 관심 및 지원 예산 확대

○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고,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생

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됨. 무엇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47.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 등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이민자 유입정책과 더불어 유입된 외국인의 지역정착 방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외국인 정책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급변하는 외국인 정책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인 이민청을 신설하여 책임감 있고 주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6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이 확대될 전망임. 재원 투자 규모도 '23년~ '27년 동안 약 1조 2,735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음

▮ 지자체 주도의 자율성 강화

❍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충격 완화·지연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 무엇보다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은 지역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의 정책 시행이 필요하고 이에 지자체의 역량 및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 향후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정책의 권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계획을 지니고 있음

▮ 전북지역 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전라북도의 인구는 1973년을 정점으로 2020년 1,792천명까지 감소하였고, 2047년에는 1,583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여 고령인구 비율이 1970년 3.7%에서 2020년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47년에는 43.9%까지 높아질 전망임. 이에 생산연령인구 백 명당 총 부양비는 2020년 48.0명에서 향후 2047년에는 110.4명까지 높아질 전망임

❍ 전북지역의 뚜렷한 인구감소의 두드러진 현상과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청년인구의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 및 청년정책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별 산업체의 인력난, 대학 위기, 및 농촌지역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다변화에 다양한 수요에 따라 외국인 유치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4) 위협(Threats)

▮ 국가간(특히 한·중·일간) 외국인 우수인재와 인력 유치 경쟁 치열

❍ 2020년 기준 세계 이민자의 41%가 아시아지역 출신이고 이 중 60%의 이민자가 아시아 내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출하는 등의 인적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아시아 중 경제부국이라 할 수 있는 한·중·일의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의 근로인력 부족 등에 따라 아시아 국가의 이민자를 서로 흡입하려는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이미 대만·대만·일본은 2015년부터 인구감소·고령화 및 인력부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지원 등 외국인 체류 장기화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책 전담 및 총괄 기관도 신설하고 지속 정비해 옴

▮ 지자체간 외국인 정책 관심 증가 및 외국인 유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 심화

❍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유입에 대한 해외에서의 경쟁과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한 지자체로의 유치 경쟁이 향후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경북·광주·전남 및 충북 등 타 시도는 이미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등을 신설하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다변화에 따른 높은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유치에서부터 사회통합 부분까지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사업 지원을 확대·강화시키고 있음

▮ 전북지역으로 유치된 외국인 타 시도로의 유출 우려

❍ 전북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재외동포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그리고 정주 여건과 근로 환경 및 외국인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큼

▮ 도내 외국인 규모 증가와 외국인 다변화로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 유학생, 외국인력 수요에 따라 전북 도내로 지속 유입되는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전반의 인권침해 문제, 외국인 범죄율, 지역사회 내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 및 인종 차별 문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일자리·취업 갈등 등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발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여건 진단 결과

다.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기본전략 도출

1) SO(강화) 전략

▮ 기존 외국인 정책 사업의 확대 및 강화

○ 전북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외국인 정책 중에서 성과가 크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지원 사업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규모 차원에서 확대 추진 필요

○ 기존 전북도의 외국인 정책들 중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사업을 해외 지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있기에 해외 유학생 유치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새만금 한글학당의 거점지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 등을 추가 발굴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 있음. 또한 전라북도 외국인현장상담소와 외국인 단기쉼터 및 외국인유학생지원사업(대학·유학생 대상) 등의 기존 사업의 예산과 영역 등을 확대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 전북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특히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지원정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92%(58만명중 53만명)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 해외 우수인력 및 숙련된 인력을 전북 도내로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연계 및 정주화 등을 구축하여 외국인 친화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추진

▮ 지역사회 외국인 수요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기반의 이민행정과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 체계 수립 및 외국인 유입에 따른 체류 자격 및 정착을 위한 전문 기구 운영 모색

○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5% 이상이거나 외국인 만 명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에 지역민과 갈등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협의 대응체계 확립

2) WO(보완) 전략

▮ 전북지역으로의 외국인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및 장기체류자 등을 유치하고 육성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정책 목표로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집적화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들을 구축하여 전라북도 외국인 유치 기반 조성 추진

▮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과 재외동포 유치 전략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잠재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학생과 재외동포 및 그 가족동반을 함께 유도·유치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대학의 학생과 우수인재 확보 및 우수 외국인 인재 양성 추진 필요

▮ 외국인 정책 효율화 및 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업무와 사업별로 혼재 및 파편화, 그리고 단절되어 있어 사업과 예산의 중복, 정책지원대상의 중첩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라북도 차원의 도와 시군, 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의 이주민센터 및 NGO 등으로 구성 한 지역사회를 토대로 한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추진 필요

3) ST(극복) 전략

▮ 외국인유형별 유치－적응/취업－지역정착－사회통합 단계별 맞춤 사업 발굴

○ 기존의 전라북도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에 전북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유형 등을 고려한 다측각적인 사업 발굴 필요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그리고 동반가족 등을 모두 고려한 외국인 유치·유입 단계, 지역사회에 적응·정착 단계, 그리고 지역민과의 사회통합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별 사업 발굴과 단계별 연계 한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

▮ 외국인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시군-대학-산업-민간단체 등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강한의지와 예산 등이 투자되더라도 결국에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14개 시군 기초단체의 지원, 대학에서의 지원, 지역 산업체별 지원 및 지역기반의 민간단체와 다양한 지원 센터들의 보조가 없다면 어려움

○ 이에 외국인 정책 확대 및 추진 활성화를 위한 시군-대학-산업-민단단체(센터) 등과의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 마련

▮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 외국인이 전북지역에서 지속 정주·정착하여 안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현장에서 나타는 부당한 차별 및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해소 및 권리 구제를 위한 과제 추진이 요구됨.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 사업장의 소규모화, 농촌의 계절근로자 확산 등으로 외국인들의 노동현장에서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다차원의 사업들이 필요함

○ 이에 전북지역으로의 외국인 유입 확대 및 정주화시키기 위한 기초 과제 발굴과 더불어 타 시도 대비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역임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외국인관련 지역데이터 구축 및 지역데이터에 기반 한 행정서비스 지원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유입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 추진이 연동될 수 있음. 그러나 중앙차원의 외국인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부재하기에 전북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전북지역 산업구조 관련 자료, 인구구성의 변화, 중앙차원에서 누락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전라북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촘촘한 외국인 정책 수립 가능

4) WT(방어) 전략

▮ 전북 외국인 정책 전문성·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지역기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전북 도내 외국인 구성의 다변화,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입·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업무의 다양화로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추진

○ 또한, 외국인 정책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역특성에 기반 한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외국인 정책참여단 구성 및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

○ 무엇보다 외국인 정책의 중단기적 수립과 지역기반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풀 구성과 지역 기반의 외국인지원체계 구축 추진

▮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 지원

○ 지역사회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 근무환경 및 작업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로 유치·유입된 외국인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음. 이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지원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으로 정주화시키는 제반여건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될 경우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마련하여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 대상으로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원 제한이 없고 가족동반이기에 인구소멸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고 산업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짐. 이에 외국인을 적극적 유치하고 지역민으로 정착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 추진

▮ 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속 증가세로 장기체류자가 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 관련 사회통합 정책은 변화되어야 함. 장기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경제적 자립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표됨을 의미함

○ 이에 전북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 다양한 영역의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 전북의 경우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인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유입·유치는 필요조건이기에 전북지역의 지속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외국인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의 활성화와 확대 필요

○ 우선 지역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생활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 이해를 도모하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외국인과 직·간접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활동 기회 마련

○ 다음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추진, 지역민과의 교류·지원·협력함으로써 사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통합정책의 기반이 조성 추진

[그림 5-2]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 전략 도출

2.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별 추진전략

가.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설정의 기본 전체

○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하에 전라북도는 시군과 연계하여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의 기본 틀과 연동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도출 등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함

○ 이제 시작하는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반 환경 조성, 추진 체계 마련 및 강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업 확대 및 발굴에 고민을 많이 함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도모를 단계별 연계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정부로서 전라북도는 정책서비스 대상자인 다양한 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민과 상호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 국적취득 및 영주권을 획득해 전북인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함

○ 전북 도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유입 방안과 유입의 체계화, 14개 시군과 연계한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정주여건 지원, 그리고 외국인 구성 다변화에 따른 지역민과의 사회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정책 수립

▮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도출

○ 전북 외국인 정책 SWOT 분석과 기본 전략 도출을 통해 기본방향을 5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글로컬 경제 성장과 활력을 위한 이민자 유입과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맞춤의 우수 인재 유치 및 인프라 구축과 미래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및 동반 가족 유입

○ 둘째, 외국인의 다변화 및 지속 증가하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한 체류질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지원 방안 마련

○ 셋째, 외국인의 전북지역 정주화를 위해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과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을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확대 및 전북지역 외국인 정주화를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 마련

○ 넷째, 전북 지역사회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 제고 방안 마련

○ 다섯째, 글로컬 지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선두로 지역데이터 구축을 위한 제도 구축으로 지역가반의 행정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지역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외국인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고, 국내외 외국인 정책 사례들을 수립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전북지역 외국인 유형별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및 주요 추진체계에 속하는 기관 등을 찾아가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및 개선과 지원사항 등을 종합하여 파악함

○ 또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내·외적 여건분석과 더불어 SWOT 분석 등을 통해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했음

가.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

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2023년 ~2027년

2)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비전 설정

○ (비전)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로 설정

○ (의미) 먼저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과 협력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전라북도 외국인 수는 행안부 집계 60,684명, 법무부 체류 외국인 38,658명으로 광역시도에서 10번째 순위

- 도내 인구는 11년 연속 인구 감소로 176만명의 수준, 지방소멸의 가속화 추세
- 인구감소와 상대적 외국인수의 부족은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활성화 요구
- 기존 지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으로 공존과 협력의 목표로 지역활성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화 모색

❍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을 선도하는 전라북도는 아래의 내용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세계화와 이주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이주경향과 이민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
-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함께 유학생과 영주 자격자 등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구성이 다변화 됨
- 전라북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핵심특례로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특례 발굴과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있어 지방권한의 강화는 지역의 외국인 유입과 정주화의 기초 완성
- 유입된 외국인과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및 문화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지역으로 변화하는 전라북도를 모색

나. 중앙 정책 목표별 외국인 정책 추진 전략

❍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로 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본 비전은 전라북도 제4차 종합계획의 핵심가치이며 목표가 되는 '균형-안전-복지' 도민의 행복한 삶터를 바탕으로 경제, 안전, 지역통합, 인권, 협력이라는 광의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 본 광의의 목표는 중앙정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정리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 지역민과 이주민의 삶의 터인 전라북도의 공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통합으로 변화시키고 5개의 광의의 목표 하에 설정된 구체적인 5개의 정책목표이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 둘째, 지역사회 안전을 고려한 체류질서 정비
- 셋째,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과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 넷째,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 다섯째, 글로컬 지역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국가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특히 본 계획은 외국인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은 지역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도 정책을 시행하도록 기획됨

○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근거하며 전라북도라는 공간에 유입되어 살아가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방안, 지역주민으로 존중받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 지역경제의 산업성장 동력으로 기여하는 제도적 정비, 그리고 지역민과 외국인이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교류하는 방식 등이 종합계획에 담아내도록 설계함

○ 이와 함께 5대 광의 목표 하에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표에 따른 중점과제의 영역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세부영역의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함

○ 최종적으로 5대 정책 목표, 14개 추진전략, 70여 개의 세부 과제 제시

1) [경제] :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화 이민자 유입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문 우수 인재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외국인 동반 가족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전북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 역량강화와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지역 산업 특성 기반의 외국인력 유입-정주화 연계 구축 및 외국인 친화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전북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잠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자녀 등) 대상 적극적인 유치전략 추진

2) [안전] : 지역사회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 지원

○ (지역사회 외국인 수요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전북지역 기반의 외국인행정과 외국인의 체계적인 체류관리 설계 및 지역별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에 기반한 유입전략 추진, 외국인 유입 다변화에 따른 체류자격별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운영

○ (지역의 불법체류 억제방안 마련) 외국인 유입 증가로 도내 불법체류외국인 증가 및 불법체류로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민-고용주-행정기관 대상 다양한 사업 추진

3) [지역통합]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지역사회에 다양한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지역민과 외국인간의 상호이해와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민간 실행 단위에서 적극 추진

❍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지원) 도내로 유입된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및 동반가족 등)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북 도내에 장기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형별 정주화 지원 정책 추진

❍ (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90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자 대상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적응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및 외국인을 '전북인'화로 위치를 변화시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제공

4) [인권] :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 강화

❍ (외국인 인권 증진과 인권 교육 체계 마련) 내외국인 평등에 기초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함께 차별 해소,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입 모델 추진

❍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노동과 생활의 현장에서 부당한 차별 및 권리침해(노동문제, 진료문제, 작업현장에서의 부당대우 등)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지원 미련

5) [협력/인프라] :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추진체계 구축) 전북 도내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 증가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지원 정책들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전북지역 내 외국인 정책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지역데이터 구축에 기반 한 외국인 지원 서비스 추진) 전북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지역데이터 구비를 위해 전북 지역차원의 행정통계 마련을 위한 외국인 체류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제도화 및 정례화 추진

다.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주요 추진체계

○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유형과 체류자격이 다양한 만큼 기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의 외국인 정책을 전담·체계화 및 특화된 추진체계 필요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추진체계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국적의 동포, 계절근로자 등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외국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외국인 정책지원은 대부분 부처별로 일시적·분열적·파편적으로 시행. 한편, 전북도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유형과 체류자격별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개편 필요
- 외국인 정책은 특성상 관련 분야 및 영역이 많고 다양하며,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부서별 개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외국인 정책 실행 및 추진 시 중요한 요인은 외국인 유입·유치에서부터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장기 정착·정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지속성·연계성·지역간 협력성 높은 추진체계 마련 필요.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거점별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들을 지정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 지원 필요

- 전북도와 14개 시·군간 연계되고 외국인 유형별 및 체류자격별 다양한 외국인 맞춤의 지원서비스를 조정·연계·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 및 부서간·시군간 협력·소통이 용이한 구조적 기반 마련 필요
- 지역별·외국인 유형과 체류자격별 전반을 다뤄줄 수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로의 재구조화 필요
- 부서간 역할·업무·예산 중복서비스 예방 기능 필요, 조직간 협력 및 조정·연계 역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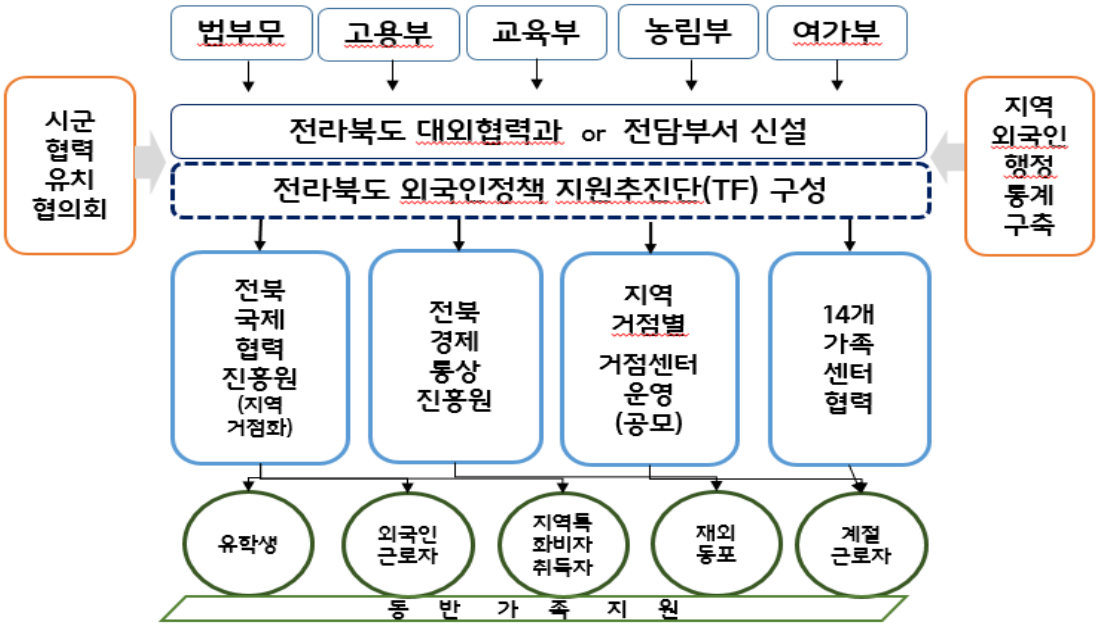

[그림 5-3]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안)

○ 중앙부처별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인프라 공모사업들을 취합해 보면, 크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소규모),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행안부의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이 있음. 그 외 7개 부처가 통합 공모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 있음

○ 이를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들과 연계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2] 중앙부처별 외국인 관련 공모사업과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 과제간 연계 현황

세부과제	중앙부처 사업	
	부처명	사업명
1-2-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거점) 설립 및 운영	고용노동부	(現)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거점 9개, 소지역 45곳
1-2-2. 동포체류지원센터	법무부	(現) 11곳(경주, 광주광역시, 안산, 대전 유성구, 서울 영등포구·구로구·서초구, 당진)
1-4-11. 재외동포 및 이주자 특화형 지역활력 타운 조성	7개 부처 통합 공모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 7개 정부부처 합동) - 행안부, 문체부, 농축식품부, 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2-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행안부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국비 총 28억원 지원
4-1-2. 외국인 정착 환경개선 추진		

비전	지역민과 이민자의 공존·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라북도				
목표	경제	체류지원	지역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분야 목표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지역사회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 지원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한 지역통합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추진 전략	①특별자치도 성장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 ②**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④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①지역사회의 **외국인수요를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②지역 **불법체류의 억제 방안** 마련	①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교류 증진** ②**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 지원** ③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①외국인 **인권 보호와 인권 교육 체계** 마련 ②외국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①**지역기반 외국인 지원 체계 구축** ②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 ③**지역데이터 구축 기반** 외국인 지원서비스 추진
추진 과제	해외인재유치 전담센터 지정운영 해외인재 유치 박람회 개최 전북 해외장학생 제도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전북 광역비자거점센터 운영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협의체 조성	지역민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문화소통프로그램의 확대	외국인쉼터 조성 외국인 정착환경개선(행안부) 공무원 외국인인식개선 사업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설립·운영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건립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기구 유치	체류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고용주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동포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 정기적 인권교육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시군협력 유치협의회 운영 이민자지원서비스 센터
	전문인력 농업비자 운영 특례 부여 글로벌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확대 및 지역특화형 특례 운영 농어업·문화체험 분야 청소년외국인재 연수제도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공유기숙사 설립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다솜학교 설치·운영	외국인현장상담소 확대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중심 인권거버넌스 운영	지역외국인 행정통계 구축과 활용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제도 구축
	워킹홀리데이 연계 유학생 유치 뿌리·보건의료 산업 양성 대학 재외동포(고려인·조선족 등) 동포마을 조성 재외동포/이민자 특화형지역활력타운조성 재외동포 주민정착지원사업				

[그림 5-4]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기본 방향

[표 5-3] 유학생·재외동포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단계별(유치-취업·근로-사후관리-정착-사회통합) 지원체계 강화 사업

구분	유치·유입단계	대학 적응·관리 단계	취업단계	정착단계	사회통합단계
외국인 유학생	ㅇ 해외인재 유치전담센터 운영 ㅇ 해외인재 유치박람회 개최 ㅇ 전북 해외유학생 장학생제도 ㅇ 워킹홀리데이 연계 유학생 유치 ㅇ(기존)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 ㅇ(기존)대학외국인유학생지원사업 확대	ㅇ 대학 유학생 질적 관리·성과체계 및 비자발급 규정 정비 ㅇ 유학생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ㅇ 외국인유학생 토픽응시료 지원(시범, 전문대 중심) ㅇ 외국인유학생(어학연수생) 의료비 지원사업	ㅇ 뿌리산업 · 보건의료산업 양성 대학 확대 ㅇ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개최 ㅇ 외국인유학생 취업종합지원센터 ㅇ 외국인유학생 인턴십프로그램 ㅇ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지원을 위한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기간제 인력 인건비지원(공모방식)		
구분	**유치·유입단계**	**취업단계**	**정착단계**	**사회통합단계**	**기타**
재외동포	ㅇ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 - 재외동포 단체, 협회 대상 - 전국 지역별 희망자 모집 등 ㅇ(전북도·김제) 토론회, 공론화 등 ㅇ관계 기관·단체 업무 협약 ㅇ전북도/김제시 재외동포 업무 전담인력 지정	ㅇ 지역 구인기업(분야)·구인규모 수요 기반 일자리 연계·매칭 지원 - 면접지원, 행정서류지원, 통번역지원 등 ㅇ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 장기거주지 마련 지원	ㅇ전북이주민통합센터(김제, 2023. 6) 지원 - 행정지원(통번역, 출입국 민원, 상담) - 생활지원, 한국어, 커뮤니티 형성 등 - 기초 의료지원(건강검진 등) ㅇ지역 조기정착 지원금 지원 ㅇ동반가족 지원체계 구축 - 보육료 전액지원 - 초·중·고 특별학급 편성 운영 - 다솜 학교 설립 운영	ㅇ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체험 등 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속 운영 ㅇ 이민자정착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 - 은행업무, 장보기,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필요 정보 제공 및 지원	※ 전북 재외동포 유치·정착 방안연구 - 생활실태, 근로수요 등 중국/고려인 동포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이주·정착 사업 종합 로드맵 수립 등
사업	**유치·유입단계**	**추진체계 기반 강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후관리**	**정착단계**
지역 특화형 비자	ㅇ도내 대학별 취업박람회 ㅇ시군별 기업 설명회 ㅇ재외동포 연합회 찾아가는 설명회	ㅇ 전북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 ㅇ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행정사 지정 및 안내 ㅇ (대학국제교류센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전담인력 시간제 인건비 지원 ㅇ 비자발급 보조 지원해줄 수 있는 전북도 공무원 한시 파견	ㅇ 전북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지원 ㅇ 지역별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ㅇ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ㅇ 외국인 직업 훈련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 F2R비자 취득자 사업장 및 거주지역 등 실태파악 ㅇ 광역비자 거점센터 운영 ㅇ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효과성 및 성과 진단 시스템 마련	ㅇ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정착 지원금 지원 ㅇ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전북 희망채움 공제사업 ㅇ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ㅇ 다솜학교 설치·운영

제6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

1. 경제 분야
2. 체류지원 분야
3. 지역통합 분야
4. 인권 분야
5. 협력과 인프라 분야
6. 세부과제 목록(단·중·장기 구분 및 핵심과제)

제6장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과제

1.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경제 분야

가. 전북종합계획 정책목표 :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 추진전략 1. 전북특별자치도 성장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 추진해야 함

❍ 외국인력 정책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중에서 비전문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92% (58만 명 중 53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 유치 대상인 전문인력 우수인재는 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음[6)]

- 전북특별자치도 주력 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RIS 등 해외우수 인재 유치 추진
  - 주력산업(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유망산업(이차전지, 방위산업), RIS 분야 등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산업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를 통해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연구 기반 확대
- 해외 국가의 경우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책 기반 확충
  -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 완화하고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전공 분야 확대
  - (중국)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및 창업자 등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추진하면서 '19년부터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전략 글로벌 인재 및 청년 과학자 등 유치를 위해 국가역량 집중. 「해외인재비자제도」를 도입하여 노벨상 수상자 및 세계 일류 대학 교수, 학위취득자 등을 유치
  - (일본) '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을 통해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하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제4차 외국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p.292

[표 6-1]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정책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정책명 (실시시기)	STEM program	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 (2004년 8월)	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2013년 12월)	해외 인재의 유입 활성화 (2021년 2월)
핵심 대상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미국 학위 취득 외국인	·A급 : 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인력, 국제 기업가, 전문 특수 인재 ·B급 : 중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취득 우수 졸업생 등	·일본 공공·사설기관과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고도 학술연구활동·전문기술활동·경영 관리활동 관련 인사	·국내 핵심인력이 부족한 신산업분야 해외 우수 인재 ※ 2021년부터 실태조사 중
영주권 취득 체류기준	·해당 없음 ·단, 학위 취득 후 기업연수 프로그램(OPT)을 신청시 29개월 체류 허용	·3년 이상 근무(실거주 1년 이상)시 영주권 신청 가능	·고도인재포인트 70점 이상 취득시 3년, 80점이 넘는 우수인재는 1년 (2017년)	·3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고 전문직종 근무한 경우
정주 여건 개선	·해당 없음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	·배우자 취업, 일정요건하에 부모 동행 허가, 가사도우미 허가 등 지원	·없음 ※배우자 및 자녀 취업 허용 확대 등 검토단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2). 주요국의 외국 전문 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재인용

○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제안한 세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 해외 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 해외 인재 유치 박람회 개최
- 복수국적제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 전북 초청 해외 장학생 제도
- 전북 해외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표 6-2]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 관련 세부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	추진부서	비고
[1]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1)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1-1-1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인재 유치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대외협력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1-2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인재 유치 박람회” 개최	대외협력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1-3 복수국적제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1-4 전북 해외초청 장학생제도	교육협력추진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1-5 전북 해외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교육협력추진단	

1-1 (추진전략1) 전북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인재 유치

1-1-1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해외 여러 국가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북 도내의 주요 산업별 수요 조사를 토대로 우수인재 규모를 설정하고 해외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센터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함

○ 해외 인재 유치 전담 센터를 통해 전북 도내 기업 및 대학, 산업현장 등과 연계 협력을 구축하여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인재 유치 추진, 채용절차, 비자 정보 제공 및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정보 안내와 정착 지원 컨설팅을 전담할 필요 있음

○ 해외 인재 유치 전담센터의 운영 및 지정 방식은 민간위탁이나 도내 출연기관 등을 선정 혹은 지정하는 방식으로 검토 필요

- 민간위탁은 해외인재 유치 경험 및 정보 등이 구축 되어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인재 유치 전문성을 발휘하여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업 연계 등이 용이할 수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외 인재 유치의 노하우 축적에 대한 지속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지정방식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또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민간 단체, 도내 출연기관 등

○ 사업 기간 : 2024년 ~ 2027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국제협력진흥원), 교육협력추진단
- (시행방법) 전북 도내 민간단체 위탁 혹은 도내 출연기관 선정 및 지적
- (추진절차) 민간위탁 및 출연기관 선정 후 전담센터가 전반적으로 운영

1-1-2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인재 유치박람회” 개최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해외 국가별 우수 인재 유치하기 위해 도내 기업,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재 채용 여건 및 생활, 문화 정보, 정주 여건 등을 홍보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추진

❍ 자매결연 도시 및 해외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박람회 개최

❍ 해외 인재 유치박람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행사와 문화체험관, 문화상품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상품 전시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및 산업에 대한 홍보 전시관 동시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 1호 인재 스카우터)의 외국인 해외인재 유치 위해 현지 특강 진행

1-1-3	복수국적제도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및 정착 지원 정책 추진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②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③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④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⑤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 기술분야 근무자 ⑦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⑧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⑨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⑩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절차

신청 및 접수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귀화 면접심사 ➡ 귀화·국적회복 허가 ➡ 국적증서 수여 ➡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1-1-4	전북 해외초청 장학생제도(J-GKS: Jeonbuk Global Korea Scholarship)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학사, 석·박사급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전북형 초청 장학생 제도 운영.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기회 제공

○ 모집과정은 학사, 석·박사과정, 연구 과정, 인턴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운영과정은 정부의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운영하되, 인턴 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특화형 추진

○ 장학금은 항공료, 정착지원금, 생활비, 등록금, 연구비, 한국어연수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하여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 해외 인재 초청 장학생 제도 운영

○ 사업대상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사업 기간 : 2024년 ~ 2027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교육협력추진단
- (시행방법)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추진

1-1-5	전북 해외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지속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전북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산업 등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수 해외 과학자 및 연구자를 유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연구경쟁력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전라북도의 연구개발비는 ’21년 1조 4,112억 원(‘20년 1조 2,361억 원)으로 전국 11위 수준
- 지역별 연구개발비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 충남(3조 6,330억 원), 경남(3조 4,080억 원), 경북(2조 7,751억 원), 충북(2조 1,307억 원), 부산(1조 7,627억 원) 순(과학기술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혁신 연구기관(총 56개), 대학 및 부설 연구기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추진

[표 6-3] 전라북도 혁신기관 해외우수 연구자 추진 절차

도내 혁신연구기관 등 간담회 및 수요조사		해외우수과학자 발굴		사업 신청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정책 간담회 및 수요 조사	➡	관련 분야 해외우수과학자 발굴 및 과학자 우수성, 조건 등 기관 자체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연구계획 등 협의
전라북도		연구책임자/혁신연구기관		연구책임자/해외우수과학자

○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

- 관련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3항(교포 과학기술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활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조례 개정 :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개정,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3항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도지사는 교포·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연구기관의 유치·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 경비 등을 참고하여 전라북

도 예산을 통해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연구자유치지원비 및 체재비 항목 등에서 추가 반영하여 전라북도에 특성에 맞는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표 6-4] 정부의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지원내용

유형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유형1】 단기	6~12개월 ※ 산업체 : 3~12개월 지원 가능	해외 연구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 원/월~ 최대 25백만 원/월)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체재비)*, 항공료,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기타유치경비** 등	최대 1백만원/년	최대 8백만원/년(전담인력지원비 4백만원, 연구실안전관리비 포함)
【유형2】 장기	3년 ※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 : 3년 간 6~12개월 초청				

* 12개월 초과 유형2(정주형)의 경우, 체재비 최대 1,200만원/년 지원
** 기타유치경비 : 한국어 교육비,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비용, 비자발급 비용 등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추진전략 2. 이민자(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북 도내 외국인 수와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인 유치 및 유석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의 소수 지역으로 쏠리는 집중화 현상으로 부족한 인프라 자체도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임

❍ 이에 향후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등 이민자 체계적 유치 및 실천적인 육성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집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외국인 유치 기반 조성이 필요함. 전북 도내 외국인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설립 및 운영
-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 연수원" 건립(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기능 포함)
- 농업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FAO 세계 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 개발도상국 농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기구" 유치 추진
-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표 6-5]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세부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1]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이민자 유입과 체계화	2)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설립 및 운영	대외협력과 (관련업종부서)	고용부 공모사업
		1-2-2 재외동포 인재 유치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 연수원" 건립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기능 포함)	대외협력과	외교부 공모사업
		1-2-3 농업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FAO 세계 농업 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농업정책과	
		1-2-4 개발도상국 농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기구" 유치 추진	농업정책과	
		1-2-5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대외협력과	법무부

1-2 (추진전략2)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거점) 설립 및 운영 | 고용부 공모사업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집행)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 및 경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착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지원 필요
- 외국인의 취업 활동 및 도내 중소기업 및 농업 현장 사업주 등의 인력 활용 도모하기 위해 거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표 6-6]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대상
상 담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내방·방문·전화상담) ※ 임금 및 퇴직금, 사업장 변경, 출입국·체류, 산업재해, 인권침해 및 한국생활 적응, 근로조건 및 계약, 생활고충, 진로 상담 등
교 육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 한국어, 정보화(컴퓨터), 산업안전교육, 귀국준비교육 등
문화 행사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의 장 마련(명절행사, 한국문화 탐방 등)
정보 제공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 제공
기 타	무료 건강검진, 이·미용서비스 등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거점센터 9개소, 소지역센터(35개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거점센터가 없으며, 소지역센터 형태로 성요셉근로자의 집(익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 등 2개소가 있음

- 거점센터 현황 : 서울, 의정부, 김해, 창원, 인천, 대구, 천안, 광주, 양산

❍ 운영사례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조직 : 센터장, 운영팀(3명), EPS팀(9명), 중국팀(3명), 교육문화팀(2명)

1-2-2	재외동포 인재유치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건립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기능 포함)	외교부 공동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를 대상을 한 정책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우수 인재 유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외동포의 한국 정주 및 재외동포 후세대 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정주여건 지원, 취업 연계, 출입국 및 선거, 세무 지원, 지역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리더 역할 확대 등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은 당초 2010년에 재외동포재단이 48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단계에서 건립계획의 문제점 및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무산되었음

❍ 당시 전라북도는 2009년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건립 사업을 제안하였고, 전북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재외동포재단의 후보지 지역에서 배제되었음

[그림 6-1] 전라북도 재외동포 연수원 조감도

❍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 사업 확장 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의 체류 관련 제도 안내, 취업·주거 등 정착지원 등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기능을 포함한 재외동포 교육연수원 건립을 추진하여 재외동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거점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에 건립 추진

- 세계 재외동포 수는 약 732만명(7,325,143명, 2020년기준)으로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 4,813,622명, 재외국민 2,515,521명(재외동포청 홈페이지)으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 예정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19년(코로나19 前) 878,439명에서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종식으로 다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6-7] 연도별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외국국적동포(명)	841,308	878,665	878,439	811,211	778,670
전년대비(%)	8.5	4.4	-0.03	-7.7	-4.0

자료: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비는 재외동포(F-4) 61.4%(478,442명), 방문취업(H-2) 16.0%(124,691명), 영주(F-5) 14.6%(113,718명), 방문동거(F-1) 3.3%(25,871명) 순
- 거주지역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체류 현황을 보면 서울(138,563명), 경기(203,023명), 인천(32,214명) 등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3,512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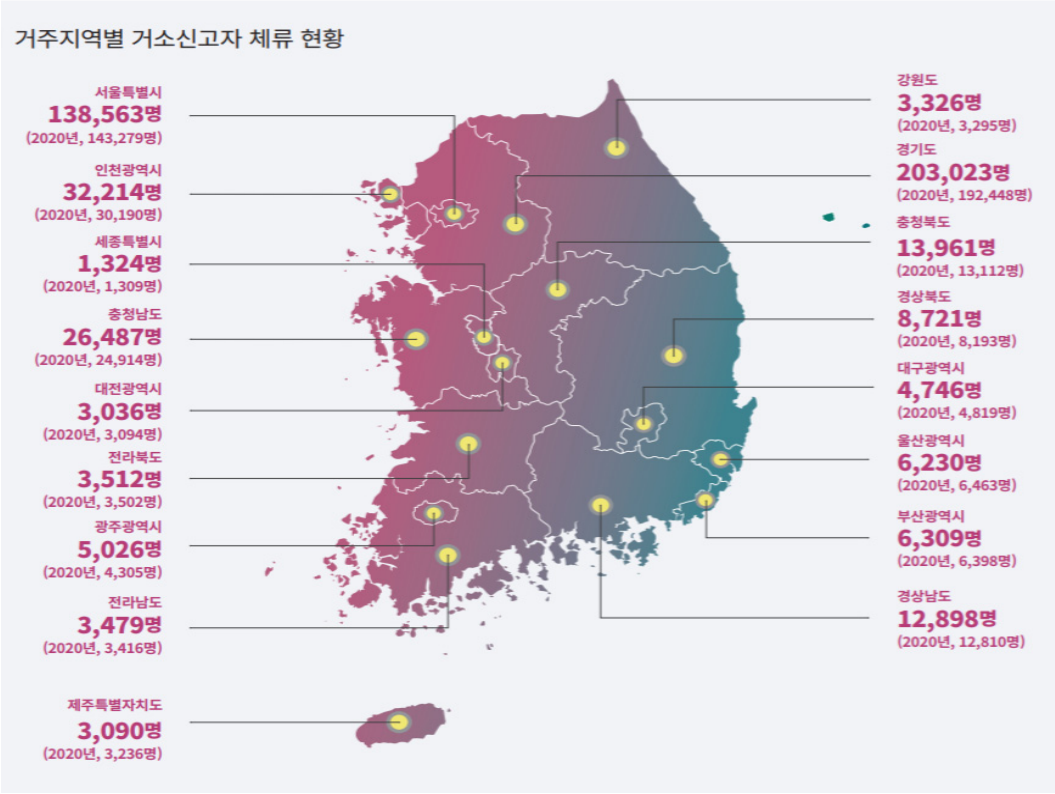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1-2-3	농업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안보(Food Security) 및 지속가능한 농업촉진(Sustainable Agriculture Promotion)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

- FAO는 개발도상국가의 식량위기 극복 및 코로나로 인한 식량안보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인력양성을 통한 농업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시
  -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위기 인구가 2019년 1억3,500만명에서 2020년말에 2억 6,500만명에 될 것으로 추정
- FAO는 2025년까지 국가별 농촌전문인력 수요가 약 84개국 1,509,664명으로 추정(FAO, 2011 'Extension Conference 자료)
  - '20년 FAO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년기준 세계농림수산업 종사 인구는 약 8억 8,400만명 추정(Statistical Yearbook: World Food and Agriculture)
  - (대륙별 농촌전문인력 수요추정) 아시아 13개국 110만 7,471명, 아프리카 43개국 31만 6,519명, 남아메리카 21개국 4만 7,560명, 중동 7개국 3만 8,114명

○ 최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가의 SDGs 지원 국가이며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의제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계획, 전북도는 대한민국 대표의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도시로 성장

  - 대한민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모범국으로 ODA 29개 회원 국가 중 지원예산이 15위, 한국 ODA 시그니처 사업 발굴하여 '한국형 ODA 브랜드' 정립 및 '교육분야 ODA 활성화 방안' 검토 중[7)]
  - (ODA 지원현황) '09년 8.2억불에서 '21년 28.6억불로 증가 약 3배 이상 증가, 윤석열 정부는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 계획

○ 전북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농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업교육 및 농업기술혁신 역량 보유하고 농업성장을 위한 농생명산업기반 확충, 대한민국 농업 수도로서의 新 패러다임 육성 추진 중

- (농업농촌 R&D 및 농업인력양성 기관 집중지역)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대규모 농업 및 농촌 관련 R&D 기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전북 소재 농업 관련 대학 등이 집적한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 UN 산하 대학 사례 및 KDI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세종글로벌리더센터 건립 추진

- UN산하 대학으로 IMO 세계해사대학, UN평화대학 등 운영

7)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2022.6.30

[표 6-8] IMO 대학과 UN 대학 사례

IMO 세계해사 대학	유치사례	ㅇ 1980년 스웨덴 정부에서 해사 관련 세계대학을 말뫼시에 설립 제안하여 1981년 11월 총회 승인
	유치목적	ㅇ 해사 분야 중견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국제해사 교육연구기관으로 해사 안전, 해상오염 방지, 해운산업 등의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한 해사 관련 국제 격차 해소
	운영	ㅇ 해사교육과 훈련, 해사법과 정책, 해사 안전과 환경행정, 선박과 항만관리 등 4개 전공별 석·박사과정(석사 100명, 박사 10명) 운영
UN 평화대학	유치사례	ㅇ 1978년 12월 제33차 UN총회에서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평화대학 설립 제안하여 1980년 총회에서 승인
	유치목적	ㅇ UN 세계평화대학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 촉진, 평화의 공존 정신 증진 목적으로 설립하여, 본부(코스타리카 산 호세)와 분원 3개(에티오피아, 필리핀, 네덜란드)를 운영하고, 8개 국가의 대학과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운영	ㅇ 환경과 개발, 국제법과 인권, 평화와 갈등 연구 등 3개 과정을 석·박사과정과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국제기구, 환경, 교육 및 인권 등에서 활동

-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종 글로벌 리더연수센터 건립 추진
  - 개발도상국 유학생 유치 및 교육 인프라 확충, 1인실 64실과 게스트룸 4실을 비롯해, 라운지·체력단련실·화상 회의실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구성

자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세종글로벌리더센터 건축설계 제안공모 질의답변서(2022)

[그림 6-2] KDI 세종글로벌리더센터 건축설계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 기반 및 혁신연구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해외 농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석·박사과정 운영하는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추진

- 예산 규모를 1,70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건립단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 총 2,128억원, 전북 1,360억원, 운영단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전북 매년 607억원, 전북 473억원으로 추정
- (유학생 지역소비 파급효과) 전국 매년 69억원, 전북 50억원 (유학생 귀국 후 농업수출 증가효과) 2,033억원으로 추정됨
- 세계농업대학 유치 시 전북은 세계적인 농업 우수 인재 유치, 세계농업수도로 성장, 글로벌 브랜드 제고, 전북농식품생산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세계적인 농업이슈 선도 지역으로 부상 가능성

-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은 ODA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한민국의 ODA 예산은 '19년 3.2조원에서 '23년 4조 5,450억원으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음. ODA 예산은 개도국의 개발수요 대응 및 SDGs 이행지원을 위해 개발 재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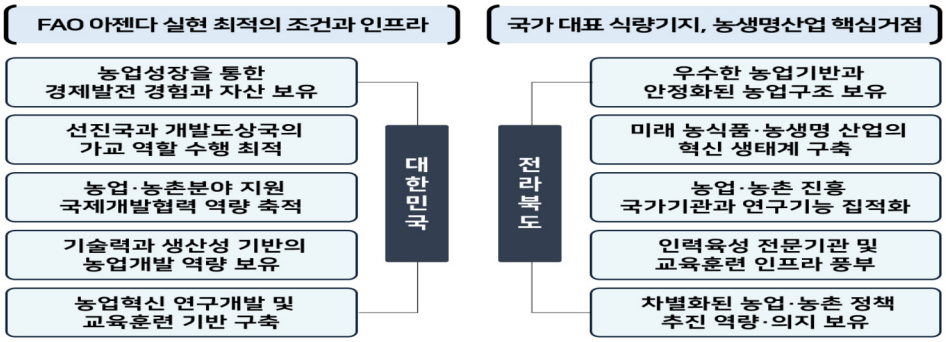

[그림 6-3] 세계농업대학의 대한민국 유치와 전북 입지의 종합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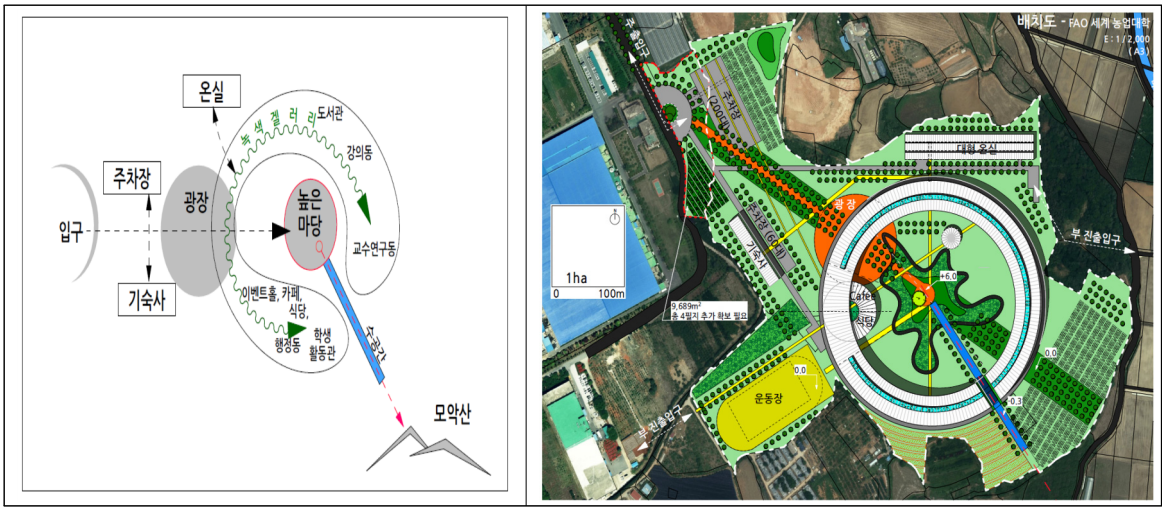

[그림 6-4] 세계농업대학 배치구상도(안)

1-2-4	개발도상국 농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기구" 유치 추진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인프라 및 정책기반 등과 연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농업개발 계획 및 기술 지원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 전북에 유치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국제농업개발기금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와 한국사무소를 전북지역에 **설립 추진**

-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기구인 FAO 및 WFP(세계식량계획)는 각각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방콕) 및 한국사업소(서울)에 있으나 IFAD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및 한국사무소 없음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 설립 : 1977.12.11. 세계식량회의(WFC) 의 결의(1974년)에 의거 창립
2) 사무국 소재 : 로마
3) 회원국 : 177개 회원국, IFAD 회원국은 3그룹으로 구분
- (List A) OECD 28개국 (분담금 의무부담국)
- (List B) OPEC 12개국 (분담금 의무부담국)
- (List C) 개발도상국 137개국 (분담금 자발부담국)
  - List C를 지역별로 C1(아프리카 50개국), C2(아시아·유럽 55개), C3(중남미 32개국), 미지정국으로 구분, 우리나라는 List C2 그룹 소속
4) 기능 및 임무
- 개도국의 농업개발 계획에 대한 재정 지원 : 농업개발 재원 대출, 기술지원 보조프로그램 지원 등
5) 조 직
- 총 회(Governing Council)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연 1회 정기회의(통상 1-2월)와 특별회의를 개최
-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 총회 상정안건 심의 및 기금의 융자·보조사업 심의의결
  - 연 3회(통상 4, 9, 12월) 개최, 18개 정이사국 및 18개 교체이사국으로 구성 (이사국 임기 : 3년)
6)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78.1.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
- 한국은 정이사국(1987-89, 1995), 교체이사국(1981-83, 1995-96, 2004-05, 2008-09, 2014-17, 2018-20), 교체이사국 및 감사위원국(2000)수임
- 파견관 운용 : 1992년부터 농림부에서 1명 파견 근무(현재 윤동진 국장(P-5) 파견중)
- 대북한관계 : 잠업개발사업(1995년 승인), 축산 및 곡물개발사업(1997년 승인) 등 시행 중

1-2-5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전북도 법무부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추진(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현재 이민 관련 기록물관리는 각 체류사무소 문서고 보관 및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에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한계

○ 이민자와 관련된 정보를 산출하고 산출된 정보들을 관리하며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미래

이민행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들을 제언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필요

○ 이민기록정보원의 역할 및 기능

- 이민자 관련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이민자 DB 수집, 관리 및 활용
- 이민자 관리 정책의 중복 방지를 통한 업무효율화
- 이민정책의 수요예측 및 정책방안 마련

▌추진전략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지역 환경 특성, 산업구조에 따른 분야별·체류자격별 필요 외국 인력과 수요 규모,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에 유입된 외국 인력을 지역 사회에 정착·정주화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여 외국인친화 지역으로 성장·발전 필요

○ 전북 농촌지역 맞춤의 농업 우수 외국인력 유입 방안과 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숙련기능인력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숙련기능인력 유치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제안되는 세부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 전문인력 농업비자(Agriculture Visa) 운영 특례 부여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장기체류비자(E-7-4)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고용기업 할당 제한 비율 확대 특례
- 글로벌 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및 지역 특화형 특례 운영 (관련 사업 총 14개)
- 간병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쿼터제 확대, 준전문인력자격제도 비자 특례, 간병요인 관련 지역 대학 유학생 유치
- 전북 특화형 농어업 및 문화체류분야 청소년 외국인재 연수 제도 운영

[표 6-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세부 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1]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1-3-1 전문인력 농업비자(Agriculture Visa) 운영 특례 부여	대외협력과 (농업정책과)	
		1-3-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장기체류비자(E-7-4)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위한 이민자 유입과 체계화	외국인 정책 추진	1-3-3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고용기업 할당 제한 비율 확대 특례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1-3-4 글로벌 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농업정책과	
		1-3-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확대 및 지역특화형 특례 운영	대외협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① 지역특화형 비자 대학연계 유학생 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②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확충(전북경제통상진흥원)		
		③ 전북 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지역특화형비자, 유학생 취업, 근로자 지원)		
		④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행정사 지정' 및 안내		
		⑤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시간제인력 인건비 지원 (공모방식)		
		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도 공무원 한시적 파견 근무 실시		
		⑦ 기숙사 보증금 무이자대출 및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운영		
		⑧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⑨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관련 사업장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⑩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 진단 시스템 마련		연구용역
		⑪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정착 지원금"지원 (정주화)		
		⑫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전북희망채움공제 사업		
		⑬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 확대 특례 및 지역 특화 쿼터 특례		
		⑭ 지역특화형비자 장기체류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로도 변경 신청 특례		
		1-3-6 간병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쿼터제 확대, 준전문인력자격제(E-7-2) 비자 특례, 간병요양 관련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대외협력과 (사회복지과)	
		1-3-7 전북특화형 농어업 및 문화체험 분야 청소년 외국인재 연수제도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1-3 (추진전략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 정책 추진

1-3-1 전북특별자치도 전문인력 농업비자(Agriculture Visa) 운영 특례 부여 |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지방소멸 지역 및 농촌지역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축산업, 양식업, 시설원예 등에 있어 특정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고용허가제도의 경우 장시간 동안 상시 고용을 기본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계절적인 단기적 수요만을 충족시키기에는 곤란하여 계절적 근로자 제도가 도입됨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E-8 비자를 도입하였으나,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회성 외국인근로자의 체류로 인해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님. 지방소멸 지역이거나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단기 이민자로 채우는 정책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성 모색에 한계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소멸 지역이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체류와 농업의 숙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업분야 인력문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농업비자 제도' 도입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추진

○ 지방소멸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성실 근로 시 영주, 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 농업비자 제도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외 지방정부 MOU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외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단순노무인력이 아닌 외국에서 영농경험이나 영농 관련 전공을 이수한 외국인을 농업 이민으로 수용하여 입국 후 일정한 영농교육 이수 및 영농사업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심사 평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하여 성실하게 농업 분야에서 근로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

- 호주는 농업비자(Agriculture Visa) 도입 검토하고 있음. 농업비자는 농업(육가공 포함), 수산업, 임업분야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숙련자뿐 아니라 반숙련자(semi-skilled) 및 미숙련자(unskilled)도 신청 가능하며, 동 비자로 입국한 외국 취업자에게 추후 영주권 부여하는 방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임

1-3-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장기체류비자(E-7-4)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현재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숙력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장기간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 산업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E-9(비전문취업) 추가고용허용 및 E-7(숙련인력) 쿼터 확대를 추진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시·군 지역의 확대 및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전반적인 인력난으로 위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특화산업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적용 확대하여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쿼터제를 적용하여 확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외국 인력이 기술숙련도, 한국어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장기 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자격으로 변경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의 신청 요건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 취업활동 계속하고 있는 외국인
  -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 중이며, 재직기업에서 30개월(901일) 이상 근무한 자
  -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자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 숙련 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3-3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고용기업 할당 제한 비율 확대 특례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를 통해 정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이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에 따라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5명까지 허용하고 있어 성실한 구성원의 E-9 (비전문취업)[8]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

- 건설업체는 공사대금 규모에 최대 5명, 농축어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표 6-10]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허용 인원

업종별	허 용 인 원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수)	10-49명 5-49명(뿌리)	50-140명 10-29명(뿌리)	150-299명 30-49명(뿌리)	300-499명 50-99명(뿌리)	500명이상 100명이상(뿌리)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억원미만	300-500억원 미만	500-700억원 미만	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9인 이하	10인-29인	30명이상	-	-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moj/187/subview.do)

8)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소멸 지역(시·군)이 50% 이상 인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전년대비 매출 증가 기업이나 광역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의 할당 제한 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 운용함으로써 성실 외국근로자가 불필요한 이직을 하지 않고 정주가 가능하도록 유도

- (대상) 지방소멸 시군 지역이 50%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운영
- (선정기준) 전년대비 매출 증가 기업,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기준 적용
- (특례 사항)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업종별 규모 및 허용 인원의 특례

1-3-4	해외우수인재 및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유치 위한 “글로벌 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이민자, 해외우수인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참여하여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정보, 기술, 교육 및 훈련, 네트워킹 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인재 양성 추진하고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취업 연계하여 정착화 지원

○ 농생명식품을 중심으로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산학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해외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산학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산학공동 R&D 지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0.19.)

[그림 6-5] 산학융합특구 내용

○ **(숙련기능인력(E-7-4) 연간쿼터 확대 및 농생명 분야 별도 쿼터 특례)** 농생명식품을 중심으로 한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 숙련인력의 발굴 및 활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하고, 산학융합지구에 장기체류 및 가족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제 적용 및 농생명식품 분야별로 쿼터 신설

- (E-7-4) 비전문인력(E-9비자)이 국내 장기간 취업 시 E-7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비자 프로그램 운영)** 농생명식품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채용을 위해 외국의 고졸이상의 연수생 또는 4년제 이상 졸업이 국내 및 도내 교육기관에서 농생명식품 관련 기능 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

- 외국인 연수제도(D-4-6)는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최대 2년)로 한국인과 혼인할 경우 F-6(결혼이민)비자, 대학교 진학시 D-2(유학)비자, 취업 확정시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 E-7 비자 취득후 F-2(거주), F-5(영주), 국적신청 등이 가능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 사업주체 : 산업부, 지자체(전북도, 익산시), 대학, 기업 등
- 투자규모 : 355억원(국비 119, 도 82, 시군 70, 민자 84)
- 사업내용 : 캠퍼스관, 기업관, 스타트업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사무행정 공간 등

○ 추진상황 : '11년부터 총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 13개 지구 거점 조성 완료하여 27개 대학 63개 학과에서 학생 9,228명이 이전, 기업연구소 456개사 입주. 최근 5년간('17년~'21년) 산학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1,825명이 참여기업으로 취업하였음

- 6년간 총 120억원 국비 지원(거점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표 6-11]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

구분	산학융합지구	산단	이전 대학
조성 완료	경기	반월시화	산업기술대
	전북	군산	군산대, 전북대, 호원대, 군장대
	경북	구미	금오공대, 경운대, 영진전문대, 구미대
	전남대불	대불	목포대
	충북	오송	충북대, 청주대, 충북도립대
	충남당진	석문	호서대
	울산	울산테크노	울산대, 울산과기원, 울산과학대
	경남	창원	경상대, 경남대, 마산대
	부산	미음	한국해양대
	전남여수	여수	전남대
	인천	송도지식정보	인하대
	제주	제주첨단	제주대, 제주관광대
	전남나주	나주혁신	목포대, 전남도립대

조성 中	충북음성	진천.음성	청주대, 극동대
	강원 원주	문막	강릉원주대
	경북 경산	경산지식산업	대구카톨릭대
	광주	빛그린	전남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10.19.)

1-3-5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및 지역특화형 특례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인력을 연계·채용하여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 지역우수인재비자(F-2-R 비자),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1-R) 체류기간 최대 1년으로 2년씩 연장 가능

▪ 취업기간: 5년(시범기간 중 1년 비자발급, 요건 충족 시 향후 연장가능)
▪ 지원혜택: 실거주, 취업 전제 체류자격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실거주 등 조건 충족 시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출생자녀(F-1-R) 비자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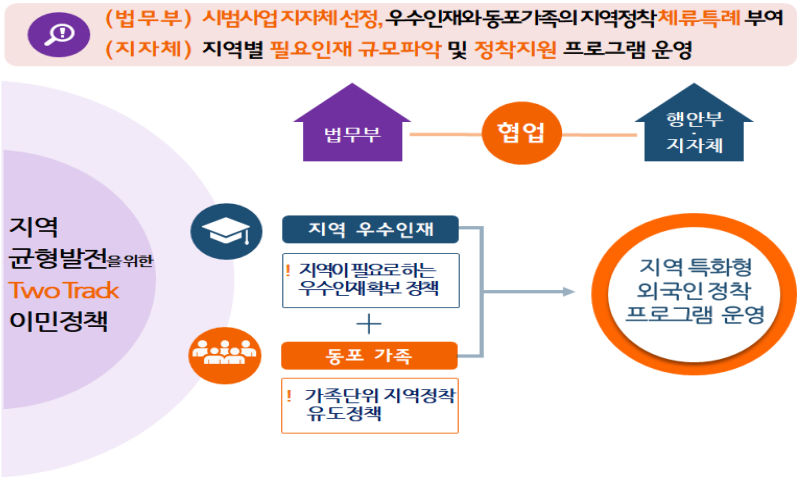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안내(22.7.25)

[그림 6-6]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안내 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및 취업, 창업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5년 기간 중 신청한 기초지방단체에서 최소 2년을 거주한 후 필요한 경우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의 유형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지역우수인재를 추천

▪ 유형 1: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
(5년 기간 중 2년 신청 지자체에 거주 그 이후 동일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및 근무처 변경 가능)
▪ 유형 2: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할 것으로 조건으로 허가
▪ 유형 3: 외국인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학령기 아동인 경우 인구감소 지역에 재학 필수)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유형 4: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 유형 5: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구 분	유형 ①	유형 ②	〈가족동반〉유형 ③	유형 ④	〈창업〉유형 ⑤
거주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14개 시군	14개 시군
취업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14개 시군	14개 시군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정읍,남원,김제 순창,고창,부안

❍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400명이 배정됨

- 전북지역에서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이 시범지역으로 비자쿼터의 경우 400명 배정되었고, 시군별 모집 수요 등에 따라 시군 쿼터 조정 가능

[표 6-12]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쿼터 현황

구분	계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쿼터(명)	400	61	33	160	20	61	65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23)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유치 · 취업/근로 · 사후관리 · 장기정착유도 지원체계 강화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체계 기반 강화,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형 비자(F2R) 취득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 더 나아가 전북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이 타 지역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북지역 내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이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 및 수행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 기반 강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사후관리 및 외국인력 장기 정착·정주 지원을 연계한 지원 필요

[표 6-13]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유치-취업·근로-사후관리-장기정착 지원체계 강화(안)

유치 및 추진체계 기반 강화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후관리	장기정착지원
ㅇ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확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ㅇ기숙사 보증금 무이자대출 및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 운영	ㅇ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 F2R비자 취득자 사업장 및 거주지역 등 실태파악	ㅇ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정착 지원금 지원
ㅇ 전북 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	ㅇ지역별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ㅇ 전북 광역비자 거점센터 운영	ㅇ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전북 희망 채움 공제사업
ㅇ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행정사 지정 및 안내	ㅇ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ㅇ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효과성과 성과 진단 시스템 마련	ㅇ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ㅇ (대학 국제교류센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전담인력 시간제 인건비 지원			ㅇ 다솜학교 설치 운영
ㅇ 비자발급을 보조 지원해줄 수 있는 전북도 공무원 한시 파견			

[유치 1] 지역특화형 비자 대학연계 유학생 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의 조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상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통한 체류자격 변경 지원하고, 사업 시행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도록 하고 있음

- (일정소득) 전년도 소득이 국내 1인당 GNI의 70% 이상 : 29,542,100원

❍ 지역특화형 비자의 취업 및 주거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연계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예산 지원

- (세부사업1)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한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지자체		취업 허용 업종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농업(01), 식료품 제조업(10), 음료 제조업(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세부사업2)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 대학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외국유학생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라북도 및 해당 시·군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성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 등 총 100시간)으로 구성

[표 6-14] 사회통합 교육과정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 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3.4.26.)

[추진체계 강화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확충_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추진 배경(필요성) 및 목적

○ 법무부가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를 한 이후 2022년 9월부터 전라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대외협력과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센터(現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취업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됨

○ 특히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現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취업팀)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서류 평가를 통해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주요 업무에서부터 추천서 발급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서류 접수와 다양한 민원 지원, 미취업된 외국인 대상 지역 사업체와의 일자리 매칭, 다양한 기관·단체 및 타 지역 외국인 대상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 직접 방문한 외국인 상담지원,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의 명단과 제출 서류들을 모아 도에 제출하는 등 업무가 다양하고 많지만, 관련 지원인력은 3명(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그 외 시·군과 대학 그리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발굴과 외국인과의 일자리 매칭 등의 중요

○ 업무와 더불어 F2R로 취업한 외국인·기업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도내 효과성 분석, 관련 데이터 관리 등등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센터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전담 인력의 추가 확충과 전담팀

까지 신설하여 앞으로 확대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지원·관리할 필요 있음

○ 게다가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담당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지역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現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취업팀)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기존 3명에서 최소 5명으로 추가 확보

○ 사업대상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現 민생일자리본부 일자리취업팀)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 책정 배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시행방법) 확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 사업비 지원
- (주요업무)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원(서류접수, 채용현황 실시간 제공, 외국인·기업 현장 점검 및 사후관리, 관련 데이터 관리, 전북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 등)
  - 지역 내 사업체 발굴 및 일자리 매칭
  - 대학 외국인 유학생 구직·취업 관련 다양한 사업 지원 등

[추진체계 강화 2] 전북 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지역특화형사업 + 유학생취업 + 근로자 지원)

○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등을 위해 김제, 전주 등 지역특화형 비자 통합 취업박람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 상담, 일자리 매칭 등이 추진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특히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 높았고, 전문대학교 차원에서도 향후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하기에 좋은 유인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음.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전문대학교는 졸업예정 유학생과 졸업 유학생 대상 적극 홍보하고 지역 내 일자리 매칭을 위해 대학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함

○ 한편, 대학 국제교류센터에서 본교 유학생 대상 취업을 위한 서류와 면접 준비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사업체의 채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채용현황에 대한 실시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사업체 면접을 위해 장시간 거리를 갔음에도 이미 채용이 완료된 기업체였다는 지난 정보로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

○ 이에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시 지역별 사업체의 채용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자료 업데이트가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 필요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전북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이란 포털사이트를 별도의 컨텐츠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있음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전북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별도 컨텐츠로 추가 구성
- 전북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1)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업무 전반 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신청 안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사업별 채용현황 실시간 공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진행 상황 공유 등

(2)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유학생 구인·구직 정보,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대상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취업상담·취업특강,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 진로정보, 취업관련 통합 정보제공 등

(3)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과 교육, 국가자격증 취득 안내 등

[그림 6-7]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사례

[추진체계 강화 3]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 행정사 지정' 및 안내

❑ 추진 배경(필요성) 및 목적

○ 법무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산업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유인하고 외국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더불어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이번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지역특화형 비자'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추천서 신청을 위한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에서부터 일자리 매칭 및 거주지 이전 관련 일까지 대행사(브로커)가 개입하여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대상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

○ 향후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게 되면 단순 서류 작성 및 사업체와의 일자리 매칭과 더불어 거주지 이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일들을 대행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전북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라북도 지역 차원에서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단순 서류 작성에서부터 일자리 매칭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등에 대한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대행사를 양성화시켜 대행 업무 각각에 대한 적정금액을 책정하고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 행정사 지정 및 안내

○ 사업대상 : **전북지역 소재 행정사**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도내 소재 행정사
- (추진절차)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업무(단순 서류작업, 일자리 매칭, 주소지 이전 등) 대행해 줄 행정사 모집 및 전북도(대외협력과)와 업무협약 체결 → 협약 체결한 행정사와 전북도는 대행

업무별 적정 금액 산정·산정된 금액 정액제로 공고 → 전국 및 전북 도내 대학·사업체·경제통상진흥원 등에 협약 체결한 행정사 주요 안내 및 홍보 →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가 대행 업무가 있을 시 전북도와 협약한 행정사를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전적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 예방

[추진체계 강화 4]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유학생) 전담 지원을 위한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시간제인력 인건비 지원 (공모방식)

❑ 추진 배경(필요성) 및 목적

❍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국제교류(교육)센터 등의 부서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내부 인력이 최소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유학생의 유치와 어학연수 및 학사 관리 등 외국인 유학생 생활과 적응 전반에 대한 지원에 방점이 있어서 유학생의 취업 지원까지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제교류(교육)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역부족한 상황임.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전북 도내 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대학 내 국제교류(교육)센터가 개별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인력이 소수 정예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부재하거나 다중업무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관심과 수요가 높은 유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체계적이고 디테일한 지원을 해 주는데 한계가 큼

- 유학생 관련 업무는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법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관련 업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법무부의 법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강도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발생함.
- 또한 매년 지속 증가하는 유학생 인원과 규모를 담당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무엇보다 유학생들의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설명을 하거나 직접 데리고 다녀야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등이 많이 필요한 상황
-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각국의 나라마다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도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림

❍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1유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유형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접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내 국제교류(교육)센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만을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시간제 인력 인건비 지원 (공모 방식으로 선정)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 사업기간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기간 동안

○ 사업량 및 예산 : 도내 3개 대학의 국제교류(교육)센터 공모를 통해 선정. 시간제인력 인건비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 (추진절차)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1유형을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 센터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만을 전담하여 지원해주는 시간제 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공고문 공지
  - 시간제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학(국제교류센터) 신청 받고, 유학생(졸업생 포함) 관리를 잘 하고, 2023-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취업 성과가 높은 (전문)대학 중심 우선순위로 선정·지원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제1유형) 성과 높은 곳 : 정읍과학대, 군장대, 비전대 등

[추진체계 강화 5] 신속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위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도 공무원 한시적 파견 근무 실시

❑ 추진 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지역의 우수인재(외국인유학생)와 외국인근로자가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을 위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추천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확인과 서류평가 후 추천서 발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명단을 법무부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으로 발송·통보 함. 이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통보된 추천서 명단을 토대로 출입국 제출서류들을 보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심사를 통해 F-2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보통 도지사의 추천서 명단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되면, 추천서 발급

시부터 통상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후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기존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급증한 400쿼터의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이후 제출 서류 확인에서부터 심사를 통한 비자 발급을 신속하고 빠른 시일동안 처리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큼

○ 이에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심사 및 비자 발급을 위한 기존 담당인력에 추가 인력 보충이 요구되나 법무부 차원에서의 인원 보충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및 심사 그리고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 지원해 줄 필요 있음

○ 이를 통해 신속한 비자 발급 처리와 F2R 비자 신청자에 대한 비자 발급 현황, 비자신청과 허가 여부 및 비자발급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 등을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추천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비자 심사과정에서 불허된 인원 파악을 통해 재추천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 대응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도 공무원 한시적 파견 근무 추진

○ 사업대상 :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담당인력 중 1명 정도 관할출입국·외국인사업소로 일시적 파견 근무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시행방법)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체크, 필요 파견 인력과 기간 검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정기간 공무원(인력) 파견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1] 기숙사 보증금 무이자대출 및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운영

○ 전북 도내 대학교 관계자들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취업 희망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고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 매칭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토로함. 유학생들이 지역 산업체 내 다양한 일자리 중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선정할 때 작업환경 수준, 급여 수준 등도 고려하지만 기숙사의 위치와 기숙사 환경 전반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들 또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무 및 작업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기숙사 등 숙박에 대한 정주 요건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한편, 지역

특화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 순창)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사업체 소유의 기숙사 공간을 개선하여 제공하고 싶지만, 금전적 어려움과 지역 환경의 한계로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질적으로 환경이 우수한 기숙사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 특히 전북지역은 외국인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외국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1유형인 20대의 젊은 유학생 대상 사업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기숙사의 주거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함

○ 주로 사업체 인근지역이나 외부지역에 원룸 형식으로 된 기숙사를 찾아 기숙 공간을 마련하려 해 주려 해도 보증금 부담 비용이 커서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지자체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를 사업체에 고용 싱 외국인력 대상 기숙사 마련에 도움이 되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및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참고사항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 중 군 단위지역을 중심으로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는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 운영 방안 모색 필요

[1] 기숙사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력이 있는 지역 사업체 대상 기숙사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사업대상 : 비역특화형 비자사업 6개 해당 시군 중 군 단위 지역사업체 중심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6개 해당 시군(군 지역 중심), 지역 사업체
- (시행방법) 기숙사 지원을 위한 보증금 5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도비 50%, 시군비 50%)

(예) 정읍지역의 경우 전북도와 정읍시가 기숙사 지원 예산(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 매칭으로 정읍 지역 사업체 중 지역특화형 비자취득 신규 외국인력 대상 깨끗하고 부대 및 복지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정읍첨단 LH 행복주택아파트(신정동)' 기숙사 공간으로 지원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유입된 비전문직외국인근로자가 전북 지역에 장기 체류화되어 가족동반이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내 가족동반 정주화를 위해 사업체의 기숙사 마련 시 지자체에서 기숙사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2]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을 위해 대학 관계자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업체에 연락하고 기업체 직업현장과 기숙사 환경 등을 둘러보았을 때 기숙사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고, 20대 외국인 유학생들도 일자리 선정 시 기숙사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음

❍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활성화 및 전북지역으로의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기숙사 등의 정주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 이에 지자체와 다수기업 등이 연계하여 신규 외국인력들을 위한 공유 기숙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사례) <u>인천 송도의 레지던스 라이크홈</u> - 경제자유 구역 입주기업들의 임직원과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프로젝트 - 업주기업 임직원과 젊은 인재들에게 편안한 주거를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 - 안전하고 청결하며 편리한 기능	
	ㅇ 1인실과 2인실로 구성 ㅇ 1인실에는 1인용 가구세트가, 2인실에는 2인용 가구세트가 완비 ㅇ 개인 침구류와 물품만 가져오시면 됨

[그림 6-8] 공공형 공유 기숙사 건립·운영사례 _인천 송도의 라이크홈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2]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 전북 지역별 주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임.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증가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내 사업장들의 작업 환경과 거주 환경, 기업주와 동료들과의 관계,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기업주(사업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유입된 동반가족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북 도내 지역별 산업체와 기업체 내 다문화(외국인근로자)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다문화친화인증을 한 기업

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친화 인증기업이라 칭하고 전북도와 기초지자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전북도는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체 내에서 다문화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지표들을 선정하고 적정 선정수준에 부합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제를 수여할 필요 있음

○ 또한, 다문화친화기업 선정 시 모아진 다문화친화기업 우수사례들을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산업체와 사업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함. 다문화친화적인 우수사례들의 공유는 기업들의 다문화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상호간에 도움 및 발전 노하우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전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등을 갖춘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도 마련을 통해 선정된 다문화친화기업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다문화친화기업 적극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전북으로 찾아오는 외국인근로자 견인 및 외국인근로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단순 외국인근로자 유입에서 벗어나 전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에 초점을 두는 사업임

[F2R 사후관리 1]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관련 사업장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한 전북도지사의 추천서 대상자 선발이 완료되어 2023년 1월부터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취득한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등)이 산업체에서 취업활동과 거주생활을 시작함

○ 최근 2023년 6월 말까지 약 200여명 이상의 외국인(유학생, 근로자)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 지금부터는 전북 6개 시·군지역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기업체에서 취업활동과 정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에 대한 근로현장 점검과 정주여건 및 거주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북에 지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임

○ 전북 6개 시·군 사업체의 근로여건과 환경 파악, 기숙사 환경과 거주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해결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역 기업체(사업주)의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피드백과 애로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화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높은 성과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무엇보다 법무부(출입국관리소)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가 체류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에 체류기간 연장 시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업종에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는지, 허가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였는지, 지자체에 실거주하고 있는지(주소만 옮겨 두고 실거주지는 타 지역인 사례 등 적발) 등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의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 이후 지정된 지역과 업종에서 계속 취업/거주하고 있는지, 기업체 근로환경과 거주환경 및 정주여건 등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팀을 전라북도(지자체)와 법무부(출입국사무소)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6개월 단위)으로 구축·운영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사후관리TF팀 구성 운영

❍ 사업대상 :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 사업량 및 예산 : 2023년 하반기 예산 책정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시행방법)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사후관리 TFT팀 구성하여 6개월 단위 정기적 실태파악
- (추진절차)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사후관리 TF운영을 위한 핵심기관 의견수렴	➔	도-통상진흥원-출입국 사무소간 역할과 예산 수립	➔	6개 지역 산업체별 실태 및 점검·감독	➔	도-통상진흥원-출입국 사무소간 실태 관련 결과 공유 및 향후 사후관리 방안 논의
전북도(대외협력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제통상진흥원 예산 및 인력 충원		경제통산진흥원 사후관리팀 파견·조사 (8월, 9월, 10월)		전북도와 출입국사무소 추진

[F2R 사후관리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진단 위한 입증시스템 마련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년간('22.10.4 ~ '23.10.3)의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진단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전북 도내에 지역특화형 비자로 우수인재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유입되었고, 사업체의 인력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기업체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고, 생산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기의 활성화

정도, 지역 내 일자리 증감정도,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정도,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유입정도와 인구증감 정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마련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즉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6개 시군)을 실시한 지역의 인구·경제·고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원칙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종합적인 외국인 유입 체계 고도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효과성·성과 진단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사업대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한 6개 시군과 전북도

○ 추진체계 : 노동정책 전문 연구기관 대상 관련 주제의 용역과제로 입증시스템 마련 및 진단

[장기정착 지원 1]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 정착 지원금” 지원 (정주화)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정착 및 지역 사회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필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지역정착 유도에 한계

○ 따라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장기 취업 및 지역 조기 정착과 지속적인 정주를 위해 다양한 정착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전북도의 6개 시·군 이외 전북도 차원에서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들의 정착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착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사례)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정착 지원금 20만원씩 6개월 지급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장기 정착지원 사업 사례〉

ㅇ 부산(동구, 서구, 영동구) 외국인주민종합상담, 동행통역, 문서번역, 긴급지원(질병, 사망, 경제적 어려움 발생 시) 의료와 생활비 지원, 교육지원(한국어, 노동법, 안전, 건강, 운전면허 교실등),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ㅇ 충북(단양군, 제천시) 취업지원, 문화지원, 안전보험 제공
ㅇ 충남(보령시, 예산군)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 연계
ㅇ 전북(김제) 국적 취득자 정착지원금 1인당 100만원
(순창/분안)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세 일부 비용 지원
(순창) 기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2025년 준공)
ㅇ 전남(영암) 외국인 주민간 소통 공간 마련, 외국인 북카페 운영,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6개 시군의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대상 정착지원금 지원(예산 범위 내)
  - 초기 정착지원금 : 3개월 이상 근무 시, 정착지원금 월 30만원씩 5개월 지급(도비 및 시군비 매칭)
  - 중기 정착지원금 : 1년 이상 근무 시, 정착지원금 월 20만원씩 6개월 지급(도비 및 시군비 매칭)
  - 장기 정착지원금 : 2년 이상 근무 시, 정착지원금 월 15만원씩 12개월 지급(도비 및 시군비 매칭)

[장기정착 지원 2]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외국인 전북희망채움공제 사업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하는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공제부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상품을 조성하고자 함. 이 과정을 통해 외국인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의 정주화를 도모하고 이후 생활인구로 전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간주됨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채움 공제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정주화를 도모
-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자체-기업-외국인 근로자 간 공동 적립 상품을 조성하여, 외국인에게 전라북도에서 거주할 경우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사례) 내일 채움 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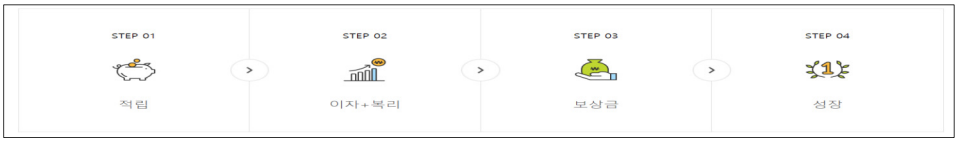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으로 전북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이 공제부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는 외국인 채움 공제사업

❍ 사업대상 :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 책정 배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시행방법) 내일채움공제 추진 절차를 참고로 시행
- (추진절차) 담당부서의 사업기획 이후 사업시행 공고를 통한 공모 절차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특례 운영

[특례운영 1]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 확대 특례 및 지역특화 쿼터 특례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인구감소 위험 지역임

○ 한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4개 지역의 경우, 익산시는 2022년 3월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는 등 4개 지역도 생산가능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업체 내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인력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 전역으로 특례로 확대하고 더불어 현행 400명으로 제한된 쿼터 특례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지역 내 산업체별 필요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위임 추진 필요

구분	기존 사업	→	특례 적용
해당 지역	6개 시·군	→	14개 시·군
쿼터 규모	400	→	400 이상

[특례운영 2]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역 대학에서 일정기간 교육 및 학습 등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을 지역 정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함

○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에서 최대 5년만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5년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하거나 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숙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역 정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에 포함하여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로 추진

-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특례 사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및 도내 타 지역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지역특화형(F-2-R)**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및 거주할 경우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음

1-3-6	간병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쿼터제 확대 준전문인력자격제(E-7-2) 비자 특례·간병요양 관련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및 1인가구 확대 등으로 인해 간병인력의 수급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간병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6%만 현장에 투입, 62%는 가족이 돌봄노동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30년 기준 약 111천명 정도의 요양보호사 부족(이민정책연구원, 2020)
- 현재 간병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등의 체류자격만 가능

○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요건(요양보호사)와 실무경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양질의 외국인력을 간병분야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는 간병분야 시설 중심으로 쿼터제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사업1: 시범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가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간병 분야 외국인 인력 도입 시범을 추진

○ **(사업2 : 간병인력 쿼터제 운영 및 준전문인력 비자 특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통해 간병분야 인력의 쿼터제 운영에 대한 특례 및 일정 기간 성실한 간병인력에게 장기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준전문인력 비자(E-7-2) 부여하여 지역정착 특례 운영

- 전북은 65세이상 인구가 410,619명으로 총인구 대비 23.2% 차지(행안부 보도자료, 2023.1.5.)

○ **(사업3: 지역대학 요양·간병 관련 대학 학과의 외국 유학생 유치)** 전북특별자치도의 간병 인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요양 및 간병 관련 학과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교육시킨 후 간병 인력으로 취업 연계하여 지역정착 추진

1-3-7	전북특화형 농어업 및 문화체험 분야 청소년 외국인재 연수제도 운영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생명수도 및 전통문화체험 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전라북도 선진 농업 및 어업 기술, 전통문화체험 및 전통문화기술, 한스타일(한옥, 한복, 한지, 한식) 등을 중심으로 해외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수제도 운영

○ 법무부는 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어업 및 문화체험·교육 기회 확대 및 잠재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K-컬쳐 비자 및 농어업 청소년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비자 검토

○ 전라북도의 농어업 및 문화체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전파하거나 도내에 잠재적인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외국인재 연수제도 운영

○ 도내 농업 관련 공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 농업 및 문화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외국 청소년 학생 초청 사업을 시범 운영, 도내 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한 연수 과정 운영

○ 전라북도 국제협력진흥원과 KOICA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라북도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그램 구성 및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 보험 등을 지원

▌ 추진전략 4.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 잠재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및 대학의 인재 확보 및 인재양성 추진 필요

❍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유치에서 구직·취업을 통한 지역 내 정착지원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산업체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유입과 취업 범위 확대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 유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제안되는 세부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음

최근 중앙정부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변화된 정책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학비자발급 시 재정능력심사 기준 완화
  - 학위과정 2천만원, 어학연수생 1천만원; 지방대학(학위과정 1천 6백만원, 어학연수 8백만원)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가능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자격 취득
-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의 다양화
  - 한국어능력시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을 통한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
  -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
- 유학생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활동 허용 및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동일 실습 기회 부여
- 재외동포 취업 범위를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에 단순노무직 및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

- 전북특별자치도 전문인력 농업비자(Agriculture Visa) 운영 특례 부여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장기체류비자(E-7-4)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고용기업 할당 제한 비율 확대 특례
- 글로벌 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및 지역 특화형 특례 운영
- 간병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쿼터제 확대, 준전문인력자격제도 비자 특례, 간병요인 관련 지역 대학 유학생 유치
- 전북 특화형 농어업 및 문화체류분야 청소년 외국인재 연수 제도 운영

[표 6-15]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세부 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1]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이민자 유입과 체계화	4)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1-4-1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교육협력추진단 (국제협력진흥원)	
		1-4-2 대학 유학생 질적 관리·성과체계 및 비자발급 규정 정비	대외협력과	
		1-4-3 외국인유학생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1-4-4 외국인유학생 토픽응시료 지원 사업(시범, 전문대 중심)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1-4-5 전북 외국인유학생(어학연수생) 의료비 지원 사업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1-4-6 외국인유학생 유치·양성 위한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교육협력추진단	
		1-4-7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대외협력과 (경제통상진흥원)	
		1-4-8 전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1-4-9 전북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 확대(기존)	교육협력추진단	
		1-4-10 재외동포 동포(고려인·조선족) 마을조성	대외협력과	김제 협력
		1-4-11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및 이민자 특화형지역활력타운 조성	대외협력과	김제 협력
		1-4-12 재외동포 정착지원 묶음 사업	대외협력과	김제 협력
		1-4-13 차세대 재외동포 전라북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 대학생 전라북도 연수)	교육협력추진단	

1-4 (추진전략4)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 (유학생) 전북 도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적응-취업-정착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

○ 전북지역 대학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유학생을 얼마나 더 많이 유치·유입할 수 있는가에 관심과 노력 및 예산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지역 대학으로 유치·유입한 외국인 유학생을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학교 학과 적응과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더 나아가 유학생의 진로·취업까지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할 수 방안을 전라북도와 함께 모색해야 함

○ 즉 전북지역 대학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국으로 되돌아가기는 것 보다 전북지역에 취업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 도내 지역 대학으로 유치·유입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전북지역의 문화·관광 등을 경험하며 전공과 연계한 직업에 취업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북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유학생 유치-관리·적응-취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표 6-16] 전북 외국인유학생 단계별(유치-관리·적응-취업-정착) 지원체계 강화사업

유치·유입 단계 ⇒	대학 적응·관리 단계 ⇒	취업 단계 ⇒	정착단계
ㅇ 해외인재 유치전담센터 지정·운영	ㅇ 대학 유학생 질적 관리·성과체계 및 비자발급 규정 정비	ㅇ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ㅇ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 정착 지원금 지원
ㅇ 해외인재 유치박람회 개최	ㅇ 유학생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ㅇ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개최	
ㅇ 전북 해외유학생 장학생 제도	ㅇ 외국인유학생 토픽 응시료 지원(시범, 전문대 중심)	ㅇ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전북 희망 채움 공제 사업
ㅇ 전북 해외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ㅇ 전북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의료비 지원 사업	ㅇ 전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ㅇ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한 유학생유치		ㅇ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 지원을 위한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기간제인력 인건비 지원(공모방식)	
ㅇ(기존)해외새만금 한글학당 운영확대			
ㅇ(기존)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확대			

1-4-1	(유치지원)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국제협력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학업 및 생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 확보 및 정주 이민자 확보 집중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학업 및 생활하는 유학생은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 정책대상으로 지역의 잠재적 인재로서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중요 대상임
- 유학생은 해외에서 바로 유입되는 이민자(외국인) 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하고 문화 체험 및 지역사회의 이해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의 적응도가 높은 만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확보 및 정주 이민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 청년(18세~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 어학연수, 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지역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호주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단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

1-4-2	(유치지원) **대학 유학생 질적 관리·성과체계 및 비자발급 규정 정비**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 도내로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를 위해서는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정책의 관점이 유치 중심에서 유치한 유학생 질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져야 함. 전북 도내 대학교를 통해 유학생의 유학 생활과 학위 취득으로 취업 활동까지 연계 된다면 지역사회 내 생활인구로의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도내 대학별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 질적 관리수준과 취업노력 정도 등을 성과 평가체계로 마련·검토하여 질적 관리·취업 노력 등 전반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외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유학생 비자 쿼터를 확대시켜 주고, 질적 관리·취업 노력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외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유학생 비자 쿼터를 축소시킬 필요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학별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자체적 프로그램, 전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유학생 복지지원, 취업지원 등의 노력도와 졸업예정자와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률,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률, 불법체류비율(이탈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율 등을 지표로 선정하여 대학별 유학생 질적 관리 검증 시스템을 통해 우수 대학은 도 차원의 예산 지원 사업과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쿼터의 양을 확대하여 비자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유학생 관리가 미흡한 대학은 추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유학생 비자 발급의 축소와 제한하는 등의 규정 정비

1-4-3	(관리·적응지원) 외국인유학생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지역 대학교에 유치·유입된 외국인유학생들은 학교 적응과 생활 적응 시 전북 도내에 있는 전통문화와 관광·예술 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으며, 이러한 관심과 호기심을 방학과 주말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여행과 체험을 하고 싶어함. 한편, 도내 유학생들은 대학교 적응과 생활 뿐만 아니라, 전북 도내에 있는 역사·관광·다양한 체험 등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개별적으로 전북 관광지 방문 및 다양한 체험에 한계가 큼

○ 이에 대학과 전라북도 차원에서 대학 학사관리 및 생활적응 우수자이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의 기본요건인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과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전북의 전통문화를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전북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계기를 심어줄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학생 대상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거주 외국인, 1인 1회 지원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200명 지원

- '22년 기준 전북 도내 대학 유학생 규모 7,781명, 이중 학사 4,100명. 학사과정의 약 5%에 해당하는 200명 지원 (※4년대 대학 학사과정 유학생 3,293명, 전문대학 학사과정 유학생 755명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문화관광과 등), 전북 도내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
- (시행방법) 전북도가 책정한 예산 안에서 도내 대학별 신청 유학생 대상 지원 사업
- (추진절차)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문화관광과 등)와 전북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원 공동추진
  - 매년 1회 전북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유학생 신청
  - 대학별 신청한 유학생 대상 조건 맞춤 평가 후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에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과 교통카드 지원
  - (기본조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의 기본요건이 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유학생이면서 학과 성적 B이상인자

1-4-4	(관리·적응지원) 외국인유학생 토픽 응시료 지원 사업(시범, 전문대 중심)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이번 처음 실시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내 대학 유학생들 또한 많은 관심과 비자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관심과 수요가 높았으나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신청서 자체를 제시하지 못한 사례들이 대학별로 많이 있었음. 또한, 전북 도내 대학별 외국에서 유입된 유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유학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 향상 및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취업 등을 고려할 때 한국어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됨

○ 이에 전북 도내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활성화와 유학생들의 한국생활적응 학교생활 적응 및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취업 준비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자격증은 유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됨. 이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신규 취득자에게 응시료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함. 우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성과가 높은 전문대 유학생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토픽 응시료 지원

○ 사업대상 : 전북지역 거주하면서 도내 대학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이면서 매년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유학생 중 3급 이상 신규 취득자

○ 지원횟수와 지원금 : 1인 1회 / 1년, 금 65,000원(응시료 55,000원 + 교통비 10,000원)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전북 도내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
- (시행방법) 전북도가 책정한 예산 안에서 도내 대학별 신청 유학생 대상 지원 사업
- (추진절차)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등)와 전북 도내 대학 국제교류(교육)원 공동 추진
  -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유학생들에게 받아 전라북도 담당부서에 제출
  - 전라북도 담당부서는 관련 자료 검토 후 해당 금액을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에 전달

1-4-5	(관리·적응지원) **전북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역 의료기관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 지원)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D2(대학생 비자)와 D4(어학연수생 비자)로 전북지역에 거주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입국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에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유학생으로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즉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아프거나 수술이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시 발생할 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음. 무엇보다 유학생들과 어학연수생의 많은 비율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입국 후 6개월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에 병이 발병하게 되면 병원비와 생활비 및 심리적 부담이 큼

○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유학생 중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대상 지역의료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입국한 지 6개월이 안 된 유학생(어학연수생) 대상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 입국한지 6개월이 안된 전북지역 거주 도내 대학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도내 지역별 의료 기관
- (시행방법) 전북도가 책정한 예산 안에서 협약 체결한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비 지원
- (추진절차)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등)와 협약 체결한 지역 의료기관 공동 추진
  - 전북도는 지역 의료기관들에게 유학생(어학연수생) 대상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시
  - 전북도와 희망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체결(약 10여개 과목, 50여개의 치료 항목 의료비 지원)

※ 안과, 치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의학 등

  - 협약 체결한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유학생(어학연수생) 대상 의료 진료
  - (지급방식 1안) 지역 의료기관은 진료 유학생(어학연수생) 진료비를 상·하반기에 결산하여 도에 청구 (지급방식 2안) 협약 체결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센터에 제출하고 진료비 계좌입금 받는 방법

1-4-6	(구직·취업지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양성 위한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전북도

[1]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인원 추가 허용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추진

- 뿌리산업은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인해 현장 및 외국인 인력수급이 어려워 생산활동 어려움 가중, 외국인력 수급 불확실성(입국지연 등) 공존 하고 있는 상황
  - 부족률('20) : 뿌리 2.0%(내국인 1.7%, 외국인 4.4%) 〉 제조업 0.9%(산업통상자원부, (2022))
  - 외국인 기능인력 유입현황(만명) : ('18) 54.8, ('19) 52.1, ('20) 40.9, ('21) 36.2
- 뿌리산업의 외국인 고용인원 추가 허용 및 현지 인력 수급 원활화 추진
  - E-9(비전문취업) : 뿌리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20% 추가 고용
  - E-7-4(숙련인력) : 뿌리기업 年 420명(E-9에서 전환 120명, 양성대학 졸업자 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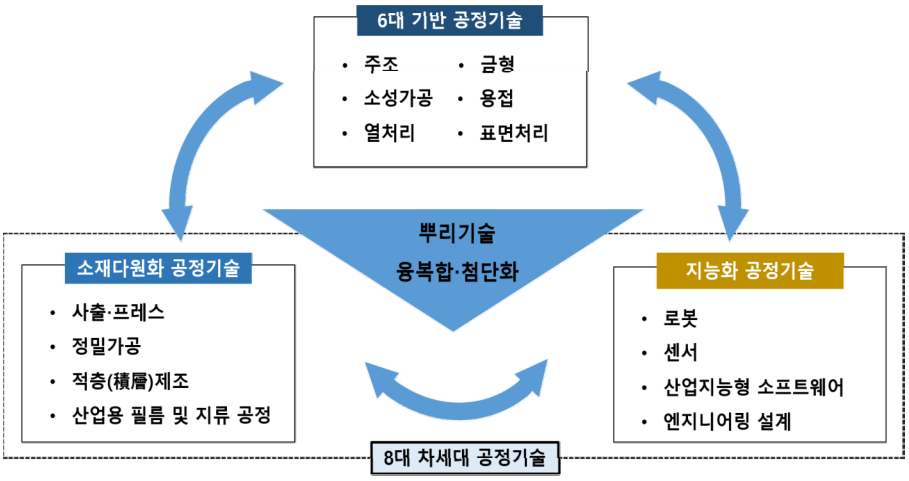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제3차 뿌리산업 진흥기본계획(2023-2027)

[그림 6-9] 뿌리산업의 정의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뿌리산업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뿌리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 양성대학을 확대 추진

- 외국인 숙련 기술인력(D2→E-7-4) 유입촉진과 현장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외국인 양성대학 지정 확대('23~) 및 현지교육 활성화(KOICA 사업연계)

- 외국인 양성대학(12개 대학으로 확대, 450명),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 입학요건(한국어 능력 검증기준) 완화

❍ 현재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은 9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전북 지역의 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표 6-17] 전국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현황

대학명	학과	소재지
거제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경남 거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3D융합설계학과, 건축소방안전학과	경기 시흥
계명문화대학교	기계과	대구 달서구
군장대학교	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신소재가공전공	전북 군산
아주자동차대학교	글로벌자동차전공	충남 보령
영남이공대학교	스마트융합기계계열	대구 남구
전주비전대학교	자동차과 소성가공금형반	전북 전주
서정대학교	글로벌산업공학과	경기 양주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광주 동구

자료: 국가뿌리진흥센터(23.2월기준)

❍ 정부는 뿌리산업 육성 및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을 위해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확대할 계획에 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북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양성대학을 확대 추진

1-4-7	(구직·취업지원)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경제통상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와 도내 지역 대학들이 주관이 되어 도내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박람회 개최 필요. 도내 지역 산업체별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에 대한 기초 파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업 100여 개 대상을 모집하여 유학생 채용 면접, 채용 설명회, 취업 특강 및 컨설팅, 유학생 체류 비자 상담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추진

❍ 전북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대학으로 학업을 위해 입학과 함께 향후 취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층 가깝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북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취업 환경 조성 필요. 더 나아가 전북 지역별 산업체는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외국인 유학생 채용 희망 사업체와 외국인 유학생(구직자)

- (구인처) 도내 지역별 기업체 100여개사, (구직자) 도내 외국인 유학생 500여명
- 채용분야는 유학생의 전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의 기업체 섭외 필요(서비스, 사무·회계, IT·디자인, 영업·마케팅, 강사·교육, 생산·기능 등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 도내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

• (시행방법)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 진행

- [기업채용관] 도내 기업 채용담당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1:1 직접 만남, 사전이력서 접수를 통해 현장 면접에서부터 인사담당자와 1:1 상담까지 지원
- [취업특강 및 기업채용 설명회] 외국인 유학생 채용 희망기업 채용정보 제공, 외국인 유학생 구직자 취업 노하우 공유 등 취업의 꿀팁 정보 제공
- [1:1 취업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국·영문 이력서 첨삭, 심리상담, 체류비자 상담(법무부 비자 담당자 상담) 등 다양한 컨설팅 제공
- [참가자 이멘트]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유학생 대상 경품 이벤트 제공

1-4-8	(구직·취업지원) **전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제협력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통해 전북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력 및 취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 있음

○ 이에 전북도 차원에서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유학생(학사와 대학원) 대상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 사회 이해 제고와 취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전북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학과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유학생

- 인턴기간 : 겨울방학과 여름 방학 기간 활용
- 모집인원 : 약 20여명
  - ㅇ 공공부문 : 전북도 본청, 14개 시·군 본청, 출연기관 및 재단, 사업소 등
  - ㅇ 민간부문 :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심의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 도내 대학별 국제교류(교육)원
- (시행방법)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관으로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자격요건) 전북 소재 대학교(학·석·박사과정) 재학 중이며, 학부생은 5학기부터 지원가능, 석·박사과정은 3학기부터 지원가능 (※ 휴학생 지원불가)
  - 유학비자(D-2), 소지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 6급 소지자(유효기간 2년 내)
  - 학업성적 우수자
  - 시간제 취업 허가서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최종합격 후 시간제 취업 허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발급받아 제출)
- (추진절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관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참가 희망자 접수 → 자격요건 적합자 선발(서류와 면접심사 실시) → 최종 합격자 기관에 인턴으로 파견

1-4-9	(구직·취업지원) 전북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 확대(기존)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전문대 포함)이 해외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별 외국인유학생 유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향후 도내 지역 대학별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따른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양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도내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시 전북도 차원에서 기존의 지원 사업보다 확대하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 사업대상 : 전북 도내 대학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과 대학 매칭 배정

- 도비 200,000천원 → 도비 300,000천원 확대
- (기존) 10개 대학선정, 대학별 유치지원비 100,000천원 지원
- (확대) 10개 대학선정, 대학별 유치지원비 150,000천원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 전북 도내 대학
- (시행방법) 자율 사업 공모

1-4-10	재외동포 동포(고려인·조선족) 마을 조성(김제시 중심)	전북도 김제시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고려인의 국내 체류 및 정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고려인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인 고려인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방문동거 배우자 및 자녀(F-1) 등으로 통해 체류가 가능

-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민족 동포로서 1860년대에서 1945년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자를 의미함
- 고려인의 범위는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이주한 이와 그 친족을 의미
- 고려인 마을은 전국에 18개 지역에 조성되어 있음

○ 외국 국적 동포인 고려인의 거주 및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적인 고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지원센터 등을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중 고려인 현황은 '21년 기준 총 53,684명으로 경기도가 20,212명, 충남 8,027명, 인천 5,802명, 충북 4,371명, 경북 3,052명, 경남 3,895명, 광주 2,849명의 순으로 체류하고 있음

- 지자체 고려인 지원센터 : 안산(고려인 문화센터), 광주(고려인 종합지원센터), 인천(고려인지원센터), 충남(재외동포지원센터)
- 지자체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제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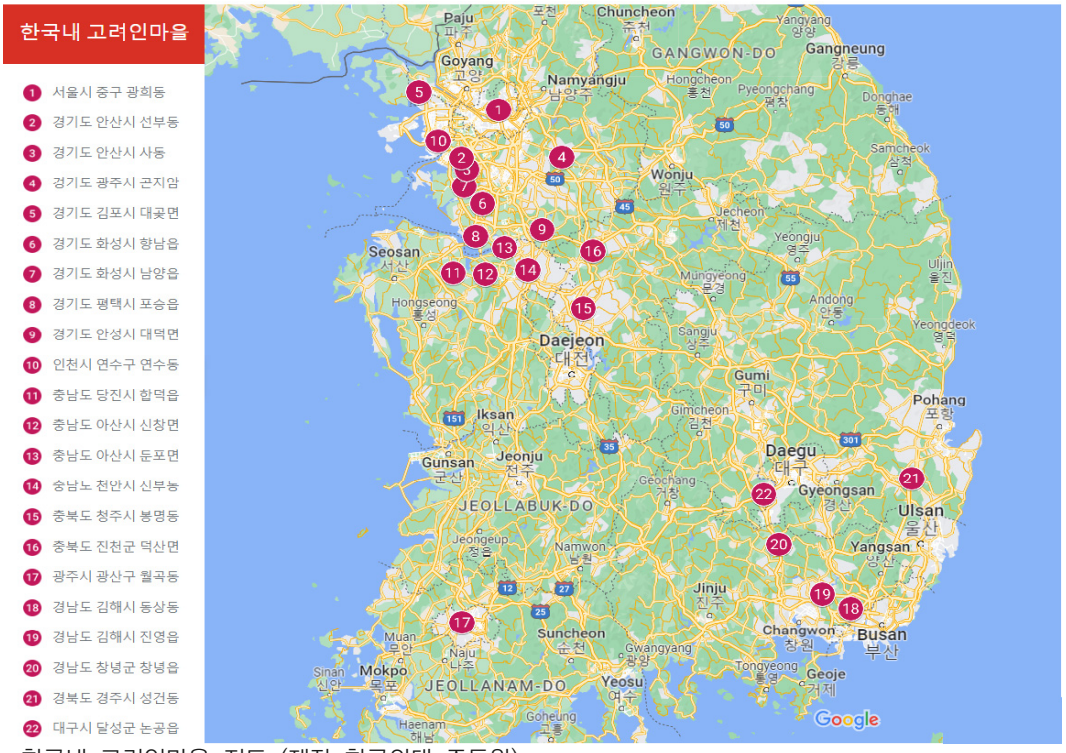

자료: 한국내 고려인마을 지도 (제작 한국외대 주동완)
http://kor.theasian.asia/archives/334454 재인용

○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전북 체류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인 마을 조성 및 고려인지원 기능을 통해 고려인을 집중적으로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라북도의 고려인 현황은 22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계 러시아인 66명, 우즈베키스탄 93명, 카자흐스탄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려인의 국내 정착을 위해 고려인 마을을 조성하고 문화 적응, 경제 활동지원, 보험 및 주거 여건의 제공 및 알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21년도에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지원사업(고려인 주민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창업, 한국어 교육·통번역 서비스,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유아보육지원, 응급보호 등)
  - 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기념행사의 지원 등

- 전라북도 고려인 마을은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마을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인 마을 조성하여 우크라이나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고, 관련 심리 치유 및 정주 여건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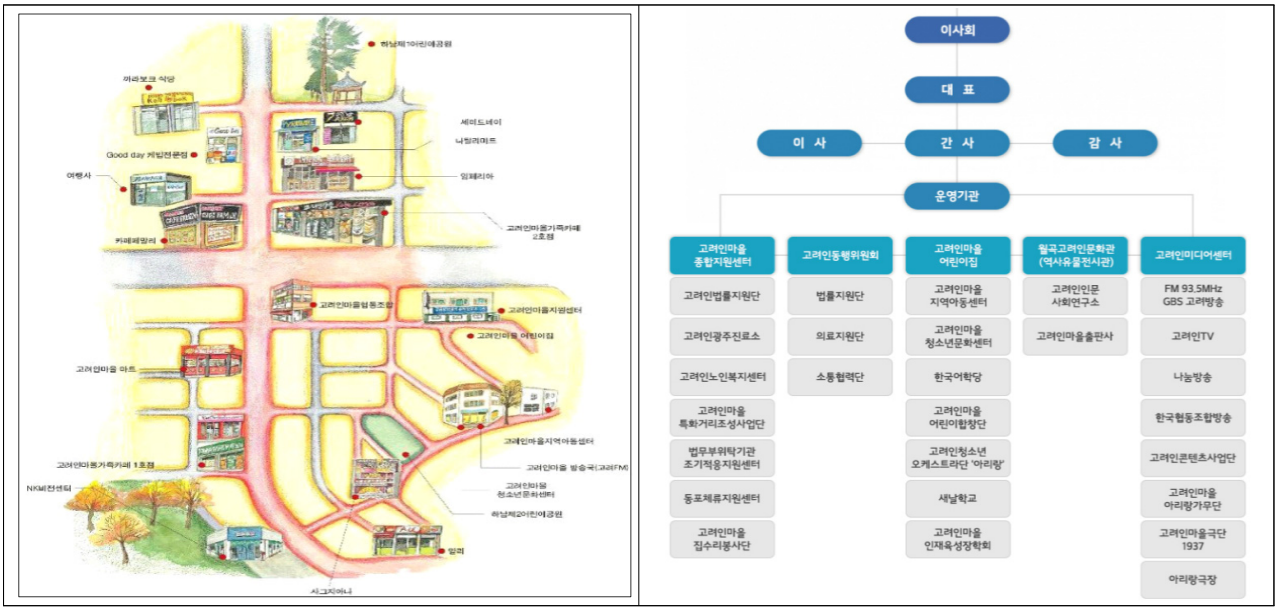

[그림 6-10]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표 6-18]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중 고려인 현황

행정구역별	2021								
	고려인 총계	한국계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벨로루시
총계	53,684	25,280	17,932	7,556	1,481	1,038	157	214	26
서울특별시	1,949	853	708	260	86	25	9	4	4
부산광역시	1,108	863	182	40	18	3	0	2	0
대구광역시	1,088	491	403	168	6	16	0	4	0
인천광역시	5,802	2,926	1,767	821	125	125	10	24	4
광주광역시	2,849	911	1,249	459	109	111	4	6	0
대전광역시	126	47	47	24	6	2	0	0	0
울산광역시	244	103	97	35	3	3	2	1	0
세종특별자치시	164	69	57	33	5	0	0	0	0
경기도	20,212	10,057	6,804	2,408	422	339	52	119	11
강원도	265	129	83	43	6	3	0	1	0
충청북도	4,371	2,112	1,524	433	134	142	18	7	1
충청남도	8,027	3,452	2,558	1,473	351	123	46	20	4
전라북도	222	66	93	48	11	3	0	1	0
전라남도	239	118	81	26	6	5	0	3	0
경상북도	3,052	1,213	933	710	114	60	12	10	0
경상남도	3,895	1,833	1,322	568	79	77	4	12	0
제주특별자치도	71	37	24	7	0	1	0	0	2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 이에 전북 도내 고려인 및 조선인 등이 집적화하여 거주할 수 있는 동포마을 조성 필요. 전북지역에서는 특히 김제시에 동포마을 조성 가능성이 가장 높고 동포가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음

○ 김제시에 전북이주민통합센터가 2023. 6월에 사회협동조합 방식으로 개소하였고, 재외동포 김제시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음. 게다가 김제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접근해 있으며 전주-익산-군산이 인접해 있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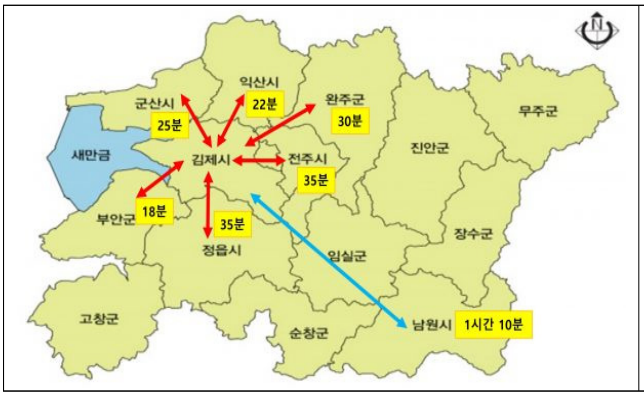

[그림 6-11] 김제시와 인근지역 근접성

[그림 6-12] 김제 관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위치

1-4-11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및 이민자 특화형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북도 김제시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은퇴자 유입과 더불어 이민자 및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해 재외동포 타운 또는 재외동포 마을 조성이 필요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이민자 및 재외동포특화형으로 사업을 제안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지역활력타운 공모 유형을 제안하여 재외동포 및 이민자 특화형 지역활력타운 모델을 구축

○ 이민자 및 재외동포 특화형 지역활력타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와 더불어 법무부 참여하여 필요 예산 및 비자 제도 지원

- 현재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통합 공모하여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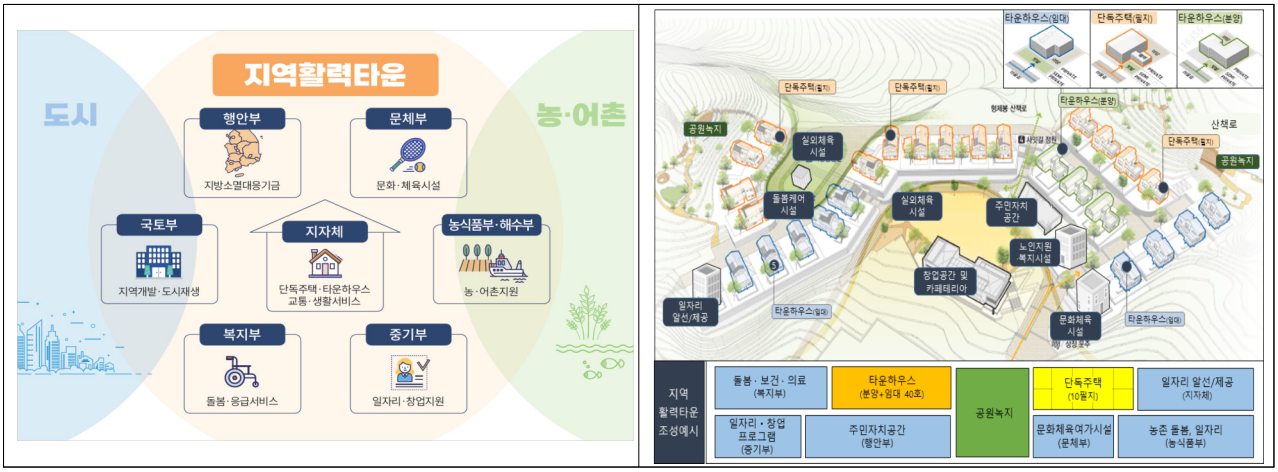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2.12.)

[그림 6-13] 지역활력타운 부처별 주요 역할 및 개념도

1-4-12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 묶음 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확대 및 활성화되면,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2(동포가족)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무엇보다 동포가족은 쿼터 제한이 없기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재외동포 관점의 매력포인트를 갖춰 놓는다면 동포가족의 지속적인 지역으로의 유입은 확실할 것임. 이에 재외동포 가족이 전북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정착 및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재외동포를 별도로 담당하는 행정인력의 부족과 인프라 부재 등으로 외국인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특성과 다른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는 고려인 재외동포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에서부터 주택마련, 자녀 돌봄과 교육 정보제공, 한국어교육 등 재외동포 대상 구체적인 지원과 통역 등을 전담하여 지원해줄 (민간)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23년 6월에 김제지역에 개소한 '전북이주민통합센터'대한 전북지역에 체류 및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지역정착 및 지역연계를 위해 주민정착지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재외동포 지역 거주·정착을 위한 묶음 지원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재외동포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은 전북도와 김제시 매칭지원

- 민간센터(단체)가 묶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인건비(2명)와 사업비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김제시
- (시행방법) 민간센터(기관·단체 등) 공모방식 선정을 통해 사업 추진
- (추진절차)

재외동포 정착지원 묶음사업 기획 및 예산 수립	→	재외동포 정착지원 묶음사업 전담 센터(기관·단체) 선정	→	예산 지원 (인건비, 사업비) 사업추진	→	성과평가
전북도 / 김제시		공모방식		예산지원		전북도 / 김제시

❍ 재외동포를 위한 주민정착 묶음 지원 사업(안)

- 행정지원(통·번역서비스, 출입국 민원, 상담)
- 김제시 관내 기업과 이주 희망 동포간 취업과 일자리 안내·매칭, 취업사이트 운영과 정보제공
- 주거안내 지원(부동산 등 소개) 및 김제시 관내 입주 가능한 빈집과 노후주택 연계 지원
- 기초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협력병원 통역서비스 등)
- 한국어교육(야간, 주말 포함), 한국사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 영유아자녀 보육서비스 연계 및 지원, 초·중·고 학교 연계 및 지원
- 지원 단체와 커뮤니티 형성
- 지역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 마련과 확대, 재외동포(이민자) 정착도우미 자원봉사 활동

※ (참고) 전북이주민통합센터는 김제시 소재하며 2023년 6월에 개소함. 재외동포 마을 조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 다각적인 지원을 함

[연계사업] 동포체류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법무부)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동포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내 동포 대상의 고충·취업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전북지역 재외동포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전북 도내에 동포체류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목적)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민·관 협의체 구성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원자격) 최근 3년 이내 국내 동포에 대한 고충·취업상담 등 사회적 적응 지원경험이 있고, 아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임

- 동포들의 출입국, 체류관련 제도 안내 및 관련 동포정책 홍보, -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각종 고충상담
-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업무 수행, - 기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될 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은 약 2년 임

1-4-13	차세대 재외동포 전라북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 대학생 전라북도 연수)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라북도의 전통문화 체험 및 전라북도 산업, 기업,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체류 및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 동포들의 전라북도 거주 및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주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우수 재외동포 인재 유치 및 전라북도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강화

❍ 전라북도, 재외동포재단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전라북도 연수를 추진

2.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체류지원 분야

가. 전북종합계획 정책목표 : 지역사회 장기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 지원

1) 배경과 필요성

○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에 관한 체류관리는 외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행정행위로 체류자격제도, 외국인 등록제도, 강제퇴거제도의 측면을 포함됨. 기본적으로 체류관리는 사법 및 안전 메카니즘에서 운용되어 왔음

○ 이민정책의 논의가 국가주도에서 지역기반의 정책으로 점차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소멸을 지연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될 수 있기에 지역기반의 이민행정과 체류관리가 제도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요구됨

○ 현재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필요한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체류관리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한편 단순인력 부족, 제한적인 집행 수단 등으로 일부 국내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상실한 채 거주하며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며 외국인력에 대한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가 지속, 증대되는 가운데 인력수급 정책과 연계성을 둔 접근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함

[표 6-19]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2014~ 2022 : 짝수년 기입)

구 분	2014	2016	2018	2020	2022
체류외국인	1,797,618	1,899,519	2,367,607	2,036,075	2,245,912
불법체류외국인	208,778	208,971	355,126	392,196	411,270
불법체류율 (%)	11.6	10.2	15.0	19.3	18.3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지방정부의 관련 유관부서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불법체류 유발환경에 대한 다면적 대응을 통해 체류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을 차단하여 안전하게 지역민과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추진전략 1. 지역사회의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 지역기반의 이민행정과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 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체류자격 및 정착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 밀집지역은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이거나 외국인 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이 해당됨. 타 지역의 경우 외국인 밀집지역 형성으로 지역민과의 갈등의 요소를 막고 공공안녕의 위험 요인을 발굴, 해소하고자 관리 협의하는 기구를 조성하고 있음. 향후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에 형성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안되는 세부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 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추진
-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 센터 조성 및 운영
-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협의체 조성

▌ 추진전략 2. 지역 불법체류의 억제 방안 수립

❍ 지역사회에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과 함께 불법체류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유관부서 및 기관들이 협력하여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됨

❍ 따라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의 변화 등에 관한 법질서, 소비, 금융 교육 등의 시민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예방교육안을 마련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안도 정립하도록 함. 한편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확대로 인해 이들을 체류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불법체류화 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제안되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체류 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운영
-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 및 실효적 제재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 방안 정립

2) 【체류지원】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세부 과제

[표 6-20] (체류지원)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세부 추진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2]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1) 지역사회 외국인 수요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2-1-1 외국인력 수요 산업실태조사 추진	대외협력과	
		2-1-2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2-1-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협의체 조성	대외협력과	
	2) 지역의 불법체류 억제방안 마련	2-2-1 체류 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가족센터
		2-2-2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과 제재안 마련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지역고용센터
		2-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	농업정책과	지역고용센터 농협
		2-2-4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특례 부여	특별사법경찰과	

2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질서의 정비 세부과제

2-1-1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추진 |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의 외국인 유입을 위해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요구됨.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인구로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여겨짐

○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학, 기업 등 외국인을 필요한 각 분야를 조사하여 필요 인력 규모와 특화업종 발굴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관리의 기초자료가 될 것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상항식 정책 수립 경로 마련됨. 생활인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필수이기에 본 실태조사의 정기적 조사로 외국인의 유입경로를 다양화 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실시

○ 사업대상 : 도내 대학 및 지역별 기업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매년

○ 사업량 및 예산 : 정기조사 실시 (도 예산: 3천만 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시행방법) 정기적 실태조사 추진 (설문조사 방법)
- (추진절차)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 공동기획 조사

2-1-2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한 지자체 수요 기반의 비자로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반해, 광역비자는 비자발급 권한 자체를 도지사에게 일부 넘겨주는 제도로 지역특화형 비자 보다 한 단계 더 많은 지방주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 즉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등 지역적 특성과 요구 등을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외국인의 선발과 비자 발급 권한까지 갖는 것을 말함. 한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법률 개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광역비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상황

- 국회(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도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무엇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들이 전북 6개 지역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보다 확대 · 활성화 될 것이기에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유형별 다양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별 정보와 요구 등을 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센터 설립이 필요함

○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주고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들을 도와줄 기구 및 센터가 지역 거점별로 조성될 필요가 있고 이 기구나 센터에서는 교육, 지역특화 업종 취업까지 원스텝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성과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광역비자 거점센터는 현재 외국인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가족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이 고려되는 방안 모색

-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방식이기에 대학교의 국제교류원과 고용센터와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 사업대상 : 지역특화형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이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 사업기간 : 2024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도내 대학, 이주민플러스센터, 고용센터, 가족센터
- (시행방법)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센터 조성과 운영
- (추진절차) 거점센터 운영 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운영

2-1-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협의체 조성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 외국인 유입의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역별 외국인 밀집 지역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됨. 이에 따라 지역민과 외국인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안녕의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의 정주와 체류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체를 조성하도록 함

○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외국인이 정주하는데 필요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외국인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고 지역민과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관리협의체 조성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장(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협의체 조성

○ 사업대상 : 외국인과 지역주민

○ 사업기간 : 상시 운영

○ 사업량 및 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가족센터, 이주민플러스센터, 지역주민자치회
- (시행방법) 외국인 밀집 지역의 관리협의체 조직화와 운영
- (추진절차)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및 자치행정과를 통해 관리협의체 조성

2-2-1	체류 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운영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체류외국인은 각기 다른 성장배경,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민주시민 사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것임. 따라서 체류자격이나 정착을 위한 법 질서, 소비, 금융 등의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체류 및 정주문제,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함

- 교육을 통해 체류 및 정주 문제 등을 사전적으로 인지하여 불법체류의 억제하는 방안 모색
-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공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체류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강화

○ 사업대상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 사업기간 : 매년 정기적 교육 운영

○ 사업량 및 예산 : 3천만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개설,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 (추진절차) 교육대상자 모집과 교육실시

2-2-2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 교육과 제재안 마련	전북도 고용센터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단순인력 부족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 등으로 고용주에 의한 불법고용이 만연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일부 시장에서는 고용주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고용인의 고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고용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체류관리를 사법과 관리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기에 향후 지역민으로 성장할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와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주의 불법고용을 막을 수 있는 예방교육과 고용시 지역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의 현장근로감독을 내실화
- 고용주에게 정부 지침의 안내를 지역에서 교육하고 강화하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과 제재안 마련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고용주 단체

○ 사업기간 : 2024년 ~

○ 사업량 및 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 (시행방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및 고용주 대상 교육
- (추진절차) 예방교육 공고와 의무교육 실시, 미수료교육시 제재안 마련

2-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농업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등 관리 행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선정하여 농협을 통해 관리하는 유형도 형성되고 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관리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에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 지역사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제고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형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관리

○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업기간 : 2024년 ~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지역고용센터, 지역농업
- (시행방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와 체류관리 조사 실시와 관리거버넌스 구축
- (추진절차)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2-2-4	외국인불법체류 단속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특례 부여	특례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불법체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외국인 유입 및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외국인 정책 연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 필요

- 외국인의 불법체류현황은 ‘20년에 392,196명, ’21년에 388,700명, ‘22년에 411,270명으로 나타남. 불법체류율(불법체류 외국인/총 체류외국인)은 2018년말 15%, 2019년말 15.5%, 2020년 말 19.3%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에 19.9%로 나타남
- 2021년 말 기준 체류자격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은 사증면제(B-1) 157,747명, 단기방문(C-3) 78,455명, 비전문취업(E-9) 50,876명 등(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2021년 말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은 태국 142,677명, 베트남 70,411명, 중국 63,113명 등(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외국국적동포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1년말 9,856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

[표 6-21] 연도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등록	90,067	95,815	108,665	125,022	138,013
단기	264,044	293,150	281,857	262,251	269,532
거소	1,015	1,316	1,674	1,427	3,725
합계	355,126	390,281	392,196	388,700	411,270

자료: 법무부 출입국 통계(https://www.moj.go.kr/moj/2415/subview.do)

[표 6-2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 현황

구분 \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불법체류 외국국적동포	7,768	7,805	8,087	9,640	9,856
전년대비(%)	3.5	0.5	3.6	19.2	2.2

자료: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 불법체류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 감소 및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사법경찰에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 및 감독 등의 업무 부여 및 조직 구성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분야 : 사회복지,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 소방 등

❍ 전북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불법체류 단속 및 불법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지도점검,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경찰청·법무부·국토부·국세청·고용부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불법체류 정보 공유 및 단속을 추진

❍ 불법 브로커 적발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적인 불법체류 및 불법 거래 등의 행위 단속하여 안정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 환경 조성

3.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지역통합 분야

가. 전북종합계획 정책목표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 통합

(1) 배경과 필요성

❍ 지금까지 진행해 온 외국인 정책에서 다양한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사회통합은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선정됨. 따라서 1-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제수를 보면 사회통합 관련 수가 평균 60개로 다수의 수를 차지하여 외국인의 적응에 집중한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통합정책은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을 분류하고 상이한 수준의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분절화된 외국인 통합정책의 경향을 띄고 있음

❍ 향후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외국인 구성을 고려하고 외국인의 정착과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활동을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개념에 일터와 직장을 연관하여 기존의 정책과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정주하면서 정착하는 외국인의 삶은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방정부로부터 행정 및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기에 사회통합이라는 범주에 '지역'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전라북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개념을 '지역통합'으로 변경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통합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함

❍ 한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2021년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동화주의'에 가까운 양상을 여전히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겠지만 2021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에서 대도시보다는 읍면부 지역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보다 읍면부의 지역민이 외국인과의 접촉이 더 용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존 구성원들이 외국인의 수용적인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과 마주하게 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민과 외국인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추진전략 1.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진행해 온 외국인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외국인 증가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가 적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소멸과 빈일자리의 발생 등과 같이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인력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인의 유입과 유치는 필요조건으로 형성되기에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은 활성화되어야 할 것 임

❍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 방식은 우선 지역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민과 외국인 상호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다양한 실행단위에서 지역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것임. 이것은 내외국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됨으로써 사회통합, 지역통합정책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

- 지역민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실시
- 세계인의 날 기념행서 지원
- 주민자치프로그램 문화 소통 프로그램 확대

▌ 추진전략 2.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지원

❍ 현재 외국인 정책에서 외국인 유입과 유치는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고 규모에 있어서 제한된 인원이 선출됨에 따라 정주여건, 임금체계 등의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지원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으로 정주화시키는 제반 여건을 조성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6개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전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기에 시범사업 본 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정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한편 지형특화형 비자사업은 유학생과 외국국적동포 대상의 사업으로 현재는 유학생 대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기에 대상을 외국국적동포를 유치하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원제한이 없고 가족을 동반하기에 인

구소멸지역에 인구를 늘리고 산업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민으로 정착화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 특히 중국국적동포는 서울 경기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고려인의 경우 가족, 친족간의 유대가 좋고 콜호즈라는 마을공동체 형성하고 살아왔으며 농업에 대한 경험도 가진 인원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역의 생활인구로 정착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 일자리, 자녀의 교육적 여건, 주거공간 등이 조성되면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지역에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이러한 외국국적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 전북 외국인 의료진료 센터 운영
- 국적취득자 전라북도 정착지원금 지원
- 외국인주민(유학생·근로자·재외동포) 자녀보육료 전액 지원
- 외국인주민 자녀 위한 다솜학교(한국폴리텍) 설립·운영

▌추진전략 3. 전북人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중 90일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사회정착과 적응을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 정도의 사회통합 정책은 변화되어야 함. 장기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척도가 경제적 자립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기여라는 것이 사회통합의 지표 됨을 의미함

❍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있어서 다양하게 구분되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역유출을 막고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자격 등을 체크하고 근로이력, 한국사회 적응, 사업장의 특성, 수요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함. 이러한 과정은 외국인의 정주화의 계기가 되며 지역통합의 요소로 작용할 것 임. 더불어 외국인들에게 전북인으로서 위치를 변화시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임

❍ 한편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정주한 결혼이민자는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2020년 기준 전체 고용률 65.3%, 결혼이민자 고용률 43.4%) 종사상의 지위 중 임시 혹은 일용근로, 직종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낮은 경제적 자립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지역 및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이들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함

○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제고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창업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장기체류 외국인의 노동시장에서의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과 자영업 지원이 필요함.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창업 및 자영업 분야 진입은 영주권자와 일부 결혼이민자에 한정되어 있고, 업종도 요식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출신의 창업지원은 지역 및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이들의 창업과 자영업은 이윤창출, 고용창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그러므로 외국인의 창업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우선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의 기반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직업 훈련 실시
-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 운영 확대
- 결혼이민자의 창업 및 자영업 지원

3) 【지역통합】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세부 과제

[표 6-23] (지역통합)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세부 추진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	추진부서	비고
[3]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	1)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3-1-1 지역민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3-1-2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대외협력과	
		3-1-3 주민자치프로그램 '문화소통 프로그램' 확대	대외협력과 (자치행정과)	국제협력진흥원
	2)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지원	3-2-1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대외협력과	
		3-2-2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대외협력과	공모사업 검제시
		3-2-3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3-2-4 전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진료센터 운영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3-2-5 국적취득자 전라북도 정착지원금 지원 (가칭) 전북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	대외협력과	
		3-2-6 외국인주민(유학생/근로자/재외동포 등)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사회복지과	
		3-2-7 외국인주민 자녀위한 다솜학교(한국폴리텍, 기술대안교) 설립·운영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고용부

	3) 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3-3-1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추진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지역고용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3-3-2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확대	국제협력진흥원	대학연계
		3-3-3 결혼이민자의 창업 및 자영업 지원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3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 및 소통에 기반 한 지역통합을 위한 세부과제

3-1-1 지역민의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실시 (국제협력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대상별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식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다문화수용성 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문화관련 행사 및 교육의 참여를 통해 외국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개선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상호이해와 소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실시 (대상별 교육)
- 외국국적의 외국인 강사, 학계전문가 등을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활용 문화다양성 공감교육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민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지역민

❍ 사업기간 : 2024년 ~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센터(다문화이해 교육 수업 운영 경험 활용)
- (시행방법) 강사 선발과 교육프로그램 기획 추진
- (추진절차)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중심으로 추진

3-1-2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민과 외국인 주민과의 상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해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에 기념행사를 운영하도록 함

○ 기존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상호교류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활용되었고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지역의 외국인들이 참가하여 지역민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외국인과 이민자 관련 행사와 축제를 세계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고 행사일정을 통합 공고하여 행사와 축제에 대한 홍보 활성화 및 지역민의 참가 확대로 다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관용과 통합 제고 도모

- 외국인과 지역민이 상호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함
- 다문화어울림 축제와는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성을 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 부대프로그램 개최 운영

○ 사업대상 : 지역민과 외국인

○ 사업기간 : 2024년 ~ 매년

○ 사업량 및 예산 ; 1회 총 5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협력국 대외협력과/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시행방법) 기념행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추진절차) 기념행사의 홍보와 관련기관을 통한 외국인 참가 독려

3-1-3	주민자치프로그램 ‘문화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내외국인의 상호교류를 위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민과 외국인이 참여를 독려함.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개인소비형 교육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변화시키는 대안으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

○ 이 과정은 주민차지센터가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개인소비형 교육에서 공동체 교육으로 변모되고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교류로 평생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음

- 기존 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행한 문화소통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로 확장하여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참여를 독려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민자치센터내 외국인의 문화소통프로그램 기획운영

○ 사업대상 : 지역민과 외국인

○ 사업기간 : 2024년 ~ 상시

○ 사업량 및 예산 : 6개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지역

○ 추진체계

- (사업주체)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 (시행방법)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절차) 담당부서의 교육프로그램 기획안 마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지역민과 외국인 중심의 교육당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실시, 평가

3-2-1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특성화 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에 유입된 외국인 주민 중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정비하여 이들의 조기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별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설계하여 외국인 주민이 전라북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마주할 어려움을 해소시켜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주요 인력과 주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 대상별· 수준별 한국어 교육 지원, 자녀 교육 지원
- 통역과 상담 지원, 법률 지원과 정착안내, 취업연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통역, 상담, 정착 안내, 자녀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외국인 주민

○ 사업기간 : 2024년 ~

○ 사업량 및 예산 : 6개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총 12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NGO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 (시행방법) 사업공모와 신청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금 지원
- (추진절차) 사업기획안 제시 사업공모, 심사를 통해 기관 선정

3-2-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전북도 공모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유학생, 외국인근로자와 재외동포)의 확대로 유입되는 외국인을 전체적으로 통합지원 할 수 있는 기관이 요구됨. 현재 외국인 관련 지원기관은 가족센터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요구됨

○ 특히, 외국국적동포 대상인 지역특화형 비자 2유형은 인원 제한이 없고 가족동반이 이루어지기에 이들은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서 가능함. 특히 고려인 동포의 경우 가족 친밀적, 마을공동체에 익숙하며 농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경험이 다수 존재하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 유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역특화비자 사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전담하는 기관 필요
- 외국국적동포의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지역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요구됨. 현재 김제에 전북이주민통합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본 기관을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도 모색해 봄

※ 특히 김제시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400쿼터 중 40%(160명)가 김제이며, 재외동포 마을조성에

부합한 지역적 여건(지평선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위치)과 전북이주민통합센터 개소('23.6)와 함께 대한고려인협회 등 연계 지원이 가능한 인적자원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특화비자 사업 유입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관리기간 지정 운영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 사업량 및 예산 : 1개소 지정운영 / 예산책정 배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김제시
- (시행방법) 사업공모로 신청기관 선정, 위탁운영 방식 채택

3-2-3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 지원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관내 의료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과 더불어 의료지원을 무료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과 사업장 안전 교육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용허가제 등과 관련된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 등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필요 있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

○ 사업대상 : 전북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 책정 배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일자리민생경제과/고용부의 통합고용서비스기관인 지방노동청 / 대형병원과 연계
- (시행방법)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내과, 외과 등 기본 진료와 건강 상담 등), 고용허가제 관련 유의사항 전달교육 등

3-2-4	전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진료 센터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동거가족, 유학생(어학연수생),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를 개방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기본적 지원은 경제적 등 상황과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며, 지역 사회에 정착 동기와 근거를 마련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무엇보다 전북 도내에 외국인 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입된 외국인 중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계층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도내 거주 외국인(방문 가족)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이 강구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진료 센터 운영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 전체

○ 사업량 및 예산 : 도 예산 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대외협력과 등)
- (시행방법) 지역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 (추진절차) 담당부서의 사업기획 이후 사업시행 공고를 통한 공모절차로 지역 의료기관 선정 및 치료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중심 주말(토·일) 찾아가는 진료 지원 포함,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사 동반 지원

3-2-5	국적취득자 전라북도 정착지원금 지원 (가칭) 전북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 도내로 유치된 이민자(유학생, 재외동포, 외국근로자 등)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전북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 확대 도모

○ 이민자가 전북지역에서 국적을 취득 시 정착지원금으로 도비 100만원 지원과 시군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여 운영 필요. 국적취득자 대상의 지역정착금 지원 운영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꽤 있음

- [전북지역 내 사례] 장수군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단위로 분할 지급), 김제시(100만원)
- [타 지역 사례] 고성군(사랑상품권 20만원), 의성군(100만원), 영광군(6개월 거주시 50만원), 단양군(50만원), 거창군(100만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지역 조기적응을 위한 지원금 지원

○ 사업대상 : 외국인

○ 사업 기간 : 2025년 ~ 2027년

○ 사업량 및 예산 : 5개 (정읍, 남원, 순창, 고창, 부안 :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금), 1개 (김제 : 국적취득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각 시군
- (시행방법) 사업시행 공고,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원
- (추진절차) 담당부서의 사업 기획 이후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한 공모 절차로 지원대상자 선정

3-2-6	전북 외국인주민(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 등)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경우 2021년 기준(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법무부) 체류 등록외국인 중 0-4세 영유아는 355명으로 전국(30,278명)의 1.2%에 해당함. 외국인주민 자녀 중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영유아는 현행법상 무상 보육 및 교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자녀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상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편, 전북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 증가에 따라 영유아 외국인자녀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반가족과 전북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외국인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이 불가피함

○ 이에 향후 전북 보육조례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한 영유아 외국인자녀의 보육 무상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 도내 어린이집 이용 시 가족동반 외국인 영유아자녀(0~5세)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전북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이어야 함(향후 전라북도 도내 거주자로 확대 필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등록(체류 90일 이상) 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금액 : 전북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 예산 : 도비와 시·군비 50%씩 매칭 지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지원대상) 거주지 근처 외국인 근로자·재외동포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신청

[사례] 경기도 화성시, 전국 최초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유아 학비 전액 지원
- 그 동안 외국인 주민은 어린이집만 자녀 1인당 10만원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 지원금 없었음. 한데 2023. 5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0-5세 아동 대상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 지원

3-2-7	외국인주민 자녀 위한 다솜학교(한국폴리텍,기술대안고) 설립·운영	전북도 고용부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이주배경 청소년 및 자녀 대상 한국어와 이중언어 교육, 더 나아가 직업교육 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까지 외국인주민의 자녀 대상 실제적이고 수요 맞춤의 취업 능력 제고를 통한 취업 연계를 지원해주는 학교라 볼 수 있음

○ 특히 전북 도내 지속적인 외국인 유입과 가족동반 입국 수요가 높아 외국인주민의 이주배경 자녀와 재외동포의 자녀 대상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 본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교육, 진로·직업 및 취업연계 교육 등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자립위한 외국인 자녀 특성화 기숙형 직업교육기관인 고용노동부 주관의 한국폴릭텍 대학의 한 꼭지인 다솜고등학교 설치·운영 필요

○ 군 단위 지역 내에 폐교학교를 중심으로 넓은 입지 학교를 선정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 등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솜고등학교 설립·운영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이주배경 자녀 위한 진로·직업 및 취업 연계 중심의 다솜고등학교 설립·운영

- (현재)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전국에 1개교로 2010년 7월에 충북 제천에 설치 운영

○ 입학대상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이주배경 자녀

○ 운영주체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직업교육훈련 기관)'

○ 추진절차 : 고용노동부와 업무체결 및 설립 협약을 통해 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 폴리텍이 설립주체로서 설립·운영 담당

- 관계기관(안) : 고용노동부,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등
-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국비 지원
- 한국어와 기술기능교육, 심리상담과 공동문화생활체험, 기능사수준의 산업인재 양성 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한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그림 6-14]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현황

3-3-1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직업 훈련 확대 실시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활동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해 줌

○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성실노동자에 대한 재고용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지역 인력으로 활용하며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갖추어 장기체류자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직무교육 및 직업훈련 아이디어 공모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인터뷰를 통해 남성외국인 근로자는 기계, 지게차, 중장비 자격증 지원을 원하고 여성의 경우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의 자격증 지원을 요구
- 결혼이민자 대상의 수요맞춤형 직업훈련을 설계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대상별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기존 사업 확대

○ 사업대상 : 외국인

○ 사업 기간 : 2024년 ~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지역고용센터 등
- (시행방법) 기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을 지역별 추가 및 지원인력 확대
  - 지역별 외국인 대상 직업 훈련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추진 필요

3-3-2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 확대 (거점지역 추가 발굴 및 지원)	국제협력 진흥원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전북 국제화 진흥 사업의 한 꼭지로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을 하고 있음. 이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은 전라북도 내용이 수록된 한국어교재 활용 및 한국어 교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친전북인 양성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 조성 마련과 향후 민간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전북 도내 2년제 전문대학 등은 '해외 새만금 한글 한당 운영'을 통해 해외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전북 도내 지역 대학으로 유치된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인재로 성장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구성원이 되며 도내 대학들은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을 통해 도내 대학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학생 유치 및 대학교 학생 인원 충원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이에 현재 운영 중인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의 해외 거점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한글 학당의 인원 규모도 확장하여 도내 대학 내 해외 유학생 유치의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 있음

- 전북도 내용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 활용, 친전북인 양성기대, 유학생 유치환경 조성과 이를 토대로 민간교류의 확대 기반 마련
- 해외 한국어교육 거점지역 4개국(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미얀마)에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내 대학 유학생 유치 지원을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거점지역 추가 발굴 및 학당 참여 인원 확대 운영

○ 사업대상 : 해외 외국인(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미얀마)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량 및 예산 : 연간 3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해외 한국어 교육 거점지역에 새만금한글학당 운영을 확대
- (추진절차)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사업을 평가하여 확대운영

3-2-3	결혼이민자의 창업 및 자영업 지원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과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봄. 결혼이민자는 지역사회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노동시장에서 단순노동 및 일용직에 머무르거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역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이들의 창업과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

- 결혼이민자의 창업 및 자영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이 안정적으로 자영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 창업과 자영업 진입의 준비에 필요한 여건들을 사전조사하고 유형화 작업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나 자원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함
- 자영업 실시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제도를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창업 훈련 및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사업기간 : 2015년 ~ 2027년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 배분에 따른 책정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창업과 자영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교육과 지원제도 설계

4.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인권 분야

가. 전북종합계획 정책목표 :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1) 배경과 필요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 유형의 유입·유치에 따라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성면에서 규모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 국적 미취득자 41,047명, 국적취득자 6,272명으로 나타남. 국적미취득자 중 외국인근로자 15.6%, 유학생 14.2%, 결혼이민자 9.7%, 외국국적동포 4.2%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음. 주요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32.2%, 중국 15%, 한국계 중국인 9.1%, 필리핀 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라북도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특징이 아시아 출신 국가 수가 대다수를 차지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국제결혼의 순의 비율로 임을 보여줌

❍ 이와 같은 인구학적 특징은 한국사회에서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과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차별, 경제적 수준이나 작업 등에 의한 차별 등 복잡하고 다각적인 인종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맞물려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정책이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과 정책을 수립해 왔기에 전체 외국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부재와 권리보호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예시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2023년 3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기에 전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이들의 인권증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현재 외국인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들의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노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지역특화비자시범사업의 결과로 지역사회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유입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사회에서 동포에 대한 이해교육을 진행할 것이 요구됨. 현재 한국사회나 지역사회애서 동포에 대한 이해는 매체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할이 미비하고 콘텐츠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존중과 소통·협력 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추진전략 1. 외국인 인권증진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고 있듯이 이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특히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인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권존중, 인권보호, 인권증진, 인권충족의 책무를 지니고 있음. 여기에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방정부는 이들의 보호와 함께 차별의 해소, 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잠정적 조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 여건 형성하며 이들과 공존하는 지역민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외국인 인권증진과 인권교육체계 마련이라는 추진전략 하에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역민에게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제안되는 세부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 노동자 쉼터 조성(기존사업 확대)
-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 공무원의 외국인 인식개선 사업
- 동포이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의 정기적 인권교육 운영

▌ 추진전략 2.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 외국인은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노동과 생활의 현장에서 부당한 차별 및 권리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전주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문제, 임금체불 등과 같은 부당한 노동문제, 병원 등 동행 및 통역 요구,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문제 발생 등이 나타나고 있기에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과제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한계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전라북도의 경우 사업장의 소규모화, 농촌의 계절근로자 확산 등으로 외국인들의 노동현장에서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과제들이 제안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진전략은 지역의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과제이며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로 작용될 것임. 따라서 제안되는 세부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확대 (기존 사업 확대)
-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통한 안전강화 사업
- 현장중심의 인권거버넌스 운영
- 외국인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4) 【인권】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세부 과제

[표 6-24] (인권)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한 세부 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4]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1) 외국인 인권증진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	4-1-1 외국인 근로자 쉼터 조성 (기존 사업 확대)	대외협력과	
		4-1-2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행안부 공모사업)	대외협력과	공모사업
		4-1-3 공무원의 외국인 인식개선 사업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인재개발원
		4-1-4 동포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인재개발원
		4-1-5 지역민의 정기적 인권교육 운영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2)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4-2-1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확대(기존사업)	대외협력과	
		4-2-2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안전강화사업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4-2-3 현장 중심의 인권거버넌스 운영	대외협력과	
		4-2-4 외국인근로자 보호·지원조례 제정	전라북도	

4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강화 세부과제

4-1-1 외국인 근로자 쉼터 조성 (기존사업 확대)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중 실직과 사업장의 변경 등으로 이직을 위해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하거나, 산업재해 등의 보상 문제로 체류 연장이 되고 거주지가 필요할 수 있기에 이들에게 단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 있음

○ 또한 지역산업체에서 인력을 구하는 경우 본 쉼터를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 재취업 전 외국인노동자 숙식 제공 및 구직지원 등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한글·컴퓨터 교육, 정서지원, 건강회복 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쉼터 조성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사업기간 : 매해 지원 (연도별 예산 편성액에 따라 조정)

○ 사업량 및 예산 : 2개소, 총 30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의 민간위탁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 (시행방법) 공모 사업 진행
- (추진절차)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

4-1-2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행안부 공모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에 유입된 외국인과 유치할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할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짐

-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였으나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 미추진 되었음

[사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2개소 선정 총 8억원(국비 4억, 지방비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 전라북도는 향후 지역특화비자 사업의 확대로 외국인의 유입으로 지역민과 소통교류와 활동공간 조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과 정착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국적동포의 유입방안으로 동포정착을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부분이 있음.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동포의 경우 주거형태로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개조 등의 기획에 근거해 동포거주지 조성 정책 추진도 고려해 봄

- 외국인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으로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동포거주시 조성 정책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외국인

○ 사업기간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기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행정안전부
- (시행방법) 공모사업 / 자체 사업 기획
- (추진절차) 공모 사업 응모

4-1-3	공공기관(공무원 등)의 외국인 인식개선 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인권교육)에 따라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공무원 및 외국인과 접촉면이 있는 기관들의 종사자들 경우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행 경험이 누적되면서 보편적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나 수용도는 높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과의 접촉, 외국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내용에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인권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시함

- 공공분야의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공기관의 외국인 인식 개선 사업

○ 사업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종사자

○ 사업기간 : 매년 실시

○ 사업량 및 예산 : 매년 20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온오프라인 교육실시와 교육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절차) 교육일정 공고와 의무교육 실시

4-1-4	동포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 규모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비중은 높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며 일반체류외국인과는 다르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주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포와 지역민과의 갈등의 가능성은 상존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도 공존하고 있기에 지역민과 동포사회의 통합을 위한 상호인식 개선 노력이 요구됨.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구성에 있어서 동포의 규모가 4.2%로 그 규모가 적지만 향후 지역특화비자 사업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유치가 확산될 전망이므로 동포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필요함

❍ 현재 동포이해 교육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재단의 찾아가는 재외동포이해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신청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자체 사업으로 동포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설계하여 유입 혹은 유치될 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시킴

- 동포이해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 집체교육과 선도적으로 운영되는 현장방문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동포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공무원, 일반지역민, 초중고생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운영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오프라인 교육과 현장방문 교육
- (추진절차) 교과목 개발과 강사모집, 교육기간 선정 운영

4-1-5	지역민의 정기적 인권교육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21년 외국인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정부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려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9%로, 합법체류 이민자는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이 33%로 나타나면서 이전 조사보다 외국인을 포용하기보다는 분리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기대하는 결과를 보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인의 인식개선이나 환경조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전라북도라는 공간에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도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할 경우가 상존하기에 전라북도에서 지역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 인권교육이 요구됨

- 인권교육을 통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식 제고 확대
- 지역민의 외국인 이해를 통한 상호이해와 소통의 기회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민의 정기적 인권교육 운영 추진

○ 사업대상 : 전북 도민, 초·중·고 및 대학생 등

○ 사업 기간 : 2024년부터 ~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편성에 따라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시군/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 (시행방법) 주민센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운영
- (추진절차)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교육실시

4-2-1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확대 (기존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언어소통과 정보부족 등으로 이들의 역량이 약화되고,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지만 도시 중심의 지원인프라로 형성되었기에 상담지원이 취약한 소외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해 노무, 법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전라북도의 경우 2023년에 도비예산으로 전주와 익산에 외국인 현장 상담소를 운영함. 따라서 본 사업을 군지역까지 확산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사업을 펼침

- 법률, 행정,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찾아가는 외국인 상담서비스
- 지역의 확대로 외국인 인권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확대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 포함 외국인 주민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

○ 사업량 및 예산: 4개소 확대 (전주, 익산, 농촌지역) 5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시행방법) 관련 상담 인력풀 구성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상담서비스 지원
- (추진절차) 인력풀 구성과 지역선정 이후 실시

4-2-2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안전강화 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권을 지키기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수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안전 지킴이를 선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함. 본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강화로 이들의 지역 산업 인력으로 안정적 정주화를 도모함

[사례] 노동안전지킴이는 경기도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공모를 통해 선발 과정을 거치며 이들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을 갖춘 현장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됨. 사업수행기관은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함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권 강화를 위한 노동지킴이 선발과 운영
- 위험시설 현장 감시 및 개안 안전장비 구비 유·무등의 안전 점검 실시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

○ 사업량 및 예산: 노동안전 지킴이 10명 선출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 (시행방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운영
- (추진절차) 노동안전지킴이 시행계획 수립 운영

4-2-3	현장중심의 인권 거버넌스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에 거주하게 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전라북도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2023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기에 종합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시책 수립, 계획 및 예산 수립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외국인들의 삶에 대한 현장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그 구성은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 위원회와 외국인 정책 자문단 운영
- 민간합동 워크숍을 통한 정책개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

○ 사업대상 : 외국인

○ 사업기간 : 2024년~ 매년 실시

○ 사업량 및 예산 : 연간 4회 실시 총 1,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 (시행방법) 정기적 회의 운영
- (추진절차) 위원회 구성과 정책자문단 임명과 운영

4-2-4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산업현장에서 외국 인력이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오래되었고, 산업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요구와 그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전북 도내에 거주하고 취업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과 농촌의 근로환경 개선과 원활한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함

❍ 이미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및 보호 그리고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있음. 이에 전라북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외국인근로자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북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연구 등 추진

[표 6-25]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 현황(총 2개 지역)

지역	조례명과 주요 내용	제정일
충남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업경제실 경제기확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파악, 지원 사업(노동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 외국인노동자쉼터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2021 09.30
전남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인구정책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법률·노동·고용상담, 문화적응·교육활동 등 지원,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2023 06.01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3. 7. 20. 기준

5. 중앙기본계획의 정책목표 협력/인프라 분야

가. 전북종합계획 정책목표 :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 배경과 필요성

❍ 현재 한국사회 외국인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는 3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집행기관으로 구성 운영되는데 중앙정부는 외국인 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외국인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중앙부처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함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의 외국인 주민 정책을 공유하여 수행하는 공통과제와 지역 내 외국인 주민 대상의 자체 과제를 수립해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민간기관은 NGO, 이주민 공동체, 기업 등 모두 포함되며 자율적으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일정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데 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들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연계협력면에서 유사중복사업의 문제로 예산 낭비, 정부와 민간의 상호경쟁, 민간부문에서 사업을 둘러싼 갈등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이기에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과 각 연계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고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외국인주민의 거주지인 지역사회에서 정책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 기존 중앙정부의 보조적 역할에서 주도적 역할로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의 유입으로 인구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행정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지원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전담부서 조직과 인원 확충이 요구됨.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지역 외국인 구성에 입각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지역 기반의 외국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산업, 인구구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행정통계나 조사통계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기초 데이터 수립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와 수요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것은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거 기반 외국인 지원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이행, 그리고 평가를 위한 과정과 연결되며 지역사회에 외국인이 정착하여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마련에 토대가 될 것임

▌추진전략 1.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은 전라북도의 인구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주요 요소가 되고 있음. 타 시도에 비하여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전라북도는 향후 다양한 외국인을 유입, 유치하여 인구소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 일자리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 유입과 증가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실제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인력이 확충되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시도 광역수준에서 외국인주민 수 5만명 이상 또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과 단위에서 12명 내외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밖의 시도에서는 5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의 전담부서를 설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주민 3만명 이상 또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과 단위에서 12명 내외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인주민이 1만~3만명 또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10%인 경우, 6급 1명을 포함한 정원 4명 내외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인원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실현되지 않고 있음. 현재 전라북도는 외국인 정책의 담당업무가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외국인 정책 및 지역특화형 비자는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국제외국인 정책팀 담당,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협력추진단 대학협력팀, 다문화가족지원은 복지여성보건국의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통합하고 적절한 사무배분과 사무의 위임에 따른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됨

❍ 한편 종합적인 외국인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에 기반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전문가 자문단의 구성도 요구됨. 외국인 정책의 중단기적 수립과 지역기반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작업은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제안되는 세부과제는 아래와 같음

-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
-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 추진전략 2. 외국인 정책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참여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운영

○ 현재 외국인 관련 지원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차체 모두 복잡 다양한 유관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거버넌스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외국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와 시군, 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민간단체의 이주민센터 및 NGO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중앙부처별 개별 외국인 정책에 기인하기도 함

○ 향후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정책의 권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계획을 지니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외국인 정책 수립, 실행, 성과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국인 정책에 관한 협력거버넌스가 구축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행위주체들의 수평적 협력네트워크와 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제안되는 세부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지원
- 전라북도 시군 협력 유치 협의회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이민자(재외동포) 지원서비스 센터운영(온·오프라인)

▌ 추진전략 3. 지역 데이터에 기반 한 외국인 지원 서비스 추진

○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구비되어야 하고 이것은 데이터 기반 정책추진으로 연동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정책이 범부처 정책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외국인 관련 종합적인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마련해 보려고 함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류 외국인 현황을 작성하거나 보급하는 부처는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지방정부는 외국인 행정에 활용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집계한 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비할 수 있지만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나,

인구구성의 변화, 중앙정부의 집계에서 누락된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기에 지방정부 자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계 구축이 요구됨

❍ 이러한 행정통계 이외에도 체계적인 외국인 체류 실태 조사를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기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지역의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항 자체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에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를 지역에서 설계하고 정례적으로 조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 결과로 축적된 조사통계들은 데이터기반 외국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제안되는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외국인 관련 행정 통계 통합 구축과 활용
- 외국인 관련 실태 조사 제도 구축 및 정례적 실시

5) 【협력/인프라】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세부 과제

[표 6-26] (협력/인프라) 정책목표별 전북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안)

정책목표	추진전략	세부 과제명	추진부서	비고
[5]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 지역기반 외국인 지원 체계 구축	5-1-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일자리민생경제과 여성가족과
		5-1-2 전북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5-1-3 전북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2) 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5-2-1 외국인 정책 추진 사회협의체 구성(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중심)	대외협력과	
		5-2-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지원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5-2-3 전라북도 시군 협력 유치 협의회 운영	대외협력과	
		5-2-4 이민자(재외동포)지원서비스 센터운영(온·오프라인)	대외협력과	
	3) 지역 데이터 구축에 기반 한 외국인 지원서비스 추진	5-3-1 지역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구축과 활용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전북연구원
		5-3-2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제도 구축 및 정체적 실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전북연구원

5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세부 과제

5-1-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 도내 외국인 구성의 다변화,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입·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업무의 다양화로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요구됨.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유형별 지원 사업과 중앙정부 부처별 외국인 지원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타 부서에 떠넘기기식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의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 광역시·도 중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경상북도로 지방시대정책국의 '외국인공동체과'를 2023년 1월 1일 신설·설치하고, 외국인지원팀과 다문화정책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북도 사례 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도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기획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런 총괄·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설치로 전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와 사업 평가 및 통제가 가능하고, 예산과 사업간 중복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올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외국인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계를 갖추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전라북도가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하여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전담부서, 즉 전북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구상과 관련 사업 배분 및 각 부서별 책임있는 해당업무 수행으로 정책·사업·예산 집행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신속성·통일성·효율성 기대

○ 전담부서 설치 추진방향 (1안)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 대외협력과 - 국제외국인 정책팀 내 담당업무 주무관 1인이 전북외국인 정책종합계획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중앙 공모사업, 협의체 관리, 외국인실태조사 등 모든 내용을 전담하기에 한계가 크고 향후 재외동포청 관련 업무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외국인 정책 전담자 1인 추가 보충 필요. 혹은 (2안)으로 전북도청 교육소통협력국-대외협력과-국제외국인 정책팀을 국제교류지원팀과 외국인 정책팀으로 이분화 하여 외국인 정책팀을 팀장 포함 3명 정도로 새롭게 구성할 필요 있음. (3안)으로 전북도청 기획조정실 산하 외국인 정책과(3

개의 팀 구성)를 설치하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 전반의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필요

○ 혹은 전라북도청의 주요 현안과 여건 상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 주요 관련 부서가 함께 총괄·기획·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지원 추진단(TF) 구성을 추진하는 방향도 고민 필요

-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의 신설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의 방향과 사업 등 통합·효율화 도모
-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사무 배분과 위임을 통해 효과적 배분

[표 6-27] 전국 시도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현황

지역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비고	지역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비고
서울	가족다문화담당관 ㅇ 외국인주민사업팀(5명) ㅇ 가족다문화정책팀 ㅇ 가족다문화지원팀 ㅇ 저출생대응팀		경북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ㅇ 외국인지원팀 ㅇ 다문화정책팀 ㅇ 외국인정책팀	12명
인천	인구가족과 ㅇ다문화가족팀(4명) ㅇ외국인생활지원팀(4명)	8명	광주	외국인주민과 (신설) ㅇ 외국인 정책팀 ㅇ 다문화지원팀 ㅇ 이주민지원팀(고려인, 북한이탈주민 등)	'23. 7. 1. 10명
경기	노동국 외국인 정책과 가족다문화과(다문화지원팀)	11명	전남	인구정책팀 + 다문화팀 ⇒ 외국인지원팀 (통합)	'23. 7 예정
충북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외국인관리팀	3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라북도 조직 내 외국인 정책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과 배치

○ 사업기간 : 2024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기획조정실 /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 기업유치지원실 / 보건복지여성국
- (시행방법) : 조직도 구성하여 업무 분장 실시
- (추진절차) : 의견 수렴하여 조직구성

(가장 이상적인 예)

ㅇ 전담부서 : (가칭) 외국인통합과, 총 10명

ㅇ 조직구성 : 외국인 유치·지원팀(3명) / 외국인 정착팀(3명)/ 외국인 사회통합팀(3명)

ㅇ 업무분담 : (외국인 유치지원팀) 외국인 정책 총괄/ 유학생 유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정착팀) 외국인근로자 지원/외국인정착환경개선 /재외동포사업 등
(외국인 사회통합팀)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국적취득/ 가족센터/ 협의체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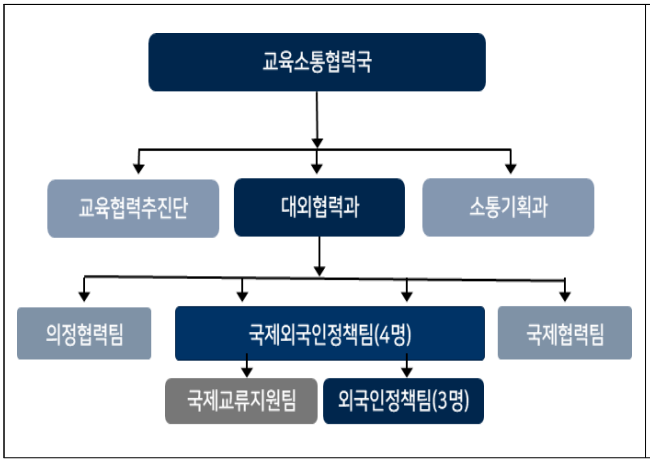

[그림 6-15]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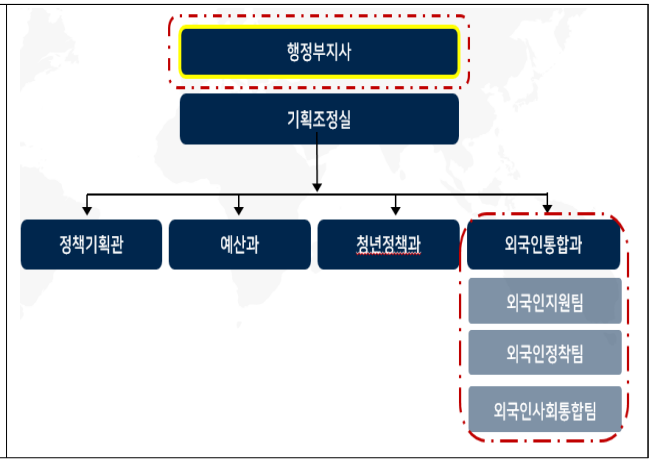

[그림 6-16]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3안)

[그림 6-17]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지원추진단(TF) 구성

5-1-2	전북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 기반 외국인 정책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함. 현재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풀을 본 위원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외국인 정책자문가 그룹은 대상별 연구 영역의 그룹, 현장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분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함. 또한 외국인주민 당사자의 의견도 정책 수립에 유용하므로 다양한 외국인 구성원의 리더 그룹을 정책자문가의 그룹에 포함시키도록 함

- 외국인 정책 수립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그룹 형성
- 전문가 그룹과 구성원을 다변화하여 지역 기반 외국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 사업대상 : 외국인 관련 분야별·현장별 전문가, 유형별 외국인, 학계와 연구자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매년실시

○ 사업량 및 예산 : 도 자체 예산 편성 운영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협력소통국 대외협력과
- (시행방법) 분기별 운영
- (추진절차)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한 공모

5-1-3	전북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지역사회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이탈현상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체별 인력난이 심각함

○ 이에 중앙정부와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산업체별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치·유입과 더불어 지역에 정착·정주하고 지역민과의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북도와 기초단체는 추진할 것임. 이 때 외국인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형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외국인주민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수렴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필요
- 전북 도내 유형별 외국인주민(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지역특화형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 대상 정책 참여단 구성하여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 수렴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구성·운영

○ 사업대상 : 도내 유형별 외국인 주민(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지역특화형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등),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전북도에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약 15명 내외

※ 외국인유형별, 국적, 직업, 연령, 성별, 지역 등 균형 안배

○ 사업기간 : 2024년~ 2027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교육협력소통국 대외협력과
- (시행방법) 분기별 운영, 외국인주민들의 현장 의견 수렴과 의견제시, 제도/사업 개선 건의 등
- (추진절차)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추천(시군, 단체, 기업, 학교 등)과 모집 공고 → 정책참여단 회의 개최

5-2-1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확대될 것을 예측하여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증대 및 기능별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본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기획할 필요 있음

○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의 구성은 전라북도가 사업을 총괄하고, 각 시군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 대학교(대학협의체 등), 기업(기업체, 경진원,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 외국인 관련 다양한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가 협력기관으로 구성되어 들어오도록 함

- 민·관·학 대표협의체와 현장 실무협의체 등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 또한 지역별 및 분야별로 들어온 외국인 대상 주민회의를 결성하여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고 내외국인 민관협의체 추가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전라북도, 각 시군, 기업, 지역대학,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주), 지역별 기업체, 각 지역 외국인관련 센터, 교육(지원)청, 내·외국인 협의체 등 광의의 사회 협의체 구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중심)

○ 사업기간 : 2024년~ 2027년

○ 사업대상 : 외국인과 지역민

○ 사업량 및 예산 : 예산 배정에 따라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각 시군, 기업, 지역대학, 경제통상진흥원, 국제협력진흥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전주), 지역별 기업체, 각 지역 외국인관련 센터, 교육(지원)청, 내·외국인 협의체 등
- (시행방법) 도 자체사업, 분기별 운영

5-2-2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지원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지원과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됨. 특히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직적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의 조정이 필요함. 이것은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 요구됨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주민에 기반 한 사업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외국인 지원사업도 이와 같은 과정이 요구됨. 따라서 향후 외국인 주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을 추진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도록 함

- 외국인 정책 추진의 의견수렴 방안
- 외국인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과 거버넌스 구축 기반 지원 사업 설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지원

○ 사업대상 : 외국인 주민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 사업량 및 예산 : 6개 지역 총 30,000천원

○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대외협력과(국제협력진흥원)
- (시행방법) 공모사업 방식 운영
- (추진절차)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조성 이후 사업기획, 공모절차

5-2-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협력 유치 협의회 운영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이민자(외국인, 재외동포 등) 유치 등을 위한 전략 마련 및 정보 공유, 공동 협력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협의회를 운영

❍ 새롭게 전북지역으로 유치·유입되는 신규 외국인 대상 전북도와 시군이 협업을 통해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유입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의 역량과 자격을 검증하고, 개인의 역량 수준과 기회를 높여 지역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를 들어 전북 도내에 신규 유치된 외국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공동 추진에 대한 협력 체결로 보다 다양한 언어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지원, 직업 훈련서비스,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운영. 유치된 신규 외국인 대상 원스탑 서비스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사회 정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노동시장 이해와 구직준비, 주거와 생활정보, 교육기관 검색과 개별맞춤 서비스 지원 등)

- (사례) 스웨덴 베스트라 예탈란드 주의 예터보리 지역협회
  - 외국 이민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3개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하는 기구인 예터보리 지역협회(the Association of the Region of Gothenburg) 구성
  -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의 역량 및 자격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진입과 교육 지원
  - 신규 이민자에 대한 공동체 오리엔테이션 및 동일 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 협정체결과 언어지원,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6개월 내에 취업 연계
  - 신규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프로젝트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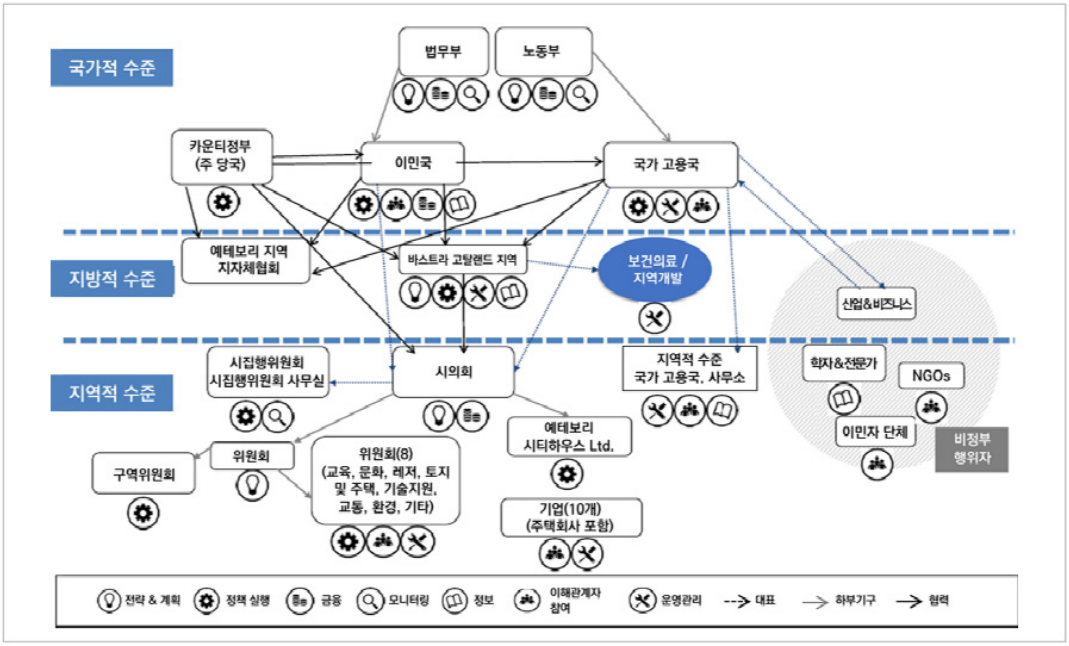

자료: OECD. 2018,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p.89.

출처: 이민정책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2022). 경상북도 인구위기 및 산업수요에 대응한 이민정책 연구 재인용

[그림 6-18]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의 이민자 통합거버넌스의 구조

5-2-4	이민자(재외동포) 지원서비스 센터 운영(온·오프라인)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이민자(재외동포 등)를 유치하고 정주·정착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의 지원 사업과 정책 정보 등을 구축·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연계 웹사이트 개설·운영 필요

○ 이민자 정착 및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전북도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구직·세금·주거·학교/돌봄·한국어·기본 생활정보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서비스 지원 운영

○ 원스톱 서비스 센터는 이민자 지원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대학 등에서 필요한 노동력과도 연계하여 구인 및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

5-3-1	지역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구축과 활용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지역 기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함

❍ 중앙정부에서 산출되는 외국인 관련 통계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 특성과 관련 구조를 분석하기에는 자료가 미비하고 통계의 근거도 산출기관에 따라 상이함

❍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 정착한 다양한 외국인에 관한 기초통계와 관련 연관 자료(산업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축하도록 함

- 지역 기반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정비와 구축
- 데이터 기반 한 외국인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북지역 외국인 관련 분야별 행정통계 구축과 활용

❍ 사업기간 : 2024년부터 매년 구축 및 활용

❍ 사업 시행 방식 : 전라북도 자체 예산편성 추진

❍ 사업량·예산 ; 예산 배정에 따라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주체)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 (시행방법) 중앙정부 부처별 외국인 관련 전라북도 행정통계 정비 및 구축

5-3-2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제도 구축 및 정례적 실시	전북도

❑ 추진배경(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의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기존 중앙 부처에서 각기 별도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는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등은 주기적 조사와 국가승인통계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부처별 실태조사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지역조사가 이루어지며 문항 자체도 시기별로 다르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큼

○ 이에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방안과 관련 세부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북 도내 체류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를 지역에서 설계하고 정례적으로 조사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구축·마련될 필요 있음

○ 무엇보다 전북 도내로의 해외 인재 유치와 외국인력 유입의 적정규모 파악, 해외 인재 육성과 외국인력 정주·정착 등에 대한 현황·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전북 지역 외국인 특성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 생성 필요

- 지역 기반 외국인 관련 체류 실태조사의 제도화
- 데이터 기반으로 외국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화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전북 도내 체류 외국인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 제도 구축

(조사분야 예)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전북지역 사업체 대상 외국인력 실태조사, 재외동포 실태조사 등

○ 사업 기간 : 2024년부터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 사업 시행 방식 : 전북도 자체 예산편성·운영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대상) 전북 도내 유형별 외국인(유학생, 근로자, 재외동포, 외국인주민, 계절근로자 등)
- (사업주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시군 외국인 관련 업무과/ 전북연구원
- (추진절차) 실태조사 제도화(조례 구체적 명시) → 실태조사 기획 · 조사 시기 선정 → 담당기관 선정·운영

6. 세부과제 목록

목표	추진전략 - 세부 과제명	담당부서	단기	중장기	핵심
1. 글로컬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	**1-1) 전북특별자치도 성장동력에 필요한 이민자 우수 인재 유치**				
	1-1-1.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인재 유치 전담센터" 지정 및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1-2.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인재 유치 박람회" 개최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1-3. 복수국적제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	
	1-1-4. 전북 해외 초청장학생 제도	교육협력추진단 (국제협력진흥원)	●		●
	1-1-5. 전북 해외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교육협력추진단		●	
	1-2) 이민자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1-2-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거점) 설립 및 운영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1-2-2. 재외동포 인재유치를 위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건립	대외협력과			●
	1-2-3. 농업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제안 및 건립	농업정책과		●	●
	1-2-4. 개발도상국 농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기구 유치 추진	농업정책과		●	●
	1-2-5.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대외협력과		●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요형 외국인력 정책 추진				
	1-3-1. 전문인력 농업비자 운영 특례 부여	대외협력과 (농업정책과)		●	
	1-3-2.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장기체류비자(E-7-4)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산업 분야로 확대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1-3-3. 전북 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 고용기업 할당 제한 비율 확대 특례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1-3-4. 글로벌 농생명식품특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농업정책과	●		●
	1-3-5.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확대 및 지역특화형 특례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 대학연계 유학생 유치 및 지역인재 육성 맞춤 프로그램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인력 확충(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전북 외국인취업지원플랫폼 운영 ● 지역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우수행정사 지정" 및 안내 ● 대학 국제교류(교육)센터 내 시간제인력 인건비 지원(공모방식)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도 공무원 한시적 파견 근무 ● 기숙사 보증금 무이자대출 및 공공형 공유기숙사 건립 운영 ● 다문화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관련사업장 사후관리 TF팀 구성·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 진단 시스템 마련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지역 조기정착 지원금" 지원 (정주화) ●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전북희망채움공제 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특례 적용 운영〉 ● 지역특화형 비자의 지역 확대 특례 및 지역특화 쿼터 특례 ●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전환제도 변경 신청 특례 운영	대외협력과	●		●

목표	추진전략 - 세부 과제명	담당부서	단기	중장기	핵심
	1-3-6. 간병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추진 및 인력 쿼터제 확대, 준전문인력자 격제(E-7-2) 비자 특례, 간병요양 관련 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대외협력과 (사회복지과)		●	
	1-3-8. 전북특화형 농어업 및 문화체험 분야 청소년 외국인재 연수제도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4) 미래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및 재외동포 유치				
	1-4-1.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교육협력추진단 (국제협력진흥원)	●		
	1-4-2. 대학 유학생 질적 관리 · 성과체계 및 비자 발급 규정 정비	대외협력과	●		
	1-4-3. 외국인유학생 전북문화관광 자유이용권 및 교통카드 지원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4-4. 외국인유학생 토픽 응시료 지원 사업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4-5. 전북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의료비 지원 사업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4-6.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교육협력추진단		●	
	1-4-7. 전북 외국인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대외협력과 (경제통상진흥원)	●		
	1-4-8. 전북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1-4-9. 전북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 확대 (기존)	교육협력추진단	●		
	1-4-10. 재외동포 동포(고려인·조선족) 마을 조성	대외협력과		●	
	1-4-11. 재외동포 및 이민자 특화형 지역 활력 타운 조성	대외협력과		●	
	1-4-12.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 묶음 사업	대외협력과	●		
	1-4-13. 차세대 재외동포 전라북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재외동포 대학생 전라북도 연수)	교육협력추진단	●		
2. 지역사회 장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체류지원	**2-1) 지역사회 외국인 수요 고려한 체류 및 대응체계 확립**				
	2-1-1. 외국인력 수요 산업 실태조사 추진	대외협력과	●		●
	2-1-2. 전라북도 **광역비자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	
	2-1-3.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협의체 조성	대외협력과		●	
	2-2) 지역의 불법체류 억제방안 마련				
	2-2-1. 체류 외국인 대상 시민교육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2-2-2. 고용주 대상 불법고용 예방교육과 제재안 마련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2-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관리	농업정책과		●	●
	2-2-4. 불법체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특례 부여	특별사법경찰과		●	

목표	추진전략 - 세부 과제명	담당부서	단기	중장기	핵심
3.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 존중 및 소통에 기반한 지역 통합	3-1) 지역민과 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3-1-1. 지역민의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실시	대외협력과		●	●
	3-1-2.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대외협력과	●		
	3-1-3. 문화소통프로그램의 확대	대외협력과 (자치행정과)	●		
	3-2) 외국인의 정주화를 위한 생활지원				
	3-2-1.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대외협력과		●	●
	3-2-2.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지정 운영	대외협력과		●	●
	3-2-3.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3-2-4. 전북 외국인 의료 진료 센터 운영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3-2-5. 국적취득자 전라북도 정착지원금 지원 (가칭) 전북뿌리내리기 지원 사업	대외협력과		●	
	3-2-6. 외국인주민(근로자·동포)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사회복지과		●	
	3-2-7. 외국인주민 자녀 위한 다솜학교(한국폴리텍) 설치 운영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3-3) 전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국인의 역량강화				
	3-3-1.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추진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
	3-3-2. 해외 새만금 한글 학당 운영 확대 (기존사업)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3-3-3. 결혼이민자의 창업 및 자영업 지원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4. 외국인의 인간 단운 삶을 위한 인권 강화	4-1) 외국인 인권증진과 인권교육 체계 마련				
	4-1-1. 외국인근로자 쉼터 조성 (기존사업)	대외협력과		●	
	4-1-2. 외국인 정착 환경 개선 추진 (행안부 공모사업)	대외협력과		●	
	4-1-3. 공공기관(공무원 등) 외국인 인식개선 사업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4-1-4. 동포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4-1-5. 지역민의 정기적 인권교육 운영	인권담당관		●	
	4-2)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삶의 보장				
	4-2-1.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확대 (기존사업)	대외협력과	●		
	4-2-2. 노동안전지침이 운영 통한 외국인근로자 안전강화 사업	대외협력과 (업종관련부서)		●	
	4-2-3. 현장중심의 인권 거버넌스 운영	대외협력과		●	●
	4-2-4. 전라북도 외국인근로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전라북도		●	

목표	추진전략 - 세부 과제명	담당부서	단기	중장기	핵심
5. 글로컬 지역행정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5-1) 지역기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5-1-1.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		●
	5-1-2. 전북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		
	5-1-3. 전북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과	●		
	5-2) 외국인 정책 효율화 및 다양한 기관 참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5-2-1.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지역특화형 비자)	대외협력과		●	●
	5-2-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지원	대외협력과 (국제협력진흥원)		●	
	5-2-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협력 유치 협의회 운영	대외협력과	●		
	5-2-4. 이민자(재외동포) 지원서비스 센터 운영(온오프라인)	대외협력과		●	
	5-3) 지역데이터 구축에 기반 한 행정서비스				
	5-3-1. 지역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구축과 활용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	●
	5-3-2. 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제도 구축 - 외국인주민·재외동포 실태조사, 사업체 대상 외국인력 실태조사 등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과)	●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경기연구원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경기연구연 정책연구 2020-68

곽윤경, 이병재, 김기태, 김경환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실태와 사회복장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자억 (2014).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대학을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 14-38

국가통계포털, 2000 ~ 2023 주민등록인구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그래미 휴고, 조지 탄, 최서리, 홍성호(2013). 농업분야 외국인력 정책 : 호주와 캐나다 사례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김미희, 박신규, 김명수 (2011) 전라북도 중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전북연구원

김연홍, 차승우(2021). 외국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스웨덴 사례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4(1), 105-135

김영란, 김이선, 김난주, 강승호 (2015). 저출산 대응 이민정착 전략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혜 박재규 (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기본계획(2019~2022)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윤희(2021). 외국인주민정책 추진체계 모색.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김주영(2022). 전북지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전재 양상과 그 변화 :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1), 49-82.

노대명, 박광준, 김경학 등 (2019).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기초 연구-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2011). 우수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문정현, 윤지원 (2021).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적응 관련 연구 동향. 인문사회 21, 12(4), 2931-2940

배옥현(2017).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첨단분야 인턴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 (보도자료),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실시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선정결과

법무부 2022 지역특화형비자사업 공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6월

법무부, 통계청(202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손능수·박민정·안지민(2022). 경상북도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연구. 경북행복재단

송다영(2018). 공표기관별 외국인·다문화 통계 비교 연구. 2018년 상방기 연구보고서 제1권

여성가족부 (2022).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여성가족부

오경석, 이경숙, 박미화(20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경기도외국인권지원센터.

오정은(202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이민정책 연구. 민족연구 78호 특집. 95-114

우복남(2020). 충남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사회통합 시책개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유민이, 최서리, 이창원, 김도원, 최승범(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육수현, 박민정, 김영화, 김지현, 김수경. (2020). 재외동포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형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연구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이경희 (2019).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민정책연구원(2021).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상돈, 이규용, 최호(2022). 인구변화 ·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외국인력 · 이민자 활용 전략. (사)다산경제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이재동, 이원진, 이현호, 박제혁(2018).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

인권정책연구소(2020).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인권기본계획 보고서. (사) 인권정책연구소

임동진(2022).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호주 지방정부의 SSRM 이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학보, 34(10, 87-118

임태경, 김상민 (201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장지수, 안정근, 김태진 (2017). 해외우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정책 수립 기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글러벌거버넌스연구소

정기선, 오정은, 김환학, 최서리, 신예진(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행정안전부

정명주(2021). 한국이민정책으로서의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의 특성과 한계.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1(4), 227-265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조영희 외(2021). 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2015). 이민자 선발을 위한 캐나다와 호주 점수제 운영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05

최서리(2020). 이민자 선발에서 '지역'의 역할 : 캐나다의 애틀랜틱 이민시범사업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0-01

최서리, 이창원, 이상지(2020). 호주 취업이민 분류 및 관리방식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최영일, 조영희(2021)〉 코로나19시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행정안전부(202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